2014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언론분쟁의 해결 및 시정권고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2014년 주요 업무성과를 담은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은 해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는 우리 위원회에도 미쳤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역대 최고치인 19,048건의 조정신청사건이 접수 · 처리되었는데 2013년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동일인들이 대량으로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수의 폭발적인 증가 앞에서 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놓치지 않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론사 및 핵심 쟁점별로 다수의 사건을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량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재부에서 원활한 심리진행이 이루어졌으며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2014년은 위원회가 심의업무를 개시한 이래 처음으로 재난보도 관련 기사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 해이기도 합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당시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고, 이러한 인격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은 조정 · 중재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도래를 반영하듯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관련 사건 비율(2014년 72%)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12년 61.8%, 2013년 66.2%)

이러한 현상은 복제 및 전파가 용이하며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복제·전파된 언론기사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사례집에서는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외에도 별도의 대량 사건 청구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첨부했습니다. 사건의 폭증으로 이어졌던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 신청사건의 쟁점 및 진행경과,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정중재 전수목록의 경우 예년에는 '전체사건 접수순'으로 수록했으나 이번에는 '중재부별 접수순'으로 수록함으로써 독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처리된 전체 사건 중에서 시의성이 있거나 법리적인 의미가 있는 32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그 상세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수록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위원회 활동 및 언론분쟁 해결절차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CONTENTS

/ 제 1 부 /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2014년도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15

2014년도 언론조정 · 중재사건 현황 21

제 1 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23

제 2 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34

제 3 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1

제 4 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7

제 5 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8

제 6 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80

제 7 장 자동소제기 현황 83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86

2014년도 시정권고 현황 89

/ 제 2 부 / 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97

1. 청구권별, 중재부별 현황 100

2. 매체유형별 현황 101

3. 처리결과 현황 101

4. 매체별 조정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102

5. 대량사건 처리기준 113

/ 제 3 부 /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제 1 장 명예훼손 사례 ····· 117

사례 1. 모 중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권○○ 對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2014대전조정1, 2014대전조정2(병합) 각 정정청구) ···· 119

사례 2. 해외에서 의류제조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인근 군부대의 사령관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 통상 對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014서울조정64~2014서울조정66(병합) 각 정정청구) ····· 123

사례 3. 신청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명박 對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4서울조정81, 2014서울조정82(병합) 각 정정청구) ····· 138

사례 4. 의사인 신청인이 페이스북에서 섬노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 對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사 (조선닷컴) (2014서울조정116 · 117 정정 · 손배청구) ····· 145

사례 5. 신청인이 컴퓨터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수리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박○○ 對 한국방송공사 (KBS-1TV, KBS 미디어) (2014서울조정253 · 254, 2014서울조정255 · 256(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 150

사례 6. 중소기업청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판한 익명의 중소기업 색출에 혈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중소기업청 對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2014서울조정343 정정청구) ····· 155

CONTENTS

사례 7. 전 ○○○○○○파크 센터장인 신청인으로 인해 소속 직원 20여명이 사직했으며, 신청인이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고 출장 보고서를 직원에게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석○○ 對 유한회사 제주의소리 (2014제주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 159

사례 8.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폭력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협업마을 ○○○○ 외 1인 對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2014서울조정958 · 959 정정 · 손배청구) ····· 164

사례 9. 모 여대 총장인 신청인이 교원 임용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인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관계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여자대학교 외 4인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2014서울조정976 · 977, 2014서울조정978 · 979(병합) 각 정정 · 반론청구) ····· 175

사례 10.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 송○○ 외 25인, 2. 김○○ 외 40인 對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2014전북조정24 · 25, 2014전북조정27 · 28(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 182

사례 11.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신○○ 對 주식회사 매일경제 (2014서울조정1328 정정청구) ····· 188

사례 12. 신청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무료신문 메트로가 휴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對 주식회사 소셜뉴스 (위키트리) (2014서울조정1347 · 1348 정정 · 손배청구) ····· 191

사례 13.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주식회사 ○○○ 對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014서울중재11 정정청구) ····· 197

사례 14. 육군 군 검찰이 윤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육군본부 對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014서울조정1424, 2014서울조정1425(병합) 각 정정청구) ····· 202

사례 15.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채○○ 對 주식회사 중앙일보 외 16개사 (2014서울조정1469 · 1470~2014서울조정1493 · 1494 각 정정 · 손배청구) ····· 209

사례 16. 종합격투기 이벤트를 개최하는 ○○FC 부대표가 시합 중 급소를 맞고 쓰러진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 외 1인 對 주식회사 헤럴드경제 (2014서울조정13637 정정청구) ····· 231

사례 17.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울릉도 미륵산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김○○ 對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2014서울조정15977 · 15978 정정 · 손배청구) ····· 236

제 2 장 초상권 침해 사례 ····· 243

사례 18. 수업시간에 질문하기를 싫어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홍○○ 對 한국교육방송공사 (EBS-TV) (2014서울조정101 손배청구) ····· 245

사례 19. 한국인 남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iMBC) (2014서울조정335, 2014서울조정336(병합) 각 손배청구) ····· 250

CONTENTS

사례 20. 경주 리조트 붕괴현장 보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 對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선일보, 주식회사 연합뉴스, 주식회사 서울신문 (2014서울조정376, 2014서울조정378, 2014서울조정380, 2014서울조정680 각 손배청구) ····· 253

사례 21. 동의 없이 신청인들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여행상품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황○○ 외 2인 對 주식회사 홈&쇼핑 (2014서울조정1120 손배청구) ····· 259

사례 22. 신청인이 유병언의 친동생과 의형제라고 허위보도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조○○ 對 주식회사 스타엔 (2014서울조정1431 손배청구) ····· 261

사례 23. 신청인이 유병언 도피에 적극 가담했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 특정 모임을 이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김○○ 對 주식회사 국제뉴스 (2014서울조정1440 · 1441 정정 · 손배청구) ····· 264

사례 24. 명절 스트레스를 백화점 쇼핑으로 해소하는 세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남○○ 對 주식회사 매일방송 (인터넷 MBN) (2014서울조정1454 손배청구) ····· 268

사례 25. 지역의 한 축제 현장을 보도하면서, 행사장을 방문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오○○ 외 1인 對 주식회사 뉴시스대구경북 (2014대구조정63 손배청구) ····· 271

사례 26. 신청인들이 개최한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를 무단 촬영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대 외 3인 對 원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원주MBC-TV) (2014강원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 274

제 3 장 음성권 침해 사례 ····· 279

사례 27.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관련 보도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인 신청인의 음성이 동의 없이 녹음 ·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표○○ 對 한국방송공사 (KBS-2TV, KBS 미디어) (2014서울조정268, 2014서울조정269 (병합) 각 손배청구) ····· 281

사례 28. 전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오○○ 對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2014서울조정717 손배청구) ····· 284

제 4 장 성명권 침해 사례 ····· 289

사례 29. 퇴사한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사를 작성해 피해를 입었다.

전○○ 對 주식회사 데일리코스메틱 (2014서울조정431 · 432 정정 · 손배청구) ····· 291

사례 30. 인터넷 게시판에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윤○○178 對 주식회사 레지오엑스 (몬스터짐) (2014서울조정7206 손배청구) ····· 302

제 5 장 사생활 침해 사례 ····· 307

사례 31. 육군 부사관이 신청인 여고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김○○ 외 1인 對 주식회사 연합뉴스 (2014서울조정709 손배청구) ····· 309

제 6 장 기타 사례 ····· 313

사례 32. 귀순자인 신청인이 일부 탈북자들처럼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박○○ 對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2014서울조정853 · 889 정정 · 손배청구, 2014서울조정854 정정 청구 (인터넷 채널A) ····· 315

CONTENTS

/ 제 4 부 /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1 장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 ····· 323

사례 1. 제2014-24호(광주일보) ····· 325
사례 2. 제2014-60호(뉴스1코리아) ····· 326
사례 3. 제2014-208호(인터넷 경향신문) ····· 327

제 2 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329

사례 4. 제2014-210호(트루스토리) ····· 331

제 3 장 사생활 침해 ····· 333

사례 5. 제2014-59호(조선닷컴) ····· 335
사례 6. 제2014-172호(미디어제주) ····· 337
사례 7. 제2014-235호(대구일보) ····· 340

제 4 장 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 ····· 343

사례 8. 제2014-46호(연합뉴스) ····· 345
사례 9. 제2014-90호(조선닷컴) ····· 347
사례 10. 제2014-152호(조선닷컴) ····· 348
사례 11. 제2014-299호(뉴스1) ····· 349

제 5 장 자살관련 보도 ····· 351

사례 12. 제2014-144호(인터넷 서울신문) ····· 353
사례 13. 제2014-173호(경안일보) ····· 354
사례 14. 제2014-258호(문화일보) ····· 355

제 6 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 357

사례 15. 제2014-26호(연합뉴스) ····· 359

사례 16. 제2014-222호(인터넷 서울경제) ····· 360

/ 제 5 부 /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 363

서울중재부 ····· 365

지역중재부 ····· 533

- 부 산 ····· 535
- 대 구 ····· 542
- 광 주 ····· 552
- 대 전 ····· 559
- 경 기 ····· 566
- 강 원 ····· 587
- 충 북 ····· 588
- 전 북 ····· 593
- 경 남 ····· 600
- 제 주 ····· 612

제 2 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 615

제 1 부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2014년도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조정사건 역대 최다 19,048건 접수처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19,048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2013년의 2,433건에 비해 8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특정인들이 대량으로 조정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성공률 51.2%, 본안성공률 69.6%, 신청효율 88.7%를 기록했다.

대량사건 16,117건 접수 · 처리, YTN 단일 매체 최다 1,037건 신청

위원회는 2014년 개별 신청인이 1,000건 이상 대량으로 신청한 16,117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과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가 235개 매체를 대상으로 각각 11,306건과 4,811건을 신청하였다. 단일 매체로는 YTN이 1,0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YTN 885건, TV조선 796건, 인터넷 TV조선 704건 순이었다. 중재부는 대량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언론사별, 쟁점별로 사건을 정리 하여 일괄 처리하였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청구, 72%로 가장 많아

2014년의 경우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청구 비율이 72%로, 2013년의 66.2%보다도 5%P 이상 증가하였다.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사건 역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청구 비율이 72%였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다른 매체에 비해 그 매체 수가 월등히 많고, 다량의 기사를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유지 지속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이를 심리에 적용하면서 개선 효과를 월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특히 피해구제보도문의 보도 제목, 본문단락, 조정문구, 게재지면 등 항목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90%가 넘게 이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보도문 [정정보도]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14일과 19일 인터넷 환경뉴스에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이라는 제목으로 "동작구가 토양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건축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바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주한미군이전기지사업단에서 지난 2011년 토지오염정화작업을 완료했으며, 주말농장 운영 또한 국방부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해구제보도문 [반론보도]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관련 반론보도문

○○일보는 3월 28일자 11면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제하의 기사에서 '도서관 친구들' 전 회장 여○○씨가 지난해 4월 해외 도서관 지원자금으로 8,0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통보하여 갈등을 일으켰으며, 사무국장이 여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회장은 당시 해외도서관 지원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당시 사무국장이 여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195만원, 최고 3천만원 조정

2014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3,679만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95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으로 조정된 구원파 신도들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사건, e머니투데이 대상 청구 가장 많아

2014년 접수 · 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중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특정 기관과의 분쟁이 다수신청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어 뉴스1코리아 59건, 인터넷 MBN 48건, 네이버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2012년 118건, 2013년 78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포털에 대한 청구가 다소 감소하면서 신청건수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중앙일간지 중에는 동아일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의 경우 채널A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뉴스통신은 뉴스1코리아가 59건, 인터넷신문은 e머니투데이에 이어 노컷뉴스가 42건,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터넷 MBN이 48건으로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차지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재난보도 등 총 302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30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013년 289건과 비교해 13건(4.5%)이 증가했다.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마약 및 약물보도,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 보도 및 자살관련보도의 시정권고는 감소세에 있으나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정권고 업무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9건의 재난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재난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유례가 드문 대형 재난사태 때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던바, 이러한 인격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매 분기 · 반기별로 심의대상 전체 매체에 시정권고 현황을 고지하는 한편, 동일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는 공한을 보내고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2차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준 강화

한편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각종 법익 침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심의기준 체계를 재정비할 목적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성폭력사건 보도와 관련해 과열취재경쟁으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보호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에 더해 응답률과 주요 질문내용을 함께 밝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도 포함하였다.

2014년도

언론조정 · 중재사건 현황

제 1 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19,04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는 2010년 2,205건을 시작으로 4년 연속 2,000건이 넘는 수치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14년에는 2013년의 2,433건 대비 16,615건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구원파'로 알려진 특정 종교집단 및 개인의 대량사건 청구로 인한 것이다. 대량사건의 청구건수는 2014년 전체 청구건수 19,048건 중 16,117건으로 84.6%를 차지했으며, 대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하 '일반 사건'이라 한다)은 2,931건으로 15.4%를 차지했다.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현황

(2010.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청 구 건 수	2,205	2,124	2,401	2,433	19,048
전년대비 증감	632	-81	277	32	16,615

2. 청구권별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19,048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2,888건(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배상청구 5,725건(30.1%), 반론보도청구 305건(1.6%), 추후보도청구 130건(0.7%) 순이었다. 지난 3년 간 청구권별 조정청구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또한 다소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청구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구원파 대량사건은 정정보도청구가 11,447건, 손해배상청구가 4,670건이었으며, 일반 사건은 정정보도청구가 1,441건(49.2%), 손해배상청구가 1,055건(36.0%), 반론보도청구가 305건(10.4%), 추후보도청구가 130건(4.4%) 순이었다.

일반 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에서 특이한 점은 손해배상청구가 전년에 비해 271건이나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속 신도들이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다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청구명 \ 연도	2012	2013	2014	합 계
정 정	1,223 (50.9)	1,195 (49.1)	12,888 (67.7)	15,305 (64.1)
반 론	315 (13.1)	274 (11.3)	305 (1.6)	895 (3.7)
추 후	69 (2.9)	180 (7.4)	130 (0.7)	379 (1.6)
손 배	794 (33.1)	784 (32.2)	5,725 (30.1)	7,303 (30.6)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 안의 숫자는 %

3.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4년 조정청구현황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조정청구가 13,021건 (6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며, 종교단체 4,954건(26.0%), 기업체 331건(1.7%), 일반단체 315건(1.7%), 공공단체 103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의 조정청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이 신청한 11,306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청한 4,811건이었다.

일반 사건은 개인이 1,715건(58.5%), 기업체 331건(11.3%), 일반단체 315건(10.7%), 종교단체 143건(4.9%), 공공단체 103건(3.5%), 언론사 90건(3.1%), 교육기관 82건(2.8%), 지자체 81건(2.8%), 국가기관 71건(2.4%) 순이었으며, 전체 조정청구 현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3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를 제외한 모든 신청주체의 신청건수가 증가했다. 한편, 종교단체의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량사건을 청구한 종교단체 이외에도 특정 종교단체가 58건을 청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신청인 \ 연도	2012	2013	2014	합계
개 인	1,393 (58.0)	1,395 (57.3)	13,021 (68.4)	15,809 (66.2)
국가기관	96 (4.0)	36 (1.5)	71 (0.4)	203 (0.9)
지 자 체	76 (3.2)	103 (4.2)	81 (0.4)	260 (1.1)
공공단체	92 (3.8)	85 (3.5)	103 (0.5)	280 (1.2)
일반단체	310 (12.9)	255 (10.5)	315 (1.7)	880 (3.7)
종교단체	16 (0.7)	31 (1.3)	4,954 (26.0)	5,001 (20.9)
기 업 체	306 (12.7)	383 (15.7)	331 (1.7)	1,020 (4.3)
언 론 사	85 (3.5)	64 (2.7)	90 (0.5)	239 (1.0)
교육기관	27 (1.2)	81 (3.3)	82 (0.4)	190 (0.8)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유형별 전체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8,444건(44.4%), 인터넷뉴스서비스 4,171건(21.9%), 방송 3,776건(19.8%), 일간신문 1,378건(7.2%), 뉴스통신 1,113건(5.8%), 주간신문 141건 (0.7%), 잡지 25건(0.1%) 순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전체 신문 신청건의 76.4%인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 일간지는 14.4%인 218건, 주간신문은 9.3%인 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 전체 방송 신청건의 46.1%인 1,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 유선방송이 36.6%인 1,382건, 지상파TV가 17.0%인 6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청구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의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20.9%), 방송(18%), 일간신문(9.4%)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에 대한 조정청구의 비중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도 신문(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의 조정청구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매체(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조정청구는 전체 청구사건의 약 66.3%를 차지했다.

한편 구원파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1,501건(51.2%), 인터넷뉴스서비스 435건(14.8%), 일간신문 354건(12.1%), 방송 323건(11.0%), 뉴스통신 185건(6.3%), 주간신문 122건(4.2%), 잡지 11건(0.4%) 순이었다. 일반 사건 현황은 전체 사건 현황과 마찬가지로 신문(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으며, 종이신문의 비중이 전체에서 16.3%를 차지하는 반면 인터넷 매체(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비중은 66.0%를 차지했다.

[표 1-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매체유형 \ 연도		2012	2013	2014	합 계
신문	일간신문	496 (20.7)	380 (15.6)	1,378 (7.2)	2,254 (9.4)
	주간신문	169 (7.0)	142 (5.9)	141 (0.7)	452 (1.9)
방 송		243 (10.0)	288 (11.8)	3,776 (19.8)	4,307 (18.0)
잡 지		11 (0.5)	10 (0.4)	25 (0.1)	46 (0.2)
뉴스통신		83 (3.5)	112 (4.6)	1,113 (5.8)	1,308 (5.5)
인터넷신문		945 (39.4)	1,130 (46.4)	8,444 (44.3)	10,519 (44.0)
인터넷뉴스서비스		454 (18.9)	369 (15.2)	4,171 (21.9)	4,994 (20.9)
기 타			2 (0.1)		2 (0.0)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 안의 숫자는 %

[표 1-5] 2014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매체유형 \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종합편성채널				
				TV	라디오						
19,048	1,160	218	141	641	11	1,382	1,742	25	1,113	8,444	4,171
%	(6.1)	(1.1)	(0.7)	(3.4)	(0.1)	(7.3)	(9.1)	(0.1)	(5.8)	(44.3)	(21.9)

*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현황

2014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18,793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8.7%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는 208건(1.1%), 재산상 손해 17건(0.8%), 사생활 침해 14건(0.1%)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구원파 대량사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침해 유형이 명예훼손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구원파 소속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49건의 조정을 별도로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은 전체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안이었으며,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2,676건(91.3%), 초상권 침해 208건(7.1%), 재산상 손해 17건(0.6%), 사생활 침해 14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건의 침해유형별 현황을 2013년과 비교해보면 초상권 침해사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정청구는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 도 / 침해유형	2012	2013	2014	합 계
명예훼손	2,110 (87.9)	2,252 (92.6)	18,793 (98.7)	23,155 (97.0)
초상권 침해	128 (5.3)	82 (3.4)	208 (1.1)	418 (1.8)
음성권 침해	8 (0.3)	5 (0.2)	5 (0.0)	18 (0.1)
성명권 침해	43 (1.8)	23 (0.9)	8 (0.0)	74 (0.3)
사생활 침해	101 (4.2)	45 (1.8)	14 (0.1)	160 (0.7)
재산상 손해	10 (0.4)	26 (1.1)	17 (0.1)	53 (0.2)
기 타	1 (0.1)	–	3 (0.0)	4 (0.0)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 안의 숫자는 %

6.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235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213건(90.6%)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한 경우는 21건(8.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1건(0.4%)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2014. 1. 1. ~ 2014.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213(90.6)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21(8.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1(0.4)
계	235(100)

* ( ) 안의 숫자는 %

7.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4년 접수 · 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건 · 사고 · 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8,248건으로 전체의 95.8%를 차지했고, 정치 · 선거 분야가 295건으로 1.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 산업 분야 114건(0.6%), 종교 분야 112건(0.6%), 스포츠 · 연예 분야 78건(0.4%), 보건복지 분야 52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분야 건수가 사회, 정치 · 선거, 경제 · 산업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구원파 대량사건 및 특정 종교단체가 신청한 58건의 조정 등 종교단체에서 많은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표 1-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조정대상보도 분야	청구건수
사회(사건/사고/고발)	18,248(95.8)
정치 · 선거	295(1.5)
경제 · 산업	114(0.6)
종교	112(0.6)
스포츠 · 연예	78(0.4)
보건 · 복지	52(0.3)
교육	48(0.3)
미디어	35(0.2)
노동	24(0.1)
국방 · 외교	18(0.1)
레저 · 생활	10(0.1)
환경	2(0.0)
기타	12(0.1)
계	19,048(100)

*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4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보도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1,001건으로 9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 · 심층 · 기획보도가 120건(1.1%), 오피니언 45건(0.4%) 순이었으며, 사설의 경우도 33건(0.3%)이나 차지했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조정대상기사 유형	청구건수
스트레이트	11,001(98.0)
탐사 · 심층 · 기획보도	120(1.1)
오피니언	45(0.4)
사설	33(0.3)
사진	12(0.1)
인터뷰	5(0.0)
기타	4(0.0)
계	11,220(100)

*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보도를 세부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 관련 보도가 전체 사건의 98.1%인 7,6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94건(1.2%),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35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뉴 스	7,676 (98.1)	다큐멘터리 및 토론	13 (0.2)
시사고발	94 (1.2)	연예 · 스포츠	10 (0.1)
교양정보	35 (0.4)	계	7,828(100)

* ( ) 안의 숫자는 %

9. 중재부별 현황

2014년 중재부별 접수 현황을 보면, 17,750건을 접수·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93.2%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중재부 548건(2.9%), 경남중재부 150건(0.8%), 부산중재부 138건(0.7%) 등의 순을 보였다. 구원파 대량사건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언론을 대상으로 집중돼, 서울 및 경기 중재부의 조정청구건수가 급증했다.

한편 지역 중재부 가운데 구원파 대량사건이 10건 이상 접수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지역은 조정청구 건수가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대량사건 신청이 거의 없었던 광주나 전북 중재부는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경남중재부의 경우 언론사 간 분쟁이 다수의 조정사건으로 이어지면서 2013년의 6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50건이 접수·처리되었다.

[표 1-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 도 / 중재부	2012	2013	2014	합 계
서울중재부	1,832 (76.3)	1,806 (74.2)	17,750 (93.2)	21,388 (89.6)
부산중재부	50 (2.1)	69 (2.9)	138 (0.7)	257 (1.1)
대구중재부	29 (1.2)	48 (2.0)	113 (0.6)	190 (0.8)
광주중재부	92 (3.8)	78 (3.2)	83 (0.4)	253 (1.1)
대전중재부	53 (2.2)	75 (3.1)	96 (0.5)	224 (0.9)
경기중재부	119 (5.0)	195 (8.0)	548 (2.9)	862 (3.6)
강원중재부	11 (0.5)	20 (0.8)	16 (0.1)	47 (0.2)
충북중재부	55 (2.3)	37 (1.5)	71 (0.4)	163 (0.7)
전북중재부	47 (2.0)	39 (1.6)	53 (0.3)	139 (0.6)
경남중재부	80 (3.3)	63 (2.6)	150 (0.8)	293 (1.2)
제주중재부	33 (1.3)	3 (0.1)	30 (0.2)	66 (0.3)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3년까지는 전자우편(e-메일)을 이용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으나, 2014년의 경우는 위원회 전자문서(Eye-Net)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구원파 대량사건 대부분이 전자문서로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를 통한 조정신청은 2012년 전체 접수 사건의 21.9%인 525건이었으나, 2013년 30.8%인 75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4년에는 87.9%인 16,73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이용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결과로 보이며, 특히 대량사건 또는 다수사건 신청 시 매우 편리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방 문	우 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Eye-Net)	구 술	기 타	청구건수
2012	360 (15.0)	114 (4.7)	1,250 (52.1)	525 (21.9)	152 (6.3)		2,401 (100)
2013	336 (13.8)	137 (5.6)	1,196 (49.2)	750 (30.8)	12 (0.5)	2 (0.1)	2,433 (100)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19,048 (100)

* ( ) 안의 숫자는 %

제 2 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대량사건 16,117건을 포함한 19,048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16,350건(85.8%), 조정성립 1,156건(6.1%), 조정불성립결정 1,105건(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55건(1.3%), 기각 106건(0.6%), 각하 76건(0.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정성공률은 51.2%, 본안성공률은 69.6%, 신청효율은 88.7%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청효율의 경우 2013년(77.8%) 대비 10.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량사건 중 취하된 15,245건 가운데 14,584건이 정정 또는 반론보도되거나 기사삭제 혹은 기사수정되는 등 피해구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2012년 17.8%, 2013년 12.1%, 2014년 5.8%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재부가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경우 2,931건이 접수되어 2013년 대비 49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906건은 조정성립되었고, 취하된 1,105건 가운데 836건이 피해구제되었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연도	청구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조정성공률	본안성공률	신청효율
			동의	이의				심리 전	심리 중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592 (536)	380 (251)	64.1%	75.7%	71.5%
	%	33.5	3.2	2.7	17.8	1.8	0.5	24.7	15.8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726 (634)	363 (250)	73.4%	82.5%	77.6%
	%	37.6	2.2	2.4	12.1	0.8	0.1	29.9	14.9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5,228 (14,498)	1,122 (922)	51.2%	69.6%	88.7%
	%	6.1	0.7	0.6	5.8	0.6	0.4	79.9	5.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 \times 100$

※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times 100$

※ 신 청 효 율 = $\frac{\text{신청유효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조정성공률

조정성공률이란 전체 조정청구사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거나 신청내용이 부적절해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건을 모두 제외하고 조정심리를 거친 사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조정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은 2012년 64.1%, 2013년 73.4%, 2014년 51.2%로 나타났다. 2014년 조정성공률이 51.2%로 매우 낮은 것은 중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정불성립된 사건이 1,105건으로 2013년의 295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 관련 구원파 대량사건 중 합의가 결렬되어 일괄적으로 조정불성립된 건수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

[표 2-2]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 취하 건수 (B)	조정건수 (A-B)	조정성공건수 (C)	조정성공률 C/(A-B)
2012	2,401	1,027	1,374	881	64.1%
2013	2,433	1,111	1,322	970	73.4%
2014	19,048	16,532	2,516	1,289	51.2%
계	23,882	18,670	5,212	3,140	60.2%

3. 본안성공률

본안성공률은 전체 청구사건에서 기각·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조정심리에 부쳐진 사건 중에서 조정 성립되거나 중재부가 인용한 사건 및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안성공건수에는 조정성공건수 외에도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과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을 살펴보면, 2012년 75.7%, 2013년 82.5%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2014년에는 69.6%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조정불성립된 사건이 2014년 1,105건(본안심리건수 3,638건 중 30.4%)으로 2013년 295건(본안심리건수 1,685건중 17.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3]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청구건수(A)	기각·각하·심리전 취하 건수 (B)	본안심리건수 (A-B)	본안성공건수 (C)	본안성공률 C/(A-B)
2012	2,401	647	1,754	1,327	75.7%
2013	2,433	748	1,685	1,390	82.5%
2014	19,048	15,410	3,638	2,533	69.6%
계	23,882	16,805	7,077	5,250	74.2%

4. 신청효율

신청효율은 전체 조정청구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 요건 적합 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 여부나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한 것이다.

신청효율은 2010년 역대 최고치인 79.2%를 기록했다가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크기의 격상 등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2011년을 기점으로

71%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사항과 그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의 당위성을 전파했다. 이에 2012년 71.5%, 2013년 77.6%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은 역대 최고인 88.7%를 기록했다. 이는 대량사건 중 취하된 15,245건 가운데 14,511건을 포함하여 취하된 전체 16,350건 중 94.3%인 15,420건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되었기 때문이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효율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신청유효건수 (C)	신청효율 C/(A-B)
2012	2,401	55	2,346	1,678	71.5%
2013	2,433	22	2,411	1,871	77.6%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계	23,882	259	23,623	20,277	85.8%

5.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4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의 신청효율이 90.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손해배상(85.5%), 반론보도(8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 2013년 각각 97.1%와 96.7%로 가장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던 추후보도청구의 신청효율이 75.6%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추후보도 단독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신청된 사건이 많은데다,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금액지급을 고집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2-5]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정정	1,223	450	40	35	238(6)	17	3	440(338)	64.2	75.5	69.3
	반론	315	113	7	3	35(2)	11	5	141(112)	75.9	84.0	78.3
	추후	69	2	2		1			64(63)	80.0	90.9	97.1
	손배	794	240	27	28	153(2)	16	3	327(274)	59.6	72.4	70.1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정정	1,195	511	29	39(2)	155(8)	11	2	448(335)	73.6	82.9	74.9
	반론	274	129	8	1	18	3		115(93)	87.8	90.5	84.9
	추후	180	18		2	1			159(156)	85.7	96.4	96.7
	손배	784	258	17	15	121(6)	6		367(300)	66.9	78.4	74.7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3.4	82.5	77.6
2014	정정	12,888	626	59	62(1)	629(7)	22	36	11,454 (10,904)	49.8	68.8	90.4
	반론	305	108	12	10(1)	39(2)	1	4	131(117)	71.0	80.3	80.0
	추후	130	29	18	1	23	3		56(49)	66.2	73.6	75.6
	손배	5,725	393	44	49(1)	414(7)	80	36	4,709 (4,350)	48.6	69.1	85.5
	계	19,048	1,156	133	122(3)	1,105(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신청효율이 90.2%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89.7%), 교육 기관(78.0%), 일반단체(73.6%), 회사(73.6%) 등의 순이었다. 2013년 신청효율이 가장 높았던 국기기관과 지자체 · 공공단체는 각각 36.6%와 55.1%의 가장 낮은 신청효율을 기록했다. 조정성공은 일반단체가 80.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교육기관이 78.6%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의 조정성공률은 가장 낮은 34.5%였다.

[표 2-6]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개 인		1,393	434	39	41	206(1)	26	6	641(555)	65.7	77.9	70.1
	단체	국가기관	96	40	6	3	12	1		34(23)	75.4	86.0	72.6
		지자체 공공단체	168	70	7		30(1)			61(48)	72.0	76.9	75.0
		일반단체	310	113	15	2	81(4)	14		85(61)	60.7	68.1	65.2
		종교단체	16	4			2	2		8(7)	66.7	84.6	78.6
		회사	391	134	9	20	88(4)	1	5	134(85)	57.0	72.2	60.3
		교육기관	27	10			8			9(8)	55.6	61.9	66.7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개 인		1,395	481	20	25(1)	154(10)	11	2	702(588)	73.7	82.5	79.6
	단체	국가기관	36	28		1	1			6(6)	93.3	96.8	94.4
		지자체 공공단체	188	96	15	3	14			60(48)	86.7	91.2	84.6
		일반단체	255	105	5	4(1)	65(4)	9		67(44)	61.5	69.8	64.6
		종교단체	31	5	2	1	1			22(16)	77.8	92.3	74.2
		회사	447	172	12	14	58			191(149)	71.9	82.0	74.5
		교육기관	81	29		9	2			41(33)	72.5	96.8	76.5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3.4	82.5	77.6
2014	개 인		13,021	579	78	45(3)	677(15)	97	44	11,501 (10,877)	47.6	64.1	89.7
	단체	국가기관	71	19	1	12	26			13(6)	34.5	58.1	36.6
		지자체 공공단체	184	60	3	40	16		28	37(23)	52.9	87.6	55.1
		일반단체	351	142	22	16	24(1)	5	3	103(61)	80.4	90.3	73.6
		종교단체	4,954	206	8		292	4	1	4,443 (4,250)	42.3	70.0	90.2
		회사	421	121	17	9	61			213(172)	66.3	78.4	73.6
		교육기관	82	29	4		9			40(31)	78.6	85.2	78.0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4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공공기관장의 신청효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무직(92.7%)[1], 종교인(86.5%), 금융업종사자 (84.6%), 문화예술인(80.3%), 국회의원(80.0%) 등이 비교적 높은 신청효율을 나타냈다.

한편 신청효율이 낮은 직업군을 살펴보면 조합대표 및 협회장이 가장 낮은 44.4%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군인 및 경찰(47.1%), 시민활동가(50%),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63.6%)이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구분 / 직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45	12			11(3)			22(21)	52.2	57.7	80.0
법조인	8							8		100.0	
공무원	38	25			2			11(5)	92.6	93.5	78.9
군인 · 경찰	51	15	1	4	20			11(8)	40.0	56.5	47.1
기초광역단체장 · 의원	22	12	1		7			2(1)	65.0	68.2	63.6
정당정치인	44	19	2	1	13(6)			9(4)	60.0	67.5	70.5
의료인	74	11	2	2	2		1	56(41)	76.5	92.9	74.0
문화예술인	76	12		2	8			54(49)	54.5	68.0	80.3
종교인	74	34			10			30(30)	77.3	82.8	86.5
회사원	218	50	2	7	49	20	1	89(84)	48.1	64.0	69.0
언론인	86	39	2	3(3)	24	17		1(1)	60.3	65.2	65.2
교육자	210	56	3	10	38			103(92)	55.1	71.4	71.9

1) 구원파 대량사건 신청인인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이 신청한 사건은 모두 무직으로 분류됨

구분 / 직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개인사업가	377	94	32	6	55(2)	22	2	166(112)	67.4	77.9	68.0
금융업종사자	13	8		2				3(3)	80.0	100.0	84.6
연예인	4							4		100.0	
학생	32	18	2			3	1	8(2)	100.0	100.0	78.6
시민활동가	16	8						8	100.0	100.0	50.0
공공기관장	4	2						2(2)	100.0	100.0	100.0
조합대표협회장	18	6	1		4			7(1)	63.6	66.7	44.4
주부	121	32	14		25(4)		34	16(14)	64.8	69.9	73.6
무직	11,329	99	5		351	1	1	10,872 (10,393)	22.9	52.4	92.7
알 수 없음	109	13	7	8	35	32		14(12)	31.7	54.5	41.6
기타	52	14	4		23	2	4	5(2)	43.9	50.0	43.5
계	13,021	579	78	45(3)	677(15)	97	44	11,501 (10,877)	47.6	64.1	89.7

8.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뉴스통신이 94.5%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신문 90.3%, 방송 88.9%, 인터넷뉴스서비스 87.2%, 신문 79.1%, 잡지 73.9% 순이었다.

조정성공률은 잡지가 83.3%로 가장 높았으며, 뉴스통신 66.7%, 인터넷신문 56.8%, 신문 48.7% 순이었다.

한편,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하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구원파 대량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방송의 경우 91.9%, 인터넷뉴스서비스 91.1%, 뉴스통신 88.2%, 인터넷신문 83.7%의 높은 취하율을 보였다. 반면, 구원파 대량사건 신청비율이 다소 낮은 신문의 경우 취하율이 67.3%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정성공률은 14.3%를 기록했다.

[표 2-8]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신 문	665	265	27	27	163(4)	9	5	169(107)	60.6	71.3	61.9
	방 송	243	78	10	10	63	10		72(55)	54.7	68.5	61.4
	잡 지	11	7			2			2(2)	77.8	80.0	881.8
	뉴스통신	83	23	9		18(2)	2		31(23)	64.0	71.0	70.4
	인터넷신문	945	348	26	23	157(4)	18	5	368(310)	67.5	76.7	74.6
	인터넷뉴스 서비스	454	84	4	6	24	5	1	330(290)	74.6	90.0	84.4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5	71.5
2013	신 문	522	236	23	16(1)	80(3)	4		163(105)	73.0	81.1	71.0
	방 송	288	136	7	6	41(4)	10	1	87(49)	75.3	82.3	70.8
	잡 지	10	5		3	1			1(1)	55.6	90.0	60.0
	뉴스통신	112	32	2	2	19(1)		1	56(49)	61.8	73.6	75.7
	인터넷신문	1,130	420	20	29(1)	139(2)	5		517(443)	72.4	81.4	78.8
	인터넷뉴스 서비스	369	85	2	1	15(4)	1		265(237)	84.5	92.5	89.1
	기타	2	2							100.0	100.0	100.0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 (884)	73.4	82.5	77.6
2014	신 문	1,519	217	20	7	243	7	2	1,023 (958)	48.7	61.6	79.1
	방 송	3,776	99	16	19	152(5)	18	3	3,469 (3,219)	40.2	58.6	88.9
	잡 지	25	6	4	2		2		11(7)	83.3	100.0	73.9
	뉴스통신	1,113	66	4	7	28	22	4	982(957)	66.7	81.0	94.5
	인터넷신문	8,444	668	60	77(3)	476(4)	45	52	7,066 (6,800)	56.8	76.3	90.3
	인터넷뉴스 서비스	4,171	100	29	10	206(7)	12	15	3,799 (3,479)	37.4	56.1	87.2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9.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4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성권 침해(100%)와 명예훼손(89.1%), 성명권 침해(87.5%) 등이 높은 신청효율을 보인 반면, 사생활 침해는 69.2%, 초상권 침해는 42.2% 로 낮게 나타났다. 명예훼손의 신청효율이 2013년도(76.9%)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것은 명예훼손으로 신청한 구원파 대량사건 대부분이 피해구제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구원파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초상권 침해 관련 사건 상당수가 조정불성립되면서 초상권 침해의 신청효율은 2013년 82.7%에서, 2014년 42.2%로 대폭 감소했다.

[표 2-9]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명예훼손	2,110	765	65	60	420(10)	34	10	756(583)	63.4	74.8	68.9
	초상권 침해	128	23	5	3	4	9	1	83(81)	80.0	90.7	92.4
	음성권 침해	8	3			1	1		3(1)	75.0	83.3	57.1
	성명권 침해	43	1		2				40(40)	33.3	100.0	95.3
	사생활 침해	101	13	6	1	2			79(79)	86.4	94.3	97.0
	재산상 손해	10							10(2)	–	100.0	20.0
	기 타	1							1(1)	–	100.0	100.0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명예훼손	2,252	841	50	52(2)	287(14)	14	2	1,006 (812)	72.4	81.7	76.9
	초상권 침해	82	32	2	3	4	1		40(33)	82.9	91.5	82.7
	음성권 침해	5	4						1(1)	100.0	100.0	100.0
	성명권 침해	23	7						16(15)	100.0	100.0	95.7
	사생활 침해	45	25	2	1	2			15(12)	90.0	94.7	86.7
	재산상 손해	26	7		1	2	5		11(11)	70.0	86.7	85.7
	기 타									–	–	–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 (884)	73.4	82.5	77.6

구분 /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명예훼손	18,793	1,111	118	112(3)	1,035 (16)	45	71	16,301 (15,387)	51.7	70.2	89.1
	초상권 침해	208	25	13	8	66	57	4	35(24)	33.9	50.0	42.2
	음성권 침해	5	2	1					2(2)	100.0	100.0	100.0
	성명권 침해	8	5	1					2(1)	100.0	100.0	87.5
	사생활 침해	14	8		2			1	3(1)	80.0	100.0	69.2
	재산상 손해	17	4			4	2		7(5)	50.0	69.2	60.0
	기 타	3	1				2			100.0	100.0	100.0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2)]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전체 487건 중 일간지 344건, 주간신문 122건, 잡지 11건 등 97.9%인 477건이 명예훼손이었으며, 초상권, 음성권 등 명예훼손 외의 인격권 침해가 10건(2.1%)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323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240건(74.3%), 초상권 침해 75건(23.2%), 기타 인격권 침해 8건(2.5%)을 차지했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은 2,121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1,959건(92.4%), 초상권 침해 129건(6.1%), 기타 인격권 침해 33건(1.5%)으로 나타났다. 지면매체보다도 방송과 인터넷매체에서의 초상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주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무제한 확산되는 등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량사건을 제외한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임. 대량사건의 매체별 처리결과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

특히 케이블 TV는 명예훼손을 제외한 초상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건이 전체의 40%(45건 중 18건)를 차지했는데, 이는 방송매체 중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중앙방송 26%, 종합편성채널 25.2% 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중 단일매체로는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감정원과의 분쟁이 다수 신청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어 뉴스1코리아 59건, 인터넷 MBN 48건, 네이버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일간지 중 동아일보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으며, 이어 한국일보 19건, 경향신문 15건, 조선일보, 국민일보 각 13건, 한겨레 12건, 중앙일보, 문화일보 각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조정성공률이 높은 반면,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정불성립결정률이 다소 높았다.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언론사 간 분쟁을 빚은 경남도민신문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으며, 이어 일간뉴스경남 11건, 경인일보 10건, 매일신문 9건, 국제신문, 현대일보 각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일간지 가운데는 한국경제 6건,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각 5건,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각 4건, 전자신문, 서울경제 각 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채널A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MBC-TV 39건, MBN 35건, KBS-1TV 32건, YTN 26건, JTBC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방송에서는 전주 MBC-TV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채널A와 MBC-TV의 조정불성립결정률은 각각 39.0%, 30.8%로 높은 반면, JTBC는 조정성공률이 62.5%(조정불성립결정률 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뉴스통신의 경우 뉴스1코리아가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합뉴스 38건, 뉴시스 36건 순이었다. 그러나 뉴스1코리아와 뉴시스의 경우 별도의 매체인 지역본부 신청건수를 더할 경우 각각 64건, 61건을 기록했다.

일간지를 제외한 주간신문, 주간지, 잡지 등 기타 지면 매체 가운데는 시사저널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요신문, 광명지역신문, 연수신문 각 4건, 법무경찰신문, 담양신문, 물향기신문, 우리군민신문, 시사IN, 주간조선 각 3건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은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컷뉴스 42건, 조선닷컴 31건, 동아닷컴 30건, 세계닷컴 29건, 인터넷 경향신문 28건, 인터넷 한국일보 27건, 쿠키뉴스 26건, 인터넷 한겨레 24건, 아시아경제닷컴 22건, 아주뉴스,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각 20건, 온라인 중앙일보 19건, 인터넷 서울신문 18건, 오마이뉴스 16건, 이데일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터넷 MBN 48건, 네이버 46건, 다음 42건, 인터넷 YTN 40건, iMBC 35건, KBS미디어 31건, 인터넷 채널A 29건, 인터넷 TV조선 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 네이트, 다음, 줌 등 포털 사건은 전체 인터넷뉴스서비스 신청건의 26.9%인 117건으로, 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15	15							10	1	3			1
	국민일보	13	13							4		6			3
	내일신문	4	4							1		2			1
	동아일보	21	20						1	7	4	1	1		8
	문화일보	11	10	1						4	6		1		
	서울신문	9	8	1						4	3	1			1
	세계일보	7	7							5					2
	조선일보	13	12	1						3	1	2			7
	중앙일보	11	11									5	2		4
	한겨레	12	11	1						5	1	3		1	2
	한국일보	19	19							12	1	4			2
	한성일보	1	1												1
	소계	136	131	4					1	55	17	27	4	1	32
지역 일간지	NEWS충남일보	2	2												2
	경기도민일보	3	3									3			
	경기신문	3	3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일간지	경남도민신문	20	20									19			1
	경남도민일보	2	2												2
	경남매일	5	5							5					
	경남신문	4	4							2		2			
	경남연합일보	3	3							3					
	경남일보	2	2							1					1
	경북일보	3	3							2					1
	경안일보	2	2												2
	경인일보	10	10							7		2			1
	국제신문	8	8							1					7
	기호일보	5	5							3					2
	남도일보	1	1							1					
	대구광역일보	2	2												2
	대구신문	1	1												1
	동양일보	4	4							3					1
	매일신문	9	9							3		3			3
	무등일보	3	3							1		2			
	부산일보	2	2							2					
	새만금일보	1	1							1					
	새전북신문	1	1												1
	세종매일	4	4							4					
	수도권일보	3	3							2		1			
	수원일보	1	1									1			
	시민일보	2	2									2			
	신아일보	1	1							1					
	아시아일보	1	1												1
	아시아투데이	1	1												1
	영남일보	3	2				1			1				1	1
	인천일보	2	2							1					1
	일간뉴스경남	11	11							4		7			
	일일전북신문	2	2									2			
	전남매일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일간지	전라일보	3	3							1					2
	전민일보	1	1							1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연합신문	2	2												2
	전북일보	2	2									1			1
	전북중앙신문	3	3							1					2
	제민일보	2	2							2					
	중도일보	4	4							4					
	중부매일	1	1							1					
	중부일보	4	4							1		2			1
	충남일보	1	1												1
	충북일보	3	3							1					2
	충청매일	7	7							4		3			
	충청신문	3	3							3					
	충청투데이	4	4							2					2
	한라일보	2	2												2
	현대일보	8	8							3		3			2
	호남매일	3	3							2					1
	소계	182	181				1			78		53		1	50
경제지	건설경제	1	1							1					
	매일경제	4	1					2	1				3		1
	머니투데이	5	5							2					3
	서울경제	3	3							1		1			1
	아시아경제	5	5							2					3
	파이낸셜뉴스	1	1												1
	한국경제	6	6							4		2			
	헤럴드경제	4	4							2					2
	소계	29	26					2	1	12		3	3		11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1	1							1					
	소계	1	1							1					
특수 일간지	전자신문	3	2					1		2					1
	환경일보	2	2							2					
	소계	5	4					1		4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무료 일간지	데일리 노컷뉴스	1	1												1
	소계	1	1												1
중앙 방송	EBS-TV	7	5	2						2		2			3
	KBS-1TV	32	28	4						10	2	6			14
	KBS-2TV	7	5	1	1					5					2
	MBC-TV	39	27	10			1	1		8	7	12	1		11
	SBS-TV	15	9	5	1					4	3	5			3
	소계	100	74	22	2		1	1		29	12	25	1		33
지방 방송	MBC경남(진주, 창원)	2	2											2	
	광주KBS-1TV	3	3							3					
	대구KBS-1TV	3	2	1						2					1
	대구MBC-TV	1	1												1
	대전KBS-1TV	2		2						2					
	부산KBS-1TV	4	3	1						1					3
	여수MBC-TV	1	1												1
	원주MBC-TV	2		2						2					
	전주MBC-TV	10	9	1						2	1	1	2		4
	제주KBS-1TV	1	1									1			
	진주KBS-1TV	2	2									2			
	창원KBS-1TV	1	1												1
지방 방송	춘천KBS-1TV	2	2									2			
	충주MBC-TV	2	2												2
	포항MBC-TV	2	2							2					
	소계	38	31	7						14	1	6	2	2	13
지역 민방	G1 강원민방-TV	2	2									2			
	KBC-TV	1	1												1
	KNN	2	2												2
	OBS경인TV	6	4	2						1		1			4
	TBC-TV	1	1									1			
	소계	12	10	2						1		4			7
케이블 TV	CBS-TV	6	6							3		3			
	CJ헬로비전 호남방송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케이블 TV	SBS CNBC-TV	1	1												1
	TVN	1		1								1			
	Y-STAR	1		1								1			
	YTN	26	16	10						6		8	4		8
	연합뉴스TV(뉴스Y)	7	3	3	1						1		2		4
	홈앤쇼핑	1		1											1
	환경TV	1		1									1		
	소계	45	27	17	1					9	1	13	7		15
라디오	CBS-R	3	3							3					
	SBS-R	1	1												1
	TBS-R	2	2												2
	MBC경남 라디오	2	2												2
	전남CBS-R	1	1							1					
	소계	9	9							4					5
종합 편성 채널	JTBC	24	19	5						15	2	2	2		3
	MBN	35	21	14						6	2	9	5		13
	TV조선	19	14	5						4	4	2	1	1	7
	채널A	41	35	3				3		9	11	16			5
	소계	119	89	27				3		34	19	29	8	1	28
뉴스 통신	KNS뉴스통신 경남서부	2	2							2					
	NSP통신	3	3							1	2				
	국제뉴스	5	5								2				3
뉴스 통신	뉴스1코리아	59	44	14			1			18	3	9	13		16
	뉴스1코리아 울산	1	1												1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1	1							1					
	뉴스1코리아 전북	2	2							1					1
	뉴스1코리아 광주전남	1	1							1					
	뉴시스	36	27	8			1			9	1	8	5	2	11
	뉴시스 경기남부	1	1							1					
	뉴시스 울산	2	2												2
	뉴시스 인천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뉴스 통신	뉴시스 전북	3	3							2					1
	뉴시스 강원	2	2									2			
	뉴시스 대구경북	11	10	1						6		2			3
	뉴시스 부산	4	4							4					
	아시아뉴스통신	8	7	1						1		3			4
	아시아뉴스통신(경남)	1	1												1
	연합뉴스	38	36	1			1			10		4	4	2	18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3	3								3				
	소계	185	157	25			3			57	11	28	22	4	63
시사 주간 신문	민주신문	2	2							2					
	법무경찰신문	3	3									3			
	시사주간 (sisa weekly)	2	2												2
	월요신문	2	2												2
	일요신문	4	4							4					
	주간한국	2	2								1				1
	소계	15	15							6	1	3			5
지역 주간 신문	e-진안	1	1							1					
	광명지역신문	4	4							1		3			
	군산시민신문	2	2												2
	김포신문	2	2							2					
	나주투데이	1	1							1					
	뉴스제주	2	2												2
	담양신문	3	3									3			
	동두천신문	1	1												1
	물향기신문	3	3							1					2
	반월신문	1	1									1			
	빛가람타임스	2	2												2
	서대문신문	2	2												2
	세종포스트	2	2								2				
	순창신문	2	2							1					1
	순천광장신문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주간 신문	시사인천	1	1									1			
	안산시민신문	1	1									1			
	연수신문	4	4									4			
	열린순창	1	1								1				
	예산신문	1	1							1					
	예향진도신문	2	2							1					1
	우리군민신문	3	3							1					2
	인터넷순창신문	2	2							1					1
	주간 당진시대	1	1							1					
	주간기장신문	2	2							2					
	주간전북오늘	2	2									2			
	주간함양	2	2									2			
	충청리뷰	2	2									2			
	태안미래신문	1	1							1					
	하동저널	2	2							1					1
	합천신문	2	2									2			
	화성신문	2	2							2					
	소계	60	60							18	3	22			17
특수 주간 신문	fn아이포커스	1	1												1
	검경타임즈	1	1							1					
	그린경제신문	2	2												2
	기독교신문	2	2							2					
	기자협회보	1	1							1					
	더스쿠프	1	1												1
	덴탈포커스	2	2												2
	마케팅뉴스	2	2								2				
	미디어오늘	1	1							1					
	방송대신문	1	1							1					
	불교신문	2	2							2					
	아유경제	2	2									2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의협신문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 주간 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	1	1								1				
	전기신문	2	2							2					
	치의신보	1	1							1					
	통일신문	1	1							1					
	한국성결신문	2	2												2
	소계	28	28							15	3	2			8
시사 주간지	뉴스메이커	2	2							2					
	머니위크	1	1												1
	시사IN	3	3							2	1				
	시사저널	6	6							4					2
	이코노믹리뷰	1	1												1
	주간조선	3	3							1	2				
	한겨레21	1	1							1					
	한경비지니스	2	2												2
	소계	19	19							10	3				6
잡지	넥스트이코노미	2	2								2				
	신동아	2	2												2
	아이러브PC방	1	1												1
	월간조선	1	1							1					
	종교와진리	2	2							2					
	퍼블릭 아트	2	2												2
	환경미디어	1	1							1					
	소계	11	11							4	2				5
인터넷 신문	(주)수도권 의양신문	1	1												1
	(주)티비리포트	1	1								1				
	CBC뉴스	2	2							2					
	CBSi	3	3									3			
	CNBNEWS	2	2							1					1
	CNEWS	1	1							1					
	DK뉴스	2	2								2				
	dstv(한국교회공보)	1	1												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EBN	1	1												1
	e그린경제	4	4							2					2
	e뉴스wave	1	1							1					
	e뉴조(뉴스앤조이)	7	7							3		2			2
	e머니위크	2	2												2
	e머니투데이	93	92	1						9	43	3	2	28	8
	e상조뉴스	3	3							3					
	e중앙뉴스	6	6								2				4
	IPF국제방송	1	1												1
	i태안미래	1	1							1					
	KDA뉴스	1	1									1			
	kidok.com	4	4							2		2			
	kjtimes.com	2	2												2
	KNS뉴스통신(경남)	2	2							2					
	Loves Beauty (러브즈 뷰티)	1	1												1
	M이코노미 NEWS	3	3												3
	MBS 미니방송	2	2							2					
	MK뉴스	7	7							2					5
	MK패션	1	1												1
	NK조선	2	2							2					
	PBS 평택방송	1	1							1					
	The PR	1	1												1
	TV리포트	2	2												2
	TYN	2	2							2					
	UGN 경북뉴스	2	2									2			
	거제시민뉴스	2	2												2
	거제인터넷신문	2	2												2
	거제타임즈	5	5							3					2
	건치	3	3								3				
	검경뉴스	1	1							1					
	경기경제신문	2	2							2					
	경남인뉴스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경인데일리	2	2							2					
	경인저널	2	2							2					
	경인투데이뉴스	1	1							1					
	경제투데이	8	8							6					2
	교회와신앙	2	2							2					
	구리남양주넷	3	3							2				1	
	국제저널	1	1												1
	국제타임스	1	1												1
	국토매일	1	1							1					
	그린포스트코리아	1	1												1
	기독교뉴스	2	2							2					
	기독교시민연대뉴스	1	1											1	
	기독교포털뉴스	6	6							2					4
	기독인뉴스	2	2							2					
	남도인터넷방송	1	1												1
	남도타임즈	3	3							1		2			
	노컷뉴스	42	36	5			1			17	5	7	1	1	11
	뉴데일리	7	7							6					1
	뉴데일리경제	4	4							3					1
	뉴스365	1	1							1					
	뉴스TR	6		6							3				3
	뉴스미션 (News Mission)	5	5							5					
	뉴스쉐어	2	2												2
	뉴스앤거제	2	2							2					
	뉴스앤넷	2	2							2					
	뉴스엔	2	1	1								1			1
	뉴스웨이	2	2												2
	뉴스웨이호남본부	1	1							1					
	뉴스천지	8	8							2			1		5
	뉴스충청인	2	2							2					
	뉴스클릭	2	2												2
	뉴스타파	4	4							2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뉴스토마토	6	6									1			5
	뉴스투데이한국	7	7							3		4			
	뉴스파고	1	1												1
	뉴스파워	3	3												3
	뉴스플러스	1	1							1					
	뉴스핌	3	2	1									1		2
	뉴스한국닷컴	2	2								2				
	뉴시스(경남)	2	2							2					
	뉴시스헬스	2	2							2					
	뉴포커스	6	6							4					2
	당당뉴스	4	4							2					2
	대전시티저널	2	2												2
	대전인터넷신문	2	2												2
	대한뉴스투데이	4	4							1					3
	더벨	4	4												4
	데일리게임	2	2												2
	데일리 그리드	1	1												1
	데일리 덴탈	1	1							1					
	데일리 서울파이낸스	1	1												1
	데일리 시사닷컴	2	2							2					
	데일리안	6	3	3									3		3
	데일리 엔케이	1	1							1					
	데일리 중앙	1	1												1
	데일리 카	1				1									1
	데일리 코스메틱 뉴스	2				2				2					
	데일리 팜	3	3							2					1
	데일리 한국	2	2												2
	동아닷컴	30	30							10	5	7	2		6
	디스패치뉴스	1		1											1
	디지털 함께걸음	1	1												1
	라포르시안	1	1												1
	레디앙	3	3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로이슈	1	1												1
	마니아리포트	2	2							2					
	마이데일리	2		2							1	1			
	매경닷컴	7	7							2	1	2	1		1
	매일마케팅신문	2	2							2					
	매일일보 인터넷	4	4												4
	메디컬투데이	5	5												5
	모닝뉴스	2	2							2					
	몬스터짐	2	1			1				2					
	미디어스	6	6							2					4
	미디어펜	3	3							2					1
	민중의소리	6	2	4								3	1		2
	부패방지뉴스	2	2								2				
	불만닷컴	2	2												2
	뷰스앤뉴스	2	2												2
	뷰티한국	1	1												1
	브레이크뉴스	6	6									2			4
	블루투데이	1	1												1
	서울교육방송	2	2								2				
	성남일보	1	1							1					
	세계닷컴	29	28				1			6	2	2	1		18
	세이프코리아뉴스	2						2		2					
	세이프투데이	3	3									1			2
	세종nTV	1						1							1
	세종방송	2	2												2
	세종인터넷신문	2	2												2
	소비자가만드는신문	1	1												1
	스타뉴스	2		2							1	1			
	스타엔	1	1								1				
	스타투데이	2	2											2	
	스포츠서울닷컴	5	5							1					4
	시사1	2	2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시사IN LIVE (시사인 라이브)	3	3							2	1				
	시사브리핑	1	1												1
	시사제주	2	2												2
	시사코리아닷컴	2	2												2
	시사포커스신문	1	1												1
	시이오랩	2	2												2
	시포커스	2	2												2
	아시아경제닷컴	22	19	3						6	2		5		9
	아시아투데이닷컴	4	4							1					3
	아시아헤럴드	2	2												2
	아유경제(AU경제)	4	4							2		2			
	아주뉴스 (인터넷아주경제)	20	18	2						3			2	2	13
	아침신문	1	1												1
	양주 동두천닷컴	1	1												1
	업코리아	4	4												4
	에너지경제	2	2												2
	에브리뉴스	2	2												2
	에이블뉴스	2	1	1											2
	엑스포츠뉴스	2	2										1		1
	엔디엔뉴스	1	1												1
	엔와이엔뉴스 (NYN NEWS)	1	1								1				
	여성종합뉴스	4	4									2			2
	여수인터넷뉴스	1	1												1
	연예스포츠방송	1	1									1			
	오가닉라이프신문	1	1												1
	오늘뉴스(전북)	2	2												2
	오마이뉴스	16	12	4						8		2	3	1	2
	오에스이엔(OSEN)	2	2												2
	온나라타임즈	1	1												1
	온라인 중앙일보	19	18	1						1	1	4	1		1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올인코리아	2	2												2
	와이비씨연합방송	2	2												2
	우리성남	1	1												1
	울산조은뉴스	4	4									4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	1							1					
	위키트리(wikitree)	6	5			1				3					3
	유니온프레스업뉴스	1	1												1
	유앤앤(UNN)	1	1												1
	의약뉴스	1	1												1
	이뉴스투데이	1	1												1
	이데일리(인터넷)	14	14							2	2	2			8
	이버즈	1	1							1					
	이코노믹포스트	2	2												2
	이타임즈	1	1												1
	이투데이	3	3											2	1
	이티뉴스	1	1												1
	인터넷 CJ헬로비전 호남방송	1	1												1
	인터넷 The Korea Times	1		1											1
	인터넷 강남신문	2	2								2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	2												2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3	3									3			
	인터넷 경기매일	3	3							1					2
	인터넷 경기신문	6	6							3					3
	인터넷 경기일보	2	2												2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0	20									19			1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4	4												4
	인터넷 경남매일	5	5							5					
	인터넷 경남신문	6	6							2		2			2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3	3							3					
	인터넷 경남일보	2	2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2	2												2
	인터넷 경상일보	2	2							2					
	인터넷 경안일보	3	3							1					2
	인터넷 경양일보	1	1												1
	인터넷 경인일보	10	10							7		2			1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3	3							3					
	인터넷 경제풍월	2	2												2
	인터넷 경향신문	28	28							13	2	6			7
	인터넷 광남일보	1	1												1
	인터넷 광명일보	1	1												1
	인터넷 광주타임즈	3	3												3
	인터넷 교육과 보육신문	1	1							1					
	인터넷 국민일보	7	7							2				2	3
	인터넷 국방일보	1	1							1					
	인터넷 기독교신문	2	2							2					
	인터넷 기독교연합신문	2	2							2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2	2							2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3	3							2					1
	인터넷 기독일보	5	5								2				3
	인터넷 기자협회보	1	1							1					
	인터넷 기장신문	5	5							5					
	인터넷 나주투데이	1	1							1					
	인터넷 남도일보	1	1							1					
	인터넷 내외신문	2	2							2					
	인터넷 넥스트이코노미	2	2								2				
	인터넷 뉴스메이커	2	2							2					
	인터넷 대구신문	1	1												1
	인터넷 대구일보	4	3	1						1					3
	인터넷 대전일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대전투데이	2	2												2
	인터넷 대한뉴스	2	2							1		1			
	인터넷 대한투데이	2	2												2
	인터넷 더스쿠프	1	1												1
	인터넷 더코리아포스트	1						1							1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2	2							1			1		
	인터넷 매일신문	8	8							2		3			3
	인터넷 무등일보	3	3							1		2			
	인터넷 물향기신문	3	3							1					2
	인터넷 반월신문	1	1									1			
	인터넷 법률신문 (THE LAWTIMES)	2	2								1		1		
	인터넷 법무경찰신문	3	3									3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1	1							1					
	인터넷 베이비뉴스	4	4												4
	인터넷 병원신문	2	2												2
	인터넷 불교신문	2	2							2					
	인터넷 빛가람타임스	2	2												2
	인터넷 서대문신문	2	2												2
	인터넷 서울경제	9	9								1	2	2	2	2
	인터넷 서울신문	18	17	1						5	2	3	1	2	5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3	3												3
	인터넷 세종매일	4	4							4					
	인터넷 세종포스트	2	2								2				
	인터넷 수도권일보	4	4							2					2
	인터넷 수원일보	2	2									2			
	인터넷 스페셜경제	3	3												3
	인터넷 스포츠조선	5	3	2							1	1			3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1	1										1		
	인터넷 스포츠한국	4	4									2	1		1
	인터넷 시대일보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시민의소리	4	4									4			
	인터넷 시민일보	2	2									2			
	인터넷 시사i신문 연수신문	4	4									4			
	인터넷 시사인천	3	2	1						1		1	1		
	인터넷 시사저널	8	8							3					5
	인터넷 시사주간 (sisa weekly)	2	2												2
	인터넷 신동아	3	3												3
	인터넷 신아일보	2	2							1					1
	인터넷 아시아일보	1	1												1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2					2				2				
	인터넷 아이러브PC방	2	2							1					1
	인터넷 안산시민신문	1	1									1			
	인터넷 엠티엔(MTN)	1					1			1					
	인터넷 여성신문	1	1										1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2	2							1					1
	인터넷 울산신문	1	1												1
	인터넷 위클리오늘	4	4												4
	인터넷 의정부신문	4	4												4
	인터넷 이지경제	1	1								1				
	인터넷 일간경기	2	2												2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1	11							4		7			
	인터넷 일간스포츠	7	6			1				3					4
	인터넷 일간투데이	6	6							3	3				
	인터넷 일요서울	1	1												1
	인터넷 일요시사	4	4							1					3
	인터넷 일요신문	12	12							5			1	2	4
	인터넷 전국매일	3	3												3
	인터넷 전남매일	1	1							1					
	인터넷 전남일보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주간 당진시대	1	1							1					
	인터넷 주간한국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7	7							4					3
	인터넷 중부신문	1	1												1
	인터넷 청년의사	1	1												1
	인터넷 충남일보	3	3												3
	인터넷 충북일보	3	3							1					2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2	2												2
	인터넷 충청신문	4	3					1		3					1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3	3							2					1
	인터넷 탄천뉴스	1	1												1
	인터넷 통일신문	1	1							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	7										1		6
	인터넷 한겨레	24	23	1						7	1	7		1	8
	인터넷 한겨레21	1	1							1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2	2												2
	인터넷 한국국정일보	2	2								1		1		
	인터넷 한국기독공보	2	2							2					
	인터넷 한국농어민신문	1	1												1
	인터넷 한국일보	27	27							13	1	6	1		6
	인터넷 한성일보	1	1												1
	인터넷 합천신문	2	2									2			
	인터넷 현대일보	8	8							3		3			2
	인터넷 호남매일	4	4							2					2
	인터넷 화성신문	2	2							2					
	인터넷 경도신문	2	2							1					1
	인터넷 경북일보	3	3							2					1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1	1							1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4	4							1		3			
	인터넷 국제신문	11	10	1						2					9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기호일보	7	7							4					3
	인터넷 김포신문	4	4							4					
	인터넷 내일신문	4	4							1	1		1		1
	인터넷 농민신문	1	1												1
	인터넷 뉴스신문고	4	4								2				2
	인터넷 뉴스포토로 (아이스포츠코리아)	1		1											1
	인터넷 덴탈포커스	2	2												2
	인터넷 동양일보	2	2							1					1
	인터넷 메트로	9	7	1			1			3					6
	인터넷 문화일보	12	12							3	5				4
	인터넷 미디어오늘	11	10			1				5	4				2
	인터넷 민주신문	3	3							2					1
	인터넷 부산일보	7	7							5					2
	인터넷 약사공론	3	3												3
	인터넷 영남일보	4	4							1					3
	인터넷 울산매일	1	1												1
	인터넷 월요신문	4	4												4
	인터넷 의협신문	2	2							2					
	인터넷 인천일보	6	5	1						2			1		3
	인터넷 일일전북신문	2	2									2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1	1												1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1	1							1					
	인터넷 제민일보	2	2							2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2	2							2					
	인터넷 제주매일	2	2							2					
	인터넷 주간조선	3	3							1	2				
	인터넷 중부매일	2	2							1					1
	인터넷 중부일보	3	3							1		2			
	인터넷 창원일보	2	2							2					
	인터넷 충청매일	6	6							4		2			
	인터넷 충청일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충청투데이	3	3							3					
	인터넷 통영방송	2	2									2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1	1							1					
	인터넷 한라일보	1	1												1
	인터넷 헤럴드경제	11	11							5		2	1		3
	인터넷 호남신문	1	1												1
	인터넷 환경일보	2	2							1					1
	인터뷰365	4	4												4
	日刊NTN	2	2												2
	일간시사뉴스투데이	1							1	1					
	장성뉴스	1	1												1
	장애인의 주홍글씨	1	1												1
	전자신문 인터넷	8	7					1		4	1				3
	제이누리	2	2												2
	제주의소리	2	2								2				
	제주투데이	2	2												2
	조선닷컴	31	30	1						13	2		1	2	13
	조선비즈닷컴	4	3			1				2					2
	조세일보	3	3								2				1
	주택뉴스	2	2								2				
	지디넷코리아	1	1												1
	초이스경제	1	1												1
	충북인뉴스	2	2									2			
	충청TV	2	2												2
	컨슈머타임스	1	1												1
	코나스(Konas)	1	1												1
	쿠키뉴스	26	26							6	1	6	1		12
	큐프레스	2	2							2					
	타임뉴스	4	4							2					2
	텐아시아	3	2	1								1			2
	통영뉴스	2	2									2			
	통합뉴스	1	1							1					

매체유형	매체명	청구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음성권침해	성명권침해	사생활침해	재산상손해	기타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투데이성남	1	1												1
	투데이신문	2	2												2
	투데이코리아	3	3												3
	특급뉴스	2	2												2
	티브이데일리	7	5	2								2			5
	파인뉴스	3	3											3	
	팩트TV	2	2												2
	프라임경제	2	2												2
	프런티어타임스	1	1												1
	프레스바이플	8	8							5	3				
	프레시안	6	6							2					4
	프리미엄조선	4	4												4
	한경닷컴	8	8							4	1	2			1
	한국기독일보	2	2												2
	한국기자연대	1	1									1			
	한국인권	3	3							3					
	한국인뉴스	2	2												2
	헤드라인제주	2	2												2
	헬스조선	1	1												1
	헬스코리아뉴스	2	2							2					
	화순투데이	5	5							1		4			
	인터넷 한국성결신문	2	2												2
	소계	1,501	1,428	52		8	6	6	1	467	137	189	43	52	613
인터넷뉴스서비스	CBSi	3	3												3
	EBS뉴스	4	3	1						1		2			1
	iKNN	4	4							4					
	iMBC	35	24	9			1	1		7	5	11	1	2	9
	KBS 미디어	31	25	4	1		1			6	4	11		2	8
	SBSi	1	1							1					
	SBS 콘텐츠허브	17	15	1			1			4	3	5			5
	VOA Korea 미국의소리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뉴스 서비스	wow한국경제TV	3	3										1	2	
	네이버	46	46							6		2			38
	네이트	23	23												23
	다음	42	42							4					38
	인터넷 OBS경인TV	8	6	2						1		3			4
	인터넷 SBS CNBC	4	4							2			1		1
	인터넷 TBS	5	5							1	2	2			
	인터넷 TV조선	28	23	5						4	1	11	1	5	6
	인터넷 Y-STAR	2		2								2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뉴스Y)	13	11	1	1					3	1				9
	인터넷 울산MBC-TV	1	1												1
	인터넷 채널A	29	23	3				3		4	8	13			4
	인터넷 평화방송	1	1							1					
	인터넷JTBC	25	20	5						14	2	2	1		6
	인터넷 MBN	48	35	13						15	2	11	5	2	13
	인터넷 YTN	40	34	6						10	9	10	2	2	7
	인터넷 울산방송	1	1												1
	조인스 닷컴	2	2												2
	줌	6	6												6
	크리스천 노컷뉴스	12	12									6			6
	소계	435	374	52	2		3	4		88	37	91	12	15	192
계		2,931	2,676	208	5	8	14	17	3	906	247	495	102	76	1,105

11. 중재부별 처리결과

서울 및 지역 중재부 신청효율 모두 2013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서울 중재부는 2013년 81.0%였던 신청효율이 2014년 90.0%를 기록했으며, 지역 중재부는 67.9%에서 70.0%로 상승, 전체 신청효율도 2013년 77.6%에서 2014년에는 88.7%로 10%P이상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서울 제7중재부의 신청효율이 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제1중재부 97.3%, 서울제 6중재부 95.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재부에서는 대전 중재부가 83.3%로 가장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으며, 대구 중재부 82.1%, 충북 중재부 81.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재부의 신청효율이 90.0%를 기록한 것은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이 보도 또는 기사삭제 혹은 수정 등으로 일괄 타결되면서 피해구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정성공률은 서울 중재부의 경우 2013년도에 이어 서울 제1중재부가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제7중재부 71.7%, 서울 제4중재부 69.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재부에서는 대구 중재부가 100.0%를 기록했으며, 이어 부산 중재부 93.1%, 제주 중재부 92.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재부의 경우 지역 중재부에 비해 취하되는 사건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구원파 대량사건이 일괄 타결되면서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255건 중 96.9%인 247건이 서울 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건수는 8건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서울 중재부의 경우 2013년 10.4%에서 2014년에는 5.2%로 대폭 줄어든 반면, 지역 중재부의 경우 2103년도의 17.1% 보다는 낮은 14.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서울 중재부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2-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2	서울1	253	64	4		78(8)	7	5	95(84)	46.6	58.1	66.4
	서울2	223	71	6	4	37	9		96(66)	65.3	78.9	66.8
	서울3	314	114	6	1	25	3		165(144)	82.2	87.7	84.9
	서울4	285	76	6	3	24		1	175(141)	75.2	86.5	78.5
	서울5	246	73	18	24	49	4	1	77(72)	55.5	73.2	67.6
	서울6	238	86	8	4	45	1		94(79)	65.7	76.7	73.0
	서울7	224	65	1	13	36(2)	12	4	93(81)	57.4	75.7	71.6
	서울8	49	8	5	2	7	3		24(23)	59.1	74.1	78.3
	소 계	1,832	557	54	51	301(10)	39	11	819(690)	63.4	76.7	73.6
	부산	50	17	2		7	4		20(11)	73.1	80.0	65.2
	대구	29	15			6			8(4)	71.4	76.9	65.5
	광주	92	49	8	4	7			24(16)	83.8	90.0	79.3
	대전	53	24		10	6			13(13)	60.0	85.0	69.8
	경기	119	43	3		43			30(22)	51.7	60.2	57.1
	강원	11	9			2				81.8	81.8	81.8
	충북	55	23			16			16(9)	59.0	60.0	58.2
	전북	47	18	9		13	1		6(1)	67.5	68.3	60.9
	경남	80	27		1	20			32(17)	56.3	66.7	55.0
	제주	33	23			6			4(4)	79.3	79.3	81.8
	소 계	569	248	22	15	126	5		153(97)	65.7	72.6	65.1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서울1	186	108		4		1		73(58)	96.4	100.0	89.7
	서울2	158	69		2	25			62(44)	71.9	81.1	71.5
	서울3	228	72	5	10	16(1)	3		122(108)	74.8	88.4	82.7
	서울4	272	92	8	7	4		1	160(142)	90.1	98.0	89.3
	서울5	188	48	6	13(1)	22(9)	2	1	96(79)	60.7	81.5	77.3
	서울6	286	146	6	3	4	8		119(112)	95.6	97.6	95.0
	서울7	16	7						9(4)	100.0	100.0	68.8
	서울8	472	132	11	8	117(4)	5		199(173)	53.4	61.8	68.5
	소 계	1,806	674	36	47(1)	188(14)	19	2	840(720)	75.1	84.5	81.0

구분 /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3	부산	69	29	2		6			32(14)	83.8	89.1	65.2
	대구	48	12		1	10			25(13)	52.2	72.2	52.1
	광주	78	29	4	1	10			34(29)	75.0	84.8	79.5
	대전	75	44			2	1		28(9)	95.7	96.2	71.6
	경기	195	78	6	7	49			55(51)	60.0	68.2	69.2
	강원	20	9			4			7(6)	69.2	75.0	75.0
	충북	37	19	4		4			10(4)	85.2	86.7	73.0
	전북	39	9	2	1(1)	7			20(9)	57.9	76.7	53.8
	경남	63	13			13			37(29)	50.0	55.2	66.7
	제주	3				2			1	0.0	0.0	0.0
	소 계	627	242	18	10(1)	107	1		249(164)	69.0	77.2	67.9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3.4	82.5	77.6
2014	서울1	2,014	73	19		6	21	2	1,893 (1,846)	93.9	98.1	97.3
	서울2	251	77	18	13	33(1)	3	1	106(80)	67.4	82.4	71.3
	서울3	354	109	21	16	74			134(102)	59.1	72.1	65.5
	서울4	396	132	18	54	12		29	151(137)	69.4	95.0	78.2
	서울5	2,201	145	18	20	453(7)	19	34	1,512 (1,492)	25.6	51.3	77.4
	서울6	2,586	76	3	4	50	1	1	2,451 (2,381)	59.4	78.4	95.2
	서울7	7,243	64	7	1	27	1		7,143 (7,061)	71.7	86.1	98.5
	서울8	2,705	102	21	14(3)	267(8)	55	3	2,243 (1,807)	30.4	48.2	73.3
	소 계	17,750	778	125	122(3)	922(16)	100	70	15,633 (14,906)	46.4	68.0	90.0
	부산	138	54			4			80(51)	93.1	96.6	76.1
	대구	113	32			11		1	69(60)	74.4	81.4	82.1
	광주	83	29			23		3	28(14)	55.8	61.0	53.8
	대전	96	46	4					46(30)	100.0	100.0	83.3
	경기	548	118			55	2		373(270)	68.2	75.1	71.1
	강원	16	4			4			8(8)	50.0	60.0	75.0
	충북	71	22			9			40(36)	71.0	72.7	81.7
	전북	53	15	2		8	4		24(12)	68.0	79.5	59.2
	경남	150	48			68		2	32(21)	41.4	47.3	46.6
	제주	30	10	2		1			17(12)	92.3	95.7	80.0
	소 계	1,298	378	8		183	6	6	717(514)	67.8	75.9	70.0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 3 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2014년 손해배상청구건수는 모두 5,725건으로, 전체 조정청구건수 대비 30.1%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33.1%, 2013년 32.2%에 비해 약간 감소한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성립이 6.9%, 직권조정결정이 1.7%, 조정불성립결정이 7.2%, 취하가 82.3% 등으로 나타났다. 취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4,670건 중 4,389건이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하된 사건 중 4,126건은 정정 또는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져 2014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청효율은 85.5%로 높게 나타났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는 1,055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에서 290건(27.5%)은 조정성립, 91건(8.6%)은 직권조정결정, 240건(22.7%)은 조정불성립결정, 320건(30.3%)은 취하되었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전체 조정 청구건수	손해배상청구건수
2012	2,401	794 (33.1)
2013	2,433	784 (32.2)
2014	19,048	5,725 (30.1)

* ( ) 안의 숫자는 %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794 (100)	240 (30.2)	27 (3.4)	28 (3.5)	153 [2] (19.3)	16 (2.0)	3 (0.4)	327 [274] (41.2)	59.6	72.4	70.1
2013	784 (100)	258 (32.9)	17 (2.2)	15 (1.9)	121 [6] (15.4)	6 (0.8)		367 [300] (46.8)	66.9	78.4	74.7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 [1] (0.9)	414 [7] (7.2)	80 (1.4)	36 (0.6)	4,709 [4,350] (82.3)	48.6	69.1	85.5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4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약 3,67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상담 단계에서 조정제도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95만원으로 중앙액, 평균액 모두 2013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으로 조정된 구원파 신도들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건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2년 이후 손해배상청구사건 전담중재부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하였다. 전담중재부는 그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사실확인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단위 : 원)

구 분 / 연 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2	10,000	3,418,600,000	74,250,871	30,000,000
2013	100,000	5,815,000,000	60,756,386	20,000,000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단위 : 원)

구 분 / 연 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2	300,000	10,000,000	1,895,000	1,500,000
2013	100,000	20,000,000	2,532,000	1,750,000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표 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단위 : 원)

구분 / 연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합 계
2012	9 (16.7)	17 (31.5)	25 (46.3)	1 (1.9)	2 (3.6)	54 (100.0)
2013	13 (14.9)	27 (31.0)	35 (40.2)	7 (8.1)	5 (5.8)	87 (100.0)
2014	43 (38.4)	32 (28.6)	27 (24.1)	8 (7.1)	2 (1.8)	112 (100.0)

■ 손해배상사례 1 [초상권 침해]

A언론사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전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ㄱ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 B언론사는 이 사진을 전재하였고 C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비슷한 사진을 촬영하여 각각 1면에 보도했다. 이에 ㄱ씨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A언론사는 250만원, B언론사는 200만원 지급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이 성립하였다. C언론사는 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손해배상사례 2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A언론사는 가족 간의 갈등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ㄱ씨가 20년간 외도를 해 왔다는 ㄱ씨 배우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가정 내 관찰카메라와 부부상담 내용 등을 촬영하여 보도했다. 이에 ㄱ씨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A언론사가 ㄱ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점과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한 점이 인정되어 A언론사는 사과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ㄱ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3,000만원, 최저 10만원, 평균 약 231만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900만원, 최저 5만원, 평균 약 141만원, 음성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4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225만원이었다. 또한 성명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40만원, 평균 130만원, 사생활침해는 최고 400만원, 최저 300만원, 평균 350만원이었다. 사생활 침해의 평균 조정액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성권 침해가 초상권 침해나 성명권 침해보다 평균액과 중앙액이 높게 나타난 것이 다소 특이한 점이다.

[표 3-6] 2014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4. 1. 1. ~ 2014. 12. 31. 단위 : 원)

조정액 / 침해유형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55	100,000	30,000,000	2,311,0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48	50,000	9,000,000	1,419,000	700,000	700,000
음성권 침해	3	500,000	4,000,000	2,250,000	2,250,000	-
성명권 침해	3	400,000	3,000,000	1,300,000	500,000	-
사생활 침해	2	3,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
기타	1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95.9%인 5,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203건(3.5%), 사생활 침해 12건(0.2%), 성명권 침해 7건, 재산상 손해 6건, 음성권 침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취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4,670건이 모두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정신청후 또는 심리를 통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 게재 혹은 기사삭제나 기사수정이 이뤄지면 즉시 취하했기 때문이다.

한편 초상권 침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신청인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언론사는 이를 수용하려는 의사가 거의 없어, 당사자간 입장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7] 2014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구 분 /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5,491 (100)	353 (6.4)	70 (1.3)	346 (6.3)	22 (0.4)	32 (0.6)	4,668 (85.0)
초상권 침해	203 (100)	24 (11.8)	20 (9.9)	66 (32.5)	57 (28.1)	4 (2.0)	32 (15.8)
음성권 침해	5 (100)	2 (40.0)	1 (20.0)				2 (40.0)
성명권 침해	7 (100)	4 (57.1)	1 (14.3)				2 (28.6)
사생활 침해	12 (100)	8 (66.7)	1 (8.3)				3 (25.0)
재산상 손해	6 (100)	1 (16.7)		2 (33.3)	1 (16.7)		2 (33.3)
기타	1 (100)	1 (100)					
계	5,725 (100)	393 (6.9)	93 (1.6)	414 (7.2)	80 (1.4)	36 (0.6)	4,709 (82.3)

* (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이 신청한 건은 3,067건, 단체가 신청한 건은 2,658건으로 개인 신청이 다소 많았다. 개인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병언 회장의 전 부인 및 구원파 신도 개인들이 신청한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단체의 경우 역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청한 건이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일반단체가 신청한 건이 86건, 기업체 67건, 공공단체 39건, 언론사 25건, 교육기관 14건, 지자체 12건, 국가기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언론사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한 사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언론사 간 분쟁이 다수의 조정신청으로 이어진데다, 양 언론사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3-8] 2014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구 분 / 신청인 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3,067 (100)	226 (7.4)	55 (1.8)	233 (7.6)	76 (2.5)	22 (0.7)	2,455 (80.0)
국가기관	11 (100)	2 (18.2)	2 (18.2)	6 (54.5)			1 (9.1)
지자체	12 (100)	6 (50.0)		3 (25.0)			3 (25.0)
공공단체	39 (100)	2 (5.1)	20 (51.3)			14 (35.9)	3 (7.7)
일반단체	86 (100)	33 (38.4)	9 (10.5)	7 (8.1)	2 (2.3)		35 (40.7)
종교단체	2,404 (100)	85 (3.5)	2 (0.1)	139 (5.8)	2 (0.1)		2,176 (90.5)
기업체	67 (100)	31 (46.3)	5 (7.5)	4 (6.0)			27 (40.3)
언론사	25 (100)	2 (8.0)		19 (76.0)			4 (16.0)
교육기관	14 (100)	6 (42.9)		3 (21.4)			5 (35.7)
계	5,725 (100)	393 (6.9)	93 (1.6)	414 (7.2)	80 (1.4)	36 (0.6)	4,709 (82.3)

* ( ) 안의 숫자는 %

제 4 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3], 2013년에 처음으로 1,000건을 상회한 데 이어, 2014년도에는 무려 8,444건의 조정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8,444건 중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6,943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신청이 1,501건으로, 2013년의 1,13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신청사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로 2013년의 46.4%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으로 40%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신문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83.7%를 차지했는데, 이는 구원파 관련 대량 사건이 보도 게재 혹은 기사 삭제 내지 수정된 경우 즉시 취하한 데 따른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신청 효율은 무려 90.3%를 기록했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945 (100)	348 (36.8)	26 (2.8)	23 (2.4)	157 [4] (16.7)	18 (1.9)	5 (0.5)	368 [310] (38.9)	67.5	76.5	74.6
2013	1,130 (100)	420 (37.2)	20 (1.8)	29 [1] (2.5)	139 [2] (12.3)	5 (0.4)		517 [443] (45.8)	72.4	81.4	78.8
2014	8,444 (100)	668 (7.9)	60 (0.7)	77 [3] (0.9)	476 [4] (5.6)	45 (0.5)	52 (0.6)	7,066 [6,800] (83.7)	56.8	76.3	90.3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 안의 숫자는 %

3) 인터넷신문의 경우, 2005년에는 전체 청구건수의 5.4%에 불과했으나 2012년 39.4%, 2013년 46.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정·중재대상 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 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 5 장 ◉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졌다.[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1년 510건을 기점으로 2012년 454건, 2013년 369건 등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4,171건을 기록,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에는 18.9%, 2013년에는 15.2%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21.9% 로 44.3%를 기록한 인터넷신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방송사 닷컴을 상대로 대량신청한 구원파 관련 사건 3,736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435건으로, 일반 사건 전체 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8%밖에 되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여전히 감소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웃링크[5)] 기사의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도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아웃링크 기사에 대해 별도로 조정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여기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인링크[6)] 기사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5)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제공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링크를 시켜줌

6)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보도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454 (100)	84 (18.5)	4 (0.9)	6 (1.3)	24 (5.3)	5 (1.1)	1 (0.2)	330 [290] (72.7)	74.6	89.8	84.4
2013	369 (100)	85 (23.0)	2 (0.5)	1 (0.3)	15 [4] (4.1)	1 (0.3)		265 [237] (71.8)	84.5	92.5	89.1
2014	4,171 (100)	100 (2.4)	29 (0.7)	10 (0.2)	206 [7] (4.9)	12 (0.3)	15 (0.4)	3,799 [3,479] (91.1)	37.4	56.1	87.2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 안의 숫자는 %

2014년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3,799건(91.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상당수가 보도 내지 기사삭제 혹은 수정 후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신청효율은 2013년 89.1%보다 다소 감소한 87.2%를 기록했는데, 이는 구원파 관련 대량사건 중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가 일괄 조정불성립된 데 따른 것으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2013년의 4.1%보다 다소 증가한 4.9%를 기록했다. 조정성립은 전체의 2.4%인 100건을 기록했다.

제 6 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중점추진과제로 중재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에는 중재로 전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 중재건수가 11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로 전환이 용이한 사건은 경우 추후보도사건 등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나 언론사가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사건, 그리고 매체 특성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인터넷신문 및 포털에 대한 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4년의 경우 포털사건이 대폭 감소한데다, 추후보도사건의 경우 대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 중재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11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청구 건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참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2	59	56	3					
2013	190	188				2		
2014	11	11						

2. 청구권별 현황

중재사건의 청구권별 신청 현황을 보면 11건 모두가 정정보도청구였으며, 이 중 8건은 중재결정이 내려졌고, 3건은 취하되었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12	정정	31	31					
	반론	16	16					
	추후	7	7					
	손배	5	5					
	계	59	59					
2013	정정	77	77					
	반론	59	59					
	추후	33	33					
	손배	21	19	2				
	계	190	188	2				
2014	정정	11	8				3	
	반론							
	추후							
	손배							
	계	11	8				3	

3. 매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매체 유형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포털 10건(90.9%), 인터넷신문 1건 (9.1%)이었다.

[표 6-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청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신문	신 문	뉴스 통신	방 송	잡 지
2012	59 (100)	51 (86.4)	4 (6.8)		1 (1.7)	2 (3.4)	1 (1.7)
2013	190 (100)	72 (37.9)	104 (54.7)	2 (1.1)	8 (4.2)	4 (2.1)	
2014	11 (100)	10 (90.9)	1 (9.1)				

* ( ) 안의 숫자는 %

제 7 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4년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19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감정원 외 1인이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조정신청한 40건이 자동소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소제기된 119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1심 재판 결과 인용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또는 조정성립된 사건이 10건, 취하 15건, 기각 및 각하 6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88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속 중에 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분 / 연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12	66	35	3	28		26	30	10	29	13	24	
2013	57	41	1	14	1	10	42	5	31	10	9	7
2014	119	60	10	48	1	9	62	48	10	15	6	88
계	242	136	14	90	2	45	134	63	70	38	39	95

※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성립은 인용에 포함하였음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일간지 40건, 인터넷신문 40건, 종합편성채널 13건, 중앙방송 7건, 인터넷뉴스서비스 6건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머니투데이가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널A 6건, MBC-TV 5건, TV조선 4건, 문화일보, MBN, 건치, 뉴스TR,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인터넷 일간투데이, 프레스바이플, iMBC 각 3건 순이었다.

[표 7-2] 2014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2014. 1. 1. ~ 2014.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중앙 일간지	문화일보	3	3					3					3
특수 일간지	머니투데이	40	20		20				40				40
특수 주간신문	미디어오늘	2	1	1				2					2
	KBS노보	1	1					1					1
주간지	시사IN	1	1					1		1			
특수 주간지	넥스트 이코노미	2	1		1		2						2
중앙 방송	MBC-TV	5	2		3			3	2				5
	SBS-TV	2			2				2				2
종합편성 채널	채널A	6	4	1	1			6		2			4
	MBN	3	1	1	1			3					3
	TV조선	4	2		2		1	3				1	3
뉴스 통신	뉴스1	2			1	1		2		2			
	국제뉴스	2	1		1			2			2		
인터넷 신문	건치	3	2		1			3					3
	노컷뉴스	2	1	1					2				2
	뉴스타파	1	1				1						1
	뉴스TR	3	1		2			1	2			1	2
	뉴스한국닷컴	2	1		1			2					2
	마케팅뉴스	2	1		1		2					2	
	부패방지뉴스	2	1		1			2					2
	서울교육방송	2	1	1				2			2		
	시사IN Live	1	1					1		1			
	이지뉴스	1			1			1					1
	인터넷 강남신문	2	1		1			2				2	
	인터넷넥스트 이코노미	2	1		1		2						2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인터넷 신문	인터넷 문화일보	2	2					2					2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3	1	1	1			3			3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2	1		1			2		2			
	인터넷 일간투데이	3	1	1	1			3			3		
	주택뉴스	2	1	1				2			2		
	프레스바이플	3	1	1	1			3			3		
	DK뉴스	2	1		1			2					2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채널A	2	1	1				2		2			
	인터넷 TV조선	1	1				1						1
	iMBC	3	1		2			3					3
계		119	60	10	48	1	9	62	48	10	15	6	88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조 정 >

(1981. 3. 31. ~ 2014.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5)	1	2	20(2)	42.9	39.0
1982	50	19			19(5)		2	10(4)	50.0	58.3
1983	71	21			22(7)	1	1	26(8)	48.8	52.2
1984	54	12			29(8)	3		10(5)	29.3	49.0
1985	59	12			28(5)	4		15(7)	30.0	43.6
1986	49	14			10(2)	1		24(11)	58.3	56.3
1987	47	10			9(4)	1		27(2)	52.6	34.8
1988	55	16			12(5)		1	26(13)	57.1	63.0
1989	121	29			35(10)		6	51(21)	45.3	52.2
1990	159	42			43(10)	1	2	71(40)	49.4	59.0
1991	220	52			48(9)	3	1	116(43)	52.0	48.1
1992	381	81			79(12)	19		202 (107)	50.6	55.2
1993	423	132			96(16)	8	2	185(84)	57.9	56.2
1994	541	162			127(10)	7		245 (128)	56.1	56.2
1995	528	111			150(25)	26	3	238 (124)	42.5	52.1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 (137)	42.7	53.1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 (108)	67.1	61.3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 (106)	69.2	59.6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99	641	244	11	18(2)	102(17)	24	5	237(92)	68.0	59.8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 (156)	72.0	63.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 (133)	60.3	62.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 (101)	71.7	62.4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 (158)	72.2	68.0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 (148)	67.0	66.4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283 (160)	64.5	62.4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 (250)	60.3	60.6
2007	1,043	359	22	32(2)	194(5)	42	6	388 (257)	62.8	64.8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 (237)	75.5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82.6	73.9
2010	2,205	630	109	40(2)	157(5)	137	1	1,131 (891)	79.0	79.2
2011	2,124	725	65	40(3)	285	44	14	951 (680)	70.9	71.3
2012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 (787)	64.1	71.5
2013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 (884)	73.4	77.6
2014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88.7
계	42,102 100%	8,882 21.1%	752 1.8%	593(37) 1.4%	4,750 (317) 11.3%	913 2.2%	190 0.5%	26,022 (21,665) 61.8%	64.3	77.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중 재 >

(2005. 7. 28. ~ 2014.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계	592 100%	534 90.2%	48 8.1%	1 0.2%		9 1.5%	

2014년도

시정권고 현황

2014년도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위원회는 2014년 각종 법익 침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심의기준 체계를 재정비할 목적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성폭력사건 보도와 관련해 과열 취재경쟁으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보호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에 더해 응답률과 주요 질문내용을 함께 밝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사형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2012년에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TF팀을 구성하여 시정권고 효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1년 11월 제정한 '시정권고 결정문 등의 송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분기별·반기별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해오고 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4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46건으로, 2013년 59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피의자·피고인 신원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보도가 2013년 35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개인적 법익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생활침해는 2013년 23건에서 2014년에는 2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건수는 2013년도에는 단 한건도 없었으나, 2014년도에는 5건을 기록했다.

한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2014년 256건으로, 2013년의 230건에 비해 11.3% 증가했다. 전체 시정권고의 50% 이상을 상회하던 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와 자살관련 보도의 시정권고 건수가 50%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재난보도와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의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에 78건을 기록했던 자살관련 보도는 2014년에는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2013년 89건으로 전체 시정권고 침해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던 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는 2014년에도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7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2013년 32건을 차지했던 충격·혐오감을 주는 보도 역시 2014년에는 1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2013년 31건이었던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4년 60건으로 93.5%나 급증했으며, 재난보도의 피해자 및 가족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 29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해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한건도 없었다.

[표 1-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침해유형 / 연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타	
2012	259 (100)	5 (1.9)	40 (15.4)	5 (1.9)	3 (1.2)		40 (15.4)	49 (18.9)	116 (44.8)		1 (0.4)	
2013	289 (100)	23 (8.0)	35 (12.1)		1 (0.3)		31 (10.7)	78 (27.0)	89 (30.8)	32 (11.1)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60 (19.9)	73 (24.2)	75 (24.8)	13 (4.3)	6 (2.0)	

*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 내려진 30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78건(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47건(15.6%), 지역일간지 37건(12.3%), 뉴스통신 36건(11.9%), 주간지 4건(1.3%)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4.7%에서 58.9%로 다소 감소한 반면,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서 15.6%로 다소 높아졌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는 전체건수대비 2012년 61.8%, 2013년 64.7%, 2014년 58.9%로 매년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의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신생 매체가 각종 법익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지면 제한이 없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월간지에 대한 시정권고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1-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총 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 송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2012	259 (100)	51 (19.7)	23 (8.9)	1 (0.4)	3 (1.2)	21 (8.1)	160 (61.8)	
2013	289 (100)	29 (10.1)	44 (15.2)		2 (0.7)	27 (9.3)	187 (64.7)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178 (58.9)	

* ( ) 안의 숫자는 %

[표 1-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4. 12. 31.)

구분 / 연도	계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4			2									3	2	1			
1988	37	16	3		9							9		29	2	2	4		
1989	180	36	92		52									173	1		6		
1990	311	67	169	12	63									301	1		9		
1991	264	34	140	16	70					1		3		247	8	3	6		
1992	390	34	227	3	123							3		379			11		
1993	344	10	228		106									336	1		7		
1994	204	7	132		58					7				195	1		8		
1995	282		131		29					121		1		271	1		10		
1996	310	11	122	22	26	8			4	117				304		1	5		
1997	469	2	76	182	21	78				109		1		461	1		7		
1998	348		29	151	16	14			1	137				336	2	2	8		
1999	240		20	126	17	11				66				234			6		
2000	234	2	8	67	54	6				97				213	4		17		
2001	231	1	9	70	22	10				119				211	7		13		
2002	142	1		88	9					44				129	1		12		
2003	237	2	41	153	13	1				20		7		219	2		16		
2004	283	2	114	68	7	1			21	52		18		247	14	1	21		
2005	278	10	88	24	11				85	47		13		246	8	1	19	3	1
2006	190	3	69	23	4	2		6	73	10		1		150	9		15	16	
2007	202	14	80	21	1	2			44	30	7	3		127	11	1	20	43	
2008	289	30	48	8	4			62	97	27	4	9		124	19	1	31	112	2
2009	253	14	97	6		1		2	93		2	37		57	15		20	132	29
2010	284	10	49	2	2			17	199	4		1		96	14	5	20	149	
2011	426	36	100		2			4	189	95				106	20	1	41	253	5
2012	259	5	40		5	3		40	49	116		1		74	3	1	21	160	
2013	289	23	35			1		31	78	89	32			73	2		27	187	187
2014	302	25	16		5		29	60	73	75	13	6		84	4		36	178	
계	7,290 100%	402 5.5%	2,163 29.7%	1,042 14.3%	731 10.0%	138 1.9%	29 0.4%	222 3.0%	1,006 13.8%	1,383 19.0%	58 0.8%	116 1.6%		5,426 74.4%	155 2.1%	23 0.3%	416 5.7%	1,233 16.9%	224 0.5%

제 2 부

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 대량사건이라 함은 개별 권리 주체별 청구건수가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 대량사건 신청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유 전 회장이 관여한 종교단체로 알려진 세칭 구원파인 기독교복음침례회였음을 밝혀둔다.

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위원회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기복침)와 유병언의 부인인 권윤자가 235개 매체[1)]를 상대로 각각 4,811건과 11,306건 등 모두 16,117건을 청구한 대량사건을 접수·처리했다.
구원파 신도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조정신청 대부분이 집회·시위 현장, 세미나 현장, 또는 검찰소환조사, 금수원 조사 보도 등에서 초상이 공개된 데 따른 초상권 침해를 다투는 사안인데 비해 기복침과 권윤자가 청구한 16,117건 모두 명예훼손을 다투는 신청이었다.

청구권별 조정청구 건수를 보면 정정보도 청구는 기복침 2,441건, 권윤자 9,003건 등 11,444건이며, 손해배상청구는 기복침 2,370건, 권윤자 2,303건등 4,673건으로, 정정보도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중재부별 청구건수는 서울중재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기복침의 경우는 서울중재부 4,572건, 지역중재부 239건, 권윤자의 경우는 서울중재부 11,026건, 지방중재부 280건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주요 매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별 신청은 인터넷신문 및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66.3%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많았다. 인터넷신문이 전체 사건의 43.1%인 6,941건이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 23.2%(3,738건), 방송 21.5%(3,453건) 순 이었다. 단일매체로는 YTN이 1,0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인터넷 YTN 885건, TV조선 796건, 인터넷 TV조선 704건, 인터넷 MBN 496건, 인터넷 서울신문 415건, MBN 4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처리결과는 취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16,117건중 취하가 94.6%인 15,245사건을 기록했으며, 조정불성립결정 610건(3.8%), 조정성립 250건(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건, 기각 4건 순이었다. 취하가 많은 이유는 중재부가 신청사건별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건별 세부기준을 정한 후 매체별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괄논의한 후 취하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중재부는 ①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②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실여부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③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1) KBS-1·2TV, KBS-1TV, KBS-2TV로 분류된 것을 KBS 한 매체로 볼 경우 전체 매체수는 233개 매체가 된다.

사항은 추후보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④ 신청인과 언론인 사이에 기사삭제 또는 수정 등의 협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취하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에 권고하여, 매체별 일괄 처리했다.

또한 사전에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게재하거나 기사수정 내지는 기사 삭제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취하하였다.

1. 청구권별, 중재부별 현황

기복침은 모두 4,811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는 2,441건, 손해배상은 2,370건으로 엇비슷했으며, 서울중재부는 4,572건, 지역중재부는 239건을 처리했다.

권윤자는 모두 11,306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는 9,003건, 손해배상은 2,303건으로 정정보도 신청이 월등히 많았다. 서울중재부는 11,026건, 지역중재부는 280건을 처리했다. 조정청구 초기 권윤자의 경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으나, 아들과 함께 법원에 유병언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2014.11.4.)한 이후 조정신청건부터는 손해배상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정정보도청구만을 신청했다.

중재부별 조정청구는 지역중재부에 비해 서울중재부에 신청한 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복침은 서울중재부 4,572건, 지역중재부 239건, 권윤자는 서울중재부 11,026건, 지역중재부 280건의 조정을 각각 신청했다.

[표 1] 청구권별 중재부별 조정신청 현황

구분	청구권별	계	중재부	
			서울	지역
기독교복음침례회	정정	2,441	2,318	123
	손배	2,370	2,254	116
	계	4,811	4,572	239
권 윤 자	정정	9,003	8,780	223
	손배	2,303	2,246	57
	계	11,306	11,026	280

2. 매체유형별 현황

다수사건의 매체유형별 청구현황을 보면 인터넷신문이 전체 사건의 43.1%인 6,941건(기복침 2,220건, 권윤자 4,7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 23.2%(3,738건), 방송 21.5%(3453건), 일간 신문 6.3%(1,024건), 뉴스통신 5.7%(9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합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66.3%로, 대량사건 청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온라인 기반의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인터넷신문의 경우 종속형 신문의 청구가 5,331건으로, 전체 청구건의 33.1%를 차지해, 1,607건으로 10.0%를 차지한 독립형 신문에 비해 높았으며,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청이 1,623건으로, 케이블TV 1,337건, 공중파 493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표 2] 매체유형별 조정청구 현황

구분	계	일간신문		주간 신문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종합 일간	특수 일간				공중파	종합편성	케이블	독립형	종속형	
기독교 복음침례회	4,811	216	56	6	14	220	131	533	365	554	1,666	1,050
권윤자	11,306	562	190	13	–	708	362	1,090	972	1,076	3,645	2,688
계	16,117	778	246	19	14	928	493	1,623	1,337	1,630	5,311	3,738
	(%)100	4.8	1.5	0.1	0.1	5.7	3.1	10.1	8.3	10.1	33.0	23.2
	16,117	1,024		19	14	928	3453			6,941		3,738
	(%)100	6.3		0.1	0.1	5.7	21.5			43.1		23.2

3. 처리결과 현황

다수사건의 처리결과는 압도적으로 취하가 많았다. 전체 16,117건 중 취하가 94.6%인 15,245사건을 기록했으며, 조정불성립결정 610건(3.8%), 조정성립 250건(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건, 기각 4건 순이었다. 기복침은 전체신청 4,811건 중 91.0%인 4,377건이 취하되었으며, 조정불성립 결정은 5.4%인 262건, 조정성립은 3.3%인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윤자는 전체신청 11,306건 중 취하가 96.1%인 10,8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은 3.1%인 348건, 조정성립은 0.8%인 90건 순이었다.

[표 3] 처리결과 현황

구분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소계	조정 성립	취하	조정 불성립
합계	16,117	4,811	160	8	4,377	4	262	11,306	90	10,868	348
	(%)100	100	3.3	0.2	91.0	0.1	5.4	100	0.8	96.1	3.1

4. 매체별 조정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1) 중앙 및 지방종합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 12개 매체를 상대로 모두 778건(기복침 216건, 권윤자 572건)을 청구했다. 세계일보가 166건으로 가장 많으며, 국민일보 133건, 중앙일보 99건, 동아일보 93건, 조선일보 89건, 서울신문 73건, 문화일보 49건 순이다. 이 밖에도 경향신문, 내일신문, 한국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했으며, 지방종합일간지로는 유일하게 대구지역의 매일신문을 상대로 8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종합일간지를 상대로 청구한 778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639건(기복침 146, 권윤자 493)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 133건(기복침 64건, 권윤자 69건), 조정성립 6건 순이었다.

2) 특수전문일간지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모두 13개 매체를 상대로 모두 246건(기복침 56건, 권윤자 190건)을 신청했다. 한국경제가 46건으로 가장 많으며, 매일경제 43건, 머니투데이 31건, 서울경제 26건, 파이낸셜뉴스 23건, 아시아투데이 18건, 헤럴드경제 17건순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천지일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234건으로 월등히 많으며, 이어 조정성립이 12건 순이었다.

3) 주간지 및 주간신문

일요신문 13건, 중앙SUNDAY 5건, 기자협회보 1건 등 모두 19건(기복침 6건, 권윤자 13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19건 모두 취하하였다.

4) 월간지

종교전문지인 현대종교를 상대로 기복침이 모두 14건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6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건(동의후보도), 조정성립 및 기각 각 2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5) 뉴스통신

뉴시스(뉴시스강원 포함) 333건, 뉴스1 332건, 연합뉴스 247건, 국제뉴스, 아시아뉴스통신 각 8건 등 928건(기복침 220건, 권윤자 708건)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919건, 조정성립 9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6) 공중파방송

KBS 계열 257건, MBC-TV 179건, SBS계열 46건, OBS경인TV 21건 등 493건(기복침 131건, 권윤자 362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427건, 조정불성립결정 66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KBS 일부 사건이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7) 종합편성채널방송

TV조선 796건, MBN 410건, 채널A 281건, JTBC 136건 등 4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두 1,623건(기복침 533건, 1,090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1,611건, 조정불성립 결정 9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피신청인 이의신청) 2건, 조정성립 1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TV조선과 MBN은 일괄 합의 후 취하하였다.

8) 케이블 TV

YTN 1,037건, 연합뉴스 TV 296건, SBS CNBC NEWS 및 환경TV 각 2건 등 1,337건(기복침 365건, 권윤자 972건)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1,330건, 조정성립 7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YTN은 단일매체로는 유일하게 1천건 이상 신청한 매체이며, 이 중 1,033건에 대해 일괄합의 후 취하가 이뤄졌다.

9) 인터넷신문(독립형)

경제투데이, 그린포스트코리아, 노컷뉴스 등 67개 매체를 상대로 1,630건(기복침 554건, 권윤자 1,076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노컷뉴스 229건, 쿠키뉴스 218건, 티브이데일리 142건, 티비리포트 80건, 미디어펜 64건, 뉴스핌 62건, SSTV 59건, 뉴스타운 59건, 스타뉴스 55건, 뉴데일리 48건, 데일리안 44건, 뉴스천지 42건, 뉴스엔 34건, 데일리한국 33건 등의 순으로 신청했다. 종합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전양자 씨 등 연예인이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예전문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도 다수 있었다. 1,607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취하 1,336건, 조정불성립결정 216건, 조정성립 78건 순이다. 쿠키뉴스를 상대로 한 218건 중 2건만이 취하되고 나머지 216건은 일괄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

10) 인터넷신문(닷컴. 종속형)

동아닷컴, 매경닷컴, 세계닷컴 등 99개 매체를 상대로 5,311건(기복침 1,666건, 권윤자 3,645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선닷컴 345건, 매경닷컴 281건, 세계닷컴 256건, 이투데이 인터넷 237건, 한경닷컴 218건, 인터넷 서울신문 215건, 인터넷 스포츠조선 215건, 아주뉴스 212건, 인터넷 헤럴드경제 211건, 동아닷컴 196건, 이데일리 인터넷 188건, 인터넷 스포츠한국 173건, 인터넷 경향신문 141건, 온라인 중앙일보 136건, 아시아투데이닷컴 114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9건, 인터넷 서울경제 108건 등 100건 이상 신청한 매체수만도 17개에 이른다. 5,3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5,115건, 조정성립 123건, 조정불성립결정 71건, 기각 2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매체가 일괄합의후 취하되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 도피 의혹과 관련해 “구원파 교주인 유병언이 도피하는데

신도들이나 친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권력을 우롱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인터넷 전북도민일보의 경우는 보도의 진실·상당성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하였다.

11)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서울경제TV, 인터넷 서울신문 STV, 인터넷 연합뉴스TV 등 19개 매체를 상대로 3,738건(기복침 1,050건, 권윤자 2,688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YTN 885건, 인터넷 TV조선 704건, 인터넷 MBN 496건, KBS미디어 331건, 인터넷 연합뉴스TV 300건, 인터넷 채널A 267건, iMBC 161건, SBS콘텐츠허브 152건, 인터넷 JTBC 141건, wow한국경제TV 123건 등의 순으로 신청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3,609건, 조정불성립결정 115건, 조정성립 12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후 보도) 2건 순이었다. KBS 미디어의 경우 331건중 106건이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표 4] 매체별 조정청구 및 처리결과 현황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취하	기각	조정불성립결정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취하	조정불성립결정
중앙 및 지방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26			6					20	
	국민일보	133					64				69
	내일신문	20			4					16	
	동아일보	93			34					59	
	문화일보	49	4		10					35	
	서울신문	73			8					65	
	세계일보	166	2		26					138	
	조선일보	89			22					67	
	중앙일보	99			16					83	
	한겨레	6			2					4	
	한국일보	16			10					6	
	매일신문	8			8						
	소계	778	6	0	146	0	64	0	0	493	69
특수전문 일간지	디지털타임스	5								5	
	매일경제	43			14					29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특수전문 일간지	머니투데이	31			8					23	
	서울경제	26			10					16	
	아시아경제	6			4					2	
	아시아투데이	18			8					10	
	아주경제	10			4					6	
	이데일리	11								11	
	이투데이	6								6	
	천지일보	4			2					2	
	파이낸셜뉴스	23								23	
	한국경제	46	2		2			10		32	
	헤럴드경제	17			2					15	
	소계	246	2	0	54	0	0	10	0	180	
주간지/ 주간신문	일요신문	13			6					7	
	기자협회보	1								1	
	중앙SUNDAY	5								5	
	소계	19	0	0	6	0	0	0	0	13	
월간지	현대종교	14	2	4	6	2					
	소계	14	2	4	6	2					
뉴스통신	국제뉴스	8			4					4	
	뉴시스	331	4		64			3		260	
	뉴시스강원	2	2								
	뉴스1	332			118					214	
	아시아뉴스통신	8			4					4	
	연합뉴스	247			24					223	
	소계	928	6	0	214	0	0	3	0	705	
공중파 방송	KBS-1,2TV	158			46		8			85	19
	KBS-1TV	84			6		12			41	25
	KBS-2TV	5			2		2			1	
	MBC-TV	179			42					137	
	SBS-TV	44			10					34	
	SBS -R	2								2	
	OBS경인TV	21			3					18	
	소계	493	0	0	109	0	22	0	0	318	44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종편방송	채널A	281		2	64		5			210	
	JTBC	136	1		21					114	
	MBN	410			164					246	
	TV조선	796			272		4			520	
	소계	1,623	1	2	521	0	9	0	0	1,090	
케이블 TV	연합뉴스TV	296	3		66					227	
	환경TV	2								2	
	YTN	1,037	4		290					743	
	SBS CNBC NEWS	2			2						
	소계	1,337	7	0	358	0	0	0	0	972	
인터넷 신문 (독립형)	경제투데이	14	6							8	
	그린포스트코리아	6								6	
	노컷뉴스	229	2		72			2		153	
	뉴데일리	48			16					32	
	뉴데일리경제	4								4	
	뉴시스 헬스	2			2						
	뉴스엔	34			28					6	
	뉴스웨이	7			2					5	
	뉴스천지	42			16					26	
인터넷 신문 (독립형)	뉴스타운	59			20					39	
	뉴스토마토	22	6					2		14	
	뉴스핌	62			7					55	
	뉴스한국닷컴	1								1	
	대한금융신문	3								3	
	더블유스타뉴스	2								2	
	데일리그리드	12								12	
	데일리안	44			21					23	
	데일리한국	33			10					23	
	디트뉴스24	2	2								
	레디앙	6								6	
	로이슈	1								1	
	리뷰스타	7			4					3	
	마이데일리	35	2		12			2		19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독립형)	메디컬투데이	12			3					9	
	미디어스	13						4		9	
	미디어펜	64			28					36	
	민중의소리	20			2					18	
	불교닷컴	4			2					2	
	뷰스앤뉴스	4								4	
	뷰티한국	3								3	
	브레이크뉴스	8			6					2	
	세계파이낸스	21			2					19	
	스타뉴스	55	8		8			10		29	
	스타투데이	9			2					7	
	시사위크	15			4					11	
	아이뉴스24	7			2					5	
	아이티투데이	3			2					1	
	업코리아	2								2	
	에너지경제	1								1	
	엑스포츠뉴스	22			4					18	
	오마이뉴스	19	2							17	
	오에스이엔	15								15	
	위키트리	10								10	
	이뉴스투데이	21			8					13	
	인터뷰365	1								1	
	일간 NTN	22			8					14	
	제주의소리	2			2						
	조세일보	21								21	
	지디넷코리아	1								1	
	초이스경제	1								1	
	컨슈머타임스	3			2					1	
	코나스	1								1	
	쿠키뉴스	218			2		100				116
	텐아시아	10			1					9	
	티비리포트	80	10		12			16		42	
	티브이데일리	142			61					81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독립형)	팩트TV	3								3	
	폴리뉴스	26			2					24	
	프레시안	10	2							8	
	프리미엄조선	2	2								
	한강타임스	3								3	
	bnt뉴스	6			3					3	
	e뉴스24	2			2						
	EBN	10			4					6	
	GValley	1								1	
	M이코노미뉴스	3								3	
	SSTV	59			30					29	
	소계	1,630	42	0	412	0	100	36	0	924	116
인터넷 신문 (닷컴)	동아닷컴	196	5		58					133	
	매경닷컴	281			72					209	
	세계닷컴	256	1		48					207	
	시사인Live	9			5					4	
	시사포커스신문	31			8					23	
	아시아경제 닷컴	91			30					61	
	아시아투데이 닷컴	114			31					83	
	아주뉴스	212			80					132	
	온라인 중앙일보	136	6		36					94	
	이데일리 인터넷	188	2		48			2		136	
	이투데이 인터넷	237	2		52			2		181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6			6						
	인터넷 경기신문	12			2					10	
	인터넷 경기일보	75			18					57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			2						
	인터넷 경남신문	2			2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2			2						
	인터넷 경상일보	2	2								
	인터넷 경인일보	71	12		12			7		40	
	인터넷 경제풍월	26			16					10	
	인터넷 경향신문	141			21					120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광주일보	4	2		2						
	인터넷 교회와신앙	88			72					16	
	인터넷 국민일보	69					22				47
	인터넷 국방일보	1								1	
	인터넷 국제신문	53	10		32			5		6	
	인터넷 금강일보	4			4						
	인터넷 기자협회보	3								3	
	인터넷 기호일보	29	6		4			8		11	
	인터넷 내일신문	28			8					20	
	인터넷 뉴스메이커	1								1	
	인터넷 대구신문	10	6		4						
	인터넷 대구일보	2			2						
	인터넷 대전일보	6			6						
	인터넷 더 스쿠프	1								1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88			34					54	
	인터넷 동양일보	8			8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36			6					30	
	인터넷 매일신문	15			12					3	
	인터넷 메트로	31	7		4			4		16	
	인터넷 무등일보	2			2						
	인터넷 문화일보	74	4		10					58	2
	인터넷 미디어오늘	5			1					4	
	인터넷 미디어워치	14			2					12	
	인터넷 법률신문	4			2					2	
	인터넷 부산일보	12	2					5		5	
	인터넷 서울경제	108			40					68	
	인터넷 서울신문	415	1		113					301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13			2					11	
	인터넷 스포츠경향	13			4					9	
	인터넷 스포츠동아	72			26					46	
	인터넷 스포츠조선	215			96					119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27			7					20	
	인터넷 스포츠한국	173			69					104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시민일보	30			12					18	
	인터넷 시사저널	24			14					10	
	인터넷 시사주간	4								4	
	인터넷 신동아	3			2					1	
	인터넷 영남일보	4			4						
	인터넷 울산매일	6			4					2	
	인터넷 위클리오늘	18								18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10			1					9	
	인터넷 인천일보	21			10					11	
	인터넷 일간스포츠	17			6					11	
	인터넷 일요서울	56			16					40	
	인터넷 일요시사	19								19	
	인터넷 일요신문	31	3		6					22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				2					
	인터넷 주간경향	13			6					7	
	인터넷 주간동아	7			2					5	
	인터넷 주간한국	3								3	
	인터넷 중도일보	2						2			
	인터넷 중부매일	1	1								
	인터넷 중부일보	57			10					47	
	인터넷 중앙sunday	8			2					6	
	인터넷 충남일보	2	2								
	인터넷 충청매일	2			2						
	인터넷 충청일보	16			16						
	인터넷 충청투데이	4			2			2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			2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51			34					17	
	인터넷 통일신문	1								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9			30					79	
	인터넷 한국기독공보	3			2					1	
	인터넷 한겨레	20			6					14	
	인터넷 한겨레21	6								6	
	인터넷 한국일보	74			30					44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헤럴드경제	211			33					178	
	인터넷 CNB저널	1								1	
	인터넷 Mmoney	4			4						
	인터넷 MTN	23			12					11	
	인터넷 THE Korea Herald	1								1	
	전자신문 인터넷	12			4					8	
	조선닷컴	345	8		79					258	
	조선비즈니스닷컴	17								17	
	한경닷컴	218	2		48			2		166	
	한국아이닷컴	26			20					6	
	e머니위크	14			4					10	
	e머니투데이	99			14					85	
	소계	5,311	84	0	1,558	2	22	39	0	3,557	49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서울경제TV	2								2	
	인터넷 서울신문STV	4			4						
	인터넷 연합뉴스TV	300	3		84					213	
	인터넷 채널A	267		2	66		5			194	
	인터넷 평화방송	7			2					5	
	인터넷 BBS불교방송	22			4					18	
	인터넷 JTBC	141	1		23					117	
	인터넷 KTV국민방송	32			4					28	
	인터넷 MBN	496			143					353	
	인터넷 OBS경인TV	49			5					44	
	인터넷 SBS CNBC NEWS	31			16					15	
	인터넷 TBS	29	2					2		25	
	인터넷 TV조선	704			210		4			490	
	인터넷 YTN	885	4		260					621	
	CBS-i	2			2						
	iMBC	161			32					129	
	KBS미디어	331			48		36			177	70
	SBS콘텐츠허브	152			46					106	
	wow한국경제TV	123			44					79	
	소계	3,738	10	2	993	0	45	2	0	2,616	70
계		16,117	160	8	4,377	4	262	90		10,868	348

5. 대량사건 처리기준

기복침 및 권윤자가 신청한 사건은 크게 기복침 및 유병언의 오대양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 청해진 해운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유병언의 도피와 관련된 의혹, 유병언의 과거사에 관한 의혹 및 주변인물 관련 사항, 유병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구원파 교리에 관한 사항, 기복침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조정심리 결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혹은 기사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중재부는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실여부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은 추후보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청인과 언론인 사이에 기사수정 등의 협의 의사가 있는 경우 기사수정 혹은 기사삭제하는 것으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한 다음 이를 당사자들에 권고하여, 매체별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대부분의 매체가 이 기준에 따라 조정을 진행했으며, 다만 국민일보, KBS-1,2TV 일부, 쿠키뉴스, 인터넷 국민일보, KBS 미디어 일부의 경우는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표 5] 대량사건 처리 기준

처리결과	처리 기준
정정보도[2]	-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항 - 1. 기독교복음침례회 또는 유병언이 오대양사건과 관련이 있다. 2. 유병언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에 참여하였다. 3. 유병언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목사 또는 교주이다. 4. 유병언이 제5공화국의 전두환 일가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5. 유병언이 중앙정보부 또는 전 전북부지사 등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하였다. 6. 유병언이 밀항하였거나 밀항 혹은 해외망명을 기도하였다. 7.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이다. 8. 세월호 직원 대다수가 구원파이다.

처리결과	처리 기준
반론보도	–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진위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 – 1.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 및 교회(금수원 포함) 운영 관련 사항 일체 2. 유병언이 프랑스에서의 사진 전시회 관련 기부금 제공하였다. 3. 김ㅇㅇ이 유병언의 비서였다. 4. 통합도산법이 유병언 때문에 추진되었다. 5. 김엄마가 유병언의 도피를 도왔다. 6. 기타 각종 추측성 의혹보도 등
추후보도	–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 – 1. 청해진 해운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2.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3. 유병언 재산 및 각종 회계 관련 사항 4.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소유 및 경영에 관한 사항
기사수정 또는 기사삭제	–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

2) 위 기준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게재되는 경우도 많았음.

제 3 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제 1 장 명예훼손 사례

사 례 1

모 중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4대전조정1, 2014대전조정2(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권○○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중도일보, 인터넷 중도일보)
중 재 부	대전중재부
접 수 일	2014. 01.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전 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등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아 과실 책임을 물어 교육청이 학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의 부모인 신청인은 당시 검찰과 경찰이 성폭력 혐의부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며, 학교 성폭력 발생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결정으로 학교 측의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중도일보에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조정대상기사 및 반론보도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중도일보 -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9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도일보 11월 19일자 사회면)

■ **내　　용** - 대전교육청과 ○○중이 지난해 학생 간 성폭력 의혹사건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아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고 ○○중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견해다.

○○중은 최근 대전교육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사, 특수실무원, 전문상담교사 등 5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성폭력 문제와 관련, 교육청이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한 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담겼다.

○○중 측은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불처분 결정', '범죄 인정 안됨' 등 판결을 내렸음에도 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 법무부, 교육청이 발간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중 교장은 "가이드북의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설문조사 등 사실확인을 통해 당시 주장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행정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항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해서도 "발생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심이 갈 때"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측 의견과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로부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가부에서 성범죄발생사실의 유·무죄를 떠나 학교의 사안처리 성범죄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1차 협의를 진행했으며, 추후 2차 회의를 열고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중도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중도일보(http://www.joongdo.co.kr) 홈페이지 사회/교육면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중 성폭력사건 즉시신고의무 위반'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0일자 사회면에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범죄 인정안됨' 등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혐의 없음', '범죄 인정안됨' 등의 판결이 아닌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중학교장 최○○가 교육부·법무부·교육청이 발간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처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이드 북 매뉴얼대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북을 확인한 결과,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의무적인 것이기에 ○○중학교장 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학교의 위법함이 인정되어 대전시 교육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 본지는 위 기사에서 ○○중에서 논란이 된 교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최○○ 교장이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 것이 아니고, 학교 성폭력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며, 사건 발생 이후 최○○ 교장이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4. 1. 23. 09:00부터 인터넷 중도일보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11190333)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고, 2014. 1. 27. 09:00 이후부터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은 2014. 1. 27. 09:00시 이후부터 ‘[알려왔습니다] 2013년 11월 20일자 6면’(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11200256)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4. 2014. 1. 27. 09:00시 이후부터 중도일보 커뮤니티 블로그(http://blog.naver.com/joongdo_news?Redirect=Log&logNo=90185037163,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joongdo_news&logNo =90185036434)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링크를 삭제한다.

5.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1.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중도일보 -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

해외에서 의류제조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인근 군부대의 사령관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64~2014서울조정66(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통상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4. 01.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봉제공장 노동자 임금인상시위 대규모 유혈진압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신청인 회사의 현지법인과 시위진압에 참여한 캄보디아 911부대가 공장 부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분을 나누는 사이라고 보도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인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 지분 역시 100%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등 현지 군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대규모 임금인상 시위에 해당 법인의 노동자가 다수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인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공장 노동자가 시위에 참여한 것처럼 보도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의 인터뷰 내용은 타 매체에서도 인용될 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중재부가 우리나라와 외국 현지의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군부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한겨레21 - 『기업의 앙탈에 총알이 발사되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1일자 28~29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20일자 사회면)

■ **내 용** - 바다 건너 캄보디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떼꾼한 봉제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달라고 외쳤다. 공권력은 곤봉을 휘두르고 총부리를 겨눴다. 노동자 여섯이 숨졌다. 폭력 사태가 일어난 곳은 하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장 앞. 저임금, 노동 착취, 유혈 진압 등 잊고 싶었던 말들이, 1970년대 대한민국 동대문 청계시장을 가득 채웠던 말들이, 2014년 동남아시아를 떠돈다. '한국'이란 말과 함께. 한국의 기업들은 왜 '인권 경영'에서 헝클어진 걸까.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 사태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만국의 노동자'를 거느린 한국 기업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들여다봤다. _편집자

지난 1월2일 캄보디아 프놈펜 남서쪽에 있는 산업단지 ○○○○ 공단 정문 앞에서 100명가량의 봉제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 공단 내 한국 기업인 ○○○○ ○○○○○(이하 ○○) 노동자인 ○○(24)도 동료들과 함께 춤을 췄다. "부자를 위해 비싼 옷을 만든다"는 ○○은 2년 전 월급 75달러로 일을 시작해 지금은 기본급이 85달러까지 올랐다. 수당까지 합쳐 평균 월수입은 130달러 정도다. 주문량을 맞추느라 한 달에 최소 절반 이상 잔업을 해야 하는 이 회사는 잔업수당으로 1시간에 50센트, 우리돈으로 550원가량을 지급한다. 보너스는 노동자에 따라 5~10달러를 오가고, 교통비는 5~7달러 수준. 의료수당 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아침 7시인 출근 시간을 단 한 번만 어기더라도 몽땅 날아간다. 일부 동료들이 아침 6시30분부터 나와 일을 시작하는 이유다. 식대는 없다. 〈한겨레21〉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한 1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점심 식대를 받는 노동자는 공항 근처 한국 기업인 '캄바코톱 주식회사 넘버원'에서 일했던 히엔첸다(37)뿐이다. 그녀가 회사로부터 받은 점심값은 한 달 3달러, 하루 10센트(약 110원)꼴이다.

"매달 60~70달러는 빌려야 겨우 살까 말까다."

○○이 1월 2일 아침 춤을 춘 이유다.

춤추는 노동자들을 향해 헌병들이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한 건 오후 3시30분께. 아무런

경고조차 없었다. 공단 정문 앞에 도착한 10대의 트럭은 곤봉을 든 헌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헌병들은 오후 5시까지 곤봉을 휘둘렀고, 폭력 사태는 이튿날 새벽 3시께까지 이어졌다.

"그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벵스렝 도로 위 ○○○○ 공단 주변을 둘러봤다. 폭력 진압으로 분노한 노동자들 틈에 술에 많이 취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무리가 마구 섞여 있었다. 노동자들이 쉽게 편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비정부기구(NGO)인 커뮤니티법교육센터(CLEC)에서 노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톨라모윤의 말이다. 그리고 새벽 1시께 톨라모윤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루탄이 발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1월3일, 날이 밝았다. 전날의 폭력 사태에 분노한 ○○○○ 공단 노동자 1만 명가량이 오전부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아침 8시부터 내무부를 향해 행진하던 시위대가 200m쯤 갔을까. 불현듯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대로에 있던 헌병이 발포하기 이전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부상자가 생겼다. 누가 총을 쏘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저격수였다. 총소리의 진원지 중 하나인 공단 정문 건너편 '에크릭 넘버원' 시장의 지붕 위, 전투복을 입고 AK47을 들고 있던 저격수. 1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뒤편으로 다가가 엎드린 채 노동자들을 겨누고 있는 저격수를 붙잡아 흠씬 구타했다. 그즈음 주변은 돌과 총알이 교차하는 폭력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공단 주변에 산재한 노동자들의 숙소 안으로도 총알이 날아들었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부상자가 속출했다.

총알 하나가 ○○의 오른쪽 다리에 파고들었다. ○○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오토바이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의사는 없었고, 간호사들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할 뿐 응급처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 시각, 시위와는 관계없이 병원을 찾은 여성 한 명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했으나 거부당했단다. 이 여성이 되돌아 오는 길에 끝내 숨지자 분노한 노동자들은 병원을 향해 돌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한겨레21〉 취재진이 병원을 찾은 1월16일, 병원 간판은 이름조차 읽기 어려울 만큼 망가져 있었다.

전세계를 경악시켰던 이번 캄보디아 유혈 사태는 1월2일 정오께 한국 업체인 ○○통상 앞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발단이 되었다. 프놈펜 서쪽 4번 국도에 위치한 ○○통상

앞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공장 밖 파업을 벌였고, 일부는 조업 중이었다. 파업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안에 있던 군인들이 나와 파업 노동자 중 3명을 안으로 끌고 가 구타했다. ○○통상과 부지를 공유한 911 공수부대원들이었다.

군인들의 폭력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속속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승려 5명을 포함해 15명을 연행해갔다. 그날 오후 승려는 풀려났지만, 나머지 10명의 노동자들은 911 공수부대 안 감호소에 만 하루 동안 감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캄보디아봉제노동자민주노조연대(CCAWDU) 아툿 의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감호소에 갇힌 노동자 대부분이 의식을 잃을 만큼 구타를 당했고 그중 한 명은 골절상을 입었다. 다음날 노동자들은 법원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이송됐다.

○○○통상 앞 진압 과정은 몇 가지 의혹을 낳았다. 우선 진압 인물들을 보자. 현장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차프소포른 소장은 911 공수부대의 총지휘관이자 인권침해로 악명 높은 차프페아크데이 소장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2010년 자료는 차프페아크데이 소장을 "1998년 선거 뒤 폭력 사태와 1997년 당시 쿠데타를 이끌었던 (훈센과 정적 관계이던) 푼신펙당의 사령관들을 고문하고 총살시킨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라 묘사하고 있다. 1월16일, 〈한겨레21〉이 한국의 노동시민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독립조사단'과 공동 인터뷰한 911 전 부대원 모니(가명) 역시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잔혹상을 진술한 바 있다. 예컨대 부대 소속 하급 병사들을 발가벗긴 채 구타하는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는 게 모니의 증언이다. 여러 해에 걸쳐 911 공수부대 교관 노릇을 해왔던 미국은 인권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2010년 이래 군사훈련 교육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구국당(CNRC) 대표 삼랭시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차프페아크데이 소장의 조카인 차프소포른 소장이 ○○통상과 지분(현지법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을 나누는 사이라고 말해 911 부대와 ○○통상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28~29쪽 인터뷰 기사 참조). 전 부대원 모니 역시 "고위 사령관들이 ○○통상이 마치 자기 사업체인 양 과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 대사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80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운동가는 12월28~29일 전후 아시아권 국가의 여러 대사관들이 정부와 비공식 미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강한 압력이 가해졌다.

"그 '조치'가 어느 수준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그 미팅 이후 정부가 노조에 경고장을 보냈고, 그리고 진압이 있었다. 대사관들의 직간접적 압력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압박은 가해졌을 거라 본다." 노동운동가의 말이다.

"그 '조치'가 어느 수준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그 미팅 이후 정부가 노조에 경고장을 보냈고, 그리고 진압이 있었다. 대사관들의 직간접적 압력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압박은 가해졌을 거라 본다." 노동운동가의 말이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21〉은 한국 대사관이 야당에까지 사실상의 '압박'을 가한 사실을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한수 주캄보디아 대사의 명의로 대사관이 삼랭시 대표에게 보낸 서한은 '긴급'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한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체불명의 아웃사이더들의 불법 행동"이라 표현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한국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삼랭시 대표는 기자에게 "서한을 받은 직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접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겨레21〉은 ○○통상 쪽이 4~5개월 전 당시 '민주노조'(캄보디아 대부분의 봉제업체에는 '어용노조'가 있다) 간부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몇 달간 ○○통상 내 파업 동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통상은 1월10일 발표한 해명 자료를 통해 "자회사에는 5개의 복수노조가 있으며, 해당 노조들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의 노동자들이 이날 파업에 어떤 규모로 참가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통상은 노조 탄압으로 악명이 높다. 전 노조 간부는 물리적 폭력을 포함해 회사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아마 회유금을 쥐어주고 쫓아낸 것 같다. 그날 이래 그 간부는 프놈펜을 떠났고 나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관련 상황을 잘 아는 한 현지 노동자가 익명을 전제로 한 말이다. ○○통상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국제노동기구(ILO)랑 협조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생산 현장 모니터링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ILO가 운영하는 '더 나은 공장 캄보디아'(Better Factories Cambodia)의 운영자인 제이슨 저드는 〈한겨레21〉과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다. "○○통상도 다른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ILO 모니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건 캄보디아 봉제업체들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그들의 노동환경이 투명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저드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통상은 자발적 프로그램인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사용자 관계 향상을

위한 '자문 서비스'(Advisory Services)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캄보디아 공장 중 5~10%만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권은 캄보디아의 헌법은 물론 노동법,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도 비준한 국제협약(캄보디아는 ILO 노동협약 98호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비준국이다) 등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은 얼음판이다.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 효과까지 노리며 잔인하게 진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을 포함해 캄보디아에 투자자를 배출한 나라 대사관들의 압력까지 가세하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체들이 임금을 인상하면 적자가 날 거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160달러로 임금을 올려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그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적자의 증거를 제공하면 우리도 120달러 혹은 130달러라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아툿 의장은 말한다.

2009년 캄보디아개발연구소(CIDS)가 수행한 '캄보디아 봉제산업 노동자들의 현실 인금'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봉제공장 노동자 1명이 창출해내는 월 순이익은 280달러 수준이다. 생산 비용은 물론 '뇌물' 비용까지 제외하고 나오는 순이익이다. 보고서는 이 중 20% 미만이 노동자 몫이고, 80% 이상이 사용자 몫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상도 다른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ILO 모니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캄보디아 봉제업체들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그들의 노동환경을 투명하게 말하는 건 아니다." _'더 나은 공장 캄보디아'의 운영자 제이슨 저드

"80달러에서 160달러로 임금을 어떻게 100%나 올려주느냐고 하는데, 이건 임금을 곱절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임금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3세계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 NGO '솔리대리티 센터'(Solidarity CENTER) 캄보디아 담당 국장인 데이비드 존 웰스의 말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현실 물가와 관계없이 저임금이 고착화된 현실과 저임금을 찾아 떠나는 '철새' 투자자들의 현실을 꼬집고 있다.

다리에 총상을 입어 두 번의 수술을 남겨둔 ○○은 당분간 춤을 출 수도 미싱을 밟을 수도 없다. 그날의 사건 이후 한국 기업 노동자인 ○○의 병실을 방문한 한국인은 취재진 외에는 없다. 간호하는 아내와 어머니 등 3명의 한 끼 식대로 5달러나 지불해야 하는 ○○은 그나마 한국에서 이주노동하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기부금을 모아줬고,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의

삼랭시 대표가 병원비를 보태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일했던 '○○'은 "유혈 사태 뒤 1800명의 노동자 중 500명이 남고 다 떠났다"고 공장에서 퇴근하고 있던 노동자 비락(가명)이 귀띔했다.

1월 15일 오후 6시께. 다시 찾은 ○○○○ 공단 서쪽 문을 통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터로 늘어선 노동자들은 잔업 2시간을 마치고 나와 저녁거리를 사는 중이다. 서쪽 문을 통해 공단 부지 안으로 좀더 걸어가면 보초를 선 병사 두어 명과 나른한 군인들이 장기판을 두고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왕실군(RCAF) 70여단이다. 최근 사태 이후 공단 내 주둔하는 70여단은 2008년 1월 창설된 대테러 특수부대다. 역시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다.

시장길로 다시 나와 어수선한 골목길을 오르면 중국 공장 하나가 여전히 조업 중이다. 더 좁은 왼쪽 골목길을 타고 공단 노동자들의 숙소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월 25달러짜리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소코안(37)은 저녁을 짓고 있었다. 잔업을 하지 않아도 130달러 기본급을 받는 그녀는 '오션스카이'(Ocean Sky)라는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스페셜 기술자'다. 그러나 소코안 역시 결과적으로 버는 수입은 150달러가 넘지 않았다.

건너편 월 45달러의 깔끔한 숙소에는 2012년 프놈펜으로 이주한 참파(24・가명)가 살고 있다. 6살짜리 아들을 키워주는 엄마에게 매달 25달러를 보내는 참파는 1월5일 수령한 12월치 월급이 깎여나왔다. 잔업수당을 모두 포함해도 88달러. 파업 때문이다. 1월2일 댄싱 데모에 참여했다가, 발포가 있던 3일은 방 안에 꼼짝 않고 있었던 참파는 파업이 다시 벌어지면 참여하겠단다. 참파네 복도에서 3개월 된 동생을 어르고 있는 훗헹리는 들쳐안은 갓난아기가 품에서 오줌을 쌌지만 여전히 눈웃음이다.

"엄마가 어젯밤에는 밤 10시에 오셨어요. 오늘도 야근한대요."

조정대상보도2

- **인터넷 한겨레 -** 『**"이명박 전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경제 자문' 그만둬야"**』 제하의 기사(2014년 1월 22일자 국제면)
- **내 용 -** '노동자 유혈 사태' 캄보디아의 유일 야당 대표 삼랭시 인터뷰

삼랭시(64 · 사진) 캄보디아구국당(CNRP ·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대표는 현재 훈센 총리와 대척할 만한 유일한 야당 정치인이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적 소송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을 떠난 바 있다. 지난해 7월 19일 총선을 열흘 앞두고 귀국했다. 이후 반훈센 정서를 활용해 정치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한겨레21〉은 지난 1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자리잡은 캄보디아구국당 본부에서 그를 만나 최근 노동자 유혈 진압 사태 등에 대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991부대 사령관, 약진통상 지분 30% 소유…사업체의 압박이 잔혹한 진압 낳았다"

강경파가 진압 명령

- 지난 1월14일 프놈펜 지방법원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무슨 질문을 받았나.
= 내게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160달러 안'을 지지하는지 물어서 둘 다 '그렇다'고 했다.

- 정정 불안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사실무근이다.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할 뿐이다.

- 1월2일 약진통상 앞에서 벌어진 폭력 진압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뭐였는가.
= 군인들이 진압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게다가 공수부대라니.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는 이들 아닌가.

- 충격은 충격이고, 어디 전화라도 걸어 항의라도 했는가.
= 내무부 장관에게 전화해 진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내무부는 군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 공수부대 진압을 명령한 이가 누군지 아는가.
= 강경파다. 군 내부에도 있고, 훈센 총리 자체도 이런 문제에 강경파다. 무엇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진압에 연루된 이들이 있다. (○○통상과 이웃한) '911부대' 사령관 차프페아크데이의 조카이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차프소포른이 ○○통상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기 지분이 있는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고 개입한 거다. '근처 한국 회사'(인터뷰 초기 삼랭시는 '○○통상'이라고 지목하기보다 '근처 한국

회사'라고 표현했다) 역시 시설물 보호 요청을 이유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선 아주 흔한 일이다.

- 이 나라에서 흔하다는 점 외에, '근처 한국 회사'가 차프소포른 소장이나 차프페아크데이 사령관과 지분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

= 지분을 나누는 사실을 보여줄 문서는 보지 못했으니 '100%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내부 정보원을 통해 알고 있다. 캄보디아에선 지분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나라의 수배자, 야쿠자들까지 캄보디아 여권을 사서 불법 벌채사업을 벌이는 범죄집단들의 천국, 그게 바로 캄보디아다.

- 한국 대사관도 논쟁에 휩싸였다.

= 한국 대사관이 내게 공식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삼랭시는 곧 비서관을 통해 서한 복사본을 준비해 취재진에게 건넸다.) 통탄스러운 점은, 대사관도 그렇고 한국 업체들이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업체를 보호하도록 압박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잔혹한 진압을 낳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압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다. 무책임한 처사다.

- 왜 이렇게 유례없는 강경 진압이 이어졌나.

= 봄철 아닌가. 바이어로부터 상업적인 주문량이 폭발하는 시기다. 하루라도 주문량을 못 맞추면 큰 손실을 보니 그들의 이익 손실만을 생각한 거다.

"통탄스러운 것은, 대사관도 그렇고 한국 업체들이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업체를 보호하도록 압박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잔혹한 진압을 낳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압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다. 무책임한 처사다."

- 정치적 변수는 어떤가.

= 지난해 7월의 부정선거(총선) 이후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는 전례 없는 큰 집회를 조직화했다. 12월부터는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가세하며 어마어마한 피플파워가 형성됐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파업노동자들을 유혈 진압하면서 모든 비판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실수한 거다. 국제사회가 받을 충격은 생각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전 국제사회가 구속 노동자 석방과 독립 조사, 그리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그런데 1월4~6일 이어질 예정이던 반정부 시위는 왜 취소했는가. 노조도 파업을 유보했다.

= 유혈 진압 명분을 주고 싶지 않아서지. 사실상 비상사태 정국이니 우선 국제사회가 압박할 공간을 열어놓고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집회를 할 계획이다.

- 옆나라 타이 반정부 시위와 정정 불안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잉락 친나왓 타이 총리의 용감한 대응에 찬사를 보낸다. 잉락 총리가 당선된 지난 총선은 국제사회도 인정한 공정선거였고, 야당도 선거 결과에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잉락 총리는 충돌을 피하려고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대로 사임하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훈센은 뭐하나?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그야말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 잉락 총리의 친오빠인 탁신 전 총리는 당신의 정적인 훈센 총리와 친분이 깊고, 경제 자문도 했던 인물이다. 이 복잡한 인맥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 탁신은 의료복지를 포함해 친빈민 정책을 폈다. 반면 훈센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되레 빈곤층으로부터 토지 수탈을 자행하지 않나.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고, 내게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더 도드라진다.

- 탁신도 그렇고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훈센의 경제 자문이다.

= 훈센 자문역을 자임하는 누구라도 그 역할을 그만두라는 게 나의 조언이다. 안 그러면 훈센 정부가 자행하는 탄압과 범죄에 공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 베트남 얘기를 해보자. 캄보디아 구국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폭력과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그리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베트남 정서가 고조되고 있고, 당신 역시 집회 연설 등을 통해 '유온'(Yuon · 베트남인이나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을 일컫는 칭호로, 경멸적 호칭이라는 지적이 많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자칫 반베트남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설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 선정적인 언론의 구태의연한 비판이다. 타이도 베트남계를 유온이라 부르는데 왜 그들은 비판하지 않는가. 베트남이 생기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던 이들이 유온이라 불렸다. 기자들, 사전 학습 좀 해라. 우리가 유온이라 부를 때 누구도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 캄보디아와 타이의 상황은 좀 다르다.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더 복잡한 분쟁 관계 속에 있었고, 반베트남 정서도 자리잡힌 마당에 그런 용어나 레토릭이 야기할 인종주의의 고조, 불필요한 분쟁을 우려하는 것이다.

=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비판하는 건 중국이나 한국이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인종주의적 접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베트남인'이나 '베트남' 자체에 대해 아무 반감이 없다. 다만 현 베트남 정부의 대캄보디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뇌물을 노동자 임금으로 돌리기만 하면

- 당신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면 어떤 노동정책을 펼 것인가.

= 우선 '법치'를 바로 세워 부패 근절에 전념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그들 사업체 보호를 위해 고위 관료나 군에 바치는 뇌물을 노동자 임금으로 돌리면 임금 인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나라의 부패는 두 종류다. 고위 관료들에 의한 부패와, 말단 공무원들이 생존을 위해 범하는 부패. 후자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일반 공무원의 임금은 100달러 내외). 아울러 나는 캄보디아가 구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훈센은 이 나라를 구걸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 현재의 캄보디아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 편협한 투자자들은 독재정부라도 마다 않고 '안정'된 환경을 원했다. 그러나 '독재하 안정'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 투자자들도 마인드를 전환하기 바란다. 훈센 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며 세운 안정은 몇 주, 몇 달을 못 간다.

- 망명 생활을 여러 번 했다. 시국이 어수선한데 또다시 망명할 수 있는가.

= 이젠 훈센이 망명할 차례다. 힘의 균형 관계가 변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1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 제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2014서울조정64)

2. 피신청인은 한겨레21(http://h21.hani.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독자들이 제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4서울조정65)

3. 피신청인은 한겨레21(http://h21.hani.co.kr)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에 링크된 한겨레캐스트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르포" 동영상을 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 또는 피신청인은 위 동영상 중 신청인, ○○ 캄보디아 또는 ○○(이하 "신청인 측"이라 한다)을 언급하며 (i) 신청인 측과 911 공수부대원들이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 (ii)신청인 측과 캄보디아 군이 지분관계라는 캄보디아 야당 대표의 발언 내용, (iii)캄보디아 공수부대원들이 신청인 측의 경비를 맡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 (iv)신청인 측이 부지 내에 건물을 세워놓고 임대사업을 했다는 내용 등을 삭제 편집하라. (2014서울조정65)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기업의 앙탈에 총알이 발사되었다", "독재정부도 마다 않는 한국 투자자들 변해야"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본지는 지난 2014년 1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한겨레21'지면 기사 996호로 최근 있었던 캄보디아 대규모 유혈 진압사태와 관련된 보도에서 ○○통상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하 "○○ 캄보디아")과 캄보디아 911부대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911 군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 캄보디○○ 군에 어떠한 진압요청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위 공장 부지를 군이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캄보디아는 본사인 (주)○○통상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캄보디아 현지 군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캄보디아 유혈 진압사태로 이어진 2014년 1월 2일 정오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으며, ○○ 캄보디아의 다수 근로자들이 위 시위에 가담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 캄보디아는 공장 인근에는 외부 시위대가 캄보디아 군 부대와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귀가 조치를 취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 캄보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폭력행사 및 불법해고를 자행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캄보디아는 현지 법령 및 ILO의 권장근로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정신청취지2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겨레(http://www.hani.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독자들이 제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4서울조정66)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이명박 전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경제 자문' 그만둬야"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본지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최근 있었던 캄보디아 대규모 유혈 진압사태와 관련한 보도에서 ○○통상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하 "○○ 캄보디아")과 캄보디아 911부대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911 군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 캄보디○○ 군에 어떠한 진압요청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위 공장 부지를 군이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캄보디아는 본사인 (주)○○통상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캄보디아 현지 군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캄보디아 유혈 진압사태로 이어진 2014년 1월 2일 정오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으며, ○○ 캄보디아의 다수 근로자들이 위 시위에 가담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 캄보디아는 공장 인근에는 외부 시위대가 캄보디아 군 부대와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귀가 조치를 취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 캄보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폭력행사 및 불법해고를 자행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캄보디아는 현지 법령 및 ILO의 권장근로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 캄보디아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 〈한겨레21〉은 지난 1월 27일 제996호 표지이야기 등 최근 캄보디아 시위대 유혈 진압사태 관련 보도에서 현지 야당 지도자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통상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하 "○○ 캄보디아")과 이번 시위 진압에 참여한 캄보디아 911부대가 부지, 지분 등을 공유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 캄보디아는 "911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군에 어떠한 진압요청도 한 바가 없다. 또한 ○○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군과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지 ○○ 캄보디아의 지분 100%는 ○○통상의 소유로, 캄보디아 군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 캄보디아는 "자사 소속 근로자들이 유혈 진압사태로 이어진 지난 1월 2일 정오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하거나 다수 근로자들이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장 인근에는 외부 시위대가 군과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귀가 조치를 취하였으며, 자사는 현지 법령 및 ILO의 권장근로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으므로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21' 2014년 2월 24일자(제999호) 20면에서 40면 사이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글자크기는 통상의 제목 크기로 하고, 본문의 글자는 통상의 기사의 본문글자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목차란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기재하여 게재지면과 함께 표시하여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21' 홈페이지(http://h21.hani.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초기화면(http://www.hani.co.kr)의 기사목록 중상단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독자들이 제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 ]안에 표시하여 2014년 2월 17일부터 12: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동영상(인터넷 한겨레21의 http://h21.hani.co.kr/arti/cover/ cover_general/36252.html 기사 중의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르포 [21의 생각])의 말미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동영상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 캄보디아 현지 사진을 화면으로 하며,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한다. (4항의 이행은 2014년 2월 24일까지 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4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2.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한겨레21 -『○○ 캄보디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64면, 인터넷 한겨레21 2월 24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

신청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81, 2014서울조정82(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이명박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주간한국, 인터넷 한국일보)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01.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수상한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으며,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농협의 전산기록에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 확인과 절차를 거친 후 적법하게 상금을 수령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주간한국 -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1면 및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정치면)

■ **내 용** - 농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세탁'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은 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상한 상금의 수표가 채 입금도 되기 전 이를 매입해 이 전 대통령 계좌로 송금했다.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전산기록이 돌연 종적을 감췄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은 전산 자료를 10년 동안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다. 결국 대통령을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셈이다.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농협 안팎의 공통된 견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000만원)를 받았다.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지불해야 할 186억원 중 절반 이상인 100억달러를 국내 수출입은행이 28년간 대출해주는 내용의 이면 계약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상대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대가로 수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이 상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환경 분야 등에 기부하거나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지면에 옮겼다. 국민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돈은 전액 이 전 대통령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면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1년 54억9,659만원에서 2012년 57억9,96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예금 증가분이 컸다. 예금이 1억2,022만원에서 6억5,341만원으로 5억원 이상 급증했다. 예금 급증 원인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수령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개인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 역시 이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허둥지둥 해명했다.

당시 '상금세탁'을 도운 게 바로 농협이다. 〈주간한국〉이 입수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농협 청와대 지점은 2011년 3월23일 외화수표 추심전 매입승인을 요청했다. 매입 품목은 아랍에미리트 은행 'Emirates NBD'에서 발행한 50만달러 수표, 매입신청인은 이 전 대통령이었다.

이를 통해 농협 청와대지점은 아직 입금되지도 않은 수표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계좌에 5억원 이상의 현금을 송금했다. 복수의 농협 내부직원들은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농협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농협 내부문건 중 '2011년 승인신청 접수 총괄대장'을 보면 2011년 3월23일까지 접수된 외화수표매입건은 이 전 대통령의 50만달러가 유일하다. 공직자는 해외에서 일정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후 해당 전산기록이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시기는 2011년 4월11일 전산사태를 전후해서다. 전산사태 당시에도 여신관리시스템은 정상작동했다. 그러나 돌연 시스템이 먹통이 된 뒤 이 전 대통령의 기록이 삭제됐다.

농협 여신관리부의 한 직원은 "이 전 대통령의 외화수표 추심전 매입 전산기록이 '청와대지점 여신관리시스템 장애 복구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 직후 삭제됐다"며 "이 기록만이 유일하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삭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전산 자료를 10년 동안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산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 혹은 정정은 가능하다. 그래도 여전히 기록은 남는다. 기록 자체를 삭제에는 농협 내 IT인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농협 안팎에선 수표 매입과 전산기록 삭제가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특히 농협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고위층 인사의 개입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한 농협 내부 직원은 "청와대의 청탁이 있었는지 농협의 자진 과잉충성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 수표 추심 전 매입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최고위층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말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홍보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의 거래 사실은 개인정보로 분류돼 공개할 수 없지만, 수표 추심 전 매입은 서류만 증빙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떤 고객이라도 전산삭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협 청와대지점은 청와대의 주거래은행이다. 역대 정부 청와대 주거래은행은 '금고'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까지 주거래은행을 맡아온 우리은행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검은돈 일부를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청운동지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국민은행 역시 MB 대선 캠프 외곽지원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관련 업체인 와인프린스에 17억원을 특혜 대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2009년 농협 청와대지점이 청와대 주거래은행 자리를 넘겨받았다. 농협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내곡동 사저 신축 논란 당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6억원을, 이전 대통령이 2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일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선 '청와대 주거래은행은 금고'라는 공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와대 주거래은행은 정권실세들에 편의를 제공해 온 게 사실"이라며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고리"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주간한국 인쇄판 1면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홈페이지 첫 화면과 1월 13일자 인쇄판 1면에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이라는 제목, 14면에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라는 부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가능한 규정이었으며 농협 데이터상의 전산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상금의 수령은 전직대통령 사례와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공직자행동강령 및 소득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의 도움으로 상금을 세탁하고 2011년 4월

전산사태를 전후하여 전산기록 삭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오보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원불상 제보자의 자료와 의견을 인용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농협 측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조정신청취지2

피신청인은 주간한국 온라인 홈페이지(http://weekly.hankooki.com/) 초기화면 우측 최상단 위치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만 7일(16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의 기사는 삭제 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이라는 제목과 기사에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라는 부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가능한 규정이었으며 농협 데이터상의 전산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상금의 수령은 전직대통령 사례와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공직자행동강령 및 소득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의 도움으로 상금을 세탁하고 2011년 4월 전산사태를 전후하여 전산기록 삭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오보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원불상 제보자의 자료와 의견을 인용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농협 측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간한국〉에 [별지]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1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4면에 제목과 본문을 게재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주간한국〉 홈페이지(http://weekly.hankooki.com/) 에 [별지]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하고,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2. 25.

〈별 지〉

1. **제 목**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2.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홈페이지 첫 화면과 1월 13일자 인쇄판 1면에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이라는 제목, 14면에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라는 부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외환수표 추심 전 매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농협 데이터상의 전산 기록도 남아 있으며, 당시 상금의 수령은 공직자 윤리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 상금세탁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주간한국**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0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3월 10일자 정치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4

의사인 신청인이 페이스북에서 섬노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16 · 117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조○○
피신청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사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2.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방대 병원에 근무 중인 현직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섬노예 현상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섬노예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문화상대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비유를 들어 지적한 것인데, 기자가 이를 잘못 이해해 마치 섬노예 현상을 옹호한 것처럼 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신청인의 주장처럼 문화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 설명한 부분을 기자가 오해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자, 피신청인이 알림 형태로 섬노예 옹호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닷컴 -** 『**'전라도 섬노예' 옹호?… 현직 의사 페북 글에 네티즌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 한 지방대 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의사가 이른바 '전라도 섬노예' 사건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글 속엔 해당 의사의 경험담과 그가 생각하는 '섬노예' 현상 해결책 등이 담겨 있는데, 현재 온라인 상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유인해 '염전 노예'로 삼은 혐의(영리약취 및 유인 등)로 직업소개소 직원인 고모(70)씨와, 염전 주인 홍모(48)씨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이 사건은 이른바 '전라도 섬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현재까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지방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A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라도 섬노예'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똑똑한 척 하면 재수없냐? 아니면 남자로서 지적매력이 돋냐(있어보이냐)? 부디 후자이길 빈다.ㅋㅋ"며 말문을 열었다.

한 지방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A씨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페이스북 캡처 A씨는 장문의 글에서 자신이 27살이었던 당시 어느 외딴 섬의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노예'제도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하나의 질서일 뿐이었다"면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개고기'를 먹듯, 그 곳 사람들은 '노예'를 부릴 뿐이었다"고 적었다.

또 A씨는 "노예들은 대부분 자유의지가 없다.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세월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없앴다"면서 "조선시대 노비들이 신분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처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섬노예' 들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노예로 살기를 택했다. 최소한 먹을 것과 잠잘 곳은 제공되지 않던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노예들이 폭력과 구타로 감금당하고 일을 강요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그들은 중요한 생산도구이고, 구하기 어려운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경시대에 소는 재산목록 1호였다. 소중한 소를 때리고 병들게 할 농민은 없었다"며 "섬의 노예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염전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박하게 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그들 사이의 계약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 뿐"이라고 적은 A씨는 "하지만 서로의 동의하에 일어난 계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섬노예'들에 대해 "이들은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해 낼 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렇기에 염전 주인을 포함한 섬 사람들의 인식은, 오히려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나가봐야 굶어죽거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놈'이기에, 그런 인간들을 거둬주고 돌봐주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A씨는 "실제로 이들 중 밖으로 나간 이들은 대부분 그러한 경과를 밟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오히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전라도 섬노예' 사건 관련 MBC 뉴스 영상 캡처 이 같은 논의를 통해 '하나의 폐쇄된 집단은 자신만의 독특한 자생적 질서를 가진다'고 설명한 A씨는, 이어 "염전은 섬의 주요 산업이며, 섬의 경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염전으로 인한 이득은 통상적인 인건비를 넘어서지 못한다. 노예를 싼값으로 부리지 못한다면 염전은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염전은 문을 닫아야 하고, 이는 섬 경제의 초토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섬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으로 '사회 전체적인 인권의식의 신장'과 '경제적인 발전'을 꼽고는 "이것만이 끊임없는 고리를 끊을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현직 의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렇게 당당한지, 이 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된다", "섬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정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상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마냥 분노만 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말 같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해당 글을 쓴 A씨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해당 글의 내용은 '섬'의 자생적 질서와 그로 인한 현상 등을 소개한 것일 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평소 내 생각을 잘 아는 지인들과 페이스북에서 나누려는 목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쓴 글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과거 '섬노예' 문제와 관련해 SBS에 제보도 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섬노예' 현상이 지속되는 걸 보고, '일회성 보도나 관심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전라도 섬노예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8일자 사회면에 '현직 의사가 전라도 섬노예 관해 페북에 올린 글 보니... 네티즌 갑론을박'이라는 제목으로 의사 A씨가 전라도 섬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직 의사 A씨는 전라도 섬노예 제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페이스북의 글을 무단으로 편집하여 A씨가 섬노예 제도 옹호 의사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였습니다. 원글의 맥락은 보도와 정반대로 섬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의도적 왜곡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전라도 섬노예 논란 보도" 관련 알림

나. 내용 : ○○닷컴은 지난 2월 8일자 사회면 "전라도 섬노예 옹호?...네티즌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에서 ○○대병원에 근무중인 현직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섬노예 현상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섬노예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문화상대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으며, 해당 의사 역시 섬노예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4년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조선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 ]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2.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닷컴 - 『"전라도 섬노예 논란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5

신청인이 컴퓨터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수리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253 · 254, 2014서울조정255 · 256(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KBS-1TV, KBS 미디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3.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일부 컴퓨터 업체들이 간단한 고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싼 수리비를 청구하고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돌려주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사 사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취재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인인 컴퓨터 기사의 부탁으로 수리를 요청한 컴퓨터를 맡아 보관했을 뿐,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핵심부품 교체없이 비용을 받는 등의 컴퓨터 수리사기와는 무관한데도, 마치 컴퓨터 수리사기 업체인 것처럼 보도되어 심각한 신용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반론을 해당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고, 다시보기(VOD) 화면 중 신청인 관련부분을 삭제 · 편집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컴퓨터 수리 사기』**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7일자 20:00, KBS미디어 3월 7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멀쩡했던 컴퓨터가 수리 후에 더 망가진다?!

컴퓨터 사용 중 갑자기 멈춰버린 컴퓨터 때문에 답답했던 소비자들이 많다.

이때 도움을 요청 하는 곳은 바로 컴퓨터 수리 업체이다. 그런데 일부 컴퓨터 업체에서 간단한 고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얼마 전 컴퓨터 수리를 맡긴 김 모 씨는 70만원에 구입한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93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황당한 상황.

취재결과 교체했다는 부품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원래 부품 그대로였다. 또 다른 제보자 최 씨는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고장 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데이터를 따로 보관 후 부품을 고장 낸 후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며 엄청난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직접 컴퓨터 수리를 맡겨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7곳의 수리업체 중 무려 6곳에서 간단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을 요구했다. 한 컴퓨터 수리 업체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는 업계에선 마치 관행처럼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컴퓨터 수리 업체 측은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컴퓨터 수리 업체들! 그들이 순진한 소비자를 기망하는 교묘한 수법을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중략)

전문가가 검증한 정상적인 컴퓨터라고 밝힌 후.

▷ 나레이션 : 제작진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에 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해당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연결된 선을 뽑아 컴퓨터 켜더라도 운영체제가 작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나레이션 : 컴퓨터 수리기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고장입니다. 수리 기사가 컴퓨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는 멀쩡한 부품이 고장 났다고 말합니다.

▷ 수리기사 : 이거는 그래픽카드나 보드 자체가 죽은 거예요.

▷ 제작진 : 죽었다고요?

▷ 수리기사 : 그래픽카드 아니면 메인보드라는 기판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컴퓨터) 찍어봐야 되요.

▷ 제작진 : 회사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수리기사 : 해봐야 되는데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와요.

▷ 나레이션 : 수리 업체가 컴퓨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져간지 3일후 수리가 완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수리 업체 관계자 : "아~ 이거 돈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제작진 : 네네네~

▷ 수리 업체 관계자 : 150,000원 이라던데?

▷ 제작진 : 154,000원이요?

▷ 수리 업체 관계자 :네

▷ 수리 업체 관계자 : (전화 통화) 뭐 수리한거야 이거? 메인보드? 아~ 알았어~

▷ 나레이션 : 멀쩡한 메인보드를 수리했다는 수리기사 과연 교체가 된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 제작진 : 메인보드 교체한거라고요?

▷ 수리 업체 관계자 : 네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 나레이션 : 하지만 교체했다는 부품은 컴퓨터를 맡기기 전에 미리 촬영해둔 부품과 같았습니다.

▷ 제작진 : 이거 메인보드 교체한거 아닌데? 원래 저희 쓰던 메인보드 똑같은 건데?

▷ 나레이션 : 항의하자 수리기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 제작진 : (컴퓨터 수리기사와 통화 내용) 이 메인보드 저희가 원래 쓰던 거든요?

▷ 수리기사 :(제작진과 전화통화) 그러니까 고객님 그안에 수리팀에서 문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고객님

▷ 제작진 : 메인보드 교체라고 하셨는데 메인보드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확실하거든요?

▷ 수리기사 : 확실하세요? 그럼 가져가 주시고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께요.

▷ 나레이션 : 수리 기사는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약 15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업체가 방영되었던 부분의 영상파일을 보여주며 보도한다.

2. 피신청인은 KBS미디어(http://www.kbs.co.kr)의 홈페이지 소비자리포트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KBS1 소비자리포트 컴퓨터 수리 사기"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합니다.

2. **본문** : 본 방송이 지난 3월 7일 KBS1-TV 〈소비자리포트〉프로그램에서 "컴퓨터수리 사기"란 주제로 방영된 내용 중 '컴퓨터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체했다고 발뺌을 한다'는 내용으로 업체와 업체 관계자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 하였으나, 해당 업체와 관계자는 〈소비자리포트〉에서 컴퓨터 수리 사기란 주제와 내용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수리를 부탁한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해 주었던 것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을 정정합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방송 관련 알림

나. 본문 :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제하의 보도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고가의 수리비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례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컴퓨터 수리업체인 'ㅇㅇㅇ'는 방송된 '컴퓨터 수리 사기'와 무관한 업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5일(금)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KBS-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반론보도문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2014년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제하의 보도)의 다시보기(VOD) 화면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편집하여 게재한다. 또한, 제1항의 보도문의 다시보기(VOD) 화면은 4월 25일(금)까지 기간 중 24시간동안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2항, 제3항의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위 제2항,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 미디어 -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방송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일자 홈페이지 똑똑한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게시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6

중소기업청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판한 익명의 중소기업 색출에 혈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343 정정청구
신 청 인 중소기업청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손톱밑 가시' 제도가 개선효과는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익명으로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기사화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 해당 중소기업을 묻는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언론에 '손톱 밑 가시' 제도를 비판한 익명의 중소기업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때 관련 조합 이사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전화였으며, 해당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점검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본 것일 뿐, 제보자를 색출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칼럼과 관련해 중재부는 다소 과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담당자가 유관 기관에 전화한 사유에 한정하여 반론보도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서울경제 -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2면)
- **내 용 -** "기사에 나간 A업체가 어디입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자신들을 두고 쓴소리를 한 '중소기업 찾기'에 혈안이다. 중소기업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손톱 밑 가시'가 방치된 지 1년. 이것들이 목구멍의 가시가 될 만큼 커져 중소업계를 괴롭히고 있지만, 중기청의 대응은 미흡했다. 지난주 본지는 '중기에 목엣가시된 손톱 밑 가시' 기사에서 개선되지 않는 규제완화 건의사항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 인력난부터 비용부담, 관세까지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사안들이었다. 불만을 토로한 업체들은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해줘야 할 곳들이다. ← 관련기사 3월18일자 1 · 3면

하지만 담당부처인 중기청은 익명처리에 가려진 업체들을 서툴게 찾아 나섰다. 선한 의도일지라도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위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빨리 사안을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중앙회마저 중기청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어 버렸다. 취재 도중 "괜히 건의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던 한 중소기업 대표의 우려는 현실이 돼버렸다. 업계에선 "당연히 중소기업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중기청이 예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애로사항을 마음 편히 털어 놓겠냐"고 푸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최대 피해자는 공무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돈다. 규제타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신들이 동네북이 됐다는 것. 그러나 중기청의 유치한 대응을 보고 있으면 정작 이들이 감히 억울한 피해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수면 위로 떠오른 대다수의 규제는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나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간단히 풀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사안들도 결국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 "제대로 일 안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

조정신청취지

서울경제신문은 서울경제 A02 종합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6일자 A02 종합면에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 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청이 자신들을 두고 쓴소리를 한 익명 처리된 중소기업을 범죄자를 발본색원하듯 찾기에 혈안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본 신문 3월 18일자에서 보도한 규제는 중소기업청 소관 규제가 아닌 관계로 중소기업청이 규제문제를 제기한 기업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입막음을 할 이유도 없고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발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및 관련조합 담당자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익명의 기업인을 찾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이미 2013년 2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등에 송부한 자료에 규제내용, 건의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기청 입장에서는 익명의 업체를 발본색원하듯 찾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이 자신들을 두고 쓴소리를 한 익명의 중소기업을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마치 범죄자를 발본색원하듯 찾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중소기업청 관련 알림

나. 내용 : 본지는 지난 3월 26일자 A02면 "규제는 놔둔채 입틀어막는 중기청" 제하 기자의눈 칼럼에서 "중기청은 마치 범죄자를 발본색원하듯 익명 처리된 업체를 찾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때 관계조합 이사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였을 뿐, 제보자를 색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4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성장기업면 중하단에 보도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활자의 중간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서울경제** - 『**중소기업청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15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7

전 ○○○○○파크 센터장인 신청인으로 인해 소속 직원 20여명이 사직했으며, 신청인이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고 출장 보고서를 직원에게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4제주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석○○
피신청인 유한회사 제주의소리
중 재 부 제주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모 기관의 간부에 대해 소속 여직원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하고, 2~3차례 출장을 가면서 출장보고서는 직원이 쓰도록 하는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감사위원회가 관련 여직원의 경위서 등을 기초로 사실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관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조사된 바 없는데도, 도의원의 추측성 질의내용만을 믿고 정확한 확인 없이 보도하여 기관의 명예 및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해 여직원 술시중 및 출장보고서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하고 허위사실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제주의소리 - 『잦은 욕설, 술시중…, 제주○○ 간부 누구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뉴스면)

■ **내 용 -** ○○○○○파크 간부 직원의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은 '일탈'이 충격을 주고 있다.

툭하면 근무지 무단이탈에, 1년 중 근무일수의 30~40%를 국내·외 출장과 연가 등으로 쓰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항공료와 식비 등의 여비까지 부정하게 챙기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다.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비위' 행위를 적발해 ○○○○○파크에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2012년 5월1~2013년 9월 13일까지 추진업무 전반)한 결과,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22건을 적발해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250만 8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S씨의 비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S씨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팀 소속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 술시중을 시키는가 하면 일주일에 2~3차례 출장을 가면서 출장보고서는 부하 직원에게 쓰도록 해 물의를 빚은 의혹이 제기됐던 당사자다.

심지어 S씨가 부임한 후 1년 6개월 만에 팀 소속 직원 20여명이 줄줄이 사직을 한 사실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 S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지만 당일 출장일 때 전날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항공편을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출장기간 중 출장목적지를 벗어나기도 했다.

또 출장 목적지를 육지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로 맞춰 여름휴가를 지내는가 하면 출장에 따른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굳이 자신이 참가하지 않아도 될 단순 행사에도 9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 120여만원의 여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S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용역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연배상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특혜를 업체에 제공했다.

연구논문 및 특허출원과 관련해 소위 '장난'치기도 했다. 주 연구자의 이름을 논문 저자에서 빼버리는가 하면 오히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 올리기도 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감사위원회는 S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S씨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파크에도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파크는 처분요구가 있은 후 한달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중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 3가지 종류 밖에 없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주의소리(http://wwww.jejusori.net)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제주○○ 모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무근'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경제면에 지난 2014년 1월 27일자 "잦은 욕설, 술시중…, 제주○○ 간부 누구야?"라는 제목, 2014년 2월 17일자 "욕설에 술시중, 제주○○ 간부 사직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파크 모 센터장으로 인해 소속직원 20여명이 사직하였고, 해당 센터장은 소속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 시중을 시키고,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시켜서 소설로 쓰게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위 내용이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직한 직원들은 계약만료 및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고, 해당 당사자는 여직원 술자리 동석 지시 및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시켜서 소설로 쓰게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주의소리(http://wwww.jejusori.net)의 초기화면 및 '경제' 면의 초기화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72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며, 조정대상기사 2건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을 지체한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유

중재부는 신청인의 청구취지, 신청인의 주장 및 소명자료의 수준, 피신청인 매체의 성격과 영향력,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를 보도하게 된 경위,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그리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조정심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2014. 05. 09.

〈별 지〉

가. 제목 : 제주○○ 간부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1월 27일자 『잦은 욕설, 술시중..., 제주○○ 간부 누구야?』 제목의 기사 및 2014년 2월 17일자『'욕설에 술시중' 제주○○ 간부 사직서 제출』제목의 기사에서 "○○○○○파크 모 센터장이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 술시중을 시키고, 출장보고서를 부하 직원에게 쓰도록 한 의혹이 있으며, 부임후 소속직원 20여명이 사직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직원 술자리 동석 지시 및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대리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한 직원들 대부분은 계약만료 및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하였고, 해당 간부가 욕설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제주의소리 - 『제주○○ 간부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뉴스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8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폭력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958 · 959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협업마을 ○○○○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7. 0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집단이 사이비 종교집단이며, 신청인 집단의 대표는 사이비 교주로 염전 소유, 부동산 소유 및 교주가 아닌 경영자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 과거 구속될 당시 언론에 드러난 행태가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 및 유병언과 닮아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당시 신청인 집단 대표의 살인혐의 부분은 법원이 신빙성 있는 증언을 인정해주지 않아 무죄가 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여 소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와 교주로 소개된 신청인 단체의 대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신청인 단체는 종교단체가 아닌 협업마을임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 단체의 대표는 교주가 아니며, 살인혐의 부분도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무죄판결난 것인데도,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 듯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 및 유병언의 행태와 비교함으로써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당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정정보도 및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단체는 구원파 및 유병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제작 · 광고 · 방송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 널 A - 직언직설 프로그램 『○○동산』**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7일자)

■ 내 용

▷ 앵커 : 유병언씨의 도피 핵심인 신엄마 구속에도 불구하고 유씨 체포에 대한 희망은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치밀한 도주계획에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과거 속으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1996년 그리고 잠시 뒤에 IMF가 있었죠 그 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동산 사건인데요. 이 사건 수사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 ○○동산 사건을 직접 수사한 채정석 변호사, 그리고 최○○ 이단연구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재구성 해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바뀌었네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건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동아일보에 날 정도로 그렇게 큰일이었었는데 ○○동산 사건이 처음엔 어떻게 들어 온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 채○○ : 그니까 12월 초 11월 말 쯤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요.

▷ 앵커 : 여기는 지금 12월 12일인데 이거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거고.

▷ 채○○ : 이미 수사가 12월 8일날 저희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 앵커 : 압수수색을 했다 진정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채○○ : 네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 앵커 : 무슨 내용이었나요?

▷ 채○○ : 그니까 그 과거에 ○○동산 내에 신도로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당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금 체포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사망 의혹이 있고 또 자기들이 직접 목격해서 맞아 죽은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 앵커 : 이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6년 12월 1일에 무참히 2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건 그동안 이 종교 단체에서 폭행 행위가 있었다라는 신고 때문에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중략〉

▷ 앵커 :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앗 이럴수가' 유병언 일가와 ○○동산 사건의 닮은꼴만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죄로 판명이 났죠.

▷ 채○○ : 네 그런데 그게 살인사건이 무죄입니다.

▷ 앵커 :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 채○○ : 실제로 저희가 기소한 것은 죄명이 10가지 정도 됐어요.

▷ 앵커 : 사기도 있고.

▷ 채○○ : 사기, 횡령, 배임, 그 다음에 조세포탈 그 밖에 이제 뭐 심지어 폐기물 관리법 위반까지 기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안에 들어갔더니 법을 전혀 지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인건비도 안주고 그 외에 또 조세포탈 하기 위해서 모든 전표를 당에 매장해버리고 또 무슨 안에 들어가 봤더니 번호판이 없는 차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게 다 절취한 겁니다.

▷ 앵커 : 그게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가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신안에 염전이 있다 유병언 일가가 신안에 염전이 있는 건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 ○○동산도 신안에 염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채○○ : 염전이 있었습니다 염전이 있고 경남 산청에 또 대규모 땅을 매입했고 강원 홍천에 또 대규모 땅을 매입했고.

▷ 앵커 : 강원도에도 땅이 있고 산청에도.

▷ 채○○ : 경남 산청에도.

▷ 앵커 : 경남 산청에도 전라도 쪽에도.

▷ 채○○ : 신안에 염전과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앵커 : 간척지도 갖고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 채○○ : 네 맞습니다.

▷ 앵커 :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 최○○ : 뭐 우연히 신안에 염전이 같아졌겠지 신안을 특별히 한 건 아니고 이단들이 가지는 돈이 목적이니까 이단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때만 해도 더욱이나 지금도 그렇겠지만 부동산처럼 좋은 돈을 버는 데가 없으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래서 일치된 우연이겠죠.

〈중략〉

▷ 앵커 : 어유 그래서요 두 번째는 작은 왕국입니다. 여기는 ○○동산 그러니까 이 김○○씨가 ○○야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름 다 빼고 다 ○○야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이 ○○야는 ○○동산에 살고 유병언 회장 일가는 금수원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 채○○ :○○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는 순수한 영혼이고 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 앵커 : 죄가 없어요.

▷ 채○○ : 그래서 ○○는 죄를 져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뭐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 동산에 이천에 대월면에 있는 그 땅들은 ○○○라고도 하죠 신의 나라입니다 그게.

〈중략〉

▷ 앵커 : 세 번째는 이 얘기 제가 궁금했었는데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주가 아니라 경영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변호사님?

▷ 채○○ : 결국은 이제 사이비종교집단이 됐을 경우에 그 신도들 소위 탈출한 신도들 탈퇴한 신도들에 대해서 재산문제나 그 분들을 속였다는 사기 이런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협업 마을이고.

▷ 앵커 : 종교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같이 협업마을이다.

▷ 채○○ : 같이 식구처럼 경영하는 협업마을이다.

▷ 앵커 : 공동체다.

▷ 채○○ :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분들이

동일한 신앙, 또 동일한 종교행사를 하거든요 하면서 이건 자꾸 법정에서 부인을 합니다.

▷ 앵커 : 아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끝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처벌을 적게 받거나 무죄가 난 거 아닌가요?

▷ 최○○ : 저같은 사람에게는 기가 차다고 표현을 해도 표현이 부족한데 저같은 사람에게는 기가 차죠. 왜냐하면 동일한 성경에 근거하고 동일한 예배행위와 모든 또 제가 법조문을 그때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는데 그러나 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예배드리고 하는 행위를 다 인정해놓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종교학자의 기준도 없이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판결을 보고 이것이 그냥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도 악한 짓이지만 만일 다른 힘의 작용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은 저같은 사람이 볼 때 기가 차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 앵커 : 예 뭐 이단연구를 하시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근데 제가 궁금한데 왜 교주가 아니고 경영자면 처벌을 적게 받습니까?

〈중략〉

▷ 앵커 : 자 5번은 엄청난 부동산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내역을 보니까 아까 염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산에서.

▷ 채○○ : 지금 제가 그때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수사 결과를 보니까 차명계좌가 183명에 562 계좌가 그 때 발견됐었고요 그 다음에 67명 명의에 총 676건의 부동산이 그 때 발견됐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뭐 인감을 교주가 가지고 있어서 차명으로 빌려준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면서요.

▷ 채○○ :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재밌는 것은 보니까 17세 소녀의 이름으로.

▷ 앵커 : 17살 짜리.

▷ 채○○ : 21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무력자인 70대 할머니 명의로 51건 명의를 가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만 그 사람 이름이지 전혀 권리 행사도 못하고 또 차명 명의를 가진 사람이 그걸 부동산을 탈취하거나 할 수도 없게.

▷ 앵커 : 아예 장치를 다 해놨군요.

▷ 채○○ : 핵심세력이나 아니면 그런 무력자들 이름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략〉

▷ 앵커 :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채○○ : 그러니까 저 사건이 1심 재판을 하는 도중에 이 조세포탈을 저희가 기소를 했으니까 이 조세 범죄는 다툴게 많습니다. 그걸 다투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재판이라는 건 14개월이라는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가서 재판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3년 뒤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그때 이제 교주에 대한 실형 4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 앵커 : 여기 김○○씨는 실형 4년인데 내용은 뭡니까?

▷ 채○○ : 그때 보면 지금 말씀 한대로 횡령, 배임, 조세포탈.

▷ 앵커 : 그 부분만.

▷ 채○○ : 그 다음에 다른 폭력행위라던가 몇 가지 쭉 있습니다.

▷ 앵커 : 그걸 인정받아서 4년형을 살았고.

▷ 채○○ : 중요한 건 살인사건은 무죄가 났는데 그 무죄가 난 것도 저희가 두 가지를 기소했는데 하나는 최○○라고 어린 만 5세 아이를 죽였습니다.

▷ 앵커 : 암매장 됐죠.

▷ 채○○ : 암매장 된 게 아니라 걔는 이제 화장을 시켰어요. 화장을 시켰는데 때려서 죽였죠. 때려서 죽였는데 때려서 죽인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 앵커 : 때려서 죽인 것은 인정이 됐는데.

▷ 채○○ :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해치사가 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인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사건이 8년인가 9년 됐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죄를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무죄를 선고했고, ○○○이라고 교주의 장남하고 이제 불륜관계에 있고 그 여자 처녀의 경우는 때려서 죽였는데 시체를 암매장 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시체를 못 찾았고 또 시체를 묻었다고 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진술을 막 번복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시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재판주의니까 증거를 다 못 대면 무죄가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유병언 수사를 보면서 짧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 채○○ : 하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와 증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재판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산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때린 것을 본 목격자들, 사체를 묻었던 이런 목격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증언을 법원에서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 앵커 : 증언을 인정해주지 100% 인정해주지 않는다.

▷ 채○○ : 그러니까 뭐 일부 못 믿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가 선고됐고 사실은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 증인들도 허위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증언의 가치를 법원에서 좀 더 강력히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팀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도 구원파 사건도 그런데 언론과 국민의 여론의 지지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버텨주시면 아마 유병언도 검거하고 상당히 좋은 수사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교훈을 찾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형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7. 30.까지 각 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채널A 〈직언직설〉] 프로그램(재방송 포함)에서 화면 상단에는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란 기재의 내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의 첫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아래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별지1〉 목록 기재의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 방송, 홈페이지 게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동산과 김○○ 회장'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4. 6. 17.『직언직설』제325회에서 《그때 그 사건 '○○동산' 미스테리》 라는 제목으로 ○○동산은 사이비 종교집단이며 김○○는 사이비 교주인데 김○○가 신도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원파'와 '○○동산'은 여러 모로 닮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산은 순수한 생활공동체로서 출발하였고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의 신자들이었던 관계로 기독교 신앙적인 요소가 잔존하는 듯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는 퇴색하였고, 전통적인 종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배, 미사, 예불, 참선 등의 종교의식이나 외부인들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산은,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가로막는 어떠한 인적, 물적 장치도 없었고 탈퇴한 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한 일도 없었으며 김○○를 비롯한 소위 지도부가 호화롭다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어서 폐쇄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며 따라서 김○○를 교주로 한 사이비종교집단이라거나 김○○ 개인의 신성왕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산은 구성원들에게 재산헌납이나 외부인을 상대로 한 물품강매, 사기행각 등을 강요하지도 아니하였고, 종말론적인 사이비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살이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통한 구원만 강조하는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회장이 ○○동산의 구성원인 최모 군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강모 양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 양이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비종교집단이 아닌 협업마을 ○○동산과 그 지도자인 김○○ 회장을 '구원파' 및 유병언과 비교 보도하여 협업마을 ○○동산과 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본 방송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별지1 목록〉

1. ○○동산은 협업마을이 아닌 사이비 종교집단이고, 김○○은 그 교주라는 내용.
2. 김○○이 그 교주로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하였으며,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영과 육이 혼합하여 죽음없이 영생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3. 김○○이 ○○동산 구성원들에 대해 중노동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
4. 김○○이 최○○와 (또는) 강○○에게 폭행을 하여 그들을 죽이고 (또는) 강○○을 ○○동산에 매장하는 등 살인 및 사체유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5. 김○○이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살인혐의를 벗기 위해 당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
6. 위 각 내용을 추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본방송)
   2014년 6월 17일 방송된 [직언직설]프로그램 〈그때 그 사건 '○○동산' 미스테리〉 내용 중 ○○동산이 구원파와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A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7월 24일까지 채널A의 〈직언직설〉 프로그램 중간에 2회에 걸쳐 스크롤 자막으로 표시하되,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보여지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합의사항 이행과 함께 〈직언직설〉 홈페이지에 〈별지 1〉의 보도문을 제2항의 이행 직후 7일간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은 〈별지2〉 목록 기재의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 방송, 홈페이지 게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지1 채널A 홈페이지 게시용 알림문〉

가. 제목 : '○○동산과 김○○ 회장'에 대한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4. 6. 17.『직언직설』제325회에서 《그때 그 사건 '○○동산' 미스테리》 라는 제목으로 ○○동산은 사이비 종교집단이며 김○○는 사이비 교주인데 김○○가 신도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원파'와 '○○동산'은 여러모로 닮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산은 순수한 생활공동체로서 출발하였고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의 신자들이었던 관계로 기독교 신앙적인 요소가 잔존하는 듯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는 퇴색하였고, 전통적인 종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배, 미사, 예불, 참선 등의 종교의식이나 외부인들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산은,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가로막는 어떠한 인적, 물적 장치도 없었고 탈퇴한 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한 일도 없었으며 김○○를 비롯한 소위 지도부가 호화롭다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어서 폐쇄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며 따라서 김○○를 교주로 한

사이비종교집단 이라거나 김○○ 개인의 신성왕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산은 구성원들에게 재산헌납이나 외부인을 상대로 한 물품강매, 사기행각 등을 강요하지도 아니하였고, 종말론적인 사이비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살이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통한 구원만 강조하는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회장이 ○○동산의 구성원인 최 모 군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강 모 양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 양이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비종교집단이 아닌 협업마을 ○○동산과 그 지도자인 김○○ 회장을 '구원파' 및 유병언과 비교 보도하여 협업마을 ○○동산과 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본 방송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목록〉

1. ○○동산은 협업마을이 아닌 사이비 종교집단이고, 김○○는 그 교주라는 내용.
2. 김○○가 그 교주로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하였으며,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영과 육이 혼합하여 죽음 없이 영생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3. 김○○가 ○○동산 구성원들에 대해 중노동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
4. 김○○가 최○○와 (또는) 강○○에게 폭행을 하여 그들을 죽이고 (또는) 강○○을 ○○동산에 매장하는 등 살인 및 사체유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5. 김○○가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살인혐의를 벗기 위해 당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
6. 위 각 내용을 추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끝.

2014. 07.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채 널 A - 직언직설 프로그램 『'○○동산과 김○○ 회장'에 대한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9

모 여대 총장인 신청인이 교원 임용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인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관계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976 · 977, 2014서울조정978 · 979(병합) 각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여자대학교 외 4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iMBC)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4. 07.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대학교 총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친인척을 특별채용하는 등 인사비리가 있으며, 이사회에서 긴급 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자 관계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읍소하면서도 비리의혹을 학내문제화한 학생들을 상대로는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이사회 관계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권 행사 및 캠퍼스 설계변경, 물품구매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학생게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익명의 투서에 의존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실추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대학들 안녕하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0일자 23:15, iMBC 6월 10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 해설 : 5월 28일, 서울 S여대 앞 공동대책위원회 학생들의 기자회견

6월 6일 수원의 모 대학 앞 파면된 교수의 복직 서명운동

6월 9일 대구 시내에서 벌어진 모 대학 학생들의 가두집회.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겨눈 활시위의 끝에는 자신들이 다니는 '대학' 이 있었다. 과연 학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재단의 비리는 덮어버리고, 학생과의 소통은 거부하는 사립대학의 실태를 PD수첩이 취재했다.

학생을 고발한 학교. 작년, 서울S여대의 교직원과 학생들 앞으로 수신인을 알 수 없는 한 통의 탄원서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해당 대학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친인척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비리와 기념품 수의계약, 부당한 입시수당 수령등 총 35가지의 항목은 해당 대학교의 총장을 향해 있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긴급히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학생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다.

▷ S여자대학교 학생 : 비리 문제가 사실 등록금을 가지고 그런 거 한 거 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내가 고생하고 부모님이 고생하고 빚까지 내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돈으로 그런 걸 하나...

▷ 해설 : 그런데 지난 4월 진실규명운동에 앞장섰던 학생 6명은 경찰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한 건, 놀랍게도 학생들의 학교였다.

▷ S여자대학교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불이익 받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눈감고 귀 막고 입 닥치고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입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의 대학이란 말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략〉

▷ 해설 : 제작진은 한 사립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 관계자 : 2013년 1월 7일 ○○님은 총장실로 가시다 총장실에서 전화가 와서 ○○○과 나도 내려가다 총장이 울며 무릎 꿇고 빌다. 4월 남편 진급까지 기다려 주면 그 후 나가겠다고 한다.

▷ 해설 : 서울S여대의 심 총장 의류학과 교수에서 총무이사 법인 이사장을 거쳐 2007년 총장으로 부임한 그녀는 이 학교 최초의 연임총장이기도 합니다.

▷ 심 총장 : 물론 우수한 사람이 우리학교 들어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4년 동안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 해설 : 어머니 리더십을 내세우되 파격적인 행보의 젊은 교육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 그런데 늘 당당했던 총장이 학교 관계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겁니다.

▷ 해설 : 지금은 곤란하고 남편이 진급한 후에 학교를 나가겠다고 읍소했다는 거 도대체 총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전성관 피디 : 한 대학의 총장이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이사건과 관련한 한건의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 PD : 문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가족 일동 앞으로 도착한 익명의 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립대 비리 전횡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 해설 : 20여장에 달하는 투서는 총장을 향한 탄원이었습니다. 교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 부당한 교비 사용, 횡령, 배임 등의 35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투서는 S여대의 전 현직 관계자들에게 배달되 왔다고 합니다.

▷ S여대 현 교직원 : 그걸 딱 보는 순간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누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준 듯한 느낌. 제가 아는 부분이나 소문, 아는 범주 내에서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대부분이 사실이구나....〈중략〉

▷ 해설 : 거짓 투서라고 일축했다는 심총장. 그러나 진상조사가 거론되자 총장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 관계자 비망록 : 2012년 11월 8일 총장이 ○○실로 찾아와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울며 읍소. ○○○ 님은 그러게 잘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하셨다고. 사퇴는 할 수 없고, 4월 남편 진급까지 기다려 주면 그 후 나가겠다고 한다.

▷ 해설 : 학교 관계자 앞에서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정작 조사에는 불성실했다고 합니다. 〈중략〉

▷ 해설 : 어렵게 완성된 조사보고서 대형로펌과 회계사가 투입된 이 조사에서 총장의 비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총장이 부임하고 4년 동안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 그 중 일부는 채용비리가 확인된다는 결과입니다.

▷ 강○○ 교수 (S여대 교수, 당시 조사위원)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특채)76건. 이건 대단한거죠.
(PD수첩 측 : 전체 교원이 몇분정도 계시나요?) 지금 한 3백명이 좀 못되죠. (PD수첩 측 : 거의 4분의 1정도를) 전임교원만 그렇습니다. 비전임까지 하면 (특채) 105명이에요.

▷ 해설 :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다수는 심총장과 남편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지인관계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육군 장성인 심총장의 남편 S여대 윤 모 교수는 총장의 남편과 육사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총장은 학교의 학군단 운영에 관련한 교수를 뽑기 위해 특별 채용 후보로 윤교수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방학을 앞둔 이례적인 날짜에 굳이 특별채용을 고집한 임용과정. 조사보고는 총장의 개인적 의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PD 수첩”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imbc홈페이지(http://www.imbc.com/)의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

가. **제목 :** '○○여자대학교, 총장 비리 의혹 및 학생탄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0일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여자대학교 총장 심○○이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입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교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즉흥적으로 제2캠퍼스 설계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기교수의 강의를 임의로 박탈하고 예산집행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독단적인 교무행정을 일삼았으며, 납품업체 계약 관련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경 익명의 투서 이후 학교 관계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으면서도, 소위 '전문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거부하였으며, 게시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하였고, '○○ 평화나비'에 대하여 동아리의 승인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익명의 투서 이후 심○○ 총장이 학교 관계자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무릎을 꿇고 빈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원을 임용하였고,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수당만을 지급받았으며, 소관 위원회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제2캠퍼스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표○○ 교수는 심○○ 총장이 의도적으로 강의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단지 2014. 3. 1. 신규 임용예정인 ○○○○ 전공 교수의 발령이 이사회의 파행으로 지연되자, 일시적으로 해당 학과 전임교원으로 하여금 그 수업을 담당하도록 한 결과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은 위임전결 규정상 각 담당자의 단계별 결재를 거쳐 집행되므로 독단적인 교무행정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여자대학교는 납품업체와 시가보다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어 서류를 조작할 필요나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한 적도 없고, '○○ 평화나비'에 대하여 동아리 승인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상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심 총장이 '전문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일부 거부하였던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이사회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고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임을 밝혀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의 보도문을 MBC-TV 〈PD수첩〉 프로그램의 말미에 방송하되, [별지]의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아이엠비씨 'PD수첩'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첫 화면 우측 '제보 및 공지사항'란에 [별지] 기재 보도문 제목을 게시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2014. 08. 19.

〈별 지〉

가. 제목 : '○○여대 총장 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0일 〈대학들 안녕하십니까?〉 제하의 보도에서 ○○여대 총장이 비리 의혹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받은 후 학교 관계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재연장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대 측은 "총장이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무릎을 꿇고 빈 사실이 없고, 인사권 행사, 제2캠퍼스 설계변경, 물품구매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학생 게시물에 대해 사전검열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MBC-TV - PD수첩 『'○○여대 총장 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6일자, iMBC 9월 1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10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전북조정24 · 25, 2014전북조정27 · 28(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1. 송○○ 외 25인, 2. 김○○ 외 40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중 재 부	전북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21. (2014전북조정24 · 25) 2014. 08. 25. (2014전북조정27 ·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전주 모 택시회사 전 업주가 가지고 있던 일계표(금전출납부)를 인용 보도하면서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으며, 유착 배경에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비율에서 경찰관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A경찰서 및 B경찰서 교통조사 및 관리 부서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은 택시회사 업주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차량사고 시 특정 회사 소속 택시의 책임비율을 줄여주는 등의 사실은 없었고, 전북경찰청 감사 결과에서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보도로 교통계 경찰관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정보도 및 도합 13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성 후속보도 게재 및 포털 등의 기사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노컷뉴스 -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0일자 사회면)

■ **내 용** - 개인택시 취득을 미끼로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경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업주의 금품갈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의 한 택시회사의 기사 A씨는 전 대표 B씨가 경찰관, 택시공제조합 직원들과 모임을 가져왔으며, 수시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몰고 와 사무실에 들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 C씨는 "경찰관들이 야유회를 가거나 모임을 할 때 수시로 다녀갔으며 그때마다 대표 B씨가 '한 50만원 챙겨야겠네'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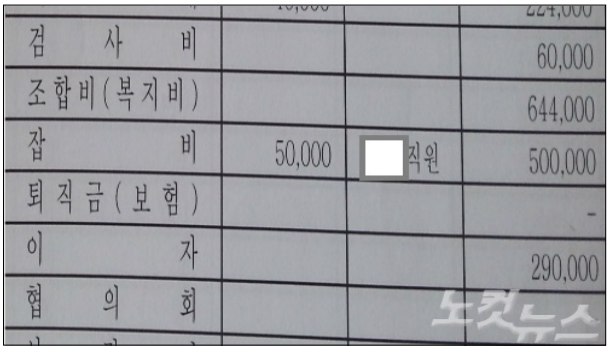

검 사 비			60,000
조합비(복지비)			644,000
잡 비	50,000	○○직원	500,000
퇴직금(보험)			-
이 자			290,000
협 의 회			

노컷뉴스

(사진 1)

특히 전북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금전출납부인 '일계표'에는 2013년 8월 26일자로 '○○직원 500,000원'이 잡비 명목으로 잡혀있었고, (사진 1)

2013년 5월 31일자에도 '○○ 100,000원'이 잡비 항목에 적혀 있었다.(사진 2)

이와 관련해 이 회사 기사들은 "전 대표 B씨와 경찰과의 유착을 방증하는 것이며 전북 CBS가 입수한 문건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전체 일계표를 놓고볼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유착 의혹의 배경에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책임비율 등에서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밤 10시쯤, 전주시 효자동 전일고 인근 4거리에서 발생한 동료기사 사고현장에 나가보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전 대표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여기 또 대박났어!"라는 대화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 택시회사 대표 B씨는 '○○직원', '○○직원' 등으로 일계표에 적혀있는 것은 경찰관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불특정 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이며 유착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경조사 명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굳이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 비용을, 일부 경찰관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직원'이니 '○○직원'이란 단어를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

이와 관련해 B씨는 "지인들이 사는 지역이 ○○구 쪽이면 ○○직원으로, ○○구 쪽이면 ○○직원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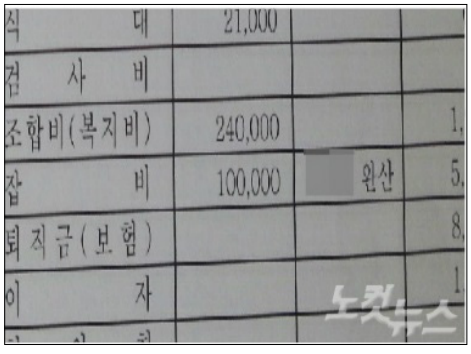

식 대	21,000		
검 사 비			
조합비(복지비)	240,000		1.
잡 비	100,000	원산	5.
퇴직금(보험)			8.
이 자			1.

(사진 2)

B씨는 또 "개인택시를 미끼로 기사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빼앗기 위해 현 사장을 중심으로 일부 기사들이 작당을 하고서 음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택시를 둘러싼 택시업계 비리가 경찰 유착으로까지 의혹의 파장을 넓히고 있어 이들 사이의 진실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신청취지1

〈2014 전북조정 24 · 25〉

1.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택시업주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기사가 전주완산 경찰서 관할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비율 등에서 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들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 그들과 수시로 만나며 야유회나 모임을 할 때마다 돈을 주었고, 사고현장에서부터 조사 경찰관이 택시업주와 유착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일계표상 돈이 지급된 사용처에 '○○직원' 또는 '○○'이라 기재된 것을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과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위 경찰관들은 책임비율에 관여치 않고 해당 보험회사끼리 조정하며, 또한 택시업주와 모임을 갖거나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야유회를 간 적이 없을 뿐더러 일절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사고현장은 물론, 일계표도 위 경찰관들과 아무 관련없는 등 택시업주와 전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들 사이에 아무런 유착관계가 없어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2,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취지2

〈2014 전북조정 27・28〉

1.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개인택시 취득을 미끼로 택시 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일계표를 근거로 택시업주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비율 등에서 경찰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 경찰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경찰관들이 야유회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돈을 준 것처럼 보도하면서 전 택시회사 대표의 말을 인용하여 마치 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과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관은 책임비율에 일체 관여치 않고 해당 보험회사끼리 조정하며, 또한 택시업주는 경찰관과 모임을 갖거나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야유회를 간 적이 없을뿐더러 일체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일계표도 경찰관과 관련 없는 등 택시업주와 경찰관 사이에 아무런 유착관계가 없어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택시업주 · 전북 경찰 연루 의혹 '사실 무근'으로 확인돼

나. 내용 : 전주 소재 모 법인택시 업주와 경찰이 유착한 의혹이 있어 전북경찰청에서감찰에 착수했다는 CBS 보도와 관련해 감찰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유회비 명목으로 의혹이 제기된 2013년 8월 26일자 잡비 지출액 오십만원은 일계표상 자체로 오만원일 뿐이며, 누계가 오십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법적으로 교통사고시 경찰이 민사 책임비율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 보험회사끼리 조정하고, 전주 ○○경찰서 및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 경찰관들은 책임비율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택시회사 전·현 업주 및 2013년 당시 교통조사 부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택시 전 업주가 경찰관들과 모임을 갖거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작년 7월 신호위반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부분과 관련해 조사 결과 당사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확인한 사건으로 경찰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업주 A씨 조사 결과, 해당 일계표의 '○○ 또는 ○○ 직원' 표현은 전 업주의 지인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출금전표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 업주 역시 이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을 거주지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경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경찰관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 피신청인은 전재 계약관계에 있는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란에 게재되어 있는 2건의 기사(「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및 「'제식구 감싸기?'…택시업주·경찰 연루 의혹 감찰 '논란'」제하의 기사)를 2014년 9월 12일 12시까지 각 포털사이트 뉴스란 검색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1항의 기사가 같은 시간까지 노컷뉴스 전북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 합의서를 빌어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한다.
〈저희 전북CBS 노컷뉴스는 취재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보도로 ○○경찰서 및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관리)계 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상기 합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다른 청구를 전부 취하한다.

2014. 09.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노컷뉴스 - 『택시업주·전북 경찰 연루 의혹 '사실 무근'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1일자 지역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1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328 정정청구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경제
중 재 부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특집기획기사-네덜란드 편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 4강 진출국이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축구팬인 신청인은 네덜란드는 2006년 독일 월드컵 4강에 들지 못했으며, 당시 네덜란드가 아닌 독일이 4강에 올랐는데도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조정신청에 앞서 피신청인 측에 정정을 요청했는데도 1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않고 방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에 관한 보도가 아니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 **매일경제 - 『2014 Brasil -네덜란드』**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33면)

■ **내 용** - 2002 한·일월드컵에서는 한국, 터키가 이변의 주인공이었고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가 쟁쟁한 남미 라이벌을 따돌리고 4강에 진출했다. 1998 프랑스월드컵에서는 당시 득점왕을 차지한 다보르 슈케르를 앞세운 크로아티아가 8강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라 기존 강호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하며 '오를 팀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남미 국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브라질 이탈리아가 4강에 오른 1978 아르헨티나월드컵 이상의 4강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3·4위전도 결승전에 맞먹는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매일경제 스포츠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아르헨 VS 네덜란드"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목** : '2006 독일월드컵 4강 진출 국가'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7일자 A33면에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하며 '오를 팀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남미 국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이 4강에 진출"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매일경제 2014. 7. 7.자 33면의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관련 기사 중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다는 내용과 관련, 2006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국가는 '네덜란드'가 아닌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오보로 인해 기억력의 혼란 및 정신적 피해 등을 받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9. 12.

사 례 12

신청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무료신문 메트로가 휴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347 · 1348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셜뉴스 (위키트리)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모 대학강사가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편집· 인용 하면서 지난 5월 1일부터 오프라인 발행을 잠정 중단한 세계 최대의 무료신문인 메트로가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발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강사의 원고에는 메트로가 휴간 중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실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최소 24페이지 위주의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고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해 즉각적으로 기사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이 해당 강사의 원고를 전재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첨언한 점, 광고주 등이 휴간한 것으로 인식해 광고영업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사삭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단순과실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영업상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할 것을 권유하자, 조정대상 기사를 편집했던 디자인 업체가 피신청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위키트리 -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미디어면)

■ **내 용** - 19세기 말 영화가 등장하여 영상매체 시대를 연 이후 라디오가 영화를,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다시 케이블 텔레비전이 지상파 텔레비전을 주도적인 매체의 지위에서 밀어내는데 걸린 기간은 대략 3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의 등장 이후 새로운 물결이 주도 매체를 밀어내는 시기는 더 짧아졌습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수년만에 시장을 선도하는 매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무료신문 메트로가 창간되면서, 절정기였던 2008년까지 10여 종 이상의 무료신문이 등장했습니다.

종합일간신문이었던 메트로와 포커스, AM7, 시티, 노컷뉴스에서부터 스포츠일간, 경제일간, 남성주간지, 지역일간에 이르기까지 무료신문은 인쇄매체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발행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신문산업 전체의 위기와 더불어 무료신문은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AM7과 시티가 휴간했고, 2014년 4월 말에는 메트로와 함께 발행부수 30만 부의 업계 1, 2위를 다투던 포커스마저 휴간에 들어갔다. 이제는 메트로와 데일리노컷뉴스가 무료신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료신문은 2002년 등장 이후 유료로 공급되는 종합일간신문을 속보경쟁 시장에서 밀어내고, 스포츠일간을 스포츠기사와 신문만화 시장에서 밀어냈습니다.

무료신문에 밀린 종합일간신문은 속보나 통신기사 위주의 편집에서 탈피하여 기획기사와 의견기사 중심으로 편집을 재편했고, 스포츠일간은 성인대상 주간신문과 성인잡지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스포츠일간에 밀린 성인잡지는 다시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사생활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폭로성 인물기사(celebrity)에 집중했죠. 가히 게르만족을 밀어내고 우크라이나 평원을 점령한 훈족의 기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료일간은 단지 경쟁자를 시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료신문의 12년 명암

무료신문이 기존의 유료 신문독자 시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대다수의 새로운 독자는 신문을 읽지 않던 20~30대였거나, 점차 포털사이트에 실리는 통신기사와 차이가

없는 유료신문을 떠났던 독자였습니다.

무료신문이 등장하기 이전에 20대 젊은 독자에게 신문 읽기는 입사 준비나 논술 대비를 위한 '고달픈 노동'의 하나였죠.

그러나 단문과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기사를 제공하는 무료신문은 신문 읽기를 '즐거운 일상'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특히 유료신문의 주의주장과 은유가 포함된 뒤틀린 신문문장은 독자에게 '까다로운 읽기'를 요구하지만, 무료 신문은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신문 읽기를 '3분간의 여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와 여가, 여행 등 라이프스 타일의 기사는 물론, 까다로운 시사정보와 사회적 이슈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함으로써 젊은 독자에게 '신문 읽기의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료신문은 젊은 기자를 채용하여 젊은 독자에게 맞는 기사 유형과 글쓰기를 개발했으며, 기존의 대판 중심의 획일적인 신문 편집을 타블로이드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으며, 신문을 '읽는 매체'에서 디자인과 그래픽을 바탕으로 '보는 매체'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바일로 옮겨간 젊은 독자들

AM7에 이어서 포커스까지 휴간에 돌입한 것은 부채 감소를 위해 발행부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무료신문 매출액은 전년대비 -35.1%였으며, 당기순이익은 -70.73%였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 발행됐던 포커스와 메트로의 2012년도 매출액은 2008년도와 비교하여 60.76% 수준인 494억 원이었습니다.

무료신문은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판매수익이 없고 모두 광고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독자들이 신문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전체 신문 광고 시장의 5~6%대를 차지하던 무료신문의 광고수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신문인쇄비와 가두 배포 및 거치대 운영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신문 광고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매체 광고 시장에서 신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까지 41.3%로 40%대를 유지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5년 23.7%로 2011년에는 15.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신문 인쇄용지의 가격 인상도 한몫을 했는데요.

신문고지(읽고서 수거하여 재생용지 제작에 재활용되는 종이)는 1t당 10만원대에 거래되지만, 신문 인쇄용지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지회사들은 1t당 70~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지 가격과 용지 가격에 차이가 큰 것은 신문 발행부수가 줄어들어서 고지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신문 인쇄용지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료신문의 독자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매체 환경 변화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3년 발행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텔레비전(170.7분→176.9분)과 인터넷(108.6분→116.3분)은 증가한 반면, 종이신문(15.7분→12.0분)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 시간에서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동형 인터넷(41.4분→53.7분)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용 PC를 비롯한 고정형 인터넷(67.2분→62.6분) 이용은 감소했습니다.

신문기사의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복수응답),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 수용자가 5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19~29세의 85.6%, 30대의 79.2%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문기사를 이용했습니다.

젊은 층의 높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문기사 구독은 무료신문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략〉

위 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하는 신문과 방송 7월호에 실린 한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심○○ 강사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위키트리(http://www.wikitree.co.kr)의 홈페이지 미디어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메트로 – 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미디어면 초기화면에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라는 제목으로 메트로신문이 휴간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트로신문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신문은 현재까지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미디어면 초기화면에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라는 제목으로 메트로신문이 휴간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트로신문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4년 9월 18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위키트리(www.wikitree.co.kr)의 미디어면의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기사생산자인 (주)○○○○연구소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4년 9월 22일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기사생산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9.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위키트리** -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 미디어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3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사 건	2014서울중재11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0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식품의약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최근 일간지 등에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제품 및 제조회사명을 적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판매자의 주문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불과하며, 따라서 해당 제품을 광고하거나 영업할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해당 제품을 과장광고한 혐의로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2014서울조정 1290)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보건·복지면)

■ **내　　용** -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2개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간지 등에 이같이 허위·과대 광고한 한국○○○○○의 '○○○골드'와 ○○○의 '정○○ ○○○○ 플러스'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골드는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정○○ ○○○○ 플러스도 뼈 성장과 골다공증 치료·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캔디류·기타가공품)"이라며 "이들 제품의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나 일간지 등에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의 홈페이지(http://news.khan.co.kr)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인터넷 경향신문은 지난 8월 1일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간지 등에 이같이 허위·과대 광고한 한국○○○○○의 '○○○골드'와 ○○○의 '정○○ ○○○○ 플러스'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과대 광고로 적발된 적도 조사받은 적도 없고 '정○○ ○○○○ 플러스' 제품을 OEM방식으로 제조한 업체일 뿐 '정○○의 ○○○○' 허위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재대상기사(「'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의 본문 하단에 [별지 1]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인터넷 경향신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14. 8. 1. 〈인터넷 경향신문〉에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의 '정○○ ○○○○ 플러스' 등 2개 제품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 ○○○○ 플러스'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에 의하여 이를 생산하였을 뿐 그 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나. 기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2014서울조정1290).

라. 당사자들은 이 사건 조정절차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전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14. 9. 4.).

2. 판단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보도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반식품인 이 사건 제품을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 · 과대 광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적발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처의 보도자료 및 식약처 담당자를 통한 확인과 이 사건 신청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판매자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 또는 광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식약처에 적발되거나 조사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앞의 1.의 나. 보도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9. 05.

〈별 지〉

1. **제목** : '키 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지는 지난 8월 1일 「'키 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제하의 기사에서 식약처가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 · 과대 광고한 ○○○의 '정○○ ○○○○ 플러스' 제품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굿○○는 해당 제품을 OEM 방식으로 제조한 업체일 뿐, '정○○ ○○○○ 플러스' 광고와 관련해 적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와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른 보도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다 음** - **『키 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사회면)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14

육군 군 검찰이 윤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24, 2014서울조정1425(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육군본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육군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증거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해 동일한 출처의 동일한 날짜, 같은 번호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록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군 검찰이 수사기록 중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치가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증거서류 제출과 부검의 증인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와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에 등재된 문서번호는 송치번호로서 동일한 사건에는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피신청인 측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다소 부정확한 취재가 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경향신문 -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3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13일자 국방면)

■ **내 용** -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헌병대의 최초 사건보고 등 초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서류 12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2일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사기록 중 헌병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기록목록'에 등재된 상당수 문서들이 증거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빠진 기록들은 ○○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의견서' '발생보고' '수사보고'를 비롯해 '사망자 발생보고 및 시체처리지휘요청서' 등이다. 육군중앙수사단 제○지구수사대가 작성한 '상해치사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와 윤 일병 소속 부대인 ○○○포병대대의 '사건상황보고 (최초)'도 빠졌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사단 헌병대의 '검시사진' '사고현장약도'도 빠졌지만 목록에 2번 중복 게재돼 있었다. 첫 번째는 없었지만 두 번째 등재 쪽수에는 해당 문서가 있었다. 다만 같은 문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최초 군 헌병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기록목록' 문서. 최초 사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각종 보고서 제목 옆에 체크(V) 표시 혹은 동그라미(O) 표시가 돼 있고 이 문서들은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최초 윤 일병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현재 윤 일병 사망 원인을 두고 군에서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라고 밝힌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구타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일병 사망 원인은 주요 가해자인 이모 병장의 살인죄 적용 여부,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자료들이 무더기로 빠진 것은 군 검찰이 외부로 유출되면 곤란한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증거자료는 재판부에 제출되면 변호인 등의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빠진 자료 제목 위에는 체크(V) 표시 혹은 동그라미(O) 표시 등이 돼 있기도 했다.

특히 빠진 자료 중에는 ○○사단 헌병대가 사건 다음날인 4월7일 늦은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 순으로 보고한 15쪽 분량의 문서로 추정되는 '조사결과보고'도 있다. 이 보고서는 '가래침 핥기' 같은 엽기적 가혹행위 등 사건 전모가

들어 있어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 대처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 8일 오전 7시10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1쪽짜리 서면보고를 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나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사건 전모를 파악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며 실무자에게 부실보고와 대처 책임만을 물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군 관련 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이런 기록들은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 사건에서 모두 재판부에 제출된다"며 "빠진 기록들이 하나같이 최초 윤 일병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축소·은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민간으로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에 올린 사건보고 같은 걸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일부 기록들을 뒤늦게 제출했다.

공판조서에 따르면 군은 기소 후 첫 번째 공판에서 부검 감정서에 딸린 부검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 가해자 변호사가 두 번째 공판에서 군 검찰이 제출한 부검 감정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뒤늦게 부검 사진을 제출하고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은 세 번째 공판에 처음 제출했다. 의무기록에는 구타에 의한 과다출혈과 쇼크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수혈과 대량의 항생제 투여 내용이 있었다.

최초 윤 일병 사건 발생 당시 군의 설명도 의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후 7시쯤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기도폐색에 의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각에는 어떤 의료진도 '기도폐색'을 언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성모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헌병대 등의 검시조서에도 사인이 '미상' 혹은 '불상'으로 기록돼 있다. '기도폐색'을 처음 언급한 것은 5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통보한 부검 감정서였다.

부검의는 감정서에서 기도폐색 추정 결론을 내면서 '민간병원 의사에 따르면 최초 사망자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썼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최초 기도폐색 설명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뇌부종이 기록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군 수사기관이나 지휘부에서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수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정대상보도2

■ **경향신문 -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2일자 국방면)

■ **내 용 -**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 제출 시 누락시킨 주요 서류들(경향신문 8월 13일자 3면 보도)에서 기록 조작 의혹과 초동수사 실패가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사단 헌병대는 4월 15일 수사 결과 보고에서 "연천의료원 의사에 따르면 윤 일병 도착 당시 맥박 및 심장은 뛰고 있었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고 썼다. 다른 곳은 멀쩡했으나 '기도폐쇄'만 문제였다고 설명한 셈이다.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한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왼쪽 사진)와 3차 공판에서부터 제출된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오른쪽). 두 서류는 동일한 28사단 헌병대가 같은 날짜, 같은 서류번호(사진 속 실선 네모)로 작성했음에도 전혀 다른 내용(점선 네모)을 담고 있어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시 윤 일병 의무기록에는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고 돼있다. 4월 8일 발급된 이 의무기록은 헌병대가 4월 15일 군 검찰에 송치 시 넘긴 서류목록에서는 빠져 있다. 군 검찰도 이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내놓지 않다가 3차 공판에서 처음 제출했다. 갑작스러운 기록의 출처에 대해 군 당국은 헌병대가 5월 13일 '제14-27호' 서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이미 제출된 같은 출처의 같은 날짜, 같은 번호의 서류가 존재했다. 수사기록상 5월 13일 '제14-27호'는 의무기록과는 전혀 다른 부검 감정서 추송 서류다. 서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은 유족 대상 수사설명회(4월 8일)에서 사건 당일인 4월 6일 오후 5시 25분 헌병 수사관이 윤 일병이 있는 국군양주병원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때 구타 흔적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헌병대는 오후 8시 35분 "내일 조사하겠다"며 철수했다. 사고 당일 육군본부 수사기관 관계자들 역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단순 질식사'라는 보고에 별 조치 없이 해산했다. 폭행 사실은 한 병사 신고로 알려졌고, 헌병대의 본격 수사는 사건 이튿날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4월 7일 오후 1시 40분에야 헌병대로 임의동행됐다. 이 틈에 증거인멸이 시도됐다. 피해자를 폭행한 52㎝ 크기 빗자루와 전기스탠드는 4월 11일 야산과 쓰레기장에서 수거됐다.

군 수사당국은 이처럼 초기수사 실패가 드러나자 적어도 윤 일병 '질식사'는 제대로 파악

했다고 면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4월 7일까지 체포영장 등에는 '뇌부종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기록만 있었다. 뇌부종은 기도폐색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심정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병대는 8일 아침 군 검찰에 윤 일병 시신 처리지휘를 요청하면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추정"이라 썼다. 부검 전에 사인을 결론낸 셈이다.

조정신청취지

1. 신청인은 "경향신문" 정치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본문활자와 같게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 중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 (http://www.khan.co.kr/)의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1〉

가. 제목 :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지난 8월 13일자 정치면에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육군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증거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 검찰에서 수사기록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에 입각하여 증거가치가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증거로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해당 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공찬절차 상 증거서류 제출과 부검의 증인신청 역시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적시에 진행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육군 ○○사단 보통검찰부는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군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제출했으며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 및 법률적 검토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여 육군본부 법무실 및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확한 보도를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2〉

가. **제목** :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지난 8월 22일자 정치면에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라는 제목으로 육군 ○○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해 같은 출처의 같은 날짜, 같은 번호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록 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게재된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와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는 같은 날('14. 5. 13.) 오전, 오후에 각 추송된 다른 서류로서 추송 서류 전건이 동일한 사건(윤 일병 사망 사건)의 관련 서류임에 따라 송치번호(송치번호는 사건번호와 같이 헌병에서 군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번호이며 사건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 인해 같은 날짜, 같은 송치번호가 기재된 것일 뿐 해당기사와 같은 증거 서류 조작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여 육군본부 법무실 및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확한 보도를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윤 일병 사망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지난 2014년 8월 13일자 정치면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및 2014년 8월 22일자 정치면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 검찰이 수사기록 중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치가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증거서류 제출과 부검의 증인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또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와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에 등재된 문서번호는 송치번호로서 동일한 사건에는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9월 24일(수)(토, 일요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4년 9월 23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9.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3일자 종합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23일자 종합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5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69 · 1470~2014서울조정1493 · 1494 각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 외 16개사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재심청구소송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발각돼 법원이 신청인을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무고발했으며, 신청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014. 6. 12. '신청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추후보도와 함께 언론사마다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 추후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다만, 연합뉴스와 뉴스1은 무죄판결 직후 관련 내용을 후속보도했다는 점에서 청구이익이 없어 기각결정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소송당사자가 법원 재심청구 과정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언론들이 법원의 공신력있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1

■ **온라인 중앙일보 -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이인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는 올해 4월 황당한 사건을 맡게 됐다. 채모(63)씨가 "2009년 3월 선고한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문이 집에 도착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채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세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연히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1억 3000만원은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채씨는 "부가세 1억 6000여만원 중 1억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집에 도착한 판결문에는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잘못 적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채씨는 법원 직원이 발급해 준 것이라며 '1억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하려고 했다. 그러다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판사들이 평소 쓰는 문체나 글자체가 아니었다. 한눈에 봐도 티가 났다. 띄어쓰기·맞춤법 같은 기본 양식도 틀린 부분이 많았다. 판결문 끝에 적힌 재판부의 서명도 잘못 적혀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판결문이 가짜임이 속속 드러났다. 채씨가 법원 직원에게 발급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문제의 판결문은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채씨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원 기자실에 찾아와 가짜 판결문을 소개하며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다.

결국 법원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며 "판결문을 위조해 재판의 신뢰를 훼손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2

■ **쿠키뉴스 - 『위조한 판결문 증거로 제출 '간 부은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간 큰 원고가 법원에 적발됐다

2009년 3월 채모(53)씨는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1억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3000여만원에 대한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채씨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판결문이 가짜라며 지난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판결 당시 재판장이 1억 6000여만원 중 1억 2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직후 법원 직원이 건넨 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취소 금액이 3000여만원으로 조작돼 있었다는 것이다.

채씨는 재심 재판 중 선고 직후 법원 직원에게 받았다는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은 기재방식, 글자체, 내용, 맞춤법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심지어 법원 직원이 "판결문을 출력해 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자, 채씨는 이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법원 내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해당 판결문이 등록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형식적·내용적 오류가 다수 존재한다"며 소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채씨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직무 고발할 방침이다.

조정대상보도3

■ **인터넷 내일신문 - 『세금 더 돌려받으려고 판결문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세금소송을 벌이던 한 60대 남성이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가짜 판결문을 만들었다가 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채 모(63)씨는 지난 2009년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채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된 세금 1억 60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채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확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채씨는 지난해 10월 이 판결내용과 전혀 다른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에서 채씨는 "1심 선고공판 때 재판장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1억 13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선고 다음날 민원실 직원에게 받은 판결문에도 이렇게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씨가 민원실 직원에게 받았다는 판결문에는 부가가치세 취소금액이 3000만원이 아닌 1억 1300여만원으로 돼 있었다.

그는 "선고공판이 있은 지 며칠 후 송달된 판결문에는 '3000만원만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 판결문은 원고 측 변호인과 피고, 법원이 공모해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달리 위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형식적·내용적 오류가 존재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씨가 위조한 판결문은 법관들만 사용하는 판결서체가 아니었고 부가가치세액 계산표가 있어야 할 별지도 빠져 있었다. 게다가 주문이나 이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원실 직원이 그 판결문을 줬다고 우기며 "그러한 판결문을 출력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한 사안이어서 그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4

■ **인터넷 MBN - 『판결문 위조해 재심청구한 60대 덜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 가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채 모 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는 한편, 채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1억 6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처분받은 채씨는 지난해 10월 부가가치세 일부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위조, 증거로 제출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정대상보도5

■ **인터넷 YTN - 『판결문 위조해 법원 속이려다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세금 관련 재판에서 이기고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재심을 청구한 50대가 판결문 위조 사실이 발각돼 고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53살 A 씨는 지난 2009년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3천만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나자 재판장이 1억 2천만원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판결문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보도6

■ **뉴시스 - 『'위조 판결문 제출' 간 큰 소송 당사자 덜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부가가치세 소송 당사자가 위조 판결문을 증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가 재판부에 발각돼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모(63)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심청구 소송에서 "재소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조 판결문을 제출하는 등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채씨는 2009년 2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 중 약 3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채씨는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가 3000만원이 아닌 1억 13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채씨는 "송달된 판결문은 피고 측과 법원이 공모해 위조한 것이고, 자신이 선고 직후 법원 직원 A씨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판결문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위조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아가 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자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사실 조차 없고 명백한 형식적, 내용적 오류가 다수 존재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A씨의 증언 내용이 일치하는 점을 볼 때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법원 측은 채씨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한 사안이어서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7

■ **아시아경제 닷컴 - 『법원, 위조판결문 제출한 소송당사자 '직무고발'하기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행정소송 당사자가 위조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들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다음주중 당사자 A씨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할 예정이다.

법원은 A씨가 '해당 판결문을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법원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A씨가 '처분받은 부가가치세 액수를 낮춰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위조됐다"고 결론짓고 소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1억 61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재판장이 "3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을 때도 판결주문이 이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히려 진짜 판결문에 대해 "법원과 구청, 자신의 변호인이 공모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위조된 것이라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결 확정 후 30일을 훨씬 넘겨 제기한 소송이므로 제소가능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형식적·내용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서체'는 법관이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에만 지원되는 글씨체인데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다른 글씨체로 작성된 점, 일부 내용이나 표현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재판부 서명란의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민원실 등 직원은 법관이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A씨에게 판결문을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는 법원직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보도8

■ **e머니투데이 - 『판결문 위조해 증거제출한 60대, 직무고발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 위조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60대가 직무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모씨(63)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는 한편 채씨를 직무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은 법원전산시스템 내에 등록되지 않는 판결문"이라며 "그 내용이나 기재방식에 오류가 많아 누군가가 급조한 흔적이 역력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이 사용하는 '판결서체'가 아닌데다 민원실 직원 역시 당시 판결문을 출력해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문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의 신뢰를 훼손한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채씨를 직무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처분 받은 채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2009년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채씨는 지난해 10월 1억 13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며 법원에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발급받은 판결문과 달리 변호인에게 송달된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채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민원실 직원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할 예정이었으나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에 위조 흔적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했다.

조정대상보도9

■ **뉴스1 - 『위조 판결문 제시해 재심 청구하다 덜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위조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의 원고를 직무고발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3000여만원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면서 1억 1300여만원의 취소를 명하는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해 재판부를 속이려 한 채모씨(63)의 재심을 각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현재 채씨에 대한 직무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씨가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에서 위조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판결문에 쓰이는 글씨체가 사용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문장이 사용됐다"고 위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채씨는 재판정에서 "법원직원 권모씨로부터 판결문을 출력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씨에게 판결문을 출력해준 적이 없다는 권씨의 주장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채씨를 직무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씨는 권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009년 2월 제2기 부가가치세 1억 6000여억원의 부가처분 중 1억 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같은 해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했다가 법원에 의해 발각됐다.

조정대상보도10

■ **인터넷 서울경제 -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 큰 소송 당사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한 60대 소송 당사자가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내밀며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판결문 위조 사실이 들통나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C(63)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심에서 C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1억 6,000만여원 중 1억 3,000만여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C씨는 판결 내용과 자신이 받은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다며 지난해 10월 재심 소송을 냈다. C씨가 법원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판결문에는 1억 3,000만여원 부분이 '3,000만여원'으로 달라져 있었다는 것. C씨는 "피고와 법원이 짜고 판결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심리 끝에 지난 4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려던 재판부는 미심쩍은 사실을 발견하고 재판을 다시 열었다. C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서 위조의 흔적이 보인 것이다. 조사결과 C씨가 낸 판결문은 판사들이 쓰는 문체나 글자체로 돼 있지 않았고, 띄어쓰기나 들여쓰기, 맞춤법 같은 기본적인 양식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씨한테 판결문을 뽑아 줬다는 법원을 증인신문하고 법원행정처 판결문 시스템까지 뒤져 판결문 위조 사실을 확인했지만 C씨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보도11

■ **매경닷컴 - 『판사 속이려다 … 판결문 위조한 소송인 덜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위조한 판결문을 증거로 세금소송 재심을 청구했다 들통 난 청구인이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A씨(63)는 2009년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1억 6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취소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이 판결이 조작됐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이 선고할 때는 취소금액이 1억 2000만여 원이었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 금액이 300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원래 판결문이라고 제출한 증거는 띄어쓰기, 들여쓰기, 맞춤법 등 기본적인 양식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재판부는 법원 직원 증인신문, 법원행정처 직권 사실조회를 통해 판결문 위조를 확신했다.

조정대상보도12

■ **인터넷 한국일보 - 『판결문 위조해 세금 환급 소송 '간 큰 남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악한 가짜 판결문을 만든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3년 전 확정 판결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한 간 큰 남성이 재판부에 적발돼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자영업자 채모(63)씨는 2009년 2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 중 1억 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3,000여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채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뒀다.

채씨는 "당시 법원 민원실 직원을 통해 내가 직접 수령한 판결문과 내 법률 대리인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主文)이 다르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조작한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채씨가 낸 판결문의 주문은 "1억 6,000여만원 중 3,6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것. 이 주문에 따르면 채씨는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1억 2,4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돌려받은 것이 된다.

재심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와 함께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자 금세 조작 사실이 들통이 났다. 채씨가 내놓은 가짜 판결문은 판사들이 워드프로세서에서 쓰는 서체로 돼 있지 않아 한 눈에 가짜 티가 났고, 띄어쓰기나 들여쓰기 등 맞춤법 오류가 35건이나 되는 등 기본적 양식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를 바탕으로 판결문 위조 사실을 추궁했지만 채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채씨에게 판결문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민원실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원 기자실을 찾아와 기자들을 상대로 가짜 판결문을 진짜인 양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재심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이 사건의 재심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채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측은 조만간 채씨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정대상보도13

- **동아닷컴 - 『가짜 판결문으로 법원 속이려 한 '간 큰'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판결문이 이상한데….'

서울행정법원의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 손철 판사는 최근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원고가 증거로 낸 1심 판결문이 법원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판결서체'도 아니었고 띄어쓰기, 들여쓰기, 맞춤법이 35군데나 틀렸다. 판결문에서 쓰지 않는 표현도 있었다.

원고 채모 씨(63)는 2009년 '부가가치세 1억 6106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는 "1심 재판장이 법정에서 '1억 2413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그대로 적힌 판결문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3052만원만 취소하는 것으로 내용이 달라져 있었다"며 자신이 맨 처음 받았다는 1심 판결문을 첨부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심 제소기간이 지나 소를 각하하려 했지만 채 씨의 주장대로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채 씨가 판결문을 위조한 사실을 알아챘다.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하고 채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채 씨가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원 기자실을 찾아가 위조 판결문을 내놓기도 했다"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대상보도14

- **노컷뉴스 - 『'간 부은(?) 50대'…세금 환급 더 받으려 판결문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세금 관련 재판에서 이기고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재심을 청구한 50대 남성이 판결문 위조 사실이 발각돼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A(53)씨는 지난 2009년 3월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 중 3000만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나자 '재판장이 "1억 2000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직후 법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1억 2000여만원'부분이 '3000여만원'으로 달라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확인 결과 A씨가 낸 판결문은 오탈자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30군데가 넘었고, 판결문 맨 뒷부분에 나오는 재판부 서명란도 어색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 증인신문과 법원행정처 직권 사실조회 등을 통해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A씨는 끝까지 위조사실을 잡아뗐고, 급기야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법원은 A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보도15

■ **인터넷 법률신문 - 『위조판결문 제출해 재심청구…형사고발 처지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법원 직원이 출력해준 판결문이라며 위조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소송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채모씨가 "법원 직원이 출력해준 판결문과 달리 송달된 판결문은 선고 내용과 다르다"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사건(2012재구합55)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각하 판결을 선고하려다 채씨가 법원 직원이 출력해줬다며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서 위조의 흔적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해 이날 선고에 이르렀다. 채씨는 증인으로 나와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까지 했고, 법원은 채씨에 대해 직무고발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재심 소송을 냈기 때문에 재심청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면서도 "채씨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송달 판결문의 위조 여부는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대상 판결을 한 재판부는 2009년 2월 채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의 부과처분 중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면서 "반면 채씨는 같은 날 재판장이 부가가치세 1억 6000만원 중 '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다음날 법원 직원이 출력해 준 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채씨의 대리인과 법원이 공모해 판결문을 위조해 송달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작성하는 판결문은 법관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만 지원되는 '판결서체'로 작성된다"며 "채씨가 법원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비슷한 글씨체로 작성되긴 했으나 '판결서체'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씨가 재심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법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문장으로 돼 있다"며 "재판부 서명란에도 오류가 있어 도저히 법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채씨가 판결문을 위조하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법원 직원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2009년 2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와 법원이 공모해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명백히 달리 송달된 판결문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조정대상보도16

- **한국국정일보 - 『'위조 판결문' 증거로 내…법원, 직접 검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재판 당사자가 "가짜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냈다 들통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억대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낸 채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채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판결문 진본을 교묘히 위조한 가짜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채씨가 낸 가짜 판결문이 진짜 판결문과 겉모습은 매우 흡사하지만, 글씨체가 다르고 일부 문장과 단어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재판 당사자가 판결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꾸며 증거로 제출한 일이 극히 이례적인데다, 법원 직원이 고의로 판결문을 고친 것처럼 누명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채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씨는 지난 2009년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내 부가가치세 3천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채씨는 그러나 법원의 실수로 세금 환급액이 1억 천3백여만원에서 3천여만원으로 줄었다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확정 판결문을 위조해 재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정대상보도17

■ **연합뉴스 -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 큰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악한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미 3년 전에 결론 난 세금소송의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가 심리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A(53)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1억 6천여만원 가운데 3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장이 "1억 6천여만원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직후 법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1억 2천여만원' 부분이 '3천여만원'으로 달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여서 재심 청구를 각하하려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올해 4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심 청구 사유가 사법부 신뢰 문제와 밀접하기도 해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한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아연실색했다.

A씨가 낸 판결문은 판사들이 쓰는 문체나 글자체로 돼 있지 않아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게 티가 났다. 띄어쓰기, 들여쓰기, 맞춤법 등 기본적인 양식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맨 뒷부분 재판부 서명란에도 오류가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 증인신문, 법원행정처 직권 사실조회를 통해 판결문 위조를 확신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위조 사실을 잡아뗐다. 그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법원 기자실에 직접 찾아와 가짜 판결문을 소개하며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다.

결국 법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A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1

1. 피신청인은 온라인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추후보도문〉

가. 제목 : 행정법원이 위조 혐의고발, 2심서 무죄판결 받아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허위사실로 밝혀져

나. 본문 : 온라인중앙일보는 2012. 10. 29.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63)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당사자는 2014. 6. 12. 서울중앙지법(형사9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달 20일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취지2

- 쿠키뉴스 외 15개 매체

〈조정신청취지 1 참조〉

사건처리결과

추후청구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연합뉴스, 뉴스1은 기각)

손배청구 - 각 기각결정

결정사항 1

주 문

가. 신청인의 2014서울조정1461 추후보도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온라인 중앙일보〉 홈페이지 사회면에 오전 10시부터 [별지]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 대상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 대상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나. 신청인의 2014서울조정1462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12. 10. 29.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63)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무고발을 했으며, 신청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014. 6. 12. '신청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추후보도와 함께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신청인의 이 사건 추후보도 신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이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후보도를 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 여부를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 재심 청구 과정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가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021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12. 10. 28.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문을 위조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했다가 발각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해 법원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고, 이후 피신청인을 포함한 여러 언론이 법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당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의 보도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 및 지득 경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결정하기로 한다.

2014. 10. 08.

결정사항 2

2014서울조정1463 · 1464 ~ 2014서울조정1475 · 1476

2014서울조정1479 · 1480 ~ 2014서울조정1491 · 1492

〈결정사항 1 참조〉

결정사항 3

2014서울조정1477 · 1478(뉴스1)

2014서울조정1493 · 1494(연합뉴스)

주 문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12. 10. 28.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위조 판결문 제시해 재심 청구하다 덜미"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 (63)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 라 한다).

나.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무 고발을 했으며, 신청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014. 6. 12. '신청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해를 보았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추후보도와 함께 60,000,000원의 손해배상 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추후보도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죄가 확정된 이후인 2014. 7. 31. 〈판결문 함부로 고쳤다가 홍역 치른 60대〉 제하의 후속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행정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경위, 그리고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조정을 구하는 신청 취지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추후보도 신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 15조 4항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추후보도 청구는 기각한다.

3.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 여부를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 재심 청구 과정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가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021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12. 10. 28.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문을 위조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했다가 발각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해 법원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고, 이후 피신청인을 포함한 여러 언론이 법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당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의 보도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다고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 및 지득 경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결정하기로 한다.

2014. 10. 0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온라인 중앙일보 외 14개 매체 - 『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16

종합격투기 이벤트를 개최하는 ○○FC 부대표가 시합 중 급소를 맞고 쓰러진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3637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헤럴드경제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12.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이종격투기 선수가 상대방 선수로부터 두 차례 급소를 가격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관중석에 있던 가수이자 소속사 부대표가 오히려 해당 선수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실시간 검색 기사 형태로 제목만 바꿔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무거워진 경기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카메라에 익살스런 표정을 지어보인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네티즌의 커뮤니티 게시판 글을 사실인 것처럼 십여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포털 및 인터넷신문에 노출시켜 이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인터넷 헤럴드경제 - 『○○FC 이○○, 2차례 낭심 가격에 쓰러졌는데…박○○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헤럴드POP면) 외 7건

■ 내　용 - ‘○○FC’ 이○○ 이종격투기 선수가 경기 중 두차례 급소를 가격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당시 관중석에 있던 가수 박○○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10일 ‘이○○ 선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박○○ 씨가 실제로 이○○ 선수가 연속으로 로블로 맞고 쓰러졌을 때 분명 ‘빨리 일어나! XX야!’라고 흥분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선수가 로블로(낭심 공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상당수의 관중이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식의 조롱을 했으며, ○○FC의 부대표 박○○도 ‘일어나 XX야’라고 하자 옆자리에 있던 정○○ 대표가 제지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박○○ 씨 기부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 거 안다. 하지만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했지 선수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대하듯 막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십몇 년 동안 격투기 경기를 봤지만 선수가 이렇게 취급 당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너무 실망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선수는 9일 서울 올림픽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FC 019’ 대회 1라운드에서 후쿠다와 대등하게 맞서며 스탠딩 타격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2라운드에서 후쿠다의 공격에 낭심을 맞고 쓰러졌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에 나선 이○○는 또 다시 후쿠다의 니킥에 낭심을 가격당했다. 이에 심판은 후쿠다에게 경고를 주며 경기무효를 선언했고, 급소를 두 번이나 타격받은 이○○는 끝내 병원에 후송됐다.

이날 이○○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기 후 (집이 있는)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변에서 혈뇨(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배설되는 것)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FC 이○○ 박○○ 소식에 네티즌은 “○○FC 이○○ 박○○, 너무하네” “○○FC 이○○ 박○○, 낭심 맞은 걸 못 봤나” “○○FC 이○○ 박○○, 본인도 남자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대상보도2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뉴스면)

■ **내 용** - ○○FC 이○○가 경기중 급소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당시 관중석에 있던 ○○FC 부대표 박○○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선수 인간이하의 대우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박○○ 씨가 실제로 이○○ 선수가 연속으로 로블로 맞고 쓰러졌을 때 분명 ‘빨리 일어나 XX야!’라고 흥분했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선수가 로블로(낭심 공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상당수의 관중이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식의 조롱을 했으며, ○○FC의 부대표 박○○도 ‘일어나 XX야’라고 하자 옆자리에 있던 정○○ 대표가 제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씨 기부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 거 안다. 하지만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했지 선수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대하듯 막대해서는 안된다”며 “십 몇 년동안 격투기 경기 봤지만 선수가 이렇게 개같은 꼴 다한 경우는 처음이다. 너무 실망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선수는 지난 9일 열린 ‘○○FC 19’ 대회에서 일본 후쿠다 리키 선수에게 두 차례 낭심을 공격당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FC 박○○, 실망이다”, “○○FC 박○○, 정말 욕을 했을까?”, “○○FC 박○○, 화가나도 너무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터넷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박○○ ○○FC 부대표 이○○에게 욕설 및 폭언한 적이 없어

나. 본문 : 본 매체는 지난 11월 11일에 인터넷 헤럴드 경제 홈페이지(헤럴드POP 및 헤럴드 Wealth&Health 면) 및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홈페이지에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또는 〈"로드FC 이○○, 낭심 심각한 부상에도 박○○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 XX야!' 충격발언"〉 이라는 제목으로 로드FC 부대표인 박○○이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낭심을 가격 당한 이○○ 선수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해당 경기 중계 영상과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한 관객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부대표는 바로 이○○ 선수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박○○ ○○FC 부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본 매체는 지난 11월 11일자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FC 이○○, 낭심 심각한 부상에도 박○○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 XX야!" 충격발언」등 제목의 기사에서 ○○FC 부대표인 가수 박○○이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낭심을 가격당한 이○○ 선수에게 욕설 및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기중계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박○○ 부대표는 이○○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년 1월 7일 10:00부터 1월 9일 10:00까지 48시간 동안 〈인터넷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뉴스 중 [헤럴드POP] 섹션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1. 0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박○○ ○○FC 부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헤럴드POP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7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울릉도 미륵산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5977 · 15978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4. 12.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과거 울릉도에서 사망한 신청인 아들과 관련해 "구원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구원파 학생이 한 겨울에 안전장비도 없이 여름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했다", "그 당시 죽은 남학생의 엄마가 구원파 신도여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을 대담 형태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망한 아들이 겨울옷에 등산용 겨울장화를 신고 그 위에 우의를 걸치고 작업했으며,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가족이나 지인 모두 몹시 슬퍼하였으며, 구원파 신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보도로 인해 망자의 명예와 유가족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망자 및 유족에 대한 과도한 표현 등으로 명예가 일부 실추되었음을 인정하고 유감표명을 담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액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N - 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관련' 보도** (2014년 6월 18일자 15:10)

■ **내 용 -** (전략)

▷ 김○○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유병언씨, 또 구원파들이 울릉도 땅의 5분의1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다니지 못하게 해서 주민들도 다니지 못하게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좀 그 얘기좀 듣겠습니다. 울릉도의 유○○ 목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유목사님?

▷ 유○○ : 예, 안녕하세요.

▷ 김○○ : 어제 저희 방송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못 들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유병언, 구원파 소유의 땅이 울릉도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 유○○ : 예예.

▷ 김○○ : 그곳은 과거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곳인데 지금은 아예 다니지 못하게 막고,

(▷ 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이 나물이라든지, 생계를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유○○ : 예,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경찰서라든지, 이 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 유○○ : 기존에 알고 계셨던 사실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사도 좀 하고, 그런데 진척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략〉

▷ 김○○ : 어제 말씀하신 얘기 가운데, 좀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있는데, 올해 1월에 그쪽 유병언씨 구원파 소유의 땅에 미륵산 이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고로쇠를 채취하러 왔던 대학생 인가요? 그 한명이 추락해 사망했는데 그냥 쉬쉬하고 덮였다. 이거는 다시 재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유○○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언론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수사는, 어찌되었던 육지에서 학생들이 미륵산에 등산 왔다가 실족사 한 것으로 일찍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그 학생의 어머니가 구원파 신도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수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예외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는 순직했다라고 여기는지, 그런 과정에서 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동요나, 감흥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슬퍼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 그냥 단순하게 미륵산 이라는 산에 육지에, 외지에 사는 10대 남학생이 와서 실족사 했다? 그런데 그 사람 엄마가 구원파 신도여서 수사하지 말아 달라, 경찰에?

▷ 유○○ : 예예

▷ 김○○ : 진짜 실족사에요? 등산에서..

▷ 유○○ : 일단, 울릉도 산 자체가 험합니다. 험하고, 악산이고, 나물 철이 되면, 올해같은 경우에도 봄에만 네 명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산인데, 겨울에, 그것도 눈이 많이 쌓여있는 산은 더더욱 위험하지요. 안전장비도 없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상황을 보면 그 학생이 여름 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작업했다라고 하는걸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곳에, 울릉도 산 지형도 모르는 학생들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이 안되죠.

▷ 정○○ : 눈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 산길을 올랐고, 반팔 반바지에 올랐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마을 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겠어요?

▷ 유○○ : 주민 분들은 다 고로쇠를 채취하다가 떨어져, 추락사한 것으로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환경단체로 위장해서, 농활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그런지 오면 뭐 반년동안, 1년 동안, 관리인이 두세 명밖에 없으니까요, 이 넓은 지역에. 그 반년동안 쌓여있던 가축분뇨나 소뿔도 베고, 못했던 것을 학생들이 와서 다 몰아서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겨울에는 고로쇠도 채취를 하고, 나물 철이 되면 나물도 해서 내보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 정○○ : 유목사님께서 5년 지내셨다 그랬잖아요, 울릉도에서요. 그 5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 김○○ : 다른 실족사 같은

▷ 유○○ : 다른 실족사는, 보통 나무를 캐나가, 주민들이 많이 사고 나는 그러한 경우는 있고요,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래서 해마다 여름하고 겨울이

되면 학생들이 몇 십 명씩 들어오는데, 이 사고가 딱 터지고 그 다음날 학생들이 다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 정○○ : 그러면 매년 와서, 우선 수련회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 유○○ : 자기네들끼리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수련회라기보다는 환경활동이라고, 그러니까 농활을 하는지,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처럼, 아침, 저녁으로 점호도 하고, 눈밭에서 체력단련 한다고 소리도 지르고, 발차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중략〉

▷ 김○○ : ▷ 유 ○○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울릉도 땅에 5분의 1을 샀는데 이미 살때보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수십억 이상의 차익을 봤을 것이다. 그런데 저 실족사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 이○ : 네, 저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울릉도도 이런 실족사가 일어났지만, 굴업도에서도

▷ 김○○ : 굴업도? 굴업도가 어디인가요?

▷ 이○ : 인천에, 굴업도에서도 이런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국녹색회의 중요한 인물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좀 쉬쉬하는 게 있고, 그 교인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 : 저기 지금 황○○ 소장님하고 민○○ 원장님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저렇게 되면 자기 신도들을 무슨 노예 부리듯이 울릉도로 보내고, 굴업도로 보내고, 신안 염전으로 보내가지고 노동 착취하는 것 아니에요?

▷ 황○○ : 원래 그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신도들의 돈과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수많은 신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가서 아직 개발이 되기 이전에, 개발이 될 만한 좋은 땅, 굴업도도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환경 반대운동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 환경단체를 만든 것도 굴업도 개발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 : 그런데 사망사고 까지 일어났는데 쉬쉬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 김○○ : 그 죽은 남학생의 엄마가 구원파 신도여서 수사하지 마라, 이런 소문이 돌았다 하잖아요.

▷ 민○○ : 구원파 엄마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조용조용 해주기를 요청해줬을 수도 있고..

▷ 김○○ : 아니, 자기아들이 등산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유병언 일가에게 바치기 위한 고로쇠를 채취하러 가서 실족사 했는데..

▷ 민○○ : 종교적으로 이단이던 아니던 간에, 종교적으로 하면 뭐 수혈도 거부하고 자식 죽어가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는 우리 상식의 생각을 뛰어 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 김○○ : 이해가 되시는군요. 민원장님

▷ 민○○ : 수혈을 거부해서 자기 딸이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수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특정 종교에서.

▷ 김○○ : 근데 지금 문제는 이청 선생님의 말씀처럼 저게 울릉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굴업도에서도, 아마 좀 찾아보면 더 있을지도 몰라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MBN 〈시사마이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구원파 울릉도 추락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4년 6월 18일자 〈시사마이크〉 프로그램에서 울릉도에서 사망한 한 남학생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구원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구원파 학생이 한 겨울에 안전장비도 없이 여름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했다", "그 당시 죽은 남학생의 엄마가 구원파 신도여서 수사하지 마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사망한 남학생은 겨울 옷에 등산용 겨울장화를 신은 후 그 위에 우비를 입고 작업했으며, 사건 당시 가족이나 지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거나 유족 측에서 구원파 신도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1) **가. 제목** : 「구원파 울릉도 추락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2014년 6월 18일자 〈시사마이크〉에서 보도한 '울릉도에서 사망한 남학생 사연'과 관련해, 당시 사망한 남학생은 한 겨울에 여름장화를 신고 반팔 티셔츠와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 작업한 사실이 없으며, 사망한 남학생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남학생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았거나 구원파 신도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구원파 울릉도 추락사」 관련 보도로 인해 사망한 남학생 유족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2. 피신청인은 평일 오후 3시 10분에 방송하는 2015년 1월 21일자 '뉴스 BIG 5' 프로그램 시작에 제1-1항의 보도문을, 말미에 제1-2항의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MBN(http://www.mbn.co.kr/)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5년 1월 19일 09:00부터 일주일 간 게재하고 이후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5년 1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거나 제4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제4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1.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뉴스 BIG5 프로그램 『'구원파 울릉도 추락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1일)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제 2 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 례 18

수업시간에 질문하기를 싫어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01 손배청구
신 청 인	홍○○
피신청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TV)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2.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으며 오히려 싫어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수업시간에 섭외한 학생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 뒤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학생인 신청인의 초상을 클로즈업하여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본인의 초상을 촬영하고, 클로즈업하여 보도함으로써 질문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대학생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으며, 모자이크되지 않은 신청인 얼굴이 나온 방송 캡쳐화면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3,000,000원 지급 및 유감표명 외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된 신청인 관련 사진 삭제를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EBS-TV -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5부』**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21:50)

■ **내 용** - (전략)

▷ 나레이터 : 다시 우리들의 대학입니다. 딱히 물을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없는 우리 강의실.
만약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을 도와줄 평범한 대학생 ○○씨입니다.
오늘 질문 다섯 번 수업시간에 해주시고 저희가 같이 한 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씨의 임무죠. 긴장되는지 눈치를 보네요.
백 명이 넘는 대형 강의. 역시나 말을 하는 사람은 교수뿐입니다.
수업이 지루해 질 때쯤

▷ ○○씨 :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류도가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 나레이터 : 무심한 표정. 학생들은 질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교수는 성의껏 답을 주는데요.

▷ ○○씨 :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물이 염분이 더 높은 건가요?

▷ 나레이터 : 좀처럼 익숙치 않은 상황. 살짝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 됩니다

▷ ○○씨 :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물이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는데, 원래 순환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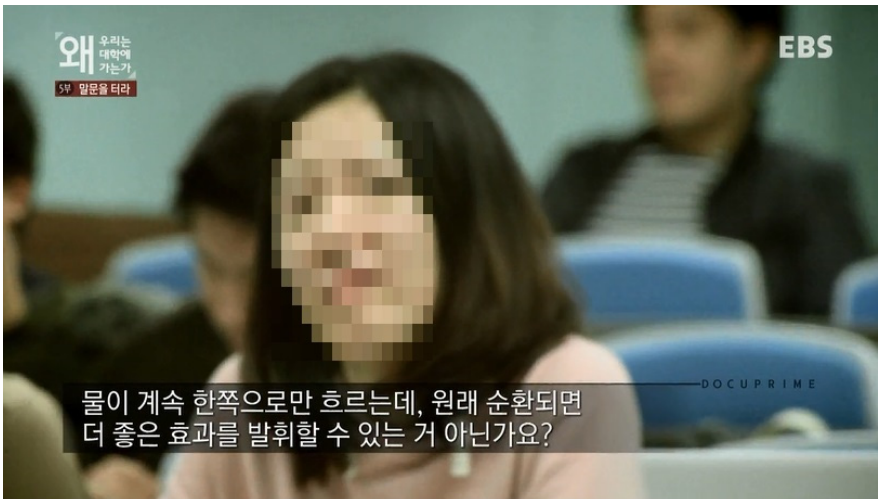

▷ ○○씨 :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나레이터 : 왠지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 ○○씨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 교수 : 예 하세요.

▷ ○○씨 : 교수님은 그럼 바다에 자주 가세요?

▷ 교수 : 아 제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 바다를 매일 보고.

▷ 나레이터 : 뭔가 불편합니다.

▷ 교수 : 나 이제 갈 건데 수업 끝나고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없어요?

▷ 나레이터 : 끝났습니다. 질문한 학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 학생 : 황당함 황당했는데 저는

▷ 학생 : 나댄다.

▷ 나레이터 : 질문을 부탁한 친구거든요.

▷ 교수 :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수업시간에 질문을 안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질문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짜 시킨 줄 알았어요.

▷ ○○씨 : 저 같은 경우 저학년 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서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수업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웬만하면 질문을 자제하는 편이었고요.

▷ ○○씨 : 일단 어색했어요.

▷ ○○씨 : 저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따갑기도 하고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한 후 신청인이 마치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은 대학생인 것처럼 클로즈업하여 보도하여, 신청인의 초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년 3월 3일(월)까지 총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는 즉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해당 게시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2.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사 례 19

한국인 남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335, 2014서울조정336(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iMBC)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인 남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명한 네팔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등산장비를 갖추고 네팔에 입국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5초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업무상 네팔을 방문했음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정 성매매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지급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2,000,000원 지급 및 홈페이지 다시보기 상의 모자이크 처리를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추악한 '해외 미성년 성매매' 현장지도』**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12일자, iMBC 1월 12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나레이터 : 아동 성매매. 어린 여성들을 찾아 동남아 국가들로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까지 한국 관광객들의 성매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필리핀의 한 유흥도시에서는 현지 10대 여성들이 어지간한 한국어는 다 할 정도로 한국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인데도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국 관광객들의 추악한 자화상, 현지 취재했다. 〈중략〉

▷ 기자 : 이처럼 사법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일부 관광객들의 추태는 동남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히말라야 산맥으로 잘 알려진 남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네팔, 국민 1인당 한해 소득이 불과 600달러 남짓,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등산 열풍과 함께 국적항공사의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네팔을 찾는 한국인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 네팔 현지 여행사 대표 : 2007년도 열었는데 그때부터 한국 분들이 모여들기 사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 더블됐어요.

▷ 기자 :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관광일번지로 통하는 타멜거리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치지만 어둠이 깔리면 쾌락을 좇는 남성들을 상대로 한 은밀한 유혹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네팔의 어린 소녀들을 찾는 한국인 남성들이 이곳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4월 30일로 한다.
2. 피신청인들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들은 MBC-TV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 내용 중 신청인이 포함된 화면을 4월 21일까지 모자이크 처리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20

리조트 붕괴현장 보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376, 2014서울조정378, 2014서울조정380, 2014서울조정680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선일보, 주식회사 연합뉴스, 주식회사 서울신문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8. (2014서울조정376, 378, 380) 2014. 05. 16. (2014서울조정680)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뉴스를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잔해물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된 재난현장 사진으로, 사고 직후부터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더하여 정신적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각 30,000,000원 및 서울신문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조선일보는 재난현장 보도의 경우 현장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도 관행인데다 신청인의 심리적 충격은 보도사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난 그 자체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중재부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타 매체와의 형평성 및 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한편, 나머지 매체의 경우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해 한겨레 및 서울신문 각 2,000,000원, 연합뉴스 2,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한겨레 -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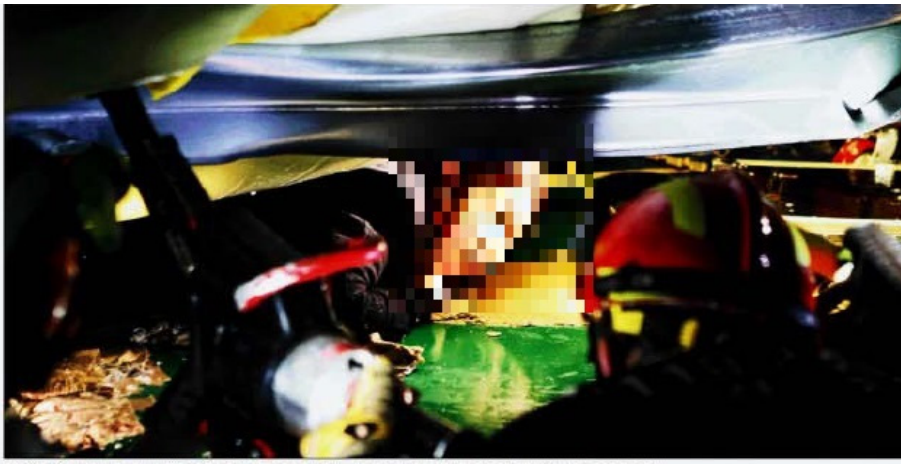

살려주세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17일 밤 구조물에 깔린 한 학생이 구조되고 있다.

조정대상보도2

■ **조선일보 - 『조금만 버텨 … 숨막히는 구조』**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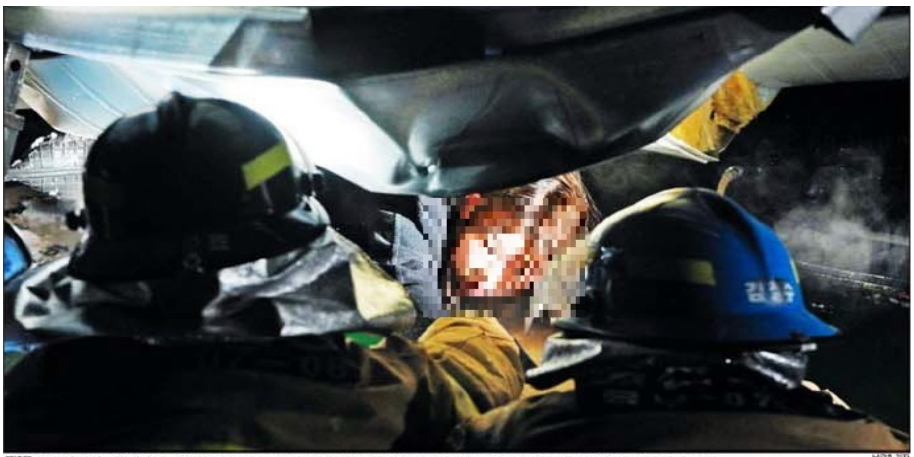

조금만 버텨… 숨막히는 구조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매몰돼 있던 여학생을 끌어내고 있다.

조정대상보도3

■ **연합뉴스 - 『마우나 리조트 붕괴 관련』** 기사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포토면)

■ **내 용**

(경주=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리조트 붕
로 깔린 여학생이 구조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여고생은 구조됐다. 2014.2.17

조정대상보도4

■ **서울신문 -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 **내 용**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서울신문)

사건처리결과

1. 조정성립 (한겨레, 연합뉴스, 서울신문)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일보)

조정성립사항 1-한겨레

1. 보도문

가. 제목 : 경주 리조트 붕괴 사진보도 관련 알림

나. 본문 : 한겨레는 2014년 2월 18일자 지면 및 2월 17일자 인터넷 한겨레에「경주 리조트 붕괴 대학생 100여명 깔려…9명 사망」제하의 기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이○○ 학생의 사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4월 23일(수)(토요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보도한다. 제목은 통상의 정정보도문 제목 크기로 하되 2단으로 편집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3일(수)(토요일 제외)까지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에도 게재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4월 30일(수)까지 총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한겨레 -『경주 리조트 붕괴 사진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조정성립사항 2-연합뉴스

1.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3일(수)까지 피신청인 지방국장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2014년 2월 17일)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4월 30일(수)까지 2,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

조정성립사항 3-서울신문

1. 피신청인은 2014년 6월 11일(수)까지 피신청인 대리인(남○○ 사진부장)이 신청인에게 핸드폰(010-○○○○-○○○○)으로 전화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사진(2014년 2월 18일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6월 11일(수)까지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5.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조선일보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별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닷컴(www.chosun.com)에 게재된 별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사진에 대하여 신청인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신청인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별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4. 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사 례 21

동의 없이 신청인들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여행상품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120 손배청구
신 청 인 황○○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홈&쇼핑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방송을 통해 필리핀 세부의 한 리조트 여행상품을 소개하면서 다정하게 물놀이하고 있는 신청인 가족의 모습을 3초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년 전 가족과 함께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동의 없이 찍고, 또 2년간 6차례에 걸쳐 홈쇼핑 상품화면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 측이 심리 전 신청인 측에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홈앤쇼핑 - 『필리핀 세부 리조트 여행 상품』** 소개 방송 (2014년 7월 5일자)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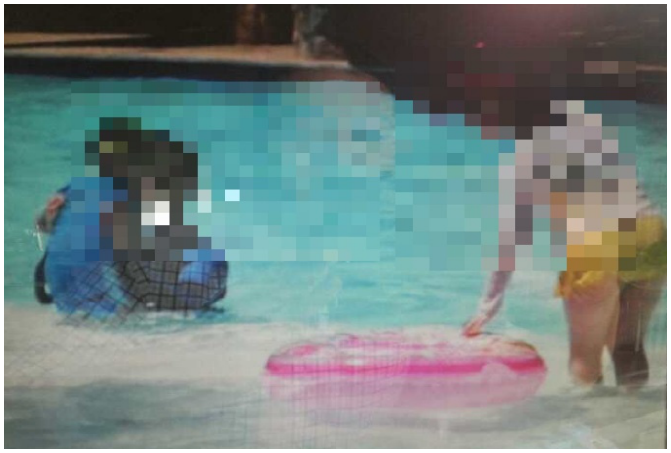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사 례 22

신청인이 유병언의 친동생과 의형제라고 허위보도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31 손배청구
신 청 인	조○○
피신청인	주식회사 스타엔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찰이 구원파 유병언의 동생인 유병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유병호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은 의형제 사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친과 친분관계에 있었던 유병호가 부친 사망 후 신청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기거한 것으로 구원파와는 무관한데도 마치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이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재부가 보도로 인한 피해 일부가 인정된다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한편,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한경닷컴, 티비리포트, 전자신문 인터넷, 아시아경제 닷컴에 대해서도 중재부가 각 2,500,000원, 1,8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스타엔 - 『조○○아들 조○○, 유병호와 의형제 사이, '동거 중 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스타면)

■ **내　용** - 유병언의 동생인 유병호 씨가 조○○의 아들 조○○ 씨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검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을 급습해 현장에서 유병호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유병호 씨는 '아시아의 ○○'로 불린 ○○선수 고(故) 조○○의 아들 조○○ 씨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씨는 유병호 씨의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검찰 역시 조○○ 씨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호 씨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컨설팅비용과 사진작품 구매 등을 통해 유 씨 일가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의 아들 조○○ 씨는 지난 2010년 ○○○ '놀라운 ○○ ○○○'을 통해 감량에 성공하며 얼굴을 알렸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4년 6월 23일자 스타섹션 「조○○ 아들 조○○, 유병호와 의형제 사이 '동거 중 체포'」 제하의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0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

사 례 23

신청인이 유병언 도피에 적극 가담했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 특정 모임을 이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40 · 1441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국제뉴스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병언 도피를 돕고 있는 측근들을 보도하면서 '김엄마'로 알려진 신청인의 초상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고, 못생긴 외모를 지녔으며, 유병언의 맹종도피자로, 개인 따까리로 생활하면서 ○○회를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병언의 도피를 돕거나 ○○회를 이끈 사실이 없으며, 측근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진과 성명을 공개해 유병언의 최측근으로 비춰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으나,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 측의 보도내용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과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소제기 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자 신청인이 소를 취하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의 보도를 그대로 전재한 DK뉴스, 부패방지뉴스에 대해서도 중재부가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으로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국제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유병언 도피도우미 여러 명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측근 내연녀는 바로 양모(40)씨로 주치 간호사다. 이외에도 유○○(52), 박○○(51)가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자는 바로 김엄마로 알려진 못생긴 외모의 김○○(59)이다.

표독한 맹종 도피자 모습으로 지수하지 고 버티는 것을 낙으로 하는 못생긴 여 김엄마 검명숙의 공개수배 사진

이미 김엄마로 너무나 잘 알려진 김○○씨는 유병언씨가 머물던 금수원에서 불과 1km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여자로 유병언 도피 핵심 도우미이자 지금은 도피총책으로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수원 인근마을로 이사와 살고 있었는데 유씨의 개인 따까리로 생활하면서 ○○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녀는 유병언이 도피하자 뒤따라 아들 2명과 함께 도피를 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그녀의 모습은 수배 전단지에서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녀의 못생긴 얼굴 말이다. 못생긴 여자가 사고친다는 말이 유병언의 도피사건으로 실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을 괴롭히는 못생긴 여자 김엄마 김○○ 얼굴을 보면 한 성깔을 하는 표독한 맹종 도피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의 홈페이지 전국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볼드체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같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도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김○○씨(속칭 김엄마)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15일자 전국면 초기화면에「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라는 제목으로 정○○ 목사의 대담을 통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수원 인근 마을로 이사와 살고 있었는데 유씨의 개인 따까리로 생활하면서 ○○회를 이끌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서 엄마회를 이끈 사실이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총책 역할을 한 사실 역시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 **국제뉴스 - 『김○○씨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부산면)

■ **내 용** - 국제뉴스는 지난 7월 15일자 본지 전국(부산)면을 통해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의 얼굴, 유병언씨 맹종 도피자"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부산에서 작성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목사의 대담을 통해서 "김○○ 씨는 지난 2007년 금수원 인근 마을로 이사를 와 살고 있었는데 유씨의 따까리로 생활하면서 ○○회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기독교침례회(구원파)에서 ○○회를 이끈 사실이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총책 역할을 한 사실 역시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0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 례 24

명절 스트레스를 백화점 쇼핑으로 해소하는 세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54 손배청구
신 청 인 남○○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인터넷 MBN)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부들이 이른바 '명절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보상 구매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명절과 무관한 시기에 백화점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 때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마치 명절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주변에 비춰져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확인절차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1,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MBN - 『"스트레스 풀자"…백화점에 몰린 주부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1일자 경제면)

■ 내 용

▷ 앵커 : 명절이 지나면 선물을 대부분 끝냈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받은 주부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거 백화점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입니다.

▷ 기자 : 추석 이후 이른바 '명절증후군'을 풀려고 주부들이 백화점으로 몰리면서 매출도 덩달아 크게 올랐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추석 다음 날 본점 방문 고객은 평일보다 20% 많았고, 매출도 지난해 같은 날보다 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설 명절 이후 일주일간 신세계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40~50대 여성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했습니다.

명절 이후 주부들의 이른바 '보상 소비'는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백화점으로 이끄는 일등공신은 명절 선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출된 상품권 가운데 30% 정도는 명절 직후 한 달 동안 사용됩니다.

여기에 긴 5일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번 추석 백화점 매출은 최근 3년 명절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MBN뉴스 김○○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10월 29일(수)까지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쇼핑에 대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2014. 9. 11.자 「"스트레스 풀자"…백화점에 몰린 주부들」 제하의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초상을 방송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10.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사 례 25

지역의 한 축제 현장을 보도하면서, 행사장을 방문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대구조정63 손배청구
신 청 인 오○○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뉴시스대구경북
중 재 부 대구중재부
접 수 일 2014. 10.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장마기간임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행사장 내 한 치킨업체가 주최한 시식행사장에서 치킨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현장 스케치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신청인들은 동의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귀는 사이로 오해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뉴시스대구경북 -『대구 치맥페스티벌 "장마전선에도 이상 無"』** 제하의 사진 (2014년 7월 17일자 지역면)

■ **내 용 -**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지만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대구 치맥페스티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뉴시스】강의구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제2회 '치맥페스티벌'에서 한 치킨업체가 마련한 시식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4.07.16. kang29@newsis.com 2014-07-16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2014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막이 올랐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첫날인 16일에는 주최 측 추산 8만여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지난해 1회 행사 때 첫날에 6만여명이 찾은 것보다 2만여명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치맥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 기간에 지난해(30만명)보다 20만명 더 많은 50만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수는 '날씨'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토요일인 오는 19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20~60㎜의 비(강수확률 60~70%)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이상의 국지성 호우도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비 소식에도 조직위원회 측은 축제 흥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마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것이다.

행사는 야외에서 열리지만 각 치킨 업체마다 천막으로 된 부스를 차려 시민들이 비를 맞지 않고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일 밤 인기가수 공연 및 DJ와 함께하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파티, 락페스티벌 등이 열리는 메인 무대 앞에도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축제 도중 비가 내릴 경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우의를 나눠줄 계획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폭우로 발목까지 물이 차지 않는 이상 축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지난해처럼 날씨가 무덥지 않고 시원해 치맥을 즐기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신청인들에게 각각 4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뉴시스대구경북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사진을 2014. 11. 15까지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 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10. 3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800,000원 지급

사 례 26

신청인들이 개최한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를 무단 촬영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강원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대 외 3인
피신청인 원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원주MBC-TV)
중 재 부 강원중재부
접 수 일 2014. 11.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대학교가 총장 퇴진운동을 이유로 총학생회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학생들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회의실에 몰려가 항의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비공개로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 모습을 1초간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 위원인 신청인들은 사전에 촬영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회의장 내부 및 신청인들을 몰래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관련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원회 회의 모습 및 위원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징계업무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정보도 및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해당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공인보도로서 위법성은 없어보인다고 설시한 후 다만, 취재방식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배척된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 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들의 화면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원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5일자)

■ **내 용**

▷ 앵커 : ○○대 총장 선임을 두고 시작된 학내갈등이 3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퇴진운동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학생과 교수들은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가 김○○ 총장 퇴진운동에 나선 학생들을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교무회의 난입과 기물파괴가 이윱니다.

▷ 기자 : 총학생회장의 첫 징계위원회가 열린 곳에는 학생들 100여명이 몰려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지학원 이사회는 총장 퇴진 운동을 주도해 온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 학생 :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이중적이다"

▷ 기자 : 학교 측이 총장 퇴진운동에 나선 교수와 학생들에게 징계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상지대의 학내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 기자 :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총장선임에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들을 불법사찰해왔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직접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 총장 부자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사과보도문을 원주MBC-TV 뉴스데스크(20시 30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목** : "○○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 관련 사과보도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4년 11월 5일 뉴스데스크 원주 프로그램에서 "○○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학내 문제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징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무단 침입하여 촬영한 장면을 방송하여 ○○대학교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징계위원들의 초상이 누구인지 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또한 본 건 합의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 한다.

2014. 1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홈페이지 다시보기 중 신청인들 영상 삭제

제 3 장 음성권 침해 사례

사 례 27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관련 보도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인 신청인의 음성이 동의 없이 녹음 ·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268, 2014서울조정269(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표○○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KBS-2TV, KBS 미디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3.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여성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함께 고발당한 의사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방문해 신청인에게 원장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녹음한 후 음성변조없이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보도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병원 모습을 내보내고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한 것은 물론, 신청인의 목소리를 음성변조없이 보도해 고객 응대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피신청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및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음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22일자, KBS미디어 3월 22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내 용** - 〈전략〉

▷ 리포터 : 원장님 혹시 지금 진료예약 아직 가능한가요?

▷ 표○○코디 : 따로 드릴 말씀드릴게 없구요. 안계시니까 나가주세요.

▷ 리포터 : 일체 어떤 말씀도 해주실 수 없나요?

▷ 표○○코디 : 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각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4월 21일(월)까지 총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KBS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VOD) 화면 중 신청인의 음성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사 례 28

전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717 손배청구
신 청 인 오○○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5.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이 생전에 벌였던 다양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전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증언을 음성변조 없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취재기자가 음성변조 후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음에도, 음성변조 없이 보도돼 구원파 신도인 남편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음성권 침해에 따른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세 번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인터뷰가 음성변조 없이 보도된 과실을 인정하고 다시보기 영상을 즉각 삭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하자 중재부는 음성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현장 21 프로그램『유병언 일가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3일자)

■ 내 용

▷ 진행자 :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먼저 배를 버렸다는 사실은 깊은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비통하게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되어 가지만 구조된 생존자는 사고발생당일 174명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멈춘 생존자 숫자처럼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2012년 10월 18년된 노후 선박을 일본에서 116억원에 사왔습니다. 이후 30억원을 들여 배를 개보수했습니다. 146억 가운데 100억원은 은행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국내 최대 규모의 호화 여객선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 21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사고직전 세월호를 해외에 팔기위해 선박매매 시장에 내놨던 겁니다.

〈중략〉

▷ ○○○(음성변조) : 대부분 신협에 회원들로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자본금은 우리 신도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신협들이죠. 〈중략〉

▷ 진행자 : 회사는 신앙심을 빌미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은데다, 생산된 제품의 영업에도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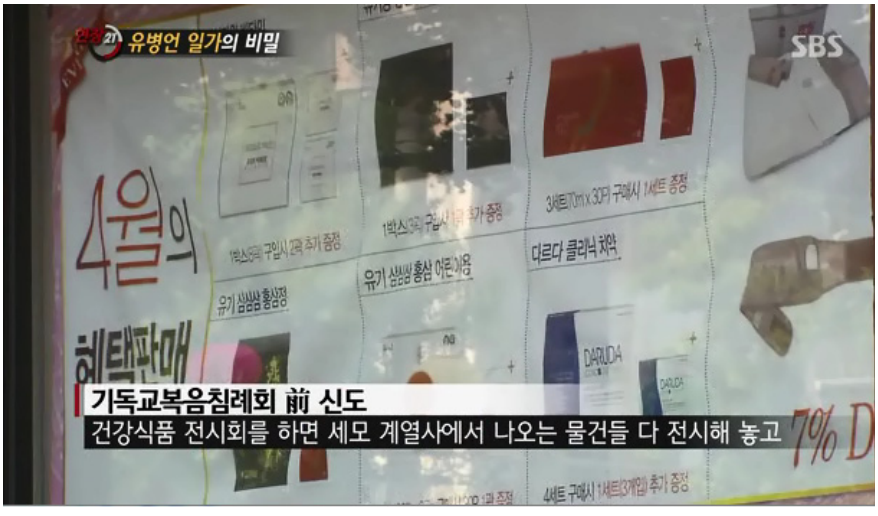

▷ ○○○(음성변조) : 건강식품 전시회를 하면 세모 계열사에서 나오는 물건들 다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는거예요. 며칠씩 한 일주일씩. 그때 이제 우리 모임 식구들한테 '야 너 누구를 얼마나 데리고 와서 얼마까지 팔래?' 그리고 스쿠알렌을 몇 계좌씩 작정(현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나머진 팔아서 헌금으로 갖다 내야 돼 교회에 못 팔면 내가 카드를 긁어서라도 그 금액을 메워야해요.

(중략)

▷ 진행자 : 세월호의 증축된 부분이 유 전 회장의 사진갤러리로 꾸미기 위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유 전 회장은 억만장자라 불리던 사진작가 아헤와 동일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한 이력을 내세우며 세계적인 작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미술평론가 : 루브르에서에서 한국인이 전시를 한다는 건 이슈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가 돼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보게됐는데 루브르 본관 자체도 아니고, 튈르리 파크라는 그 앞에 있는 공원 거기다가 어떤 가설치물을 만들어서 전시했다고 하더라구요.

▷ 진행자 : 이때도 교회 신도들은 단체로 관람을 갔다고 합니다.

▷ ○○○ : 요즘은 유병언씨가 사직작가로 탈바꿈해서 사진 엄청나게 찍어대고 전시하고 나서 그 전시회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 패키지여행으로 해가지고....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2014.4.29.자 「유병언 일가의 비밀」 제하의 방송)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2014. 06. 2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4,000,000원 지급

제 4 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 례 29

퇴사한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사를 작성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431 · 432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전○○
피신청인	주식회사 데일리코스메틱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4. 03.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신청인의 크레딧을 사용해 모두 37건의 화장품 관련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작성 시점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인의 이름을 무단도용해 기사화해 신청인의 성명권이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명의도용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자 피신청인은 유감을 표명한 후,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데일리코스메틱 - 『다우니 아로마쥬얼, 방방곡곡에 '향기' 무차별 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트렌드 하우스홀드면)

■ **내 용**

다우니 아로마쥬얼, 방방곡곡에 '향기' 무차별 살포

영상 감상 및 사용 후기 이벤트 진행...뉴욕 여행권 증정

2014년 03월 12일 (수) 12:45:28 전 기자 daily@dailycosmetic.com

▲ 향기지속제 개념을 도입한 다우니 아로마쥬얼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향기지속제 개념을 도입한 다우니 아로마쥬얼이 대국민 홍보에 비지땀을 쏟고 있다.

특히 피앤지는 주력으로 삼을 신제품이 나올 때는 제품의 판매량과 관계없이 막대한 자본을 투하해 장기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있다. 경쟁 브랜드들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현재 다우니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시장의 반응도 보지 않고 곧바로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탈을 통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아로마 쥬얼 영상 감상 이벤트와 사용 후기 이벤트 등 두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 이벤트는 지난 2월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제품의 사용방법을 담은 'Shake, Toss Enjoy' 영상을 끝까지 감상하면 총 60명에게 정품을 주고 있다. 현재 1차 이벤트가 끝났다. 20명의 당첨자를 발표했다.

조정대상보도2

■ 데일리코스메틱 - 『코스메틱 어플리케이터 시대.. 진동 파운데이션, 클렌저 등 다양』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트렌드 툴스면)

■ 내 용

코스메틱 어플리케이터 시대...진동 파운데이션, 클렌저 등 다양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로레알, 필립스 등 각축

2014년 03월 14일 (금) 15:37:01 전 기자 huei@dailycosmetic.com

▲ LG생활건강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구현한 온열 진동기기로 완벽한 겨울 메이크업을 완성해주는 '오휘 오토 워밍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다.

손으로 화장을 하지 않는 '코스메틱 디바이스'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은 직접 손으로 바르고 문지르고 두드렸다. 특정 효과를 주기위해 새로운 성분을 찾아 차별화를 꾀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기술력을 가진 디바이스를 접목한 화장품들이 개발돼 뷰티 피플들에게 인터뷰를 신청하고 있다.

디바이스를 접목한 화장품은 진동 파운데이션이다. 몇 년 전에 국내 한 홈쇼핑사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곧바로 모든 홈쇼핑사에서 비슷한 제품들을 속속 선보였다.

이어 로드샵 등 다른 브랜드들도 앞다퉈 출시했다. 가격도 하락됐다. 국내에 진동 파운데이션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1-2년 정도 지나면서 열기가 식었다. 홈쇼핑이나 로드샵에서 서서히 자리를 감추었다.

조정대상보도3

■ **데일리코스메틱 - 『애경 2080, 진지발리스균 박멸 치약 국내 첫 개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뉴아이템면)

■ **내 용**

Daily Cosmetic

홈 > 뉴스 > NEW ITEM > Household

애경 2080, 진지발리스균 박멸 치약 국내 첫 개발

임상실험서 발리스균 99.2% 감소...잇몸질환 개선

2014년 03월 14일 (금) 15:57:48 전 기자 huei@dailycosmetic.com

▲ 애경의 토털 오럴케어 브랜드 2080에서 잇몸질환의 핵심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을 잡는 기능성 치약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애경(대표이사 고광현)의 토털 오럴케어 브랜드 2080에서 잇몸질환의 핵심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을 잡는 기능성 치약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치약 이름은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이다.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는 국내 최초로 잇몸질환 핵심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을 억제시켜 잇몸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전문 기능성 치약으로 국민치아건강에 앞장서는 2080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잇몸을 유지시키기 위한 대국민 잇몸건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진지발리스'는 잇몸질환의 핵심 원인균으로 노출된 치아 및 구강점막에 분포하는 충치균과 달리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주포켓에 서식하며 잇몸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무서운 세균이다. 진지발리스균은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균으로 잇몸 사이에 숨어있다가 독소를 내뿜어 잇몸을 붓게하고 출혈을 일으키며 통증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치은염이 생겨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잇몸질환 유발균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 치약은 이러한 진지발리스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효능을 가진 징코빌로바(Ginkgo biloba)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징코빌로바는 애경 중앙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질로 숨어있는 진지발리스균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준다.

치과대학 임상실험 결과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 치약을 8주 동안 사용하면 in-vitro 실험결과 진지발리스균이 99.2% 감소하고, 잇몸질환지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잇몸질환 개선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애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잇몸질환 경험이 있으며, 성인의 70%는 현재 잇몸질환 보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생각보다 심각한 국민병이지만 예방과 관리에 소홀히 하기 쉽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치주염으로 발전해 치료가 쉽지 않아 심하면 치아를 잃을 수 있으므로 평소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4

■ **데일리코스메틱 - 『화장품 살 때 광고 성분 확인하세요 ... 전성분표로 체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정책면)

■ **내 용**

Daily Cosmetic

인쇄하기 | 창닫기

홈 > 뉴스 > NEWS & BIZ > 정책 | 포토뉴스

화장품 살 때 광고 성분 확인하세요...전성분표로 체크!

식약처,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안전한 사용법서 밝혀...

2014년 03월 17일 (월) 10:41:08 전 기자 huei@dailycosmetic.com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커지는 추세에 따라 화장품 안전에 대한 궁금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광고 등에서 표명하는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일부 화장품에서는 '000으로 피부의 주름이나 미백 등을 도와준다' 또는 '000성분이 함유도어 있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포인트다. 특히 구매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브랜드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안전한 사용법'을 발표했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및 미화 또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내의 경우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매하려는 제품에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명의 기재를 의무화한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

조정대상보도5

■ **데일리코스메틱 - 『화장품, 아는 만큼 예뻐진다 ... 이제는 보존제를 공부하자!』**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정책면)

■ **내 용**

Daily Cosmetic

인쇄하기 | 창닫기

홈 > 뉴스 > NEWS & BIZ > 정책 | 포토뉴스

화장품, 아는 만큼 예뻐진다...이제는 보존제를 공부하자!

2014년 03월 18일 (화) 14:40:51 전 기자 huei@dailycosmetic.com

▲ 식약처는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좋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하고 사용할까?

이미 우리나라 뷰티 피플들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세계 최정상이다. 인터넷 등을 살펴보면 화장품에 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보존제에 대한 언급은 드물다. 앞으로 보존제를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좋다고 밝히고 특히 보존제를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의화장품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감염이나 오염의 위험이 커진다며 판매점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일회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한다. '아이새도우 팁'과 같이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용기 등에 기재된 '사용기한' 전에 사용하고, 개봉한 경우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거나, 내용물의 분리가 일어난 경우 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보도6

■ **데일리코스메틱 - 『SK Ⅱ 블루밍 에센스 ... 뷰티 피플들의 뒷 담화』**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트렌드면)

■ **내 용**

Daily Cosmetic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TREND > 스킨케어 | 포토뉴스

SK Ⅱ 블루밍 에센스...뷰티 피플들의 뒷 담화

2014년 03월 17일 (월) 09:36:28 전 기자 huei@dailycosmetic.com

▲ SK Ⅱ의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이하 블루밍 에센스)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SK Ⅱ의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이하 블루밍 에센스)는 피부 톤이 균일해지는 것이 장점인 반면 높은 가격이 단점으로 꼽혔다.

그동안 SK Ⅱ가 애지중지해왔던 셀루미네이션 에센스(광채 에센스)를 단종시키면서 올해 2월초에 본격적인 화이트닝 시즌에 맞춰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블루밍에센스)를 내 놓았다. 후발 주자인 셈이다.

현재 수 많은 뷰티 피플들이 블루밍 에센스를 사용해 본 리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대부분은 장점으로는 피부 톤이 밝아지면서 화사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정도를 꾸준하게 바르면 피부가 하얘지는 드라마틱한 화이트닝 효과 보다는 피부가 화사해 지면서 피부 톤이 균일해 지고 붉은 기가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사용하기 전과 10일후의 비교 인증 샷(사진)을 올려놓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보통 에센스는 찐득한 느낌이 있지만 블루밍 에센스는 이 같은 끈적임이 없다며 가벼운 로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히고 바르는 순간 흡수가 빠르고 촉촉해 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스포이드 타입이므로 적당한 량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양 조절이 가능하고 얼굴에 바를 때 편리성을 갖고 있다. 위생적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름종이에 블루밍 에센스를 떨어뜨리고 한시간 후에 이를 확인한 결과 기름 종이에 유분기를 볼 수 없었다며 밝히고 또한 네티즌은 손등에 블루밍 에센스를 바른 후 종이를 붙였는데 모두 떨어졌다며 끈적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반면 블루밍 에센스의 단점으로는 30ml에 17만5천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제품 용기 뒷면에 일본어가 너무 많아 지저분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정대상보도7

■ **데일리코스메틱 - 『자외선차단제 시장 변화 예고.. 쿨링제품 부상』**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1일자 트렌드 스킨케어면)

■ **내 용**

자외선차단제 시장 변화 예고...쿨링제품 부상

숨 선-어웨이 쿨링 선 CC 일주일에 1만개 판매

2014년 03월 31일 (월) 17:52:22 전 기자 huei@dailycosmetic.com

▲ 시원한 쿨링력을 갖춘 자외선차단제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메이크업 그리고 자외선차단을 동시에 해 주는 새로운 개념이다. LG생활건강의 숨이 바로 주인공이다.

올 여름에는 시원한 자외선 차단제가 이슈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스프레이 등 다양한 자외선차단제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시원한 쿨링력을 갖춘 자외선차단제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메이크업 그리고 자외선차단을 동시에 해 주는 새로운 개념이다. LG생활건강의 숨이 바로 주인공이다.

특히 숨의 쿨링력을 갖춘 자외선차단제가 출시한지 일주일 만에 1만개 이상을 판매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직은 섣부른 예측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정대상보도8

■ 데일리코스메틱 - 『GS샵, 신개념 만능 크림 런칭』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4일자 뉴아이템 스킨케어면)

■ 내 용

GS샵, 신개념 만능 크림 런칭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효과까지 동시 줘...

2014년 04월 04일 (금) 16:50:17 전 기자 daily@dailycosmetic.com

▲ GS샵은 오는 4월5일(토) 오후1시부터 신개념 만능 크림'에블리 아가 탬프 크림'의 런칭 방송을 실시한다.

GS샵은 오는 4월5일(토) 오후1시부터 신개념 만능 크림'에블리 아가 탬프 크림'의 런칭 방송을 실시한다.

'에블리 아가 탬프 크림'은 뷰티 각 분야 별 최고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김남주, 김윤진, 성유리, 김옥빈, 한은정 등 최고의 여배우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순수' 뷰티샵의 '수경원장'이 믹싱과 테크닉을 담당했다.

다양한 뷰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넘버원 뷰티 디렉터 '도윤범'이 제품 컨셉 및 최적의 제형을 제안했다. '코스맥스'가 용기 개발과 제품 생산을, 뷰티 유통의 넘버원 GS샵이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응집시켜 준비에만 3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샘플링과 테스트도 수천 번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수경원장은 직접 하루에 샘플 4가지 이상을 본인 얼굴에 테스트 하는 등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제조사가 중간에 생산을 포기하고 싶어할 정도로 깐깐하고 엄격하게 에블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명인 '에블리(æbly)'는 에브리원(everyone), 에브리씽(everything), 에이블(able)의 합성어로 모두가 원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조정대상보도9~37

- **데일리코스메틱** - 3월 14일자 ~3월 31일자 33건
- **내　　용** - 『기사 크레딧으로 신청인명 사용』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데일리코스메틱 뉴스(http://www.dailycosmetic.com)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3월 12일~4월 4일까지 전○○ 기자 명의로 보도된 37개 기사는 성명권 침해된 기사임을 밝힘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이 지난 3월 12일 ~ 4월 4일까지 전○○ 기자 명의로 보도한 37개 기사들은 전○○ 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데일리코스메틱 뉴스가 전○○ 기자의 성명권을 침해해 작성 보도한 기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데일리코스메틱 뉴스는 피해자인 전○○ 기자에게 공식 사과하는 한편 독자에게도 이를 알리는 바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5월 9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데일리코스메틱(www.dailycosmetic.com/)의 2014년 3월 12일부터 2014년 4월 4일까지 신청인 명의로 작성된 기사가 누구의 명의로든 2014. 4. 28. 이후로 데일리코스메틱(www.dailycosmetic.com/),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사 례 30

인터넷 게시판에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7206 손배청구
신 청 인	윤○○
피신청인	주식회사 레지오엑스 (몬스터짐)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11. 0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악플러가 자신의 SNS에 유명 여성 격투기 선수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협박성 글을 올리자, 소속사가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실명으로 작성한 SNS 캡처화면을 공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살해협박범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모욕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성명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기사 게재후 1시간 만에 관련 기사를 즉각 삭제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 추가적으로 유감표명과 함께 손해배상금 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몬스터짐 - 『송○○ 살해협박범, 사과문 공개 …○○FC 입장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9일자 연예면)

■ 내 용

최근 여성 파이터 송○○(20.팀원)이 살해협박을 받았다.

악플러는 자신의 SNS에 "아, 송○○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을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니년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과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자르는 사진을 올렸다.

○○FC측은 즉각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드러냈다. ○○FC 고문 변호사는 '본문과 댓글은 캡쳐해서 보관 중입니다. 경악스런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11월 28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2014. 11. 21. 10:00부터 조정대상기사가 몬스터짐 홈페이지(http://www.monsterzym.com/)에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4.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

   ○ 주식회사 레지오엑스(몬스터짐)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노출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주식회사 레지오엑스(몬스터짐)는 향후 유사한 보도를 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보도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11.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400,000원 지급

제 5 장 사생활 침해 사례

사 례 31

육군 부사관이 신청인 여고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709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뉴스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4. 5.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육군 부사관이 한 고교의 기숙사에 침입해 운동선수인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성폭력사건 피해자인 신청인들은 신분, 소속 등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신청인들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 전재한 세계닷컴, 인터넷 MTN 등 7개 매체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기사는 조정신청 직후 즉각 삭제하였다는 입장을 개진한 후, 추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포털에 남아있는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금 각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연합뉴스를 전재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기사 삭제 및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연합뉴스 - 『부사관이 ○○부 여고생 기숙사 들어가 성추행 · 절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속보면)

■ **내　용** - 육군 부사관이 ○○부 여고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다가 코치 교사에게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7일 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박모(23) 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박 하사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연천지역의 한 고교 기숙사 2층에 창문을 통해 침입,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17)들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서랍과 사물함을 뒤져 7만 9천원이 든 여고생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하사는 성추행 사실이 발각되자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려고 하다가 ○○부 코치 교사와 남학생들에게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하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2층 기숙사에는 ○○부원 여고생 3명이 지내고 1층에는 ○○부원 남자 고교생들과 코치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6월 27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가. 2014. 6. 11. 10:00부터 조정대상기사가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에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나. 피신청인과 계약을 맺고 기사를 전재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2014년 6월 17일까지 조치를 완료하며,

   다. 2014년 6월 17일까지 피신청인과 계약을 맺고 기사를 전재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조정대상 기사 내용이 해당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웹문서, 카페 등에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통지한다.

4.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

   ○ 연합뉴스는 2014년 4월 7일자 "부사관이 ○○부 여고생 기숙사 들어가 성추행·절도"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특정될 수 있게 보도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합뉴스는 향후 유사한 보도를 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보도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6. 1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4,000,000원 지급

제 6 장 기타 사례

사 례 32

귀순자인 신청인이 일부 탈북자들처럼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4서울조정853 · 889 정정 · 손배청구 (채널A) 2014서울조정854 정정청구 (인터넷 채널A)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6.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토크프로그램에서 남한 정부가 신청인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 어머니의 영상을 담은 북한의 제작 대남 비방 방송을 소개하자, 게스트로 나온 탈북 여성 중 한 명이 그 어머니도 귀순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탈북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하거나 돈을 보낸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실명이 노출되고 또 마치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보여져 어머니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되므로 이에 응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 널 A -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2014년 5월 18일자 23:15, 인터넷 채널A 5월 18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내 용** - 〈전략〉

▷ 여MC : 제가 대남 방송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 북한주민 어머니 : 이 살점이 뭉쳐 떨어져 나간들 이렇게야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막으로 박○○의 어머니 김○○, '탈북자 딸을 둔 어머니의 인터뷰'라고 표시)

▷ 게스트 A : 하하하 아~ 나중엔 가지가지 한다.

▷ 북한주민 어머니 : 벌써 한 달이 썩 지나갔습니다. 이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못살던 우리 딸인데 글쎄 이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인터뷰영상을 보며 방송참가자들은 키득키득 웃고 있음)

▷ 북한주민 어머니 : 귀순인지 귀신인지 듣기에도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가며 엄마의 품에서 외동딸을 빼앗아 내려는 남조선 괴뢰도당은 과연 사람입니까?

▷ 여MC : 스스로 온기 아니고 우리가 빼았다구~

▷ 북한주민 어머니 : 짐승도 제 새끼를 빼앗아 가려면 사생결단 하는데 정을 가진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자막에 '너무나 어색한 연기'라고 표시)

▷ 북한주민 어머니 : 그놈들이 만약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말풍선 '드디어 끝났다.'라고 표시)

▷ 남MC : 저 옆에 분은 탈북자?

▷ 여MC : 아니 탈북이 아니고~ 개네 들이 남한에서 데려 갔다~ 납치해갔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하는 거 같애요. 근데 연기력이 너무 떨어지네...

▷ 게스트 B씨 : 진짜로 딸을 잃어버린 사람인지, 연기잔지 궁금해요

▷ 탈북녀 A씨 : 아니 엄마는 맞아요. 엄마는 맞는데 딸은 귀순이 아니고 탈북을 했죠,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꼬임 수에 넘어서 갔다' 이렇게 지금 짜임수를 맞춘 거죠.

▷ 탈북녀 B씨 :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서 선전대 활동을 화술을 조금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머 자식한테서 지금 돈도 받는 엄마예요, 보니까. 근데 강압적으로 이용을 당한 거예요. 저기 나와서.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014서울조정 853)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채널A 홈페이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126회)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4서울조정854)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북에 있는 어머니가 딸에게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8일 프로그램에서 탈북자 어머니의 인터뷰내용을 방영하면서 어머니가 연기를 너무 못한다느니, 딸은 귀순이 아니라 탈북을 했다고 하였고 특히 촬영참가자 김○○씨는 "자식한테서 돈도 받는엄마예요"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딸로 언급된 당사자는 탈북자가 아니고 귀순자이며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아직까지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해본적이 없으며 돈을 보낸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014서울조정889)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귀순한 딸에게서 돈 받는 어머니"는 사실과 다릅니다.

나. 본문 :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 "이만갑"에서 귀순한 딸을 둔 북한의 어머니 얘기를 소개하던 중 일부 출연자들이 '남한의 자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귀순한 딸 박○○씨는 북한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2014년 8월 17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육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6초간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8. 11.(월)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담당 PD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7.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채 널 A -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귀순한 딸에게서 돈 받는 어머니"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7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제 4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1 장 피의자 · 피고인 신원공개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4-24호
언 론 사	광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2월 6일자 6면
기사제목	행인 치고 뺑소니 잡고 보니 경찰관

1. 보도내용

「광주남부경찰은 5일 술자리에 참석한 뒤 귀가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행인의 손목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 김모(42)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 외에 직장명(○○ 경찰서 ○○지구대)과 직책(경위)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4-60호
언 론 사	뉴스1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3월 7일자 전국면
기사제목	'근무지 이탈' 공익근무요원, 업소위장취업해 도둑질

1. 보도내용

「인천○○경찰서는 근무지를 무단이탈 후 배달 업소에 위장취업 해 현금,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중략)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인천 지역 배달업소에 위장취업 한 후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 외에 근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3

의결번호	제2014-208호
언 론 사	인터넷 경향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9월 2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전지훈련 중 폭행" ○○부 고교생, 2년 전 가해 선배 · 감독 등 고소

1. 보도내용

「전남 ○○의 모 고등학교 학생이 2년 전 ○○부 신입생 시절 야구부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가해 학생과 당시 감독이었던 현 프로○○ 구단 코치 등을 뒤늦게 고소했다.
○○은 군 단위 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가 있는 곳이다. (중략)
특히 당시 ○○부 감독이었던 이모씨는 현재 프로야구 구단 ○○○○○ 1군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단순 고소사건 피고소인의 성과 직업, 당시 전국 유일한 군단위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이었던 점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고소 · 고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2 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사 례 4

의결번호	제2014-210호
언 론 사	트루스토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9월 3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의붓딸 성폭행 '노조 위원장 출신' 서울시 공무원 구속기소

1. 보도내용

「(전략) 검찰에 따르면 ○○시청 ○○○○과 소속 ○○관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국으로 발령을 받은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의붓딸 김모(16)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최씨는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도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인 계부의 성과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부이므로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피해자의 신원 역시 특정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역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장 사생활 침해

사 례 5

의결번호	제2014-59호
언 론 사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3월 27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2주만에 복직한 밀양 성폭행 옹호 女警, 최근 승진시험 합격

1. 보도내용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 남학생들을 옹호했던 사실이 알려져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2주 만에 복직해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최근 승진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경남 ○○경찰서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모(29・여) 순경이 현재 이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경찰서 자유게시판엔 ○ 순경의 진급 예정 사실이 알려진 후 올라온 항의 게시물 100여개가 올라왔다. 경찰서 홈페이지엔 ○ 순경의 승진 시험 합격 소식이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지만,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경찰 임용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여경의 성과 나이를 밝히면서 근무처, 근무부서 및 최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실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생활보호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적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 이므로, 언론이 정당한 공적관심 사항이 아님에도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6

의결번호	제2014-172호
언 론 사	미디어제주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8월 7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120여명 투숙객 대피 소동

1. 보도내용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 120여명 투숙객 대피 소동」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서귀포시내 모 호텔의 화재로 인해 대피 중인 호텔 투숙객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여 개인의 초상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빠른뉴스 깊이 있는 보도
미디어제주

사회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 120여명 투숙객 대피 소동

데스크승인 2014.08.07 08:50:01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7일 새벽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소방서

7일 새벽 5시경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투숙객 1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층 연회장 옆 물품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복도와 통로 26㎡가 소실됐고 집기류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당시 호텔에 투숙중이던 128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피해 현장 모습. /사진=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내 모 호텔 화재 피해 현장 모습. /사진=서귀포소방서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 례 7

의결번호	제2014-235호
언 론 사	대구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0월 27일자 종합01면
기사제목	대구 자전거 도로 718km "있으나마나"

1. 보도내용

「대구 자전거 도로 718km "있으나마나"」 제하의 사진

「26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인도 안쪽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는 보행자가, 인도에는 자전거가 안전 의식 없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인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탑승자와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大邱日報

대구 자전거 도로 718㎞ "있으나마나"

자전거, 안전이 우선입니다

〈1〉 사고 발생률 전국 최고

대구의 지형은 평탄하다. 다른 도시에 비해 자전거 타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에 따라 최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3%.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면 대구는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도시일까. 결론은 "아닙니다"이다. 되레 다른 도시에 비해 위험한 도시로 꼽힌다.

대구시는 2006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매년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되레 해마다 늘고 있다.

왜 그럴까. 지역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26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인도 안쪽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는 보행자가, 인도에는 자전거가 안전 의식 없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진홍 기자

100만명당 자전거사고 발생건수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자전거사고

	2011	2012	2013
발생건수	1,354	1,394	1,443
사상자수(사망)	1,405(14)	1,456(22)	1,492(20)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자전거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1천492명.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대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부산(637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인구 대비 자전거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단연 전국 최고다.

또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1천354건, 2012년 1천394건, 지난해 1천44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구 1백만명당 587건(2013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지만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도로는 있지만, 자전거를 우선으로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부족하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219개 노선에 총 718㎞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83%인 184개 노선 611㎞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차도에 화단과 연석 등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28개 노선 92㎞, 차도 위에 탄력봉과 노면 도색 등으로 구분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7개 노선 15㎞뿐이다.

◆보행자 겸용도로 실효성 의문

대구시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당국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감안, 2010년부터 차도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자전거타기운동본부 김종석 본부장은 "차도로 다녀야 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보도 위로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자전거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서구와 북구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각각 119.89㎞, 121.85㎞에 달하지만,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전용도로 비율은 각각 5.2%와 6.6%에 그치는 실정이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전용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당장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설치예정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안전인식 변화도 시급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외에도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면에 계속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제 4 장 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

사 례 8

의결번호	제2014-46호
언 론 사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월 28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신종 마약' 판매 · 투약한 동성연애자 30여명 검거

1. 보도내용

「국내 유통이 금지된 신종 마약을 몰래 유통시키고 투약한 동성연애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적 흥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류를 판매한 백모(43)씨와 이를 구매해 투약한 김모(27)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동성연애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 · 복용한 마약은 일명 '○○'와 '○○'라고 불리며 성관계 중 성적 흥분도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주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복용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도 모두 동성연애자다. 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백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했으며 일부는 외국 여행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입형 마약인 ○○는 지난해 12월 10일, 담배처럼 피우는 마약인 ○○는 지난해 9월 6일에 각각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됐다. 이들 마약은 복용하다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를 한 병(○g)당 약 ○만원씩 주고 80병을 구매한 뒤 2병에 ○○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종 마약을 거래하거나 만나서 함께 복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인 '○○', '○○'의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고, 마약범죄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9

의결번호	제2014-90호
언 론 사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서울 한복판에 '대마 온실' 만든 간 큰 마약상 체포 …한달 전기세만 160만원

1. 보도내용

「(전략)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근처 노상에서 김군에게 대마 17g을 ○○만원에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 31g을 ○○○만원에 판매해 거래선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중략) 이 '대마 온실'은 ○○○조명과 ○○○, 캐나다산 퇴비 등을 갖췄다. 온실을 유지하기 위해 이씨 일당은 한 달에 전기세만 160만원을 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대마 특유의 냄새 때문에 발각되지 않도록 온실문을 3중으로 잠그고, 서로 대포폰으로만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마초의 제조 원료 및 제조방법, 판매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마약범죄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0

의결번호	제2014-152호
언 론 사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7월 2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술에 '이것' 탔더니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술술' 털어놔 … 술에 마약 탄 강도단 검거

1. 보도내용

「(전략)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 20분쯤 양주 남방동 한 식당 별실에서 땅을 살 것처럼 속여 유인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1)씨에게 술에 마약류인 '○○○○'을 탄 마시게 해 박씨가 정신을 잃자 신용카드를 빼내 1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은 강력한 진정·수면·예비마취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기억상실과 최면 등을 일으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다. 박씨 등은 ○○○○을 탄 술을 먹은 뒤 신용카드를 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명칭과 효능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해당 약물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1

의결번호	제2014-299호
언 론 사	뉴스1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1월 2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팝니다"…온라인서 마약 판매 일당 덜미

1. 보도내용

「(전략)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달 10일 스마트폰 채팅 앱에 '한 ○, 한 ○, 반 ○ 팝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이를 알아챈 이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 ○○○○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필로폰 ○.○~○.○g이 든 주사를 대당 ○○만~○○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이 사용한 단어 중 '한 ○'은 주사기 한 ○, '한 ○'은 주사기 한 대 등을 의미하는 '은어'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및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장 자살관련 보도

사 례 12

의결번호	제2014-144호
언 론 사	인터넷 서울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8월 5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난 외톨이' 언어장애 30대 남성의 쓸쓸한 죽음

1. 보도내용

'그동안 많이 외롭고 슬프고 정이 그리웠습니다.' 직업도 없이 홀로 살아온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오전 3시 45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단칸방에서 양모(37)씨가 목을 매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중략) 양씨는 유서에서 '친부모 없이 어린 시절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11살 때 중국집 배달원으로 내몰리는 등 학대를 당했고 학교도 잘 못갔다'며 '그 결과 대인기피증과 언어장애를 갖게 돼 이성친구 하나 못 사귀고 외톨이로 살아왔다'고 적었다. 양씨는 또 '참많이 외로웠고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씨는 20년 이상 부모와 연락을 끊고 별다른 직업도 없이 홀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3

의결번호	제2014-173호
언 론 사	경안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8월 22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내연관계 비관' 30대 女공무원 자살

1. 보도내용

「지난 20일 3시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동의 한 아파트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모(○○·여)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씨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같은 구청 소속 김모(46)씨로 경찰조사 결과 ○씨와는 내연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직업 및 근무처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직장동료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4

의결번호	제2014-258호
언 론 사	문화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1월 3일자 사회12면
기사제목	'생활苦' 일가족 3명 안타까운 자살

1. 보도내용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와 중학생 딸이 먼저 목숨을 끊은 뒤 이를 발견한 아빠마저 뒤이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중학생 딸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에서 '우리 가족은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죽는다'는 글을 남겨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중략)
C 양도 유서에서 '그동안 부모님 말 안들어서 미안하다'며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으며 행복하게 죽는다'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에게 '우리 시신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가족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 보도하여 자살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6 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 례 15

의결번호	제2014-26호
언 론 사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월 28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포털 지도도 범행에 사용' 금은방 턴 20대들

1. 보도내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를 이용해 금은방을 턴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이들은 우연히 30초 만에 금은방을 턴 절도범의 범행 수법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초범이었지만 이들의 준비는 철저했다. 먼저 대전과 강원도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 번호판 2개를 훔쳤다. 또 무전기와 쇠망치 등 범행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며 최대한 짧은 시간에 물건을 훔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다.
특히 이씨 등은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 ○○○○○에서 제공하는 '○○○'(실제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파출소와 경찰서가 얼마나 먼지, 도주 경로에 단속·방범 카메라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중략)
하지만 이들은 상가 폐쇄회로(CC)TV와 길가에 세워 둔 차량의 블랙박스를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포털지도(로드뷰)를 활용하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사용된 도구, 체포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처럼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6

의결번호	제2014-222호
언 론 사	인터넷 서울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가스비 절감' 계량기 조작한 배관공 구속

1. 보도내용

「(전략) A씨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적게 낼 방법을 찾던 중 가스 ○○○ 내부 ○○○에 ○○을 여러 개 내면 가스사용량이 평소보다 80%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중략)
경찰의 한 관계자는 "○○○는 ○○○이 압력을 받으면 가스사용량 수치가 올라가는 원리"라며 "○○○에 ○○이 뚫려 있으면 압력량이 줄어 수치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노린 범행"고 말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스 계량기를 훼손하여 가스요금을 줄이는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5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언론조정 · 중재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 목록은 각 중재부별 접수 · 처리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 및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내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금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조항 :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이하 '결정'으로 표기함)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행강제금 조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결정(쌍방 동의)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하6도록 강제함
- 조정 사건 전체 목록 중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는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신청건으로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서울중재부

서울중재부

2014서울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환경일보
조 정 대 상	『GS칼텍스, 토양오염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환경공사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대표가 '회장 아들'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모 회사 공사를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2면)

2014서울조정3, 6, 30, 100	(각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JTBC(3), 인터넷 일요신문(6), JTBC(30), e머니투데이(100)
조 정 대 상	• JTBC : 아침뉴스 프로그램 『파혼 선언에 곳곳 낙서…'CEO 귀족녀' 황당 복수극』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8일자, 인터넷 JTBC 11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단독보도 – 파혼남 괴롭혀 피소 '화성인 귀족녀' 이력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화성인" 귀족녀, 파혼자에 복수하다 형사처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전 남자친구간 진행중인 소송사건에서 신청인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JTBC, JTBC) • 각 취하 (인터넷 일요신문, e머니투데이/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	(정정청구) ○○회사법인 ○○○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녹차를 먹인 돼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취급하는 녹돈에 녹차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5	(정정청구) 주식회사 ○○○○○○ 외 1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논란 부른 신공법』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부산 해안도로의 붕괴사고 원인이 신청인 업체의 특허공법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iMBC 다시보기 뉴스면)

2014서울조정7~10	(각 정정 · 반론청구) 임○○ 외 1인 對 문화일보(7 · 8), 인터넷 문화일보(9 · 10)
조 정 대 상	(1) 『'법사위 책임론' 급부상』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정치면) (2) 『'유령법'까지 만든 '황당한 국회'』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정치면) (3) 『여야 합의한 법안 '슬쩍' 수정...전대미문의 '입법 왜곡'』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정치면) (4) 『국회, '황당한 改惡' 私學法 신속히 바로잡아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1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법제사법위원회가 '묻지마'식 입법절차를 거쳐 사립학교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학법 개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2월 14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14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1, 3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YTN(11), YTN(37)
조 정 대 상	(1)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내가 쓰고 있는 ○○○톡도 스미싱에 뚫릴 수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2) 뉴스EYE 프로그램 『스미싱 "쓰나미"... ○톡 계정도 뚫렸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3) 뉴스Q 프로그램 『스미싱 진화 ... ○톡 계정도 뚫렸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4) 뉴스출발 프로그램 『스미싱 진화 ... ○톡 계정도 뚫렸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5) YTN24 프로그램 『친구 ○톡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 눌렀다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특정 메신저에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한 원인이 신청인 회사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톡 스미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 · 13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주차장 경사면 출입구 사고 과실 비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경사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신청인에게 더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주차장 경사면 출입구 사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2014서울조정14	(정정청구) 경찰청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성매매, 권력비리, 토착비리 '7대 사회악'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경찰이 금년도 핵심치안과제로 4대 사회악에 성매매 등 3개 범죄를 추가한 7대 사회악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 · 16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 對 e그린경제
조 정 대 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돈 받고 한국대표선발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준비생 모집설명회에서 유료 교육시 대표선발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포털에도 관련 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한국○○○○협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9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7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1) 『반성 없는 ○○○』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7일자 건강면) (2) 『결국...○○○, 비만·당뇨 원인 초코○○ GH인증 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7일자 건강면) (3) 『식약처, ○○○ 초코○○ 허위과대광고 검토』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7일자 건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인기 제품의 보건제품 품질인증(GH인증)을 스스로 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초코○○ GH인증 취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건강면)

2014서울조정18	(정정청구) 서○○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정부 '2016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시설기준이 까다로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뉴스7 프로그램 『정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준비 본격화』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2일자)

2014서울조정19	(정정청구) 김○○ 對 장애인의 주홍글씨
조 정 대 상	『농아여성 가슴만지고 "늙은 여자라 괜찮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성 농아인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농아인 성추행 사건, "사실과 다르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20~22	(각 추후청구) ○○○○ 주식회사 對 투데이코리아[20], 뉴스1코리아[21], 메디컬투데이[22]
조 정 대 상	• 투데이코리아 : 『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가공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부산식약청, 유통기한 허위표시한 고등어가공품 적발회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전국면) • 메디컬투데이 : 『유통기한 경과한 간고등어, 알고도 재포장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 가공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투데이코리아, 뉴스1코리아/사유 : 기사삭제) • 취하 (메디컬투데이/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메디컬투데이 : 『○○○○,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식품판매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사건사고면)

2014서울조정23 · 24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세이프투데이
조 정 대 상	(1) 『무고와 명예 훼손 '위기관리경영'』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뉴스면) (2) 『명예훼손 남발 '위기관리경영'』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일자 뉴스면) (3) 『강병화 회장 '위기관리경영'에 KO 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협회 차기회장에 입후보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5, 26	(각 손배청구) 최○○ 對 연합뉴스TV[25], 인터넷 연합뉴스TV[26]
조 정 대 상	뉴스워치 프로그램 『황영조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서울시 관리 허술』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4년 1월 13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서울시의 잠실주경기장 임대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없이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7~29, 93, 105, 113~115	(정정 · 반론 · 손배청구[27~29],각 손배청구[93,105], 손배 · 반론 · 손배청구[113~115]) 이○○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1) 『체불된 임금은 꼭 갚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메인면) (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0일자 시사면) (3) 『떡국 안 먹으면 나이도 안 먹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일자 시사면) (4) 『'을지로위원회'는 모르고 '프레스바이플'은 아는 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시사면) (5) 『근로자와 경영자가 손잡고 노동부에 간 날』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시사면) (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당하고…』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편집위원간의 통화내역을 동의없이 공개하고 대화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 피신청인 신문의 기자로 재직했던 신청인을 지칭하며 사적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신청인 관련 언론조정신청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을 동의없이 보도하고, 신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4. 신청인이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을 보도하며 개인적인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 내용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7~29](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조정성립[93,105,113~115](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2014서울조정27~29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도 삭제 – 피신청인이 2014서울조정27~29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할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소송 취하 – 피신청인이 기사를 삭제할 경우 신청인이 위키트리에 게재한 피신청인 관련 기사를 수정하고, 트위터 게시물 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93,105,113~115]

2014서울조정31 · 32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상조, 계열사 '○○'이 극장식 영업으로 또 망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2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고 상조가입을 권유하는 신청인 회사의 영업방식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상조 계열사 '○○' 극장식 영업' 보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9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33~36	(각 정정 · 손배청구) 지○○ 對 기독교신문(33 · 34), 인터넷 기독교신문(35 · 36)
조 정 대 상	『○○○교회문제를 외부세력에 제공한 것은 현 담임목사 측』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7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11월 23일자 교계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교회의 갈등을 부추긴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기독교신문 2014년 2월 24일자 7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2월 24자 교계종합면)

2014서울조정38	(손배청구) 박○ 對 시사1
조 정 대 상	『강남의 ○○○ 치과의원 의료법 위반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명을 적시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9~42	(각 정정 ·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머니투데이(39 · 40), e머니투데이(41 · 42)
조 정 대 상	『코레일 평균연봉은 6500만원...KBS는』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4년 1월 11일자 종합뉴스면, e머니투데이 1월 11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KBS가 비공개로 국회감사를 받으며 결산보고서에는 인건비 항목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정정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4년 2월 14일자 2면, e머니투데이 2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2014서울조정43~46	(각 정정청구) ○○유치원 對 MBC-TV[43], iMBC[44], 네이버[45], 다음[46]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 갑 중의 갑, 유치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1월 4일자, iMBC · 네이버 · 다음 1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C, iMBC, 네이버/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다음/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7~52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경향신문[47 · 48], 인터넷 경향신문[49 · 50] (각 정정청구) 네이버[51], 다음[52]
조 정 대 상	『대부업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구 합동점검 비협조, 단속실적 저조, 명단 늦게 주고 대리조사 거절』 (경향신문 2014년 1월 17일자 경제면, 인터넷 경향신문 · 네이버 · 다음 1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2013년 서울시와의 대부관련 업체 합동점검시 업체명단을 늦게 전달하거나 중복 명단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네이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다음/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강남구청 대부업체 단속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2월 12일자 20면, 인터넷 경향신문 · 네이버 · 다음 2월 12일자)

2014서울조정53~57, 63	(각 정정청구) 전○○ 對 한겨레[53], TV조선[54], 조선일보[55], 조선닷컴[56], 인터넷 한국일보[57], 인터넷 한겨레[63]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장남 미술품 중개인은 해외출국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3면, 인터넷 한겨레 7월 24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7 프로그램 『비자금 관리인 의혹, 전○○은 누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3일자) • 조선일보 : 『전씨 비자금 관리인 압수수색날 출국』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1면, 조선닷컴 7월 23일자 정치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전두환 아들 딸과 남다른 관계... 사라진 전○○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으로 압수된 미술품 매입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TV조선, 조선일보, 조선닷컴/사유 : 추후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한국일보 : 『"전재국씨 비자금 관리 의혹 전○○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58	(손배청구) 노○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신생아실 드나드는 낯선 사람의 정체는?』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몰래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59~62	(각 정정 · 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MBN(59 · 60), 인터넷 MBN(61 · 62)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수력 발전소 막어버린 3m보』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1월 8일자, 인터넷 MBN 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력발전소 앞에 보를 설치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64~66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한겨레21(64), 인터넷 한겨레21(65), 인터넷 한겨레(66)
조 정 대 상	• 한겨레21 : (1) 『"독재정부도 마다 않는 한국투자자들 변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1일자 28면~29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20일자 표지이야기면) (2) 『기업의 양탈에 총알이 발사되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1일자 20면 ~26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20일자 표지이야기면) • 인터넷 한겨레 : 『"이명박 전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경제 자문' 그만둬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국제면)
신청인 주장	해외에서 의류수출 현지법인를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인근 군부대 사령관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 지분을 나누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별도의 반론보도 외에 조정사건 대상 동영상(인터넷 한겨레21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6252.html 기사 중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르포 [21의 생각])의 말미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동영상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이 행 결 과	한겨레21 : 『○○ 캄보디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64면, 인터넷 한겨레21 · 인터넷 한겨레 2월 24일자)

2014서울조정67 · 68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업코리아
조 정 대 상	『국회 보좌관 윤리,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모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했던 신청인이 보좌관과 사제관계이며,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도했으나 사실무근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69	(정정청구) 신학용 외 1인 對 업코리아
조 정 대 상	『국회 보좌관 윤리,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보좌관이 인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도 해당 국회의원이 보좌관에게 약점이 잡혀 보좌관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0	(정정청구) 신구범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19년간 19번 '철새지사'』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전 제주지사인 신청인이 당적을 8번 변경한 철새 정치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71~80, 83 · 84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서울신문(71 · 72), 인터넷 서울신문(73 · 74), 인터넷 한겨레(75 · 76), 인터넷 한국일보(77 · 78), 온라인중앙일보(79 · 80), 한국일보(83 · 84)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1) 『남극부터 아프리카까지...한국 리더가 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일자 27면, 인터넷 서울신문 1월 1일자 연예면) (2) 『올 3월 완공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총괄 김○○ ○○연구소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23면, 인터넷 서울신문 1월 22일자 기획면) • 인터넷 한겨레 : 『제4대 ○○연구소장에 김○○ 박사 선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글로벌 리더의 선택 · 라이프 오브 펭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문화생활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31일자 문화생활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연구소장 김○○ 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인 최초로 남극 땅을 밟은 사람이 김예동 박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한국일보, 한국일보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서울신문 : 『한국인 최초 남극 방문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20면, 인터넷 서울신문 2월 21일자 문화면) • 한국일보 : 『한국인 최초 남극 방문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20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1일자 문화생활면)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3일자 2면)

2014서울조정81, 82	(각 정정청구) 이명박 對 주간한국(81), 인터넷 주간한국(82)
조 정 대 상	(1)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4년 1월 13일자 1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초기화면) (2)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4년 1월 13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4년 1월 13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85, 86	(각 정정청구) 신○○ 對 조선일보[85], 조선닷컴[86]
조 정 대 상	『한국 과학자 저명 논문 2편 조작 파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11월 8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1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07년 외국 저명 잡지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 교수 논문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4년 2월 15일자 A10면, 조선닷컴 2월 1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7~89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철도공단 · 철도대 · 업체 비리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한국○○○○공단이 발주한 CCTV 사업을 독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철도시설공단-업체 비리 유착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건설면)

2014서울조정90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 보톡스, 美서 '험난한 장정' 예고... FDA승인 오래 걸릴 듯』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의학건강)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제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보톡스, 미국 판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2014서울조정91, 92	(각 정정청구) 서울시관악구의회 對 아시아경제[91], 아시아경제닷컴[92]
조 정 대 상	『운전기사 데리고 외유나간 기초의원님들』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4년 1월 27일자 8면, 아시아경제닷컴 1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관악구 의회 의원들이 임기말 남은 예산 쓰기식 외유를 한 것처럼 보도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관악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18면)

2014서울조정94~99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최○○ 對 온라인 중앙일보(94 · 95 · 96), 중앙일보(97 · 98 · 99)
조 정 대 상	『통진당 강령에 공산주의 말만 안 했지 다 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1월 28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11년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개정 강령에 공산주의 강령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아니다" 최○○, 법무부 주장 반박』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4년 2월 20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01	(손배청구) 홍○○ 對 EBS-TV
조 정 대 상	다큐프라임 프로그램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 5부 말문을 터라』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대학생 수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3백만원)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02	(손배청구) 정○○ 對 세이프투데이
조 정 대 상	『무고와 명예 훼손 '위기관리경영'』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협회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03 · 104	(정정 · 반론청구) 박○○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음대 유명교수 '학력위조'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 이외에는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 중 신청인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6, 107	(각 정정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건설경제[106], CNEWS[107]
조 정 대 상	• 건설경제 : (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찰 재공고 결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1면)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행정미숙』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6일자 5면, CNEWS 12월 26일자 오피니언면) (3) 『행정미숙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불성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5면, CNEWS 1월 9일자 오피니언면) • CNEWS : 『5000억원대 제2여객터미널 외장 · 골조공사 재공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공사/계약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입찰이 재공고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공사입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건설경제 2014년 3월 7일자 2면, CNEWS 3월 7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08, 109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경향신문[108], 인터넷 경향신문[109]
조 정 대 상	『SBS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하자 다시 해고』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1월 20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프리랜서로 일했던 전 직원에게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0	(정정청구) 윤진숙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원유 유출 피해마을 '시프린스호 악몽' 재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일자 속보면) (2) 『윤진숙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품격'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4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 장관인 신청인이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원유유출사고 피해마을 방문당시 기름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1, 112	(각 정정청구) ○○○○노조 ○○○○지역지부 對 한국경제(111), 한경닷컴(112)
조 정 대 상	『학생들에게 쫓겨나는 민주노총의 중앙대 개입 투쟁』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1월18일자 사설면, 한경닷컴 1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와 무관한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가세했다가 대학생들에게 쫓겨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민주노총 중앙대 개입 투쟁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3월 1일자 26면, 한경닷컴 2월 28일자 오피니언면)

2014서울조정116·117	(정정·손배청구) 조○○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현직 의사가 전라도 섬노예 관해 페북에 올린 글 보니... 네티즌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섬노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전라도 섬노예 논란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18~123	(각 정정·손배청구) 허○○외 1인 對 한국경제(118·119), 한경닷컴(120·121) (각 정정청구) 네이버(122), 다음(123)
조 정 대 상	(1) 『기업 위의 '또 다른 甲',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11월 9일자 1면, 한경닷컴·네이버·다음 11월 9일자 정치면) (2) 『법적 다툼 끝난 것도 "재협상하라" ... 을지로위원회의 '기업정치'』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11월 9일자 7면, 한경닷컴·네이버·다음 11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매장철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대형마트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한국경제, 한경닷컴)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24~127	(정정청구) ○○훈련단 對 채널A[124], 인터넷 채널A[125], KBS-1TV[126], KBS미디어[127]
조 정 대 상	• 채널 A : 쾌도난마 프로그램 『초등생 화생방 훈련… 캠프 업체 강력 비판』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6일자, 인터넷 채널A 2월 6일자 홈페이지)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인터넷 광장] 초등학생에게 '화생방 훈련'…논란 가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KBS미디어 2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초등학생들에게 군대식 화생방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채널A, 인터넷 채널A/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강제이행금) • 취하 (KBS-1TV, KBS미디어/사유 : 피신청인 사과)
이 행 결 과	인터넷 채널A : 『초등생 화생방 훈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4서울조정128	(추후청구) 조○○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불법 도축한 돼지 유통시킨 육가공업체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도축한 병든 돼지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법 도축 돼지 유통」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2014서울조정129 · 130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세이프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할로겐화합물 가압식시스템과 IG-○○○ 200bar 시스템이 폭발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포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청정소화설비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외에 별도의 기고문 게재
이 행 결 과	『['IG-○○○ 200bar 시스템'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31 · 132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데일리팜
조 정 대 상	(1) 『약국판매 금지하는 '의사건기식' 실태보니』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4일자 약사약국면) (2) 『"건기식 포장 '약국판매금지' 문구 시정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2일자 약사약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여성건강제품의 병원납품가를 고가로 책정해 납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약국판매금지 건기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약사약국면)

2014서울조정133 · 134	(정정 · 반론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코레일관광개발 "KTX 승무원 근로조건 열악?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산하 모 지부가 정규직 고용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과장하는 등 근로조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코레일관광개발 "KTX 승무원 근로조건 열악? 사실과 달라"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7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135~142	(각 정정청구) 정○○ 對 MBC-TV(135), iMBC(136), 네이버(137), 다음(138), 한국일보(139), 인터넷 한국일보(140), 네이버(141), 다음(142)
조 정 대 상	•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엄마가 두려워요』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2일자) • MBC-TV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엄마가 두려워요』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3일자, iMBC · 네이버 · 다음 12월 23일자 뉴스면) • 한국일보 『"아이 안 돌려주면 기흉수술 동의서 못 써준다" 학대 엄마 친권 앞에선 보호기관도 정부도 무기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 네이버 · 다음 1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C-TV, iMBC,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43, 144	(각 정정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통일신문[143], 인터넷 통일신문[144]
조 정 대 상	『탈북 단체장들 북한이탈주민과 불편한 간담회』 제하의 기사 (통일신문 2014년 2월 17일자 6면, 인터넷 통일신문 2월 17일자 탈북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최한 탈북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재단 이사장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탈북 단체장들의 요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간담회' 기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통일신문 2014년 3월 10일자 6면, 인터넷 통일신문 3월 10일자 탈북민면)

2014서울조정145~148	(각 정정 · 반론청구) ○○○○○조합원자치회 對 서울교육방송[145 · 146], 주택뉴스[147 · 148]
조 정 대 상	• 서울교육방송 : 『○○뉴타운 3구역의 범죄예방 대책까지 반대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취재수첩면) • 주택뉴스 : 『○○뉴타운 3구역 비대위들, 범죄예방까지 불법규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주택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구역에 책정된 '범죄예방' 예비비 신설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 철거비용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조정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49 · 150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와이비씨연합방송
조 정 대 상	『용역비리에 강서署 '뒷짐', 감금폭행도 '외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6일자 핫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폭력배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모 건물을 강제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자 퇴거후 퇴거에 불응한 세입자를 감금 · 폭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51~154	(각 정정 · 손배청구) 하○○ 對 불교신문(151 · 152), 인터넷 불교신문(153 · 154)
조 정 대 상	『'땡중' '빠순이'…불교 스님 매도 뉴시스 '하○○ 칼럼' 도 넘다』 제하의 기사 (불교신문 2014년 1월 25일자 2면, 인터넷 불교신문 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칼럼니스트인 신청인이 도가 넘는 표현으로 불교를 비하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불교계와 스님을 매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외에 별도의 기고문 게재
이 행 결 과	『하○○ 칼럼 불교계 비하 의도 없어』 제하의 기사 (불교신문 2014년 3월 19일자 2면, 인터넷 불교신문 3월 19일자 사회면면)

2014서울조정155~159	(각 정정청구) 이○○ 對 경향신문(155), 인터넷 경향신문(156), 네이버(157), 네이트(158), 다음(159)
조 정 대 상	『코치의 폭행 피해자인데 소치 출전자격 뺏다니요』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2월 3일자 12면, 인터넷 경향신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동계스포츠 종목 국가대표 코치인 신청인이 전지훈련 중 선수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네이트, 다음/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14년 2월 3일자 12면... ○○ 국가대표 이 모 코치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0 · 161	(각 손배청구) 정○○ 對 EBS-TV(160), EBS뉴스(161)
조 정 대 상	다큐프라임 프로그램 『말문을 터라』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1월 28일자, EBS뉴스 1월 28일자 지식e 다큐프라임면)
신청인 주장	대학생 관련 방송에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62~167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협회 對 노컷뉴스(162·163), 네이버(164·165), 다음(166·167)
조 정 대 상	『인천 왕길동 쓰레기 산, 원상복구는커녕 불법 매립』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4년 2월 12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골재 폐기물 원상복구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작물 설치 후 추가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서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4년 3월 10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 3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8·169	(정정·손배청구) ○○○○○○○연합회 외 1인 對 기독교뉴스
조 정 대 상	『○○○교회 원로목사, 절차 없이 교회 돈 펑펑』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5일자 헤드라인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설립자인 ○○○씨가 ○○○○연합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자 ○○○○○○○연합회를 세운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연합회"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70, 171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YTN(170), 인터넷 YTN(171)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현장 24 프로그램 『두 주머니 챙기는 '개조 화물차'』 제하의 보도 (YTN 2013년 10월 28일자, 인터넷 YTN 10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일반 화물차가 골재를 싣는 것은 불법이며, 화물차가 구조변경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 YTN : 뉴스출발 현장 24 프로그램 『청소용 화물차, 오락가락 처분 왜?』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21일자) • 인터넷 YTN : 『'청소용 화물차'...경찰은 단속 검찰은 무혐의,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2 · 173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석유공사 발주도 유령회사 낙찰』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령회사를 동원해 ○○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을 낙찰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74 · 175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현대판 사도세자 뒤주? 스터디룸 가구 인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A1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 · 판매하는 학생용 제품이 학부모가 자녀들의 공부를 강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76, 177	(각 반론청구) 임○○ 외 2인 對 경향신문[176], 인터넷 경향신문[177]
조 정 대 상	『의협 임원 "협상단, '수가인상' 위해 의료 영리화 정부입장 수용"'폭로』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2월 21일자 16면, 인터넷 경향신문 2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의료민영화 등 정부측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의협협상단 정부협상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3월 28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8	(반론청구) 재단법인 한국○○○○○○○○○ 對 라포르시안
조 정 대 상	『[The 만나다] 유전질환 분야 경제성 낮다? 전세계 4천여명 대상 LSD 치료제 조단위 매출』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인터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대한○○○○학회 인증 검사원의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The 만나다 : 이○○ 교수 인터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5일자 인터뷰면)

2014서울조정179~181	(각 추후청구) 한○○ 對 연합뉴스[179], 네이버[180], 다음[181]
조 정 대 상	『공공연구노조, 전 한국○○○○연구원장 형사 고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직장의 거액 기금손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한국○○○○○연구원장 기금관리 소홀 '무혐의'』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4년 3월 7일자 속보면, 네이버 · 다음 3월 7일자 속보면)

2014서울조정182, 183	(각 손배청구) 이○○ 對 MBC-TV[182], iMBC[183]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형외과 '부작용 설명' 불충분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iMBC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취재의도와 다르게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84~187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MBC-TV[184 · 185], iMBC[186 · 187]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新신가족기획』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2월 10일자, iMBC 2월 10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가족간의 갈등문제를 다루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손해배상외에 신청인이 전문 상담가를 통해 5회의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 행 결 과	『2월 10일자 〈新가족기획〉 외도 남편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iMBC 2014년 3월 26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88, 189	(각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동두천신문[188], 양주 · 동두천 닷컴[189]
조 정 대 상	• 동두천신문 : 『송내○○ 1단지 관리부실 실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2면) • 양주 · 동두천 닷컴 : 『송내○○ 1단지 관리부실 실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송내○○ 1단지 관리부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두천신문 2014년 4월 18일자 2면, 양주 · 동두천 닷컴 4월 1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0, 191	(각 정정청구) 서○○ 對 미디어스[190], 유니온프레스업뉴스[191]
조 정 대 상	• 미디어스 : 『"예술가에겐 빵과 장미가 함께 필요하다", '미술제'라는 이상한 나라의 예술공장』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5일자 오피니언면) • 유니온프레스업뉴스 : 『공장미술제 작가 지원금 '0원' 논란 "전시 참여에 의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문화예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청년작가를 착취 · 동원하는 등 미술계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92, 196	(각 반론청구) 이○○ 對 MBC-TV[192], iMBC[196]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고액 굿' 꾀는 인간문화재 제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2월 19일자, iMBC 2월 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무속인인 신청인이 굿을 해주고 지나치게 고액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93	(손배청구) 강○○ 對 인터넷 메트로
조 정 대 상	『[쇼핑]W몰, "세뱃돈 신권으로 교환하세요"』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1월 25일자 라이프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내게시용으로 촬영했던 행사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94, 195	(각 정정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對 중앙일보[194], 온라인 중앙일보[195]
조 정 대 상	(1) 『부동산 계약서 595만건 뚫렸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7일자 1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7일자 사회면) (2) 『주민증-인감만 위조하면 주인 몰래 집 팔 수 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7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7일자 사회면) (3) 『"내 재산정보 샜나" 불안감 확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8일자 8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8일자 사회면) (4) 『협회 이익에 눈멀어 고객 피해 입힌 중개사협회』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8일자 29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해킹당해 부동산계약서를 비롯한 595만건의 부동산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보도문] 중개사협 홈피 해킹됐지만 부동산계약서 유출은 없어』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3월 22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2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7~200	(각 정정 · 손배청구) 한○○ 對 SBS-TV[197 · 198], SBS콘텐츠허브[199 · 200]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두 얼굴의 사나이 '가락시장의 거지목사'』 제하의 보도 (SBS-TV 2013년 9월 14일자, SBS콘텐츠허브 9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목사 사칭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01	(손배청구) 임○○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사태 점입가경…노조탄압에 여직원 유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노조원인 신청인이 유산했다고 보도해 신청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02~205	(각 정정 · 손배청구) 한국항공공사 對 민주신문(202 · 203), 인터넷 민주신문(204 · 205)
조 정 대 상	『썩을대로 썩은 한국공항공사 – 5년동안 임직원들 뇌물 비위행위 전혀 몰랐을까?』 제하의 기사 (민주신문 2014년 2월 9일자 14면, 인터넷 민주신문 2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의 개인 비위행위를 보도하면서 공사 내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썩을 대로 썩은 한국공항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14면)

2014서울조정206 · 207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1) 『(단독) '○○○', 세무조사로 20억 추징』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일자 산업면) (2) 『국세청, ○○○ 세무조사..20억 추징금 부과 통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08~211	(각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EBS-TV(208 · 209), EBS뉴스(210 · 211)
조 정 대 상	하나뿐인 지구 프로그램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2월 14일자, EBS뉴스 2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 등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12~215	(각 정정 · 손배청구) 백○○ 對 채널A(212 · 213), 인터넷 채널A(214 · 215)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족발의 위상상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월 31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31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위생적으로 족발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16~219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월요신문(216 · 217), 인터넷 월요신문(218 · 219)
조 정 대 상	『"엄살이 심한것 같다"』 제하의 기사 (월요신문 2014년 3월 10일자 사회면, 인터넷 월요신문 3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20~235	(각 정정 · 손배청구) 권○○ 對 인터넷 YTN(220 · 221), 조선닷컴(222 · 223), 인터뷰 365(224 · 225), 아주뉴스(226 · 227), 이데일리(228 · 229), 쿠키뉴스(230 · 231), 세계닷컴(232 · 233), YTN(234 · 235)
조 정 대 상	• 인터넷 YTN : 『[단독]강남 한복판서 女상대 '묻지마 폭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강남 한복판 '묻지마 폭행'…30대 여성 고소장 제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뷰 365 :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강남서 '묻지마 폭행'이?…30대女 고소장 제출 "성추행도 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강남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30女 뇌진탕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외 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유없이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YTN, YTN) • 각 취하 (조선닷컴, 인터뷰365, 아주뉴스, 이데일리, 쿠키뉴스, 세계닷컴/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36~239	(각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TV조선(236 · 237), 인터넷 TV조선(238 · 239)
조 정 대 상	뉴스쇼 판 프로그램 『김여인, 에이미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 고발』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4년 3월 17일자, 인터넷 TV조선 3월 17일자 문화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전 직원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40~243	(각 정정 · 손배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헤럴드경제(240 · 241), 인터넷 헤럴드경제(242 · 243)
조 정 대 상	『대구 ○○사 국제관광선원 국비 수십억 빼돌려』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4년 3월 11일자 11-A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찰이 경내에 ○○○○○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비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구 동화사 국비 횡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4년 3월 28일자 지역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244 · 245	(정정 · 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국민대 평생교육원 신편입생 모집, "나도 이제 경영학 학사"…혜택 '눈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의 졸업생들이 모교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관련 부분 내용 수정

2014서울조정246	(정정청구) 동작구 對 인터넷 환경일보
조 정 대 상	(1)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사건사고면) (2)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동작구가 토양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건축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바꾸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사건사고면)

2014서울조정247, 248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연합회 對 MBC-TV(247), iMBC(248)
조 정 대 상	불만제로UP 프로그램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12일자, iMBC 3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이 지나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요구해 학부모에게 보육료 부담을 부당하게 지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불만제로UP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불만제로UP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 2014년 4월 8일자)

2014서울조정249~252	(각 정정 · 손배청구) 황○○ 對 MBC-TV(249 · 250), iMBC(251 · 252)
조 정 대 상	(1)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황○○의 위대한 유산』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3일자, iMBC 3월 3일자) (2)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황○○의 위대한 유산Ⅱ. 세 명의 상속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10일자, iMBC 3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작고한 유명 영화배우의 양녀인 신청인이 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재산을 탐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53~256	(각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KBS-1TV(253 · 254), KBS미디어(255 · 256)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컴퓨터 수리사기』 제하의 보도 (KBS-1TV 2014년 3월 7일자, KBS미디어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컴퓨터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수리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보도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다시보기 화면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이 행 결 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방송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KBS-1TV 2014년 5월 2일자, KBS미디어 5월 2일자)

2014서울조정257 · 258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사이오랩
조 정 대 상	『세계 1위 소설커머스 그루폰, ○○ 악재 넘을 수 있을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실적부진과 고객정보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수정

2014서울조정259	(정정청구) 이○○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종합] '십알단 시즌 2 시작되나?'… 박원순 작심 대응 배경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에게 아들 병역 관련 우편물을 보낸 신청인이 일간베스트같은 우익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십알단 시즌 2 시작되나?'…박원순 작심 대응 배경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260~265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KBS미디어(260 · 261), 세계닷컴(262 · 263), 뉴스1코리아(264 · 265)
조 정 대 상	• KBS미디어 : 『"보직 불만" 술 취해 난동 부린 스님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네가 내 보직을 바꿔?"... 총무승려 폭행한 스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왜 보직을 바꿔?" 사찰서 술 취해 난동 부린 승려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사 총무승려인 신청인이 같은 사찰 승려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66 · 267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Kjtimes.com
조 정 대 상	『○○○○ 중국산 저가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KJ특종퍼레이드면)
신청인 주장	블랙박스를 수입 판매하는 신청인 회사의 A/S에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68, 269	(각 손배청구) 표○○ 對 KBS-2TV(268), KBS미디어(269)
조 정 대 상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연예가 HOT 클릭』 제하의 보도 (KBS-2TV 2014년 3월 22일자, KBS미디어 3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관련 보도에서 병원 ○○○○○○○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70~273	(각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연합회 ○○○지회 외 3인 對 서대문신문(270 · 271), 인터넷 서대문신문(272 · 273)
조 정 대 상	『장애인 울린 협회와 공무원, 경찰 봐주기 수사』 제하의 기사 (서대문신문 2014년 2월 28일자 8면, 인터넷 서대문신문 3월 4일자 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증받은 차량을 몰래 되팔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74~279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동두천경찰서 외 1인 對 인터넷 서울뉴스통신(274~276), 인터넷 일간투데이(277~279)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 『동두천경찰서, "보안 이유로 기자 출입제한 강화"』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인사논란 동두천경찰서, 언론 출입 통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서장의 독단적인 지시로 소속 경관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으며, 보안을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공익적인 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280, 281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머니투데이[280], e머니투데이[281]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폭행·노조탄압 논란 ○○ 마트서 쫓겨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1일자 산업면) • e머니투데이 : 『'끝없는 오너 추문' ○○, 대형마트서 퇴출될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1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대형마트로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머니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e머니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머니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2일자 2면) • e머니투데이 : 『"○○, ○○○○ 거래중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산업면)

2014서울조정282~306	(각 정정청구) 조○○ 對 연합뉴스[282], 네이버[283], 다음[284], 네이트[285], 인터넷 경향신문[286], 네이버[287], 다음[288], 네이트[289], 위키트리[290], 서울경제[291], 인터넷 서울경제[292], 네이버[293], 다음[294], 네이트[295], 쿠키뉴스[296], 네이버[297], 다음[298], 네이트[299], 인터넷 메트로[300], 인터넷 민주신문[301], 인터넷 서울신문[302], 이타임즈[303], SBS콘텐츠허브[304], MK뉴스[305], 인터넷 한국일보[306]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속보면, 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 위키트리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건사고면) • 서울경제 : 『'김○○ 주치의' 의료과실 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30면, 인터넷 서울경제·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허리디스크 주사 잘못"』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속보면, 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외 7건
신청인 주장	유명 선수의 주치의인 신청인이 의료시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연합뉴스, 네이버[283, 293], 다음[284, 294], 네이트[285, 295], 위키트리,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인터넷 메트로, SBS콘텐츠 허브 /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 /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네이버[287], 다음[288], 네이트[289]/사유 : 중재합의) • 각 취하 (쿠키뉴스, 네이버[297], 다음[298], 네이트[299], 인터넷 민주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이타임즈, MK뉴스,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3일자 속보면,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4월 3일자) • 위키트리 : 『'김○○ 선수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2일자 사건사고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디스크수술 유명병원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2일자 사회면,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4월 2일자) • 인터넷 메트로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3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김○○ 선수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307 · 308, 310~328, 549~572, 583~585, 613, 644 · 645, 648 · 649, 754~759, 765~768	(각 정정 · 손배청구) 윤○○ 對 KBS미디어(307 · 308), 동아닷컴(310 · 311), 인터넷 채널A(312 · 313), 연합뉴스(314 · 315), 조선닷컴(318 · 319, 754 · 755), TBS-R(551 · 552), 뉴시스(553 · 554), 뉴데일리(561 · 562), 뉴시스강원(644 · 645), 인터넷 TBS(648 · 649), 조선닷컴(754 · 755), NK조선(767 · 768) (각 손배청구) 뉴스토마토(316), 세계닷컴(317), 뉴스1코리아(320), 노컷뉴스(321), e머니투데이(322), 쿠키뉴스(323), 아시아투데이 닷컴(324), 이코노믹리뷰(325), 데일리안(326), 블루투데이(327), 프론티어타임스(328) (각 정정청구) TV조선(549), 인터넷 TV조선(550), 조선일보(555), 동아일보(556), 위키트리(557), 데일리엔케이(558), YTN(559), 인터넷 YTN(560), 세계일보(563), 데일리 노컷뉴스(564), 머니투데이(565), 인터넷 서울경제(566), 한경닷컴(567), 국민일보(568), 아시아투데이(569), 매일경제(570), IPF국제방송(571), 뉴스천지(572), 인터넷 경제풍월(583), VOA Korea(584), 코나스(585), MK뉴스(613), 뉴포커스(756), 인터넷 한국일보(757), 뉴스1코리아(758), 노컷뉴스(759), SBS콘텐츠허브(765), 인터넷 서울신문(766)
조 정 대 상	• KBS 미디어 : 『'사립대 교수가 "탈북자 전원 사형시켜야"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혹세무민, 또 그런 세상이 온 건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오피니언면) • 인터넷 채널A : 『"탈북자 전원 사형" 주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아침뉴스면) • 연합뉴스 : 『대학교수 '탈북자 처형' 발언…檢고발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뉴스토마토 : 『조명철 의원, '탈북자 사형' 발언 ○○대 교수 고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외 5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동아닷컴[310]/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조선닷컴[318, 754 · 755], 아시아투데이 닷컴, SBS콘텐츠허브, 뉴포커스, 뉴스1코리아[758]/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조정성립 (데일리엔케이/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NK조선/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취하 (동아닷컴, 세계닷컴, 쿠키뉴스, 이코노믹리뷰, 데일리안, 블루투데이, 프런티어타임스, 조선일보, 위키트리, 인터넷 서울경제, 한경닷컴, 아시아투데이, IPF국제방송, 뉴스천지, 인터넷 경제풍월, VOA Korea, 코나스, 인터넷 서울신문 /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각 취하 (인터넷 채널A, 조선닷컴, YTN, 인터넷 YTN, MK뉴스, 노컷뉴스/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TBS-R, 동아일보, 세계일보, 데일리노컷뉴스, 머니 투데이, 국민일보, 매일경제,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자진취하) • 각 조정불성립성립 (KBS미디어,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뉴스1 코리아[320], 노컷뉴스[321], e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시스강원, 인터넷 TBS)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피신청인 상대로 형사소송 진행)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윤○○ 교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데일리NK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이슈면) • 뉴데일리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이슈면) • NK조선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5일자 이슈면) • 세계닷컴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사회면) • 이코노믹리뷰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TODAY 뉴스면) • 데일리안 : 『[정정보도]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사회면) 외 13건

2014서울조정309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조 정 대 상	(1) 『현장 뒤흔든 조선일보 오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교육뉴스면) (2) 『서울대 실적 오보 논란의 진실...19일 등록자, 최종합격자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5일자 교육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문기자인 신청인이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현장 뒤흔든 조선일보 오보 논란"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베리타스알파 2014년 5월 9일자 2면,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5월 9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329 · 330	(추후 · 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환각상태서 AIDS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0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동성애자 관련 부정적인 기사로 신청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331~334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331 · 332), 인터넷 채널A(333 · 334)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가짜 마블링의 실체』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3월 7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가짜 마블링 소고기 제조과정 및 표시위반 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건물 외관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이 행 결 과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결과는 보도하지 않음

2014서울조정335, 336	(각 손배청구) 김○○ 對 MBC-TV(335), iMBC(336)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추악한 '해외 미성년 성매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1월 12일자, iMBC 1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다시보기 서비스 중 신청인 영상 모자이크 수정

2014서울조정337~342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은행노동조합 對 한국경제(337~339), 한경닷컴(340~342)
조 정 대 상	『이주열 총재는 '한은 중립' 제대로 이해했기를』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3월 31일자 A43면, 한경닷컴 3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노조가 있는 중앙은행은 전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은행 노조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4월 11일자 35면, 한경닷컴 4월 11일자)

2014서울조정343	(정정청구) 중소기업청 對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A02면)
신청인 주장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언론에 제보한 중소기업 찾기에 혈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소기업청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15면)

2014서울조정344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fn아이포커스
조 정 대 상	『후쿠이 장인의 기술 녹아있는 정식제품』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안경테 브랜드가 폐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KOREA의 TART OPTICAL 수입·판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0일자 15면)

2014서울조정345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대머리 농락, TS탈모샴푸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46, 347	(각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한국일보(346), 뉴스타파(347)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5. 16자 3면「자살 시도 12시간 전 언론과 인터뷰 왜?…'의문의 행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5일자 3면) • 뉴스타파 : (1) 『국정원 '합신센터'는 간첩제조공장?』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초기화면) (2) 『한국의 콴타나모, 합동신문센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1. 국가정보원이 소속 권 모 과장 자살시도 전 특정언론사와 인터뷰를 주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폭행, 협박, 욕설 등 가혹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뉴스타파/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7일자 9면) • 뉴스타파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2014서울조정348~357	(각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YTN(348 · 349), 인터넷 YTN(350 · 351), JTBC(352 · 353), 인터넷 JTBC(354 · 355), 뉴스1코리아(356 · 357)
조 정 대 상	• YTN :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4년간 발암물질 수입해도 나몰라라』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7일자, 인터넷 YTN 2월 27일자) • JTBC : 21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 든 닭꼬치 유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3일자, 인터넷 JTBC 10월 13일자) • 뉴스1코리아 : 『"행정당국, 4년간 발암물질 함유 닭꼬치 수입 방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든 식품을 수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 뉴스1코리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JTBC, 인터넷 JTBC/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YTN :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4년간 발암물질 닭꼬치 수입'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8일자, 인터넷 YTN 4월 17일자) • 인터넷 JTBC :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 든 닭꼬치 유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수정 (2014년 4월 15일자) • 뉴스1코리아 : 『'4년간 발암물질 닭꼬치 수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358~361	(각 정정·손배청구) ○○○○○○○공제조합 對 넥스트이코노미(358·359), 인터넷 넥스트이코노미(360·361)
조 정 대 상	『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피해봐선 안돼』 제하의 기사 (넥스트이코노미 2014년 3월 25일자 24면, 인터넷 넥스트이코노미 3월 26일자 직접판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객관적 기준 없이 공제계약 체결이나 해지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포기 불가)

2014서울조정362	(정정청구) 사단법인○○○○○○○○○○협회 對 인터넷 아이러브PC방
조 정 대 상	『불법복제 노하드 피해 발생, 인문협 임원 대거 연루』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PC방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주요 임원진이 불법복제 노하드 시스템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법복제 노하드 피해 발생, 인문협 임원 대거 연루]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PC방뉴스면)

2014서울조정363, 364	(각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세계일보(363), 세계닷컴(364)
조 정 대 상	『잊혀진 오원춘 사건... 잡음뿐인 112공청』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4월 1일자 사회면, 세계닷컴 4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의 무선망 공청시스템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잡음이 많으며, 내비 공청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음관리팀' 발대식』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4년 4월 15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365~368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YTN(365·366), 인터넷 YTN(367·368)
조 정 대 상	뉴스오늘 프로그램 『현장 24 : LED무료 교체 - 폭리에 과장까지』 제하의 보도 (YTN 2014년 1월 13일자, 인터넷 YTN 1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LED 교체를 미끼로 상인들로부터 돈을 착복했다는 등의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369 · 370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e중앙뉴스
조 정 대 상	(1) 『밀양 봉이 손선달 땅절취 사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회면) (2) 『밀양 비리공무원을 질타하는 황당한 현수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일자 사회면) (3) 『봉우리가 사라지고 울창한 소나무가 사라진 밀양 ○○면 ○○리 남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건강면) (4) 『봉이 손선달 땅절취사건 관련 비리공무원과 수상한 현수막진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나무숲을 난개발하고,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갈등관계에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371~375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371 · 372) (각 정정) 김○○ 對 네이버(373), 네이트(374), 다음(375)
조 정 대 상	『'안녕하세요' 정동하 팬 아내, 정동화 등장에 '실신지경'』 제하의 기사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14년 3월 18일자 TV · 방송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3월 18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모 오락프로그램에 가수팬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76~380, 680	(각 손배청구) 이○○ 對 한겨레(376), 인터넷 한겨레(377), 조선일보(378), 조선닷컴(379), 연합뉴스(380), 서울신문(680)
조 정 대 상	• 한겨레 : 『경주 리조트 붕괴 대학생 100여명 깔려…9명 사망』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2월 18일자 지역면) • 조선일보 : 『대학 신입생 행사장 붕괴, 8명 사망』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조선닷컴 2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7일자 속보면) • 서울신문 : 『살려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모 리조트 붕괴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사과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연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250만원, 서울신문/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일보, 조선닷컴/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동의후 금액지급) ※ 이행방법: 조선일보, 조선닷컴 연대하여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
이 행 결 과	한겨레 : 『경주 리조트 붕괴 사진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24일자)

2014서울조정381 · 382, 426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381 · 382) (정정청구) 인터넷 채널A(426)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가짜 마블링의 실체』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3월 7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7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비위생적인 기름을 주입한 불량 고기를 음식점에 납품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이 행 결 과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하지 않음

2014서울조정383~386	(각 정정 · 손배청구) 박○○ 외 1인 對 MBC-TV(383 · 384), iMBC(385 · 386)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네 번 결혼하는 여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19일자, iMBC 3월 19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유부녀의 결혼사기와 관련한 보도에서 웨딩홀 직원인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387~416	(각 정정 · 손배청구) 석○○ 對 연합뉴스(387 · 388), 네이버(389 · 390), 네이트(391 · 392), 다음(393 · 394), 줌(395 · 396), 세계닷컴(397 · 398), 네이버(399 · 400), 네이트(401 · 402), 다음(403 · 404), 줌(405 · 406), MK뉴스(407 · 408), 네이버(409 · 410), 네이트(411 · 412), 다음(413 · 414), 줌(415 · 416)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제주감사위, ○○○○○ 여직원 술시중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속보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줌 11월 21일자) • 세계닷컴 : 『제주○○○○○ 직원 20여명 줄퇴사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사회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줌 11월 22일자) • MK뉴스 : 『제주감사위, ○○○○○ 여직원 술시중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사회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줌 11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시키고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 술시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속보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줌 4월 29일자) • 세계닷컴 : 『제주 ○○ 모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전국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줌 4월 21일자) • MK뉴스 : 『[정정보도] 제주 ○○ 모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사회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줌 4월 21일자)

2014서울조정417	(손배청구) 박○○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통계청 장애인 출입을 막아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모 기관의 장애인 주차 실태와 관련해 직원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18	(정정청구) 정○○ 對 CNBNEWS
조 정 대 상	『[단독]○○투자증권 사모펀드 CEO, 금융범죄 전력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모 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대표인 신청인에게 금융범죄 전력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검찰, ○○투자증권 PE 대표 무혐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1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419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라이프, ○○○ 웨딩홀 정전 결혼식 망쳐 "날벼락"』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상조/장례 섹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실제 오너는 따로 있으며, 웨딩상품이 비싸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라이프, ○○○ 웨딩홀 정전 결혼식 망쳐 '날벼락'」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2014서울조정420~423	(각 정정 · 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420 · 421), 인터넷 채널A(422 · 423)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 『충격 가짜 마블링의 실체』 제하의 기사 (채널A 2014년 3월 7일자, 인터넷채널A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량 가공육을 사용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공익적인 보도이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424, 425	(각 정정청구) 진○○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황당한 연애 기술 학원…연애하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2월 17일자, iMBC 2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연애컨설팅회사에서 황당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홈페이지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다시보기 동영상 뉴스화면 중 신청인 관련 부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삭제

2014서울조정427, 428	(각 손배청구) 이○○ 對 MBC-TV(427), iMBC(428)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보험왕에서 사기왕까지』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2일자, iMBC 4월 2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병원에 근무 중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29	(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부산 ○○고 사학문제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사학비리문제와 관련해 신청인이 운영하는 고교의 실명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부산 A고 사학문제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전국면)

2014서울조정430~432	(손배청구) 전 ○○ 對 일간 시사뉴스투데이(430) (정정 · 손배청구) 데일리 코스메틱뉴스(431 · 432)
조 정 대 상	• 일간 시사뉴스투데이 : 『"여기도 세일, 저기도 세일, 멤버쉽데이, 빅 세일, 1+1 행사" 연쇄할인마 로드샵 화장품 할인의 진실을 파헤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5일자 경제면) • 데일리 코스메틱뉴스 : (1)『다우니 아로마쥬얼, 방방곡곡에 '향기' 무차별 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하우스홀드면) (2)『코스메틱 어플리케이터 시대...진동 파운데이션, 클렌저 등 다양』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트렌드툴스면) (3)『애경 2080, 진지발리스균 박멸 치약 국내 첫 개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하우스홀드면) (4)『SK II 블루밍 에센스... 뷰티 피플들의 뒷담화』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스킨케어면) 외 33건

신청인 주장	퇴사한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사를 작성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일간 시사뉴스투데이/내용 : 사과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데일리 코스메틱뉴스/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월간 시사뉴스투데이 :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호 46면)

2014서울조정433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1) 『"병원 영리 자회사 법 고쳐야 가능" 복지부, 기재부와 엇박자 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1면) (2) 『복지부, '법개정 필요'. 기존 입장으로 '유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434 · 435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전기신문
조 정 대 상	『공공기관에 위조제품 납품 '여전'』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1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위조된 시험인증서를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전기신문에도 반론보도 동시 게재
이 행 결 과	『○○○○○ 낙뢰보호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2면)

2014서울조정436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경제지 기자, 홍보실 직원 폭행 후 욕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언론인의 출입처 홍보실 직원 폭행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신청인의 실명을 거론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 중 신청인 성명 익명 처리

2014서울조정437, 438	(각 정정청구) 성남시 對 월간조선(437), 월간조선 뉴스서비스(438)
조 정 대 상	『경기 성남시 모라토리엄 공방의 진실』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4년 4월호 102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기 성남시 모라토리엄 공방의 진실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4년 6월호 145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29일자)

2014서울조정439, 440	(각 손배청구) 손○○ 對 MBC-TV(439), iMBC(440)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살배기 친아들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게임중독' 20대 아빠』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16일자, iMBC 4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게임중독 아버지의 영아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PC방 업주인 신청인의 초상과 업소를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441~484	(각 정정·손배청구) 윤○○ 對 뉴시스(441·442), 네이버(443·444), 네이트(445·446), 다음(447·448), 뉴스1코리아(449·450), 네이버(451·452), 네이트(453·454), 조선닷컴(455·456), 네이버(457·458), 네이트(459·460), 다음(461·462), 조인스닷컴(463·464), 온라인중앙일보(465·466), 인터넷 문화일보(467·468), 세계닷컴(469·470), 인터넷 JTBC(471·472), e머니투데이(473·474), 네이버(475·476), 네이트(477·478), 다음(479·480), 인터넷 파이낸셜뉴스(481·482), 민중의소리(483·484)
조 정 대 상	• 뉴시스 : 『남자가 남자를 … "면접男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다음 1월 17일자) • 뉴스1코리아 : 『20대 면접남 '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 1월 17일자) • 조선닷컴 : 『30대 게스트하우스 사장, 입대 앞두고 알바 면접 온 20대男 강제로 벗기더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다음 1월 17일자) • 조인스닷컴 : 『남자가 남자를…면접男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뉴스면) • 온라인 중앙일보 : 『20대 면접남 '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숙박업을 하는 신청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찾아온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뉴시스, 네이버(443·444), 네이트(445·446), 다음(447·448), 뉴스1코리아, 네이버(451·452), 네이트(453·454),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e머니투데이, 네이버(475·476), 네이트(477·478), 다음(479·480), 민중의소리/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네이버(457·458), 네이트(459·460), 다음(461·462),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세계닷컴, 인터넷 JTBC,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뉴시스 : 『면접男 성추행한 숙박시설 男사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5월 27일자) • 뉴스1코리아 : 『성추행 혐의 게스트하우스 업주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 · 네이트 1월 17일자) • 조선닷컴 : 『성추행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업주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2일자 사건사고면) • 조인스닷컴 : 『면접남 성추행한 숙박시설 남사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뉴스면) • e머니투데이 : 『[단독]면접 온 20대 알바男 성추행 사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건면) • 민중의소리 : 『게스트하우스 업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485~496	**(각 추후청구) 박○○ 對 e머니투데이[485], M이코노미NEWS[486], 경제투데이[487], 뉴스엔[488], 뉴스핌[489], 엑스포츠뉴스[490], 이티뉴스[491], 인터넷 헤럴드경제[492], 지디넷코리아[493], 컨슈머타임스[494], 쿠키뉴스[495], 티브이데일리[496]**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 : 『전 프로게이머 박○○, 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사건면) • M이코노미NEWS : 『전직 프로게이머 박○○ "아내 폭행하고 염산으로 위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커버스토리면) • 경제투데이 : 『전직 유명 프로게이머 박○○, 아내 폭행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기획면) • 뉴스엔 : 『前프로게이머 박○○ 아내폭행 및 염산테러 협박혐의 조사중 '혐의 강력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사회면) • 뉴스핌 : 『박○○ 검색어 1위, 알고보니…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스포츠/연예면) 외 7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뉴스면) • M이코노미NEWS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초기화면) • 경제투데이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초기화면) • 뉴스엔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기획면) • 뉴스핌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스포츠/연예면) 외 7건

2014서울조정497~500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497 · 498), 뉴스한국 닷컴(499 · 500)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온라인 증오단체 피해자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사회면) • 뉴스한국 닷컴 : (1) 『○○○○○○ 김○○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때려 폭행 피소 중』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5일자 사회면) (2) 『폭행 혐의 피소 영화감독 김○○, "법원이 아내와 아들 정신감정 명령" '거짓' 주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내의 종교를 증오해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뉴시스/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한국 닷컴/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진실보도이므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501 · 502	(정정 · 손배청구) 한국○○○대학 전국교수협의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저소득 취약층 무료 교육, 국립직업훈련원 돌아온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대학의 대학 기능을 분리하고, 국립직업훈련원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503 · 504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일간뉴스경남 對 투데이코리아
조 정 대 상	『홍준표 – 박완수, 여론조사 두고 신경전 '후끈'』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505, 506	(각 손배청구) 정○○ 對 MBC-TV(505), iMBC-TV(506)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재산다툼에 문닫는 장애인학교…전국 유일 개인소유 '개입 못해'』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14일자, iMBC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발달장애 학생을 학대한 것처럼 편집 ·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507, 508	(각 정정청구) 임○○ 외 1인○ 對 문화일보[507], 인터넷 문화일보[508]
조 정 대 상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4월 10일자 사회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백년전쟁' 국보법혐의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5월 2일자 14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509	(정정청구) ○○○○대학교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학교 예산 없다며 연구실 없애… 교수15명 한방에 밀어 넣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예산부족으로 연구실을 없앴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510 · 511	(반론 · 손배청구) 이○○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침몰] 실종자가족들 가슴 할퀴는 '루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0일자 IT. 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접 취재해 SNS에 올린 세월호 관련 내용이 괴담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세월호 침몰] 실종자가족들 가슴 할퀴는 '루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IT.과학면)

2014서울조정512, 513	(각 정정청구) 대통령비서실 對 일요신문[512], 인터넷 일요신문[513]
조 정 대 상	『[단독추적] 여권 실세가 벌인 '뒷조사' 작업』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4년 4월 6일자 2면, 인터넷 일요신문 3월 3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여권의 한 실세가 주도하는 비선라인이 청와대에 파견나온 사정기관 공직자를 동원해 대기업 임원 뒷조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및 소취하,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여권 실세가 벌인 뒷조사 작업'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4년 5월 11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신문 5월 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514~517	(각 정정 · 손배청구) 김기춘 외 3인 對 시사저널(514 · 515), 인터넷 시사저널(516 · 517)
조 정 대 상	(1)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4년 3월 25일자 18면~ 22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25일자 정치면) (2) 『이정현 수석이 김기춘 실장 사퇴 극구 말렸다더라』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4년 3월 25일자 26면~28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 측근이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과 연루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지만 회장 미행 및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4년 6월 3일자 27면, 인터넷 시사저널 5월 3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518, 527, 528, 533~542, 573~576, 581, 582, 591, 607~609, 616~618, 619, 620, 630, 633, 634, 643, 681, 684 · 685, 702, 705, 706, 785, 857, 992, 1041, 1055, 1058, 1416, 1576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교회 對 인터넷 일요신문(518, 581), 동아일보(527), 뉴데일리경제(528), 노컷뉴스(533), 인터넷 문화일보(534), 티브이데일리(535), 위키트리(536), 뉴스1코리아(537), 쿠키뉴스(540), 인터넷 시사저널(582), 아시아투데이닷컴(619)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교회 외 1인 對 아주뉴스(538), 조선닷컴(539), 뉴스앤조이(541), 인터넷 일요서울(542), 인터넷 TV조선(573), 서울신문(574), 인터넷 서울신문(575), 노컷뉴스(576), 뉴데일리(591), 뉴스1코리아(607), 뉴시스(608), 인터넷 스페셜경제(609), 인터넷 한국일보(616), 인터넷 스포츠한국(617), 인터넷 일요신문(618), 인터넷 일요시사(620), 이데일리(630), 뉴스파워(633 · 634), 뉴스앤조이(643),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681), TV조선(702), 노컷뉴스(705), 업코리아(706), 인터넷 신동아(785), 인터넷 국민일보(857, 1416), 인터넷 경제풍월(992), 뉴스파워(1041), 노컷뉴스(1055, 1576), 뉴스1코리아(1058) (정정 ·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교회 외 1인 對 MBN(684 · 685)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요신문 : (1) 『연예계 구원파 신도 누구? "각계서 전도활동" 과거 보도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연예 화제면) (2) 인터넷 일요신문 : 『이준석 선장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눈길,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도 구원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사회면) (3) 인터넷 일요신문 : 『[단독] 구원파 연예인, 스타급도 다수? 영화 주인공에서 아이돌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사회면) • 동아일보 : 『'청해진' 직원들 다수가 신자라는 구원파, 유병언-장인이 설립』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4면, 동아닷컴 4월 24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경제 : 『"한번 구원 받으면 수백명 희생시켜도 천국간다고?"』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세월호 참사] ooo는 구원파 연예인? 마녀사냥 우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李 선장 '구원파' 신도… 해운사 직원 상당수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사회면) 외 4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및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앤조이(541), 인터넷 국민일보(857, 1416), 노컷뉴스(1055, 1576)/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일요신문(518), 뉴스앤조이(643),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노컷뉴스(705), 인터넷 신동아/사유 : 반론보도 게재) • 각 취하 (동아일보, 뉴데일리경제, 노컷뉴스(533), 인터넷 문화일보, 티브이데일리, 위키트리, 뉴스1코리아(537, 607), 아주뉴스, 조선닷컴, 인터넷 일요서울, 인터넷 TV조선,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노컷뉴스(576), 쿠키뉴스, 인터넷 시사저널, 뉴데일리, 뉴시스,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스페셜경제,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스포츠한국, 인터넷 일요신문(618), 인터넷 일요시사, 이데일리, 뉴스파워(633 · 634), 업코리아, 인터넷 경제풍월, 뉴스1코리아(1058)/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TV조선, MBN/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요신문(518) : 『'구원파 연예인' 실명 거론 해프닝 전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뉴스앤조이(541) : 『'○○○○선교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자 초기화면) • 일요신문(581) : 『○○○○선교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3면) • 뉴스앤조이(643) : 『'○○○○선교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7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반론] ○○○○선교회(설립자 박○○ 목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초기화면) • 노컷뉴스(1055) : 『[반론보도문] ○○○○선교회(설립자 박○○ 목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신동아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6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선교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교계뉴스면) 외 4건

2014서울조정519 · 520	(각 정정청구)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對 머니투데이(519), e머니투데이(520)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27.1㎡ 지목변경이 2000억 챙겨줬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19면) • e머니투데이 : 『남의 땅 '27.1㎡'덕분에 ○○○4차 2000억 '대박'』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인근아파트 대지 지목 변경으로 재건축시 2천억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머니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19면) • e머니투데이 : 『'○○○4차, 2000억 대박' 관련 정정 및 반론』(2014년 5월 12일자 부동산면)

2014서울조정521~524	(각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협회 對 경제투데이
조 정 대 상	• 『회원사 입방아 오른 김○○ ○○○협회장, 연임 '빨간불'』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3일자 산업면) • 『주유소 업계, 전 · 폐업 지원 공제조합 설립 '글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원들이 협회장에 대한 불만이 많아 조기퇴진을 바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협회장 및 공제조합설립"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산업면)

2014서울조정525 · 526	(정정 · 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웬 다이어트 광고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4일자 경제IT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다이어트 광고기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포털의 많이 읽은 기사 순위에 올라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디○○○' 다이어트 광고기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경제IT면)

2014서울조정529~532	(각 정정 · 반론청구) ○○○○ 주식회사 對 신동아(529 · 530), 인터넷 신동아(531 · 532)
조 정 대 상	『납품업체와 장비회사가 이면계약을 맺어 부당이득을 취했다』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4년 4월 17일자 198면~207면, 인터넷 신동아 4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프랑스 장비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장비 대금을 부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기상장비 ○○○ 비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4년 8월 1일자 293면, 인터넷 신동아 8월 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543~548, 594~605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한○○ 對 KBS-1TV(543~545), KBSㅁㅣㄷㅣㅇㅓ(546~548) (각 정정 · 손배청구) 조선일보(594 · 595), 조선비즈닷컴(596 · 597), 조선닷컴(598 · 599), 시민일보(600 · 601), 인터넷 시민일보(602 · 603), 뉴데일리(604 · 605)
조 정 대 상	• KBS-1TV : (1) 뉴스7 프로그램 『인선회 후원금 주며 입법로비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6일자, KBSㅁㅣㄷㅣㅇㅓ 4월 26일자 뉴스속보면) (2) 뉴스9 프로그램 『인선회 후원금 주며 입법로비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7일자, KBSㅁㅣㄷㅣㅇㅓ 4월 27일자 뉴스속보면) • 조선일보 : (1) 『海運조합, 해수부 ·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 정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A6면, 조선비즈닷컴 4월 28일자 뉴스면) (2) 『한국선급, 해수부 공무원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 돌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A5면, 조선닷컴 5월 1일자 정치면) • 시민일보 : 『세월호 참사 후폭풍, 새민련으로 확산?』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1면, 인터넷 시민일보 4월 29일자 정치면) • 뉴데일리 :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 받고 입법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전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2007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인천 여객선 선주들의 단체인 인선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조선일보, 조선비즈닷컴, 조선닷컴/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KBS-1TV, KBSㅁㅣㄷㅣㅇㅓ, 시민일보, 인터넷 시민일보)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한○○ 전 국회의원 "인선회 후원금 로비 받고 입법화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A5면, 조선비즈닷컴 · 조선닷컴 5월 27일자 정치면) • 뉴데일리 :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 받고 입법까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577	(정정 · 손배청구) 재○○ 對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지폐 말리고 신분 숨기고 … 탈출 선장의 황당한 기행』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선장을 응급치료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초상 모자이크 처리

2014서울조정578 · 579, 580	(정정 · 손배, 정정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건치
조 정 대 상	(1) 『지정기준 · 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초기화면) (2)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인단에 의한 협회장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입장만을 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586	(정정청구) ○○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對 인터넷 한국농어민신문
조 정 대 상	(1) 『○○도매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요구 '눈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농산물유통면) (2) 『○○도매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요구 '비난 빗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농산물유통면)
신청인 주장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판매장려금 인상 요구가 농민을 상대로 한 잇속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587~590	(각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의협신문(587 · 588), 인터넷 의협신문(589 · 590)
조 정 대 상	『○○대학교 K전공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하의 기사 (의협신문 2014년 2월 3일자 기획면, 인터넷 의협신문 1월 29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대 의대 교수인 신청인이 전공의에게 폭언 및 인격모독 등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A교수' 추가 반론』 제하의 기사 (의협신문 2014년 5월 20일자 15면, 인터넷 의협신문 5월 20일자 기획면)

2014서울조정592, 593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스포츠서울[592], 스포츠서울닷컴[593]
조 정 대 상	• 스포츠서울 : 『○○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 편파판정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10면) • 스포츠서울닷컴 : 『AIBA도 접수한 ○○ 국가대표 선발 편파판정 논란, 정부 체육개혁 찬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아시안게임 출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협회장의 영향으로 판정이 번복되고, 심판위원장이 판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시안게임 ○○ 대표선발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2014년 5월 21일자 10면, 스포츠서울닷컴 5월 21일자)

2014서울조정606	(정정청구) 거제시청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거제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거제시의 대체인력 채용 하자없다고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전국면)

2014서울조정610, 638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세계일보[610], 시사저널[638]
조 정 대 상	• 세계일보 : 『셀프 감독 · 일감 나눠먹기…지하철 추돌 뒤엔 '철피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9일자 3면) • 시사저널 : 『지하철 사고 뒤엔 '철피아〈철도마피아〉'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16면~20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회사의 감사가 지하철 신호기 관리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일명 철피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610] 2. 상왕십리역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지하철 안전검사 부실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638]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13면) • 시사저널 : 『'철피아'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7일자 18면)

2014서울조정611 · 612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사학모리배 구 재단 이사장의 임시이사추천권 배제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 설립자인 신청인이 횡령과 부정입학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 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현 재단측에 학교 운영권을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교수평의회, 동창회 주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614 · 615	(정정 · 손배청구) 예○○ 對 인터넷 대한뉴스
조 정 대 상	『예○○ ○○시장 예비후보 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시장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경기도 소유 자산을 무단 유출하는 등 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이 행 결 과	『예○○ ○○시장 예비후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621	(정정청구) 해양경찰청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희망은 왜 가라 앉았나?...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해양경찰이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622~629, 803~838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YTN(622 · 623), 인터넷 YTN(624 · 625), 네이버(626 · 627), 다음(628 · 629), 국민일보(803 · 804), 쿠키뉴스(805 · 806), 뉴스앤조이(807 · 808), 불만닷컴(809 · 810), e중앙뉴스(811 · 812), 뉴스천지(813 · 814), 인터넷 기독일보(815 · 816), 인터넷 한국기독공보(817 · 818), 인터넷 기독교연합신문(819 · 820),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821 · 822),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823 · 824), kidok.com(825 · 826), 인터넷 기독교타임즈(827 · 828), 기독인뉴스(829 · 830), 뉴스쉐어(831 · 832), 뉴스미션(833 · 834), 인터넷 뉴스신문고(835 · 836), 큐프레스(837 · 838)
조 정 대 상	• YTN : 뉴스출발 1부/뉴스출발 2부/뉴스앤이슈/뉴스나이트 프로그램『선교단체 간부 회삿돈 빼돌려 "호화생활"』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3일자, 인터넷 YTN · 네이버 · 다음 3월 3일자 사회면) • 국민일보 :『○○전도단, 출판부 '7억대 횡령 의혹' 대부분 확인』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30면, 쿠키뉴스 3월 6일자 사회면) • 뉴스앤조이 :『○○전도단, 공금횡령 사건에 늦장 대응』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뉴스교계면) • 불만닷컴 :『유명 선교단체, 7억여원 횡령해도 자비?... 종교단체 감시기관 필요』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일자 뉴스종합면) • e중앙뉴스 :『공금 빼돌려 호화생활한 간부 적발에도 선교단체는 쉬쉬』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일자 사회면) 외 2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선교단체의 공금이나 성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터넷 한국기독공보, 인터넷 기독교연합신문,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kidok.com,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기독인뉴스, 뉴스미션, 큐프레스/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각 취하 (네이버, 다음, 불만닷컴, e중앙뉴스, 뉴스천지, 인터넷 기독일보, 뉴스쉐어, 인터넷 뉴스신문고/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631, 632	(각 반론청구) 대한○○○○○○○회 對 한겨레(631), 인터넷 한겨레(632)
조 정 대 상	『고래를 잡아야 남자가 된다는 신화』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포경수술의 의학적 효과는 근거가 부족하며, 비뇨기과 의사들의 주수입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서울조정635, 636 · 637	(정정청구) 대통령비서실 對 노컷뉴스[635] (정정 · 손배청구) 대통령비서실 외 4인 對 인터넷 한겨레[636 · 637]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1) 『[세월호 참사] "靑, 조문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2) 『현장에서 할머니 섭외' 靑 조문 연출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3) 『靑, 조문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당시 청와대 측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635] 2.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현장 방문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가 구출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636, 637]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639, 640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협회 對 아이러브PC방[639], 인터넷 아이러브PC방[640]
조 정 대 상	『[사설]환골탈태 없는 사단법인의 추락』 제하의 기사 (아이러브 PC방 2014년 4월 1일자 2면, 인터넷 아이러브 PC방 4월 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상업적 활동에만 치중하여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환골탈태 없는 사단법인의 추락]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이러브 PC방 2014년 6월 2일자 2면, 인터넷 아이러브 PC방 6월 2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641, 642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채널A[641], 인터넷 채널A[642]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채널A 2014년 5월 9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9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허술하게 학사관리를 하는 것처럼 비유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646 · 647	(정정 · 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외 6인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파주 ○○학원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지방자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혐의로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위법적인 신청인 학교법인이 법인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파주 ○○학원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650, 651	(각 정정청구) 해양경찰청 對 JTBC(650), 인터넷 JTBC(651)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9 프로그램 『일부 해경 "죽을 것 같아 안 들어갔다"』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4일자) • 인터넷 JTBC : 『헬기 구조대원 "죽을 것 같아 안 들어갔다" 진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해경 구조대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았으며,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일부 대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일부 해경 "죽을 것 같아 안 들어갔다"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7월 3일자, 인터넷 JTBC 7월 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652~673	(각 정정 · 반론청구) ○○은행 주식회사 對 브레이크뉴스(652 · 653), 스포츠서울닷컴(654 · 655), 시사코리아닷컴(656 · 657), 아시아헤럴드(658 · 659), 아주뉴스(660 · 661), 에브리뉴스(662 · 663), 인터넷 메트로(664 · 665), 인터넷 위클리오늘(666 · 667), 인터넷 월요신문(668 · 669), 일간NTN(670 · 671), 프라임경제(672 · 673)
조 정 대 상	• 브레이크뉴스 :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분양율 92% 불구 공매처분 위기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경제일반면) • 스포츠서울닷컴 : 『드림리츠 "동아파밀리에, 고의 파산시켰다" vs 신동아건설 "억측 주장"』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경제면) • 시사코리아닷컴 : 『고양시 신동아파밀리에 공매처분 공방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경제일반면) • 아시아헤럴드 : 『"신동아파밀리에 공매처분" 원흉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부동산면) • 아주뉴스 :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공매처분에 시행사 · 입주민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부동산면) 외 1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모하여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를 파산시키고, 아파트를 헐값에 공매처분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브레이크뉴스 : 『[반론보도]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패밀리에 공매처분 대주로서 적법한 담보권 행사 및 수분양자 경제적 이익도 부합』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경제면) • 스포츠서울닷컴 : 『[반론보도]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은 대주로서의 적법한 담보권 행사이며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경제면) • 시사코리아닷컴 : 『[반론보도] ○○은행은 일산 덕이지구 신도아파밀리에 아파트 공매처분관련, 대주로서의 적법한 담보권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 밝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경제면) • 아시아헤럴드 : 『[반론보도]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은 대주로서의 적법한 담보권 행사이며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부동산면) • 아주뉴스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 적법한 담보권행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부동산면) 외 12건

2014서울조정674~676, 686~697, 743~748, 839~844, 882~88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선교협회 對 CBS-TV(674~676), CBSi(686~688, 692~694), 크리스천노컷뉴스(689~691, 695~697, 743~745, 746~748), 국민일보(839~841, 882~884), 쿠키뉴스(842~844, 885~887)**
조 정 대 상	• CBS-TV : 교계뉴스 프로그램 『○○○○ 교회에 대한 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CBSi 2월 26일자 교계뉴스면) • 크리스천 노컷뉴스 : 『○○○○ 교회 빠지면 평생 종의 굴레』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교계뉴스면, CBSi 2월 28일자 교계뉴스면) • 크리스천 노컷뉴스 : 『○○○○ 교회에 대한 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국민일보 : 『"시한부종말론 주창... 20-40대 여성이 타깃"...○○○○ 교회 ○○○○선교협회 실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1일자 30면, 쿠키뉴스 4월 11일자 기독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이단, 사이비 단체이며, 대학가에 종말론을 유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CBS-TV, CBSi(686~688), 크리스천노컷뉴스(689~691, 743-745), 국민일보, 쿠키뉴스) • 각 취하 (CBSi(692~694), 크리스천노컷뉴스(695~697, 746~748)/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677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메○○○, 광고 대행사 악성코드 대량 유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IT/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이벤트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악성코드 감염사고를 과장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678, 679	(각 정정청구) 이○○ 對 MBC-TV(678), iMBC(679)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미성년자 가학 행위까지… 막 가는 인터넷방송 도 넘었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15일자, iMBC-TV 4월 1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신청인이 방송중에 미성년자들에게 강제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682	(정정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1) 『불량 정제유 논란 ① "헛발 지원" 제2의 세녹스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경제면) (2) 『불량 정제유 논란 ② 낮은 규격이 저품질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경제면) (3) 『불량 정제유 논란 ③ 유명무실 식별제 가짜 석유제품 원흉』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경제면) (4) 『불량 정제유 논란 ④ 줄줄 새는 세금 유사석유 연간 최소 1조 증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경제면) (5) 『불량 정제유 논란 ⑤ 양두구육, "신(新)" 빼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원이 생산, 공급하는 감압정제유와 관련하여 저품질 가짜 제품 등의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량 정제유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683	(손배청구) 이○○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오마이포토] "김일성 3부자 향해 개새* 안하면 종북(?)"』 제하의 사진 (2013년 8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시위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서울조정698~701	(각 정정 · 반론청구) ○○○○○○○노동조합 對 동아일보(698 · 699), 동아닷컴(700 · 701)
조 정 대 상	『"비리 노조원 감싸기, 더 이상은 안된다" 칼 빼든 ○○협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4월 16일자 A27면, 동아닷컴 4월 16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징계사유 예외 규정을 들어 비리를 저지른 노조원을 감싸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축구협회 비리노조원 감싸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4일자 25면, 동아닷컴 6월 4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조정703 · 704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경찰관 부인 수억 사기 캐나다 도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어학원 건물 임대 보증금을 받고 사라진 배후에 신청인이 관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보도/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손해배상/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경찰관 부인 수억 사기 캐나다 도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8일자 기타면)

2014서울조정707, 708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EBS-TV(707), EBS뉴스(708)
조 정 대 상	정오뉴스 프로그램 『〈난독증 집중취재〉 수억 원 들여 도입한 난독증 프로그램 "효과없어"』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4월 29일자, EBS뉴스 4월 29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제공한 난독증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오뉴스 프로그램 『난독증 프로그램 "효과없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6월 3일자, EBS뉴스 6월 3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709~716	(각 손배청구) 김○○외 1인 對 연합뉴스(709), 뉴시스(710), 세계닷컴(711), 인터넷 엠티엔(712), 노컷뉴스(713), KBS미디어(714), 인터넷 메트로(715), SBS 콘텐츠허브(716)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부사관이 육상부 여고생 기숙사 들어가 성추행 ·절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속보면) • 뉴시스 : 『현역 부사관이 고교 기숙사 들어가 여학생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육상부' 성추행 후 도망친 부사관, 결국…』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일반면) • 인터넷 엠티엔 : 『현역 부사관이 女고생 기숙사 침입해 성추행…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현역 부사관, 여고생 기숙사 침입해 성추행·절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고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포털 및 카페, 블로그, 웹문서 기사 삭제 • 각 조정성립 (뉴시스, 세계닷컴, 인터넷 엠티엔, 노컷뉴스, KBS미디어, 인터넷 메트로, SBS콘텐츠허브/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포털 및 카페, 블로그, 웹문서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17	(손배청구) 오○○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21 프로그램 『147회』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전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400만원, 부제소 - 동의후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718, 719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MBC-TV(718), iMBC(719)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유병언 압류부동산 사실상 '깡통'... 』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5월 22일자, iMBC 5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유병언 회장 측의 청담동 초콜렛 가게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20, 721	(각 반론청구) 한국가스안전공사 對 SBS CNBC-TV(720), 인터넷 SBS CNBC-TV(721)
조 정 대 상	(1)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 『수상한 가스안전공사, 7년째 中企제품 '딴지'』 제하의 보도 (SBS CNBC-TV 2014년 5월 9일자, 인터넷 SBS CNBC-TV 5월 9일자 뉴스면) (2)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가스안전공사, 6개국 특허제품 7년째 '불합격'…왜?』 제하의 보도 (SBS CNBC-TV 2014년 5월 9일자, 인터넷 SBS CNBC-TV 5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특허료 때문에 특정업체 제품의 시장출시를 막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가스안전공사, 특허중기제품 '딴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일자)

2014서울조정722~736	(각 정정청구) 변희재 對 동아닷컴(722), 인터넷 서울경제(723), 세계닷컴(724),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725), 인터넷 스포츠투데이(726), 인터넷 스포츠한국(727), 아시아경제닷컴(728), 인터넷 SBS CNBC(729), 인터넷 일요신문(730), 조선닷컴(73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732), wow한국경제TV(733), 인터넷 헤럴드경제(734), 엑스포츠뉴스(735), 인터넷 여성신문(736)
조 정 대 상	• 동아닷컴 : 『변희재 대표의 이같은 반응을 본 진중권 교수는 "자기는 '듣보잡' 소리 듣고서 고소하면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정몽준 아들 피소, 변희재 "해도 너무해"에 진중권은 "자기는 '듣보잡' 소리에 고소하더니" '핀잔'』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진중권, 정몽준 아들 고소 소식에 "초등생도 아니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월드 : (1) 『진중권, 정예선 두둔 변희재에… "듣보잡 소리에 고소하면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자 이슈면) (2) 『진중권, '정몽준 아들 정예선 고소' 언급한 변희재에 일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자 이슈면)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 『진중권, 정몽준 아들 감싼 변희재에게 "자기는 '듣보잡' 소리에 고소하면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라이프면) 외 10건
신청인 주장	진중권 교수가 형사처벌 받은 사유가 신청인에 대한 모욕죄 외에도 타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사실보도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

2014서울조정737 · 738	(정정 · 손배청구) 포천시 對 인터넷 대한투데이
조 정 대 상	(1)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재앙 부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0일자 기자수첩면) (2) 『포천시, 이제 진실만 말해도 시간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3일자 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석탄발전소를 건립사실을 숨겼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39~742	(각 정정 · 손배청구) 의료법인○○의료재단 對 MBN(739 · 740), 인터넷 MBN(741 · 742)
조 정 대 상	아침의 창 매일경제 프로그램 『현장출동 '병원내 성추행, 성폭행 논란'』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5월 16일자, 인터넷 MBN 5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환자가 자살하였고, 병원 측이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경찰과 보호자에 알리지 않은 채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아침의 창 매일경제 프로그램 『'병원 내 성추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6월 13일자, 인터넷 MBN 6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749	(정정청구) 김○○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새정치, ○○구청장 후보 선정 갈등 고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지역면) (2) 『선관위, 김○○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불법혐의 조사 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구청장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후보 선정과정에서 컷 오프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및 선관위에서 신청인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50, 751	(각 정정청구) OBS경인TV(주) 對 미디어오늘[750], 인터넷 미디어오늘[751]
조 정 대 상	『'MB맨' 유인촌, OBS 교양프로 사회자 '낙점' 논란』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1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 경영진의 지시로 대담프로그램 사회자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바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에도 관련 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OBS 교양프로 사회자 '낙점'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4년 6월 11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6월 12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752, 753	(각 정정청구) 한국○○○○협회 對 오마이건설뉴스[752],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753]
조 정 대 상	• 오마이건설뉴스 : (1) 『재난관리 전담기관 '소방방재청'의 꼼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1면) (2)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알박기 관료타워(?)』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6면~7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5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소방방재청의 자리보존을 위해 존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협회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4년 6월 25일자 2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 2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760 · 761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우체국 택배원들의 눈물…우체국 위탁업체 '횡포' 공정위에 신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우체국 위탁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62, 763	(각 정정청구) ○○면사무소 對 신아일보[762], 인터넷 신아일보[763]
조 정 대 상	『○○군수선거 과열 혼탁 우려』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4년 5월 26일자 13면, 인터넷 신아일보 5월 26일자 광주/전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면사무소가 부녀회장 모임을 소집해 ○○군수 후보자 부인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지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면사무소 모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13면, 인터넷 신아일보 6월 13일자 광주/전남면)

2014서울조정764	(정정청구) ○○○○○○교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예수 사라진 기독교, 교인 쫓아내는 목회자』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1980년대 한국의 대표적 이단 교단이었으며 교세 확장을 통해 정통교단으로 탈바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769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경제지 기자, 홍보실 직원 폭행 후 욕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전직 언론사 기자인 신청인이 첨부 파일을 누락한채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유통업체 홍보실 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기자, 홍보실 직원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770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CBS-TV
조 정 대 상	교계뉴스 프로그램 『이단 구원파를 파헤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교회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해 사업을 벌여 신도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교계뉴스 프로그램 『박○○ 목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8일자)

2014서울조정771 · 772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메뉴 베끼기 논란...소상공인 등치는 프랜차이즈 횡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9일자 헬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상공인이 개발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메뉴를 베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73~775	(각 정정청구) 김용익 對 주간조선(773), 인터넷 주간조선(774), 조선닷컴(775)
조 정 대 상	• 주간조선 : 『검찰, 치협 입법 로비 의혹 내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10면, 인터넷 주간조선 6월 2일자 커버스토리면) • 조선닷컴 : 『검찰, 치협 입법 로비 의혹 내사...의원 4명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원금 집중적으로 받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개정과 관련해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주간조선 : 『입법마피아 김용익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13면, 인터넷 주간조선 6월 23일자 커버스토리면) • 조선닷컴 : 『입법마피아 김용익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776~779	(각 정정 · 손배청구) 성○○ 對 MBC-TV(776 · 777), iMBC(778 · 779)
조 정 대 상	(1) 8시뉴스 프로그램 『돌아오는 성추행 교수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5월 27일자, iMBC 5월 27일자 사회면)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성추행 의혹 교수' 복직되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5월 28일자, iMBC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성추행의혹 사건때문에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780~783	(각 정정 · 손배청구) 강○○ 對 동아일보(780 · 781), 동아닷컴(782 · 783)
조 정 대 상	『창문 작아 정작 사람은 못 빠져나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6월 2일자 A14면, 동아닷컴 6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피난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84	(정정청구) ○○○촬영기자협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KBS는 과연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국 카메라기자 특파원들이 높은 연봉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786~788	(각 정정청구) 유○○ 對 인터넷 기독일보(786), 시사1(787), 엔디엔뉴스(788)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기독일보 : 『[6.4지방선거] 유○○ ○○구청장 예비후보, 무소속 장○ 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정치면) • 시사1 : 『유○○, ○○구청장 무소속 장○ 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정치면) • 엔디엔뉴스 : 『유○○ 前 예비후 보, 무소속 ○○구청장 장 ○ 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창조정치면)
신청인 주장	○○구청장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선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89	(정정청구) 이○○ 외 2인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KBS는 과연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국 과학재난부 소속인 신청인들이 전 보도본부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 내용을 노조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790 · 791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SBS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취재파일] 29살에 ○○연맹 이사, 문제는?』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업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모 스포츠연맹 이사 및 기술위원에 임명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한○○경기연맹 이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조정792	(손배청구) 최○○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S그룹 임원들 왜 이러나…이번엔 주력 계열사 퇴임 임원이 강간미수로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뉴스기업면)
신청인 주장	대기업 임원의 사내 어학강사 성폭행 미수 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4서울조정793 · 794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조 정 대 상	『서산시 D초등학교 교감, 학생폭행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유산 사유가 사실확인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했음에도 청구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795, 796	(각 정정청구) 국방부 對 내일신문(795), 인터넷 내일신문(796)
조 정 대 상	『김관진, '건설브로커 조사' 건의 묵살, 보고한 기무사령관 두 달 뒤 전격경질』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6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공사지체상금 면제와 관련된 기무사의 조사건의를 묵살하고 오히려 기무사 수뇌부를 경질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6월 27일자 6면, 인터넷 내일신문 6월 2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797~800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덴탈포커스(797 · 798), 인터넷 덴탈포커스(799 · 800)
조 정 대 상	『스텝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서 홍보글 게재 대가 금품수수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8면, 인터넷 덴탈포커스 5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모 포탈사이트에서 치과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홍보성 글을 게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4서울조정801 · 802	(정정 · 손배청구) 정○○외 2인 對 MBC -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아파트 하자는 나 몰라라' 수상한 관리사무소』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아파트 하자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45~850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MBN(845 · 846), MK뉴스(847 · 848), 인터넷 YTN(849 · 850)
조 정 대 상	• 인터넷 MBN : 『[유병언] CCTV에 찍힌 스타렉스 · 이삿짐 트럭』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 MK뉴스 : 『(1) 검찰, 유병언 추적 해남 · 목포에 배수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2) 『유병언, 100억 밀항 시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1명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수배중인 금수원 상무의 아들인 신청인이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의 소유주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각 50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 인터넷MBN : 『유병언 도피 관련 스타렉스 소유주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사회면) • MK뉴스 : 『"스타렉스 소유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사회면) • 인터넷YTN : 『'유병언 도피 도운 차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51 · 852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약사공론
조 정 대 상	『약사교육서 특정기업 옹호한 소비자원 강사 퇴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기관 소속 강사인 신청인이 강의중 특정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 퇴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약사공론 기사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입장』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 853, 854, 889	(정정, 정정, 손배청구) 박○○ 對 채널A(853, 889), 인터넷 채널A(854)
조 정 대 상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채널A 2014년 5월 1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8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귀순자인 신청인이 일부 탈북자들처럼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귀순한 딸에게서 돈 받는 어머니"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7일자)

2014서울조정855, 856	(각 정정청구) 여○○ 외 1인 對 한국일보(855), 인터넷 한국일보(856)
조 정 대 상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3월 28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네도서관 지원 시민단체 대표로 재직당시 해외도서관 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조직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7월 4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58~861	(각 정정 · 반론청구) ㈜에스비에스 對 전자신문(858 · 859), 인터넷 전자신문(860 · 861)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 부당하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30면, 인터넷 전자신문 5월 26일자 사설면) • 전자신문 : 『지상파 3사 월드컵 재송신료 100억 육박』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5일자 1면) • 인터넷 전자신문 : 『지상파, 월드컵 재송신료 별도 요구 '일파만파'…'월드컵 블랙아웃' 가능성 제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4일자 통신방송면)
신청인 주장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업계에 스포츠 이벤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재전송료를 요구한 것은 브라질 월드컵이 처음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지상파 3사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2면, 인터넷 전자신문 6월 27일자 통신방송면)

2014서울조정862	(정정청구) 구○○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기무사 장교, 새벽에 女하사를 찜질방으로…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소속 중령으로 근무할 당시,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고 정보비 등 공금을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기무사 A중령 성추행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63, 864	(각 반론청구) ○○○거주시설 ○○○ 對 서울신문[863], 인터넷 서울신문[864]
조 정 대 상	『성추행 가해자·피해자 같은 방에 재웠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6월 10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6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설에서 성추행, 강제노동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1) 기사 제목 수정 및 기사 본문 중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반발" 부분은 "… 반박"으로, "밭일은…" 부분을 "밭일은 원예프로그램으로"으로, "인권유린 및 비리 의혹"을 "인권침해 의혹"으로 수정 (2) 기사 본문 중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진상규명이 더딘 터라" 부분 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서울신문 『'인권침해 의혹' 송전원 진상규명 진행중』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865	(정정청구) 국군기무사령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성군기 사건 잇따른 기무사, 靑에 "남탓 보고"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속 부사관의 여군 중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이 출입기자와 정훈장교가 결탁되었다는 내부 보고서를 생산하고, 제보자 색출작업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성군기' 제보자 색출관련 기무사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866, 867	(각 정정청구) 강○○ 對 시사IN(866), 시사인Live(867)
조 정 대 상	『'그 이름' 왜 있을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7일자 28면~31면, 인터넷 시사IN Live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경찰청 소속 신청인이 청와대 인사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모 대출사건을 축소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는 수용이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868~871	(각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경제투데이(868 · 869), 매일마케팅신문(870 · 871)
조 정 대 상	• 경제투데이 : (1) 『[속보]○○○ 동맹휴업 전격 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산업면) (2) 『○○○협회, 동맹휴업 전격 철회…정부 강경 대응에 물러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산업면) • 매일마케팅신문 : 『○○○협회 "12일 동맹휴업 철회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 동맹휴업이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경제투데이 : 『"○○○협회 동맹휴업 철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산업면) • 매일마케팅신문 : 『"○○○협회 동맹휴업 철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872~875	(각 정정 · 손배청구) ○○○○○구역주민대책위원회 외 1인 對 아유경제(872 · 873), 아유경제(AU 경제)(874 · 875)
조 정 대 상	『의왕○○○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가 코앞인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9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책위원회가 해당 구역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있으며, 타구역 이권개입에 관여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76	(손배청구) 진○○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날] 의문의 화재사고 묻지마 방화?』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차량화재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 동의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877 · 878, 880 · 881, 894 · 895	(각 정정 · 손배청구) 민○○ 對 뉴시스(877 · 878), 미디어펜(880 · 881), 노컷뉴스(894 · 895)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증권 민○○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경제면) • 미디어펜 : 『○○증권 민○○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경제면) • 노컷뉴스 : 『번번이 발목 잡던 "민○○ 리스크" 해결 ... ○○증권 정상화 성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증권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유에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뉴시스 : 『민○○ 노조위원장에 대한 면직사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경제면) • 미디어펜 : 『'민○○ 노조위원장에 대한 면직사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경제면) • 노컷뉴스 : 『「번번이 발목 잡던 '민○○ 리스크 해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879	(정정청구) 육군본부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증거자료' 조의금 서류 남기지 말라는 육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육군본부가 자살병사 조의금 횡령 사건 이후 사건 공개의 단초가 된 조의금 관련 서류를 앞으로는 남기지 말라고 일선 예하부대에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7월 5일자 8면, 인터넷 서울신문 7월 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 888, 906, 90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종합건설 외 1인 對 쿠키뉴스(888), 헤럴드경제(906), 인터넷 헤럴드경제(907)
조 정 대 상	• 쿠키뉴스 : 『철도공단 변전소공사 '위험·지연' 논란 … 하도급업체 "갑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일자 문화면) • 헤럴드경제 : 『회룡역 인근 철도 5m옆 지하공사 1년째 지지부진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22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철도시설공단의 '이상한' 공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재테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하도급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 해지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약속)
이 행 결 과	• 쿠키뉴스 : 『[바로잡습니다] 6월 3일 보도한 철도공단 변전소공사 '위험·지연' 논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문화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5월 22일자 '철도시설공단의 '이상한' 공사?'(인터넷판) '회룡역 인근 철도 5m옆 지하공사 1년째 지지부진 왜?'(지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재테크면)

2014서울조정890~893	(각 정정·손배청구) 국제○○○○○봉사단 對 그린경제(890·891), e그린경제(892·893)
조 정 대 상	(1) 『美대통령 '가짜 봉사賞' 불법 유통된다』 제하의 기사 (그린경제 2014년 5월 28일자 1면, 2면, e그린경제 5월 28일자 교육면) (2) 『배우 정준호에 賞 만들어 준 L씨는 '희대의 문서 사기꾼'』 제하의 기사 (그린경제 2014년 5월 28일자 7면, e그린경제 5월 28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짜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유통하거나 남발해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896	(정정청구)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1) 『비공개 분과위 절반이상 현장교사…학교 비우는 "선생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6면) (2) 『법적권한 없는 전문위원이 교육청에 자료 무단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에 활동 중인 팀원 절반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수업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시교육감 인수위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12면)

2014서울조정897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국토매일
조 정 대 상	『철도공단 의정부변전소공사 설계보안상 일지정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철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무리한 공법 변경 요구로 의정부 변전소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철도공단 의정부 변전소 철거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교통면)

2014서울조정898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 정 대 상	『○○제약 최○○ 사장, '물장사' 팔 걷었나?... 창업 2세, 제약업 '홀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약보다 식품 음료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서울조정899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뉴스플러스
조 정 대 상	(1) 『정신 나간 경기교육청, 무자격업자 강당공사 중단잠적 업체두둔 "쉬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교육면) (2) 『○○초 강당 공사업체 "내진설계 등 부실시공" 폭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시공하는 있는 초등학교 강당 증축공사가 부실 시공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4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900~905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중앙일보(900~902), 온라인 중앙일보(903~905)
조 정 대 상	『"국민 눈 · 귀 속인 중대 범죄…KBS는 개조 대상"』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6월 25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KBS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강연내용을 당사자의 입장청취 노력없이 자체심의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08~913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강○○ 對 법무경찰신문(908~910), 인터넷 법무 경찰신문 (911~913)
조 정 대 상	• 법무경찰신문 : (1)『범죄심리학자들, "과대망상 의심…위험한 단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8면) (2)『강씨 실체 드러난 '과대망상 하얼빈 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8면~9면) • 인터넷 법무경찰신문 : (1)『'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피모』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뉴스면) (2)『〈긴급진단1〉 대한민국도 더 이상 '헤이트 스피치' 안전지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뉴스면) (3)『〈긴급진단2〉 하피모 강○○, 중국에서 시한부종말론 재산 갈취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뉴스면) 외 10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을 재림예수라 주장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14~933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채널A(914 · 915), 인터넷 채널A(916 · 917), 인터넷 연합뉴스TV (918 · 919), 인터넷 YTN(920 · 921), 뉴스1코리아(922 · 923), 노컷뉴스(924 · 925), 세계닷컴(926 · 927), e머니투데이(928 · 929), CBC뉴스(930 · 931), CBS-R(932 · 933)
조 정 대 상	• 채널A : (1) 종합뉴스 프로그램『'연락 없더니…' 세월호 보상금에 나타난…』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7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7일자 사회면) (2) 종합뉴스 프로그램『세월호 사망 딸 보험금만 '쏙' …』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3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12년 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10년 넘게 연락두절... 딸 사망보험금…』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세월호 사망 딸 보험금 챙긴 친부 …』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13년만에 나타난 친부, 사체검안서로 보험금 신청』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4일자 사회면) • CBS-R :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13년만에 나타난 친부, 사체검안서로 보험금 신청』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4일자) 외 6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친부인 신청인이 오래 전 이혼한 뒤 자식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오다가 참사 후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YTN, 노컷뉴스, e머니투데이, CBS뉴스, CBS-R/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인터넷 연합뉴스TV 30만원, 인터넷 YTN 10만원, 노컷뉴스 20만원, e머니투데이 30만원, CBC뉴스 3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채널A, 인터넷 채널A/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세계닷컴/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연합뉴스 TV : 『'12년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챙긴 아버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10년 넘게 연락두절...딸 사망보험금 수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세월 호 사망 딸 보험금 챙긴 친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13년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챙긴 친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8일자 사회면) • CBS-R :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2014년 7월 29일자)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 '12년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챙긴 친부'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사회면) 외 2건

2014서울조정934~943, 945 · 946	**(각 정정 · 손배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뉴스천지(934 · 935), 매일일보 인터넷(936 · 937), 인터넷 일간투데이(938 · 939), 온라인 중앙일보(940 · 941), 뉴스1코리아(942 · 943), 아주뉴스(945 · 946)**
조 정 대 상	• 뉴스천지 :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이어져 』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전국면) • 매일일보 인터넷 :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정치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이어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 · 전국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유한식후보 각급단체 지지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유한식후보, 각급단체 지지 잇따라 』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충북 · 세종면) • 아주뉴스 : 『전국○○○○ 세종시연합회, "유한식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일간투데이. 뉴스1코리아/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취하 (뉴스천지, 매일일보 인터넷 , 온라인 중앙일보, 아주뉴스/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뉴스천지 : 『[정정보도문] 전국○○○○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9일자 정치면) • 매일일보 인터넷 : 『[바로잡습니다] 전국○○○○노조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지역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전국○○○○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1일자 사회 · 전국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정정보도문] 전국○○○○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9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전국○○○○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1일자 전국면) • 아주뉴스 : 『[정정보도문] 전국○○○○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지방면)

2014서울조정944	(손배청구) 진○○ 對 데일리카
조 정 대 상	『폭스바겐, 'CC' 새 차 구입했는데..받아보니 사고차(?)』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수입차뉴스면)
신청인 주장	사고차량을 신차로 속여 출고한 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면서 딜러사 지점장인 신청인의 실명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47	(반론청구) 농림축산식품부 對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두부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자 A14면)
신청인 주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콩 두부 적합업종 지정 해제요구와 관련해 통계를 왜곡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48~957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시사주간(948 · 949), 인터넷 시사주간(950 · 951), 이코노믹포스트(952 · 953), 인터넷 스페셜경제(954 · 955), 인터넷 일요시사(956 · 957)
조 정 대 상	• 시사주간 : 『[단독]1300만 명 소비자 '성형외과'로 유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16면) • 인터넷 시사주간 : (1) 『위○○, 1300만 명 소비자 '청담 맥 피부과 · 성형외과'로 유인했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0일자 법원 · 검찰면) (2) 『〈후속〉위○○, 법률기망행위 '성형외과 알선', 2012년부터 계속해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사건 · 사고면) (3) 『위○○, '불법성형외과 알선'에 '쿠팡 비방 광고'까지 막가파의 끝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건 · 사고면) (4) 『[단독]위○○ 불법행위 '본지단독보도관련' 보건복지부 칼 빼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사회일반면) • 이코노믹포스트 : (1) 『[단독]위○○, 1300만 명 소비자 '청담 맥 피부과 · 성형외과'로 유인했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0일자 포토뉴스면) (2) 『위○○, '불법성형외과 알선'에 '쿠팡 비방 광고'까지 막가파의 끝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면) (3) 『[단독]위○○ 불법행위 '본지 단독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칼 빼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위○○, 1위 탈환 위해 '성형시장 진입?' 고의성 논란 불거진 이유』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5일자 소비자면) • 인터넷 일요시사 : (1) 『위○○ '의료기관 알선'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0일자 기업면) (2) 『위○○ '이상한 돈벌이' 실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소셜커머스 업체와 함께 피부과 상품을 내걸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58 · 959	(정정 · 손배청구) 협업마을 ○○○○ 외 1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그때 그 사건 '○○○○' 미스테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종교단체이며, 대표자가 신도 2명을 살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 이행방법 : 〈직언직설〉 본 방송중 신청인 관련 정정 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안내 자막을 2차례에 걸쳐 내보내며, 향후 신청인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받은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 ·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합의
이 행 결 과	인터넷 채널A 『'○○○○과 김○○ 회장'에 대한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8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960, 961	(각 정정청구) 변희재 對 인터넷 경향신문(960),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961)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원희복의 인물탐구] 보수논객 변희재라는』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8일자 정치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서헌철목사] 좌파? 우파?』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신앙생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항상 여권에서만 활동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62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법인협의회 對 CBS-R
조 정 대 상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전 기간제 교사대표와의 인터뷰』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전거래가 있다는 취지의 전 기간제교사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전 기간제 교사대표 관련 반론입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2일자)

2014서울조정963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마트 소불고기의 배신』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공정 중 유통기한 스티커를 바꿔달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64~967	(각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MBN(964 · 965), 인터넷 MBN(966 · 967)
조 정 대 상	(1) 뉴스8 프로그램 『새누리 선관위, 지지자 불법 동원 용납 않겠다』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7월 6일자, 인터넷 MBN 7월 6일자 정치면) (2) 굿모닝MBN 프로그램 『새누리 선관위, 지지자 불법 동원 용납 않겠다』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7월 6일자, 인터넷 MBN 7월 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68, 969	(각 정정청구) 유기홍 외 1인 對 검경타임즈(968), 검경뉴스(969)
조 정 대 상	• 검경타임즈 : 『관악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 공정성에 의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3면) • 검경뉴스 : 『관악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 공정성에 의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검찰News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가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검경타임즈 : 『"관악구의원 비례대표 불공정"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3면) • 검경뉴스 : 『"관악구의원 비례대표 불공정"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8일자 검찰면)

2014서울조정970, 971	(각 손배청구) 강○○ 對 KBS-2TV(970), KBS미디어(971)
조 정 대 상	VJ특공대 프로그램 『그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밤을 잊은 사람들』 제하의 보도 (KBS-2TV 2014년 5월 16일자, KBS미디어 5월 16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국립공원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80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72~975	(각 정정 · 손배청구) 최수규 對 세계일보(972 · 973), 세계닷컴(974 · 975)
조 정 대 상	(1) 『비리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1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2) 『창조경제 핵심 간부가 나랏돈 빼돌린 업자와 '부적절한 관계'?』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3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인 신청인이 창업투자사 대표로부터 수시로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비리혐의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정치면, 세계닷컴 10월 9일자 정치면) • 세계닷컴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9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976~979	(각 정정 · 반론청구) ○○대학교 외 4인 對 MBC(976 · 977), iMBC(978 · 979)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0일자, iMBC 6월 10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교원 임용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고 채용비리를 확인한 조사보고서에 대학 교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PD수첩 프로그램 『'○○○대 총장 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6일자, iMBC 9월 1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980~983	(각 정정 · 손배청구) 장○○ 對 채널A
조 정 대 상	FACT10 프로그램 『[단독공개] GOD.com...유병언 인터넷사이트』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전 회장의 망명을 돕는 해외조력자이며, 구원파 소식지에 찬양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84~987	(각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세계일보(984 · 985), 세계닷컴(986 · 987)
조 정 대 상	(1) 『비리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1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2) 『창조경제 핵심 간부가 나랏돈 빼돌린 업자와 '부적절한 관계'?』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3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투자기금을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로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비리혐의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정치면, 세계닷컴 10월 9일자 정치면) • 세계닷컴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9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988, 989	(각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머니위크[988], e머니위크[989]
조 정 대 상	(1) 『서민 밥값마저 떼먹으려나』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4월 15일자 58면~59면, e머니위크 4월 16일자 업계일반면) (2) 『서민 눈물'로 달리는 '시민의 발'』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4월 22일자 56면~57면, e머니위크 4월 22일자 업계일반면) (3) 『갈라지고 내려앉고... '장마철이 큰 걱정'』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4월 29일자 62면~63면, e머니위크 4월 29일자 업계일반면) (4) 『[단독] '철피아', 철도시설공단 또 부실시공사 선정』 제하의 기사 (e머니위크 5월 30일자 업계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매교역 출입구 공사 당시 부도난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지반침체와 주택붕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철도공단, "시공사 부도로 발생한 매교역 공사 미불금 1차분 지급"』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8월 6일자 62면, e머니위크 8월 6일 업계일반면)

2014서울조정990, 991	(각 정정청구) 박○○ 對 채널A[990], 인터넷 채널A[991]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7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4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소가 칼국수 고명으로 폐기용 닭을 쓰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93~1015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뉴스1코리아(993), 연합뉴스(994), 데일리안(995), EBN(996), M이코노미NEWS(997), 경제투데이(998), 인터넷 경향신문(999), 국제뉴스(1000), 뉴스웨이(1001), 뉴시스(1002), MK뉴스(1003), 메디컬투데이(1004), 인터넷 베이비뉴스(1005), 뷰티한국(1006), 브레이크뉴스(1007), 인터넷 서울파이낸스(1008), 인터넷 스포츠조선(1009), 시사포커스신문(1010), 아시아경제닷컴(1011), 인터넷 위클리오늘(1012), 인터넷 일간스포츠(1013), 쿠키뉴스(1014), 인터넷 환경일보(1015)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영유아 질식 유발 '○○○ 딸랑이' 2000개 회수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유통/생활경제면) • 연합뉴스 : 『미국산 영유아용 '○○ 딸랑이', 제품회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속보면) • 데일리안 : 『미국산 영유아용 '○○ 딸랑이' 제품 회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경제면) • EBN : 『'○○ 딸랑이'·'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유통면) • M이코노미NEWS : 『'○○ 딸랑이',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뉴스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미국 제조사의 리콜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아동용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외 21개 매체/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위클리오늘/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 본문 중 신청인 회사가 해당 제품을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수정

2014서울조정1016	(반론청구) ○○○○○○○○○시민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8일자 B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에 관한 기사를 약속대로 보도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사실적 주장이 아님)

2014서울조정1017·1018, 1059·1060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채널A(1017·1018), 인터넷 채널A(1019·1020)
조 정 대 상	(1) 뉴스특보 프로그램 『시신 한 구에 1억』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4월 19일자, 인터넷 채널A 4월19일자 뉴스면) (2) 종합뉴스 프로그램 『피해자 가족 두 번 울리는 사기꾼』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4월 19일자, 인터넷 채널A 4월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시신을 찾아주는 대가로 시신 한 구에 1억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019 · 1020, 1023 · 1024	(각 정정 · 손배청구) 재단법인 ○○문화재단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조 정 대 상	(1) 『의정부 박○○ 문화재단, 재단소유 땅 명분 내세워 법 위반하며 수락산 진입로에 장애물 설치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뉴스면) (2) 『박○○ 문화재단 소유 토지 내 총체적 불법 투성이, 시의 특혜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뉴스면) (3) 『변호사 불법명의 신탁 동원 인 · 허가 받아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현상변경 허가없이 법을 위반하여 재단소유 토지에 철 구조물를 설치하거나, 대형 바위를 등산 진입로에 설치해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021, 1022	(각 정정청구) 박○○○○○ 對 채널A(1021), 인터넷 채널A(1022)
조 정 대 상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7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4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소가 칼국수 고명으로 폐기용 닭을 쓰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25~1028, 1029~1032	(각 정정 ·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동아일보(1025 · 1026), 동아닷컴(1027 · 1028) (각 정정 · 반론청구) KBS방송기술인협회 對 동아일보(1029 · 1030), 동아닷컴(1031 · 1032)
조 정 대 상	『1급 이상 10명중 6명꼴 무보직… 고액연봉 5년새 10%P 급증』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0일자 17면, 동아닷컴 5월 30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KBS 기술직 직원이 업무량은 적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8월 15일자 17면, 동아닷컴 8월 15일자 기획면)

2014서울조정1033, 1034	(각 손배청구) 박○○ 對 헤럴드경제(1033), 인터넷 헤럴드경제(1034)
조 정 대 상	『'퍼블리시티권' 딜레마』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4년 7월 17일자 2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1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이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고소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035 · 1036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닭을 비위생적으로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37~1040	(각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한겨레(1037 · 1038), 인터넷 한겨레(1039 · 1040)
조 정 대 상	『노숙인 꾀어 가짜환자 42% 채운 요양병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 6월 30일자 인권복지면)
신청인 주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노숙인을 가짜환자로 입원시켜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 ㅂ요양병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9월 5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9월 5일자 인권복지면)

2014서울조정1042~1049	(각 반론청구) 강○○ 외 1인 對 데일리 한국(1042), 미디어펜(1043), 전자신문 인터넷(1044), 조선닷컴(1045), 티브이데일리(1046), 더 피알(1047), 데일리 중앙(1048), 아시아경제닷컴(1049)
조 정 대 상	• 데일리 한국 : 『"너땜에 졌어" 회원 엿 투척 도모 "축구국가대표들에게 엿을 먹이자" 황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사회면) 외 5건 • 미디어펜 : 『'너땜에 졌어' 악플카페 "어떤 김치X…" 일베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사회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엿투척 '너땜에 졌어', '일베'와 연관성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네티즌핫이슈면) • 조선닷컴 : 『스포츠악플카페 '너땜에 졌어'에서 일베 용어, 아이디 발견…"아시안게임에도 출격?"』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연예면) • 티브이데일리 : 『'너땜에 졌어' 까페 회원수 급증, 게시판 살펴보니…일베 유입?』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문화/사회면) • 더 피알 : 『국가대표팀 엿세례 논란 "일베 소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온라인 나우면) • 데일리 중앙 : 『너땜에 졌어 커뮤니티... 일베 관련 있나? "한국팀 엿 먹으라니"』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생활/문화면) • 아시아경제닷컴 : 『엿 투척 '너땜에 졌어' 악플 카페 표방 도넘어 '제 2의 일베'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네티즌핫이슈면)
신청인 주장	축구국가대표에게 엿을 던진 회원이 속한 모 인터넷 카페가 일베와 연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게재)
이 행 결 과	• 데일리 한국 : 『[반론보도문] '너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7일자 사회면) • 미디어펜 : 『'너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락&락면) • 전자신문 인터넷 : 『[반론보도] '너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라이프면) • 조선닷컴 : 『[반론보도문] '너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면) • 티브이데일리 : 『[반론보도문] '너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문화/사회면) • 더 피알 : 『'너 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오피니언면) • 데일리 중앙 : 『[반론보도문] '너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연관없다"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생활/문화면) • 아시아경제닷컴 : 『'너땜에 졌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조정1050	(정정청구) 권○○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권○○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인 신청인이 후보등록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수십억 대 재산에 대해 축소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명백한 오보이므로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51~1054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조리원 對 뉴스메이커(1051 · 1052), 인터넷 뉴스메이커(1053 · 1054)
조 정 대 상	『좋은 산후관리는 여성의 평생건강을 좌우한다』 제하의 기사 (뉴스메이커 2014년 6월 3일자 130면~131면, 인터넷 뉴스메이커 6월 3일자 경제 CEO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모 그룹과 관계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산후조리원 ○'은 ㈜○○그룹 임○○ 대표와 무관합니다』 제하의 기사 (뉴스메이커 2014년 9월 1일자 170면, 인터넷 뉴스메이커 8월 1일자 경제 CEO면)

2014서울조정1056 · 1057	(각 손배청구) 배○○ 對 SBS-TV(1056), SBS 콘텐츠허브(1057)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입석금지 첫날...버스증편, 계획 못 미처』 제하의 보도 (SBS-TV 2014년 7월 16일자, SBS 콘텐츠허브 7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 첫날 동정을 보도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손해배상 결정액이 적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촬영 당시 신청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2014서울조정1061 · 1062, 1072 · 1073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JTBC(1061 · 1062), 인터넷 JTBC(1072 · 1073)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첫 시신 발견 "언딘이 한 것으로…" 인양 조작했나』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JTBC 4월 28일자 뉴스면) (2) 뉴스9 프로그램 『민간 잠수사 "기상 탓? 언딘, 의도적으로 구조 지연"』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JTBC 4월 28일자 뉴스면) (3) 뉴스9 프로그램 『"윗선 난처해지니 인양 말라고 해" 증언…언딘 측 부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JTBC 4월 28일자 뉴스면) (4) 뉴스9 프로그램 『"시신 첫 발견, 민간 잠수사가 맞다" 언딘 일부 시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9일자, 인터넷 JTBC 4월 29일자 뉴스면) (5) 뉴스9 프로그램 『강○○ 잠수부 "언딘 김 이사가 재차 양보 요청"』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9일자, 인터넷 JTBC 4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구조작업시 신청인이 해경과 구조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잠수사들에게 시신 인양 중단을 요구하거나 구조작업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주식회사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9월 16일자, 인터넷 JTBC 9월 16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063, 1064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채널A(1063), 인터넷 채널A(1064)
조 정 대 상	• 채널A :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자죽염, 명품 죽염인가?』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7일자 홈페이지) • 인터넷 채널A : 『자줏빛 명품 소금 '자죽염'의 비밀…먹거리 X파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자죽염에 대나무 숯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숯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자죽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 A 2014년 9월 3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1074~1077	(각 정정·손배청구) ○○○○○장로회 ○○교회 對 프레시안(1074·1075), 당당뉴스(1076·1077)
조 정 대 상	• 프레시안 : 『개신교에서 암약하는 사채업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9일자 뉴스면) • 당당뉴스 : (1) 『○○교회 수석장로 자살-"진상규명" 대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2일자 교계면) (2) 『개신교계에 暗躍하는 사채업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8일자 칼럼면) (3) 『○○교회 김○○ 목사, 내부단속 강화』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정장로가 비자금을 관리·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외 동일한 기사의 배포 또는 게재 금지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078·1079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안내렌즈 삽입술의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2014서울조정1080~1083	(각 정정·반론청구) 고○○ 외 1인 對 한경비즈니스(1080·1081), 인터넷 한경비즈니스(1082·1083)
조 정 대 상	『'잇단 고소' 유명 교육 기업 內 갈등 진실은』 제하의 기사 (한경비즈니스 2014년 6월 11일자 44면~45면,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6월 17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인과 진행중인 이혼소송 및 재산분쟁 사유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돌아오길 바란다면 애초 내몰지 않았을 것"』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2014년 9월 12일자 비즈니스 포커스면)

2014서울조정1084 · 1085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뉴시스헬스
조 정 대 상	『○협-現 치과의사 논쟁중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심장 및 폐 질환, 암 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핫이슈면)
신청인 주장	투바디 임플란트 시술이 암발생을 높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이 행 결 과	『"투바디임플란트 유해성" 관련 반론 및 유감표명』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TodayNews면)

2014서울조정1098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 對 SBS-TV
조 정 대 상	(1) 8시뉴스 프로그램 『범죄 악용 '동물마취제'...묻지마 판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4일자) (2)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범죄 악용 '동물마취제'...묻지마 판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5일자) (3) 나이트라인 프로그램 『범죄 악용 '동물마취제'..묻지마 판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수의사 처방없이 아세프로마진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마취제를 구입할 수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동물용 마취제 묻지마 판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SBS-TV2014년 8월 13일자, SBS콘텐츠허브 8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098~1116	(각 추후 · 손배청구) 박○○ 對 중앙일보(1098 · 1099), 내일신문(1101 · 1102), 뉴스1코리아(1103 · 1104), 동아닷컴(1105 · 1106), e머니투데이(1107 · 1108), 인터넷 경향신문(1109 · 1110), 인터넷 MBN(1111 · 1112), SBS콘텐츠허브(1113 · 1114), 인터넷 YTN(1115 · 1116)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같이 살려다 같이 망한 악어와 악어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14면) • 내일신문 : 『마약사범 수사 빠져나가게 도운 경찰 영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21면) • 뉴스1코리아 : 『검찰, 마약사범 수사 방해한 경찰관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검찰, 마약사범 수사 빠져나가게 도운 경찰 영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劍, 마약사범 '머리카락 바꿔치기' 경찰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경찰공무원인 신청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동아닷컴(1105), 인터넷 경향신문(1109), 인터넷 MBN(1111)/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 각 조정불성립결정 (중앙일보, 내일신문, 뉴스1코리아, 동아닷컴(1106), e머니투데이, 인터넷 경향신문(1110), 인터넷 MBN(1112), SBS콘텐츠허브, 인터넷 YTN)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署 박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署 박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署 박 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17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신문지 회장' ○○○○ 강○○, 항공사 인수는 '정계진출' 포석?』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정계진출을 위해 저가항공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118 · 1119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이○씨 미행 구원파 경찰 A모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구원파 신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방송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120	(손배청구) 황○○ 외 2인 對 홈앤쇼핑
조 정 대 상	세부여행 프로그램 (2014년 7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동의없이 여행상품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약속)

2014서울조정1121 · 1122	(각 정정청구) 금융위원회 對 경향신문(1121), 인터넷 경향신문(1122)
조 정 대 상	(1) 『"공인인증서 탓에 중국서 '천송이 코트' 못산다"는 대통령 말…사실이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1면) (2) 『'천송이 코트' 잘못된 지시에 금융당국 '헛발질'』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2면) (3) 『위법이라며 눈감고, 대통령 발언 오류 직언도 안해 '천송이 코트' 논란 키운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0일자 2면) (4) 『"인터넷 쇼핑몰 해외 판매는 불법"…뜬금없는 '천송이 유권해석'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6면) (5) 『금융위, 대통령에 직언 대신 '페이퍼 정책'만 양산』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천송이 코트'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제대로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123 · 1124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VIP 고객 유치하려 성매매 알선도』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성매매 알선 의혹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카지노 전경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라인 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법 마케팅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2일자)

2014서울조정1125~1132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1125 · 1126), 아시아경제닷컴(1127 · 1128), 이데일리(1129 · 1130), 조선닷컴(1131 · 1132)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구원파 이○○, 유병언 도피조력자와 연락』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구원파 대변인, 아들 휴대폰으로 유병언과 연락 주고 받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정치 · 사회면) • 이데일리 : 『'유병언 숨기기' 구원파 이○○, 도피 조력자와 연락』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1) 『이○○ 구원파 대변인, 유병언 조력자와 수시로 전화통화 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2) 『이○○ 구원파 대변인, 유병언 일가 도피 수행원과 수시로 전화연락』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세칭 구원파 교회의 임시대변인인 신청인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정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30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33~1136	(각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한국일보(1133 · 1134), 한국일보(1135 · 1136)
조 정 대 상	『한국○○협회 ○○시지부 '갑질' 횡포』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7월 18일자 B13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 무용계의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협회 ○○시지부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8월 20일자 B1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37~1143	(정정 · 반론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아시아경제닷컴(1137 · 1138)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메트로(1140 · 1141) (정정청구) 이데일리(1139), 전자신문 인터넷(1142 · 1143)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지상파의 모바일TV '발목잡기'…MBC 영상 모든 콘텐츠 유료화』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6일자 통신/인터넷면) • 이데일리 : 『월드컵으로 옮겨 탄 '지상파 재송신' 분쟁』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IT · 과학면) • 인터넷 메트로 : 『지상파 '갑의 횡포'…모바일 IPTV, 내달부터 VOD 유료화』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방송/통신면) • 전자신문 인터넷 : (1)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 부당하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 『월드컵 블랙아웃 파장…모바일TV 가입자 350만명 한국경기 못 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5일자 통신방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모바일 IPTV 업계에 무료로 제공하던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유료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전자신문 인터넷/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메트로/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이데일리/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지상파의 모바일TV 발목잡기… MBC영상 모든 콘텐츠 유료화』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통신/인터넷면) • 인터넷 메트로 :『[정정보도문] 지상파 '갑의 횡포' 모바일 IPTV 내달부터 VOD 유료화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방송/통신면) • 전자신문 인터넷 :『"월드컵 블랙아웃 파장"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8일자 통신방송면)

2014서울조정1144, 1158	(각 정정청구) ○○미술관 對 퍼블릭아트
조 정 대 상	『○○미술관의 불안』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43면~59면)
신청인 주장	신청기관의 대표가 작품 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특정 화랑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45	(정정청구) 오○○ 對 수도권의양신문
조 정 대 상	『경기북부 교육자 및 교장 부동산 투기 앞장』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4일자 경제/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장인 신청인이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교육청 조사결과 적법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146 · 1147	(정정 · 반론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뉴포커스
조 정 대 상	『남북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 탈북민 관련 사이트들 악성 글들에 고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장이 특정 탈북자를 표적삼아 고소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4서울조정1148	(정정청구) 통합진보당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대책회의』 제하의 사진 (2014년 8월 13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모습을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책회의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2014서울조정1149, 1150	(각 정정청구) 김재원 對 한겨레(1149), 인터넷 한겨레(1150)
조 정 대 상	『특별법 담판 전 여야 40분간 고성』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8일자 3면, 인터넷 한겨레 8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신청인이 야당의 세월호 관련 특별법안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3일자 6면)

2014서울조정1151~1155	(각 정정청구) 문화재○○○○○ 對 인터넷 국방일보(1151), 인터넷 문화일보(1152), 인터넷 중앙일보(1153), 인터넷 경향신문(1154), 세계닷컴(1155)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방일보 : 『대한제국 국새반환, 단초 잡은 참군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오바마 방한때 국새 반환 결정적 단초 제공 … 석○○ 일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인물면) • 인터넷 중앙일보 : 『대한제국 국새 환수 일등공신, 석○○ 일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문화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대한제국 국새 환수 일등공신, 석○○ 일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문화면) • 세계닷컴 『대한제국 국새 반환, 육군 일병 노력이 결정적 역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 국새를 반환받은 것과 관련해 국군 모 일병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국방일보, 인터넷 경향신문, 세계닷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문화일보,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56, 1157	(각 반론청구) 지○○ 외 1인 對 TV조선(1156), 인터넷 TV조선(1157)
조 정 대 상	뉴스쇼 판 프로그램 『○○사단 선임 가혹행위에 일병 자살』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4년 8월 7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가혹행위로 모사단 일병이 자살했으며, 신청인의 가족이 유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159, 1160, 1167~1186, 1197~1120, 1206~1212, 1215~1225, 1228, 1230, 1231, 1242~1244	(각 손배청구) 권○○(1159), 권○○(1160), 김○○(1169), 목○○(1170), 박○○(1171), 심○○(1176), 강○○(1197), 김○○(1208), 박○○(1215), 안○○(1219) 對 뉴스1코리아 김○○(1167), 김○○(1209), 서○○(1216), 이○○(1224) 조○○(1230) 對 MBN 김○○(1168), 김○○(1210), 서○○(1217), 이○○(1225) 對 인터넷 MBN, 성○○ 對 JTBC(1172), 성○○(1173), 서○○(1218) 對 연합뉴스 TV 성○○ 對 MBC(1174), iMBC(1175) 양○○ 對 오마이뉴스(1177) 오○○ 對 아주뉴스(1178), 뉴스핌(1179), 이○○ 對 인터넷 서울신문(1181) 임○○(1182), 임○○(1185), 오○○(1180), 조○○(1244) 對 뉴시스 임○○(1183), 임○○(1184), 강○○(1200) 데일리안 최○○(1186), 강○○(1198), 김○○(1208) 對 아시아경제 닷컴 강○○ 對 민중의소리(1199) 공○○(1206), 김○○(1212), 이○○(1222), 조○○(1242) 對 YTN 김○○ 對 아주뉴스(1211) 오○○ 對 TV조선(1220), 인터넷 TV조선(1221) 이○○(1223), 정○○(1228) 對 오마이뉴스 최○○ 對 환경TV(1231) 조○○(1243)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는 구원파』 제하의 사진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MBN : 8시뉴스 프로그램 『첫 내부 공개…논·밭만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8일자, 인터넷 MBN 5월 18일자 사회면 사진) • JTBC : 뉴스특보 프로그램 『"마녀사냥 하지말라" 항의집회』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4월 29일자) • 연합뉴스 TV : 뉴스특보 프로그램 『금수원 압수수색 이틀째…유 씨 행방 단서 찾을까』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414년 6월 12일자)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유병언 16일 소환 금수원 긴장』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414년 5월 13일자, iMBC 5월 13일자 뉴스면) • 오마이뉴스 : 『구원파, 인천지검 앞 항의집회』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6일자 사회면) 외 25건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종교탄압중단 요구집회 등 행사에 참여한 신청인들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집회 시위 현장에 관한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2014서울조정1161~1166	(각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MBN(1161), 노컷뉴스(1162), 뉴스1코리아(1163), 마이데일리(1164), 스타뉴스(1165), 인터넷 스포츠조선(1166)
조 정 대 상	• 인터넷 MBN : 『전양자 검찰 출두해 "진실을 말하겠다』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배우 '전양자' 검찰 출두』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노컷 V면) • 뉴스1코리아 : 『검찰 출두하는 탤런트 전양자』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외 1건 • 마이데일리 : 『전양자, '검찰 출두 합니다'』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포토면) • 스타뉴스 : 『전양자, 경호 받으며 인천지검 출두』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포토면)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억울해하는 전양자 '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탤런트 전양자씨가 검찰에 출두할 당시 동행하던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70만원, 사진 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동의 후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187~1194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동아일보(1187 · 1188), 동아닷컴(1189 · 1190), 네이버(1191 · 1192), 다음(1193 · 1194)
조 정 대 상	『첫 휴가 때 복귀 않겠다는 아들 ... 등 떠민 내가 죄인이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A12면, 동아닷컴 · 네이버 · 다음 8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2009년에 제대한 신청인이 군복무 시절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軍 가혹행위로 정신이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네이버 · 다음 9월 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95, 1196	(각 손배청구) J○○○○○ 對 MBN(1195), 인터넷 MBN(1196)
조 정 대 상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 유병언 무죄입증 목적?』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MBN 6월 15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약속)
이 행 결 과	금액 지급 (5만원)

2014서울조정1201~1205	(각 손배청구) 고○○ 對 JTBC(1201), 인터넷 JTBC(1202), KBS-1TV(1203), YTN(1204), 인터넷 YTN(1205)
조 정 대 상	• JTBC : 9시뉴스 프로그램 『유병언 일가 수사』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5월 13일자, 인터넷 JTBC 5월 13일자 사회면 사진) • KBS-1TV : 뉴스라인 프로그램 『검찰, 유대균씨 체포 실패』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5월 13일자) • YTN :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유 회장 소환 통보 전 대균씨 신병 확보 방침』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5월 13일자, 인터넷 YTN 5월 13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소재지 추적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성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213, 1214	(각 손배청구) 김○○ 對 MBN(1213), 인터넷 MBN(1214)
조 정 대 상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 유병언 무죄입증 목적?』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MBN 6월 15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226	(손배청구) 이○○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검 · 경 "금수원 진입작전" 어떻게 진행되나』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6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의 금수원 진입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공개집회 현장에서의 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227	(손배청구) 장○○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검찰, 유병언 장남 집 강제진입』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소재지 추적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229	(손배청구) 이○○ 對 MBN
조 정 대 상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구원파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 유병언 무죄입증 목적?』 제하의 보도 중 영상 (MBN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MBN 6월 15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232~1236, 1248~1241	(각 정정 · 손배청구) 대한○○학회 외 5인 對 국민일보(1232 · 1233), 쿠키뉴스(1234 · 1235)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對 국민일보(1238 · 1239), 쿠키뉴스(1240 · 1241) (정정청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對 쿠키뉴스(1236)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현직 치과醫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癌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H01면, 쿠키뉴스 7월 15일자 건강생활면) • 쿠키뉴스 :『치아 임플란트 허점 들춰내기 싫은 'dentist'』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건강생활면) • 쿠키뉴스 :『치과전문의, 배출 중단 위기 맞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투바디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으로 치주염과 구취 및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국민일보(1238 · 1239), 쿠키뉴스(1236, 1240 · 1241)/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국민일보(1232 · 1233), 쿠키뉴스(1234 · 1235)/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국민일보 :『[암과의 동행]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H05면, 쿠키뉴스 9월 5일자 건강생활면) • 쿠키뉴스 :『"치과의사 레지던트 교육"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37	(손배청구) 박○○ 對 TVN
조 정 대 상	두 남자의 특급찬양 프로그램 (2014년 8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이 실험대상으로 촬영된 영상이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279 · 1280	(정정 · 손배청구) A○○○○○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인도여행 까페 둘러싼 무더기 소송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도인인 신청인이 성폭력 기소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한국 체류 기간연장을 위해 해당 사실을 폭로한 인도여행카페 운영자들을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도인 A씨, 국내 체류 위해 고소제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81~1312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뉴스1코리아(1281), 연합뉴스(1282), KBS미디어(1283), iMBC(1284), SBS콘텐츠허브(1285), 인터넷 TBS(1286), 인터넷 연합뉴스TV(1287), 인터넷 YTN(1288), 동아닷컴(1289), 인터넷 경향신문(1290), 인터넷 일간스포츠(1291), 그린포스트 코리아(1292), 뉴스웨이(1293), 뉴스핌(1294), 데일리 그리드(1295), 데일리 서울파이낸스(1296), 데일리안(1297), 데일리팜(1298), 메디컬투데이(1299), 인터넷 베이비뉴스(1300), 아주뉴스(1301), 오가닉라이프신문(1302), 인터넷 위클리오늘(1303), 이데일리(1304), 이투데이(1305), 인터넷 약사공론(1306), 조세일보(1307), 초이스경제(1308), 헬스조선(1309), 러브즈뷰티(1310), M이코노미NEWS(1311), MK패션 (1312)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키크게 한다고? 허위 · 과대광고 제품 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한국○○○○○ · 굿○○, 키 크는 약 거짓 광고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키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광고한 제품 2개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뉴스면) • iMBC : 『일반식품을 키크는 약으로 허위 · 광고한 식품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뉴스면) • SBS콘텐츠허브 : 『키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뉴스면) 외 27건
신청인 주장	OEM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주문제작한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TBS/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연합뉴스, SBS콘텐츠허브, 동아닷컴, 그린포스트코리아, 뉴스핌, 데일리 그리드, 데일리 서울파이낸스, 데일리안, 메디컬투데이, 인터넷 베이비뉴스, 아주뉴스, 이데일리, 이투데이, 인터넷 약사공론, 조세일보, 초이스경제, 헬스조선, 러브즈 뷰티, M이코노미NEWS, MK패션/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KBS미디어, 인터넷 연합뉴스 TV, 인터넷 YTN, 인터넷 일간스포츠, 뉴스웨이, 데일리팜, 오가닉 라이프신문, 인터넷 위클리오늘/사유 - 기사삭제) •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중재합의) • 취하 (iMBC/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SBS콘텐츠허브 :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뉴스면) • 인터넷 TBS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아동 키 성장 제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 그린포스트코리아 : 『'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돕는다" 허위광고 제품 적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건강문화면) 외 16건

2014서울조정1313, 3607·3608	**(정정, 정정·손배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뉴포커스**(1313, 3607·3608)
조 정 대 상	(1) 『탈북단체들, 남북하나재단 명칭 변경에 집단적 항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정치면) (2) 『정○○, 탈북자단체장들에게 거짓말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의도적으로 남북하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남북하나재단 명칭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14~1318	**(각 정정청구) 이○○ 對 에이블뉴스**(1314), **디지털 함께걸음**(1315), **세계닷컴**(1316), **인터넷 YTN**(1317), **SBS-R**(1318)
조 정 대 상	• 에이블 뉴스 :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에 금품 갈취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 디지털 함께걸음 : 『14년간 지적 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식당 주인 덜미 잡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뉴스 및 이벤트면) • 세계닷컴 : 『장애인 거둔 천사 알고보니 14년 착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10년 넘게 장애인 월급과 수당 착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사회면) • SBS-R : 한수진의 SBS전망대 프로그램 (2014년 8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에이블뉴스, 디지털 함께걸음, 인터넷 YTN, SBS-R/내용 : 정정보도) • 취하 (세계닷컴/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에이블 뉴스 :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식당 주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6일자 사회면) • 디지털 함께걸음 :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식당 주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6일자 뉴스 및 이벤트면) • 인터넷 YTN : 『'10년 넘게 장애인 월급과 수당 착취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 SBS-R : 한수진의 SBS전망대 프로그램 (2014년 9월 12일자)

2014서울조정1319, 1320	**(각 정정청구) 윤○○ 한국일보(1319), 인터넷 한국일보(1320)**
조 정 대 상	『음대교수가 교비 착복하고 작품집 강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8월 22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 모 음대 교수인 신청인이 교비를 착복하고 성적 평가에서도 전횡을 일삼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음대 교수 착복"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9월 1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21 · 1322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투데이신문**
조 정 대 상	『[원조 논란①] 요거프레소 ○○딸기, 디자인 특허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판매 중인 인기메뉴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메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회사 제품 익명 처리

2014서울조정1323, 1324 · 1422	(정정,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구리남양주넷
조 정 대 상	(1) 『남양주, 황당한 P의원...아동에게 감기약 대신...식초처방?』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사회면) (2) 『남양주시, 금곡동 P의원 B군에게 처방한 감기약은 100% 식초로 "판명"』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고열과 감기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에게 식초 성분이 의심되는 약을 처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고열과 감기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에게 처방한 감기약이 식초로 판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하(1323) (사유 : 조정신청기간 도과) • 조정성립(1324 · 1422)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남양주시, 금곡동 P의원. 식초 처방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25	(정정청구) 주식회사 한국○○○○○협회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천차만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최대 9배 차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정책/보건의료면)
신청인 주장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326, 1327	(각 정정청구) 권○○ 對 한겨레(1326), 인터넷 한겨레(1327)
조 정 대 상	『한중연 근현대사 사진집 제작에 '친일 · 독재 미화' 학자 대거 참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학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친일 · 독재 미화 학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28	(정정청구) 신○○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존재감 – 골 없어도 특별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33면)
신청인 주장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1329 · 1330	(반론 · 손배청구) 한국○○은행 노동조합 對 더벨
조 정 대 상	(1) 『○○-○○銀, '한지붕 두가족' 조기통합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콘텐츠면) (2) 『○○은행 인수 2년, 시너지효과 '미미'…비용만 늘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콘텐츠면) (3) 『○○은행, '론스타 무임승차'…외환경쟁력도 위태』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콘텐츠면) (4) 『'○○+○○' 사례보면 답이 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콘텐츠면) (5) 『○○-○○銀 '감성통합'이 관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4일자 콘텐츠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반대로 ○○은행과 ○○은행간 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銀 '론스타 무임승차' … 외환경쟁력도 위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은행 노조, 변해야 산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2014서울조정1331~1346	(각 정정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온라인 중앙일보(1331), 노컷뉴스(1332), 인터넷 경향신문(1333), 시사브리핑(1334), 아주뉴스(1335), 인터넷 파이낸셜뉴스(1336), 유앤앤(1337), KBS미디어(1338), 매경닷컴(1339), 오마이뉴스(1340), e머니투데이(1341), 인터넷 서울신문(1342), 세계닷컴(1343), 연합뉴스(1344), 조선닷컴(1345), 대한뉴스투데이(1346)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비리 전력 김○○씨 ○○대 총장 자격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사설) • 노컷뉴스 : 『교육부, 사학비리 관련자의 대학 복귀 막아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설) • 인터넷 경향신문 : 『○○대 김○○ 총장 복귀, 교육부가 방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9일자 사회면) • 시사브리핑 : 『金○○ ○○대총장, 정○○교수 징계위 회부...공금횡령 전력의 前이사장이 다시 총장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9일자 뉴스면) • 아주뉴스 : 『교육부, ○○대 김○○ 총장 정이사 승인 거부 · 해임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외 11건

신청인 주장	전 ○○대 이사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 취하 (대한뉴스투데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온라인 중앙일보 :『○○대 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대 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칼럼면) • 인터넷 경향신문 :『[정정보도문]○○대 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오피니언면) • 시사브리핑 :『○○대 김○○ 총장 보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교육면) • 아주뉴스 :『김○○씨 ○○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외 10건

2014서울조정1347 · 1348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對 위키트리
조 정 대 상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4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발행하는 메트로 신문이 휴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미디어면)

2014서울조정1349~1356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MBN(1349 · 1350), 인터넷 MBN(1351 · 1352), 채널A(1353 · 1354), 인터넷 채널A(1355 · 1356)
조 정 대 상	• MBN : 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검찰, 금수원 전격 진입! 유병언 체포 급물살 - 박○○, 정○○, 이○○』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1일자, 인터넷 MBN 5월 21일자 뉴스면) • 채널A : 직언직설 프로그램 세월호 관련 보도 (2014년 5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1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세칭 '구원파' 임시대변인인 신청인이 과거 구원파 신도였던 정○○ 목사 등을 미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357~1359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연대 외 1인 對 대한뉴스투데이(1357), 아시아일보(1358), 인터넷 아시아일보(1359)
조 정 대 상	• 대한뉴스투데이 : 『인천 인터넷 기자단체 대한민국 인물 시상식 "자격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사회면) • 대한뉴스투데이 : 『대한민국인물시상 논란시비 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아시아일보 : 『대한민국인물시상 공신력 결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전과 경력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360, 1361	(각 정정청구) 한국○○○○○○○○전문학교 對 주간한국(1360), 데일리한국(1361)
조 정 대 상	• 주간한국 : 『[본지단독] 한국○○○○○○○○전문학교 허위·과장광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경제면) • 데일리한국 : 『[단독] A직업전문학교 허위·과장광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6일자 연재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주간한국/사유 : 자진취하) • 취하 (데일리한국/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허위·과장 광고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4서울조정1362~1367	(각 손배청구) 오○○ 對 KBS-1TV(1362), KBS미디어(1363), JTBC(1364), 인터넷 JTBC(1365), MBN(1366), 인터넷 MBN(1367)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 5프로그램 『유대균-박수경 첫 재판 … 대체로 혐의 인정』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8월 27일자, KBS미디어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건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유대균 재판 관련』 속보 중 영상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JTBC 8월 27일자 사회면) • MBN : 시사마이크 프로그램 『유대균 첫 재판 … 73억 횡령 일부 부인』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MBN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회장 장남인 유대균씨 재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손해배상 지급)

2014서울조정1368, 1369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JTBC(1368), 인터넷 JTBC(1369)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인재라고 고치면 공무원 다친다』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7일자, 인터넷 JTBC 8월 7일자 사회면) (2) 뉴스9 프로그램 『인재냐, 천재냐 끝나지 않은 산사태』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8일자, 인터넷 JTBC 8월 8일자 사회면) (3) 뉴스9 프로그램 『우면산 보고서 논란』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11일자, 인터넷 JTBC 8월 11일자 사회면) (4) 뉴스9 프로그램 『천재라던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 조작 논란…핵심은 강우량』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13일자, 인터넷 JTBC 8월 13일자 사회면) 외 6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소속 공무원 면책을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반론보도]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 조작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JTBC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JTBC 10월 2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70, 1371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1370), 인터넷 한국일보(1371)
조 정 대 상	『김무성 딸 수원대 교수채용 때 기준 미달』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8월 25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지원자격 미달임에도 김무성 의원의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수원대 특혜 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9월 30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3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72	(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칠판 지우개 10만개 샀다며 돈 빼돌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 재단이 시설개선 요구는 묵살하고 회계부정 등을 통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학원, "칠판지우개 10만개 구입 등 비리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1373 · 1374	(정정 · 반론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탈북자지원 재단이사장이 탈북자 고소...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민족 · 국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장이 재단 운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을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민족 · 국제면)

2014서울조정1375 · 1376	(정정 · 손배청구) 김한표 對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국회의원이 유통업체 매출액 부풀리게 된 사연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통계를 왜곡해 대형마트에 비해 전통시장 매출이 부진하다고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377, 1378	(각 정정청구) 인천 옹진군청 기자단 對 대한뉴스투데이(1377), 인터넷 일간투데이(1378)
조 정 대 상	• 대한뉴스투데이 : 『옹진군청 출입기자실 타 회원사 명단 일부러 손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인천플러스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인천 옹진군청 브리핑룸 타 회원사 명단 고의 파손』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인천면)
신청인 주장	옹진군청에 출입하는 2개 기자단 중 하나인 신청인 기자단이 상대편 기자단의 명단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대한뉴스투데이 : 『'옹진군청 출입기자단 명단 손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인천플러스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옹진군청 출입기자단 명단 손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사회/인천면)

2014서울조정1379~1382	(각 정정 · 손배청구) 강○○ 對 한겨레(1379 · 1380), 인터넷 한겨레(1381 · 1382)
조 정 대 상	『한중연 근현대사 사진집 제작에 '친일 · 독재 미화' 학자 대거 참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학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친일 · 독재 미화 학자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10월 4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83 · 1384	(정정 · 손배청구) 대한○○의사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알고 하십니까? 라식 · 라섹 수술 부작용 그 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5일자)
신청인 주장	라식 · 라섹 수술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일부 안과에서 환자관리에 소홀하다고 보도해 소속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신청/ 신청인은 반론보도로 결정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인 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408 · 1409, 1412~1415	(각 정정 · 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시사저널(1408 · 1409) 주식회사 ○○○○○ ○○○ 對 시사저널(1412 · 1413), 인터넷 시사저널(1414 · 1415)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14면~16면, 18면) • 인터넷 시사저널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제작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 독한 물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아기 물티슈에 '소독용 원료' 썼다 』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4년 9월 15일자 문화면)

2014서울조정1410, 1411	(각 손배청구) 김○○(1410), 이○○(1411)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실물과 다른 '디지털 성형' … 사진 없는 서류 전형 확산』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9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취업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1417, 1418	(각 손배청구) 사단법인 ○○○○합창단 對 TV조선(1417), 인터넷TV조선(1418)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구원파 계열사 건물 잇단 매각』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3일자) • 인터넷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다판다'에 '문진미디어'까지 … 핵심 계열사 줄줄이 '매각'』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구원파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합창단의 공연포스터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홍보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본 방송 중 자막을 통한 유감표명/신청인의 미국 공연 및 국내 공연 총 2회 및 단신 1회, 공연안내 자막 3회 방송
이 행 결 과	뉴스쇼 판 프로그램 유감표명 자막 게재 (TV조선 2014년 10월 17일자)

2014서울조정1419, 1420	(각 정정청구) 윤○○ 對 더스쿠프(1419), 인터넷 더스쿠프(1420)
조 정 대 상	『국정원 전 직원 "파고다 사건" 비틀었나』 제하의 기사 (더스쿠프 2014년 5월 26일자 Current Economy면, 인터넷 더스쿠프 5월 26일자 Current Economy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그룹 회장 살인예비음모 사건의 배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Current Economy면)

2014서울조정1421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단독]어린이 복용 금지 약 먹여 상처 없애고 구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이웃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과 관련,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423	(정정청구) ○○○○산부인과의원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부산 모 산부인과 신생아 집단 결핵』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산부인과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424, 1425	(각 정정청구) 육군본부 對 경향신문(1424), 인터넷 경향신문(1425)
조 정 대 상	(1)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8월 13일자 정치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13일자 정치면) (2)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8월 22일자 정치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육군 군 검찰이 윤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9월 23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23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426~1429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연합뉴스(1426, 1427), 연합뉴스TV(1428, 1429)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부인 폭행' 탤런트 류○○ 벌금 700만원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연예면) • 연합뉴스TV : 뉴스Y 프로그램 『'부인 폭행' 탤런트 류○○ 벌금 700만원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소속 유명 배우의 부인 폭행 혐의와 관련해 1심재판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430, 1432, 1433, 1435	(각 정정청구) 최민희 對 동아일보(1430), YTN(1432), 인터넷 YTN(1433), 인터넷 국민일보(1435)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박영선式 파격 통할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종합면) • YTN : 호준석의 뉴스인 프로그램 『새정치, 비대위원장 영입 대소동』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2일자, 인터넷 YTN 9월 12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흔들리는 제1 야당] 품격과 금도 상실한 새정치연합 세종대왕·이순신이 나서도 갈등 수습 안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외부영입설과 관련해 의원 그룹채팅방에 당장 원내대표실로 달려가자는 문자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SNS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동아일보, YTN, 인터넷 YTN/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일자 5면) • YTN : 3시 뉴스 프로그램 『최민희 의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인터넷 YTN 9월 12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431, 1497, 1603, 1614, 1615	(각 손배청구) 조○○ 對 스타엔(1431), 한경닷컴(1497), TV리포트(1603), 전자신문 인터넷(1614), 아시아경제 닷컴(1615)
조 정 대 상	• 스타엔 : 『조오련 아들 조○○, 유병호와 의형제 사이 '동거 중 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스타면) • 한경닷컴 : 『'유병언 동생' 유병호, 박진영 · 조오련 아들과 관계가 … '발칵'』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뉴스면) • TV리포트 : 『'박진영 장인' 유병호, 故 조오련 아들과 생활하다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일자 연예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조오련 아들 유병언 동생과 의형제 맺어 …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뉴스면) • 아시아경제 닷컴 : 『조오련 아들 유병언 동생 유병호와 동거 … 유씨 일가와 '의형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의 친동생과 의형제라고 허위보도하고 동의없이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각 250만원 (한경닷컴, TV리포트), 180만원 (TV리포트), 200만원 (전자신문 인터넷), 150만원 (아시아경제 닷컴), 부제소 - 동의 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금액 지급

2014서울조정1434	(정정청구) 한국광해관리공단 對 환경미디어
조 정 대 상	『광해관리공단, 지침 무시 부당 인사 노동위 구제신청 사연』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환경신문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 인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광해관리공단, 지침무시 부당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환경신문고면)

2014서울조정1436~1439	(각 정정 · 손배청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對 KBS-1TV(1436 · 1437), 부산KBS-1TV(1438 · 1439)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뉴스12/뉴스라인 프로그램 『'[단독]신고리 3 · 4호기 납품 미 업체 "부적합"… 검증 안해』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5일자) • 부산 KBS-1TV : 뉴스 9 프로그램 『신고리 3 · 4호기 납품 미 업체 "부적합"… 검증 안해』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신고리 원자력 3, 4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이 불량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440~1445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국제뉴스(1440 · 1441), DK뉴스(1442 · 1443), 부패방지뉴스(1444 · 1445)
조 정 대 상	• 국제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DK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전국면) • 부패방지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도피에 적극 가담했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내 특정 모임을 이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천만원(국제뉴스), 각 5백만원(DK뉴스, 부패방지뉴스),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불명(국제뉴스), 직접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DK뉴스, 부패방지뉴스)) ※ 이의신청 후 국제뉴스와 부패방지뉴스는 각각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국제뉴스 : 『김○○씨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부산면) • 부패방지뉴스 : 『김○○씨(속칭 김엄마) 보도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사회환경면)

2014서울조정1446	(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프로그램 중 신청인 관련 사진 (2014년 9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일베회원들의 광화문 시위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 행사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447~1452	(각 정정 · 손배청구) 노○○ 對 뉴스1코리아(1447 · 1448), 네이버(1449 · 1450), 네이트(1451 · 1452)
조 정 대 상	『40대 여교사, 여중생 제자 교통사고 낸 뒤 방치 물의』 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4년 9월 2일자 전국면, 네이버 • 네이트 9월 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구호조치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스1코리아, 네이버) • 취하 (네이트/사유 : 검색차단 및 댓글삭제)

2014서울조정1453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조기교육 영단어 금세 외우지만...창의성은 "뚝"』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영유아 선행학습의 무익하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이와 무관한 신청인 수학학원의 인터뷰를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454	(손배청구) 남○○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스트레스 풀자"…백화점에 몰린 주부들』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9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명절 스트레스를 백화점 쇼핑으로 해소하는 세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455~1457	(정정청구) 김성태 對 뉴스1코리아(1455)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미디어오늘(1456 · 1457)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기사삭제 종용 김성태 의원 협박 강요 등 혐의로 피소』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김성태 의원, 언론사주에게 고발장 준비해놨다 전화』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2)『언론사주 압박 새누리 의원, 협박 업무방해 혐의 피소』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8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혹제기를 한 언론사에 기사삭제를 종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조건부 보도 약속, 부제소)
이 행 결 과	『'김성태 의원' 보도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458, 1495, 1496	(각 정정청구) ○○○○○○○○○○○연구회 對 한국일보(1458), SBS-TV(1495), SBS 콘텐츠허브(1496)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일반학생이 장애학생 성추행한 대안학교서 체육 교사가 장애학생 내리쳐 뇌진탕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사회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교사가 장애학생 폭행해 "급성 뇌진탕"』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1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한국일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SBS-TV, SBS 콘텐츠허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11월 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459 · 1460, 1507 · 1508	(각 정정 · 반론청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對 JTBC(1459 · 1460), 인터넷 JTBC(1507 · 1508)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경주 방폐장 '암반조사' 조작 의혹』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29일자, 인터넷 JTBC 8월 2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경주방폐장 부지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암반건전성 수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경주 방폐장, 조작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11월 7일자, 인터넷 JTBC 11월 5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461~1494	(각 정정 · 손배청구) 채○○ 對 온라인 중앙일보(1461 · 1462), 쿠키뉴스(1463 · 1464), 인터넷 내일신문(1465 · 1466), 인터넷 MBN(1467 · 1468), 인터넷 YTN(1469 · 1470), 뉴시스(1471 · 1472), 아시아경제닷컴(1473 · 1474), e머니투데이(1475 · 1476), 뉴스1코리아(1477 · 1478), 인터넷 서울경제(1479 · 1480), 매경닷컴(1481 · 1482), 인터넷 한국일보(1483 · 1484), 동아닷컴(1485 · 1486), 노컷뉴스(1487 · 1488), 인터넷 법률신문(1489 · 1490), 인터넷 한국국정일보(1491 · 1492), 연합뉴스(1493 · 1494)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위조한 판결문 증거로 제출 '간 부은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일신문 : 『세금 더 돌려받으려고 판결문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판결문 위조해 재심청구한 60대 덜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외 2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1461), 쿠키뉴스(1463), 인터넷 내일신문(1465), 인터넷 MBN(1467), 인터넷 YTN(1469), 뉴시스(1471), 아시아경제 닷컴(1473), e머니투데이(1475), 인터넷 서울경제(1479), 매경닷컴(1481), 인터넷 한국일보(1483), 동아닷컴(1485), 노컷뉴스(1487), 인터넷 법률신문(1489), 인터넷 한국국정일보(1491)/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기각 (온라인 중앙일보(1462), 쿠키뉴스(1464), 인터넷 내일신문(1466), 인터넷 MBN(1468), 인터넷 YTN(1470), 뉴시스(1472), 아시아경제 닷컴(1474), e머니투데이(1476), 뉴스1코리아(1477 · 1478), 인터넷 서울경제(1480), 매경닷컴(1482), 인터넷 한국일보(1484), 동아닷컴(1486), 노컷뉴스(1488), 인터넷 법률신문(1490), 인터넷 한국국정일보(1492), 연합뉴스(1493 · 1494)/사유 : 언론의 상당성 인정)
이 행 결 과	• 온라인 중앙일보 : 『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60대 남성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일신문 : 『60대 남성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50대 A씨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외 10건

2014서울조정1498 · 1499	(정정 · 손배청구) 박○○ 외 1인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여수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부인 통장으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500, 1501	(각 정정청구) 배재정 외 4인 對 채널A(1500), 인터넷 채널A(1501)
조 정 대 상	박정훈의 뉴스 톱 10 프로그램 『2300억대 땅재벌 청해진해운 관계사…'속빈강정' 신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채널A 4월 28일자 정책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국회의원인 신청인들이 강경파로 의원총회장에서 막말을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박정훈의 뉴스 톱 10 프로그램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채널A 10월 31일자 정책면)

2014서울조정1502~1505	(각 정정·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경향신문(1502·1503), 인터넷 경향신문(1504·1505)
조 정 대 상	『내부고발자 철저히 보호해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9월 3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내부고발자인 교사를 보복성으로 중징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 ○○○고 내부고발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10월 10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508~1575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현직 공기업 CEO의 또다른 공기업 도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부동산정책면) (2) 『'구설수' 서종대 주금공 전사장, 결국 감정원장에』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9일자 부동산일반면) (3) 『감정평가협회, '한남○○' 타당성조사 중도포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부동산일반면) (4) 『'한남○○' 타당성조사 오늘 2차심의....심의위원 교체 구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9일자 부동산일반면) (5) 『감정원도 "한남○○ 고무줄 감정...재표결서 결과 뒤바뀌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부동산일반면) 외 18건 (6) 『국토부 '한남○○'평가사·법인 징계 왜 서두르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부동산정책면)

	(7) 『'한남○○' 타당성조사 재심의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부동산정책면) (8) 『'불편한 진실' 외면한 국토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부동산 정책면) (9) 『"하지도 않은 평가방식이 잘못?…감정원의 이상한 타당성조사"』 2014년 7월 23일자 부동산정책면) (10) 『국토부, 한남○○ '억지' 징계? '1개월 vs 14개월' 2014년 7월 24일자 부동산일반면』 외 30건
신청인 주장	1. 한국감정원 원장직 선출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08~1511, 1566 · 1567) 2. 한국감정원이 모 아파트 타당성 조사단의 단장 및 총책임자를 교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12~1515, 1542 · 1543, 1554 · 1555) 3. 한국감정원의 모 아파트 타당성 조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16~1521, 1524~1533, 1540 · 1541, 1544~1553, 1560~1565) 4.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의 상, 하한선이 18%의 차이가 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22 · 1523, 1536 · 1537, 1556~1559) 5. 모 리조트 담보평가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한국 감정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34 · 1535, 1538 · 1539) 6.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직원의 집합소이며, 국토부가 일감을 몰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4서울조정1568~1575)
처 리 결 과	• 각 각하(1508~1535) (사유 : 조정신청기간 도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536~1575)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 결정건수 및 손해배상액이 적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577 · 1578	(정정 · 손배청구) 군산○○교회 對 종교와진리
조 정 대 상	『군산 ○○교회 유○○ 목사, 이단사상 반발한 성도들. 강제 출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48면~6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성도들의 이단사상 주입금지를 요구한 장로들을 강제로 출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산 ○○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9면)

2014서울조정1579~1582	(각 정정청구) 이○○ 對 경향신문[1579], 인터넷 경향신문[1580], 한국일보[1581], 인터넷 한국일보[1582]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뉴라이트 전면 복귀, 이젠 방송까지 장악』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6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5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朴정부의 편애… 뉴라이트 정부기관 수장 속속 꿰찬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박근혜 정부 "뉴라이트 챙기기" 확산』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하고, 명성황후를 민비로 표현해야한다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뉴라이트 전면 복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24일자 오피니언면) • 한국일보 : 『'뉴라이트, 정부기관 수장 속속 꿰찬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문화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31일자 문화면)

2014서울조정1583	(정정청구) 대한○○의사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시력교정술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6월 27일 방송된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4년 10월 21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4서울조정1584	(정정청구) 조○○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101세 꽃할배와 100억대 재력가 김여사의 황혼연애』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고,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585 · 1586	(정정 · 손배청구) 김○○ 외 3인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수상한 이웃, X맨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 건설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87 · 1588, 1590 · 1591, 1592, 1593	(각 정정 · 손배청구) 김○○(1587 · 1588), 이○○(1590 · 1591) 對 뉴스 TR (각 손배청구) 엄○○(1592), 유○○(1593) 對 뉴스 TR
조 정 대 상	(1) 『당신의 브래지어는 안전합니까?』 제하의 기사 및 사진 (2014년 9월 11일자 초기화면) (2) 『장난과 범죄사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2014년 9월 14일자 TR토크면) (3) 『○○생명의 '팬티를 벗어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8일자 더리뷰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김모씨가 사내 워크숍에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사내 워크숍 성추행 보도건과 관련해 신청인들의 초상이 동의없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김○○(1587 · 1588)/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 양당사간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부제소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엄○○(1592)/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간주 (이○○(1590 · 1591), 유○○(1593))

2014서울조정1589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국제타임스
조 정 대 상	『○○○○○ 요구르트 ○○○○서 죽은 벌레 나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제품에서 죽은 벌레가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94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외 1인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석촌지하차도에 또 동공 5개…서울시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에서 동공 5개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안전특별시' 라더니』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4년 10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595~1602	(각 추후 · 손배청구) 김○○ 對 뉴스1코리아(1595 · 1596), 노컷뉴스(1597 · 1598), 인터넷 베이비뉴스(1599 · 1600), 연합뉴스(1601 · 1602)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보육보조금 빼돌린 50대 부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국고보조금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지역/부산면) • 인터넷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 비리 · 횡령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국고보조금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노컷뉴스, 인터넷 베이비뉴스, 연합뉴스/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1코리아/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에 문제가 없으므로 추후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어린이집 비리 ·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 비리 ·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국고보조금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지역면)

2014서울조정1604	(정정청구) 재단법인 울산○○○○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공동묘지 묘비에 웬 체불 딱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지방자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묘지규모에 따라 고액의 영구관리비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지방자치면)

2014서울조정1605, 1616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KBS-1TV(1605), KBS미디어(1616)
조 정 대 상	취재파일 K 프로그램 『배달앱, 우버 디지털 상술의 그늘』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KBS미디어 9월 19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고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다시보기 동영상 끝부분에 해당 반론보도문 추가 게시
이 행 결 과	『배달앱 고율의 수수료 관련 공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2014서울조정1606 · 1607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아유경제
조 정 대 상	『박원순 시장님,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청인에게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박원순 시장님, 동성애 차별금지…"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08~1611	(각 정정 · 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경향신문(1608 · 1609), 인터넷 경향신문(1610 · 1611)
조 정 대 상	『안전점검 'D등급' 받은 학교 지원 받아 횡령, 시설 보수 안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8월 6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교설립자 아들이 교사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회계비리, 학생 · 교사에 폭행 · 폭언까지'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12 · 1613	(정정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우리 프로그램 외엔 안 돼"…퀵서비스 업계 '甲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퀵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영세 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종결때까지 조건부 부제소
이 행 결 과	『"퀵서비스 프로그램 업체의 횡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17, 1618	(각 정정청구) 박○○ 對 전자신문(1617), 전자신문 인터넷(1618)
조 정 대 상	『국산 전기면도기 '불씨' 살아났다』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4년 9월 30일자 종합면, 전자신문 인터넷 9월 3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모 전자회사 부도로 인해 신청인 소유 해당회사 브랜드 전기면도기가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약속)
이 행 결 과	『토종 면도기 브랜드 '○○○' 부활 안간힘』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인터넷 2014년 10월 2일 뉴스면)

2014서울조정1619 · 1620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아빠 청와대 방문', 관심없는 지상파 뉴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사과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아빠 청와대 방문, 관심없는 지상파뉴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621~1623	(각 반론청구) ○○여대 ○○대 총학생회 對 인터넷 한겨레(1621), 인터넷 경향신문(1622), 연합뉴스(1623)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겨레 : 『꼰대스러운 '○대 축제', 그들만의 '드레스코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가슴골 상의 · 망사 · 시스루 금지' 여대 축제의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핫팬츠에 가슴골 노출'…도 넘은 대학축제 주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 총학생회가 축제 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신청인 관련 사진 삭제,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중 신청인 대학축제 홍보 포스터 삭제 및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도 삭제 • 각 취하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겨레 : 『2014년 ○○여대 ○○제 규정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문화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여대 축제 규정안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24	(정정청구) ○○한의원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한의원, 무허가 약광고? 극장 등에 "약장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한의원이 무허가 광고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1625	(반론청구) 전국○○○○연합회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차기 총장, 누구 뽑으면 좋을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모대학 전국총학생회가 신청인 단체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연 징계 문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종합면)

2014서울조정1626 · 1627	(정정 · 손배청구) 유○○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교대 총장 '카드깡'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W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문화재단 이사장 재직시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대 총장 카드깡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12A면)

2014서울조정1628 · 1629	(정정 · 손배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내역서 입수…11개월 '0'원』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5일자, 9월 26일자 아침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 점검을 소홀히 하여 난방비가 0원인 가구가 33가구나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프로그램 『난방밸브 적절 관리… 난방비 부정 없어』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8일자)

2014서울조정1630~1635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한겨레(1630~1632), 인터넷 한겨레(1633~1635)
조 정 대 상	(1) 『10달러에 빼앗긴 목숨』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8면~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4일자 사회면) (2) 『터무니없이 임금 낮아도 재봉틀이 돌아가는 이유』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6일자 1면, 8면~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5일자 사회면) (3) 『'그들만의 깜작 실적'… 재봉틀앞 노동자 몫은 없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9일자 1면, 8면~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해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고, 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636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The Korea Times
조 정 대 상	『취업준비생 8할 '사진도 스펙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취업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증명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1637, 1818	(정정청구) 고○○ 외 2인(1637) 對 e머니투데이 (정정청구) 김○○ 외 2인(1818)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해고직원 월급에 장애인보조금까지 챙긴 톨게이트 사장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모 톨게이트 영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기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톨게이트영업소 부당 이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4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700~1702, 1714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한겨레(1700), 뉴스1 코리아(1701, 1714), 쿠키뉴스(1702)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1) 『○○○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들, 오늘부터 파업 시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병원이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책임져라"』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6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대병원 청소노동자들 오늘 파업 돌입』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공공부문 간접고용 되레 늘어…정부가 '나쁜 사용자' 노릇』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병원 청소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노조에게 노동법 위반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 인터넷 한겨레/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신청인 업체명 익명으로 수정표기 • 취하 (쿠키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신청인 관련 보도 내용 수정

2014서울조정1703, 1704	(각 정정청구) 권성동 對 인터넷 경향신문(1703), 인터넷 한겨레(1704)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1) 『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비즈앤라이프면) (2) 『새누리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 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창조경제의 핵심이 노동력 착취, 노예임을 누가 알았으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정근로시간을 늘리고 휴일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및 비즈앤라이프면) • 인터넷 한겨레 :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05~1709	(각 정정청구) 류지영 對 뉴스1코리아(1705), 아시아경제닷컴(1706), 아주뉴스(1707), 쿠키뉴스(1708), 의약뉴스(1709)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새누리당 의원, 건보공단 문건 담배회사 넘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복지면) • 아시아경제닷컴 : 『새누리 의원, 담배소송 국감자료 KT&G에 넘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기업면) • 아주뉴스 : 『건보공단 담배소송 자료, 국회의원이 KT&G에 넘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복지면) • 쿠키뉴스 : 『국내 담배회사들, 정치인 후원 및 불법 마케팅 지속』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뉴스면) • 의약뉴스 : 『국감자료, 담배회사에 넘겼나,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의약정책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소송 관련 국감자료를 담배회사에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710~1713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연합뉴스(1710 · 1711), 매일일보 인터넷(1712 · 1713)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도시정보화 한다던 '인천 ○○○○○' 엉망…해체론 '솔솔'』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전국면) • 매일일보 인터넷 : 『민 · 관 투자기업 '인천○○○○○' 방만 운영에 해체론까지 거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9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인천의 모 투자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연합뉴스/사유 : 기사삭제) • 취하 (매일일보 인터넷/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매일일보 인터넷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전국면)

2014서울조정1715, 1716	(각 정정청구) ○○○○○ 對 서울신문(1715), 인터넷 서울신문(1716)
조 정 대 상	『[사이버검열 후폭풍] 보수 고발→신속 수사→사이버 검열… 여론 통제 방정식 논란』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10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부의 사이버검열 원인을 제공하는 보수단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사이버검열 후폭풍] 보수 고발→신속 수사→사이버 검열… 여론 통제 방정식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11월 27일자 8면(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63 · 1764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수상한 이웃, X맨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인천 모 아파트 임시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아파트 건설사와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타) ※ 이행방법 : 신청인은 건설사 유착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 송부 및 다시보기 중단
이 행 결 과	공문송부 및 다시보기 중단

2014서울조정1765~1768	(각 정정 · 반론청구) ○○○○○○○입주자 대표회의 對 MBN(1765 · 1766), 인터넷 MBN(1767 · 1768)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전국 최대 아파트 입찰 비리잡음』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5일자) • 인터넷 MBN : 『[단독]'전국 최대' 아파트 단지 입찰 비리 '잡음'…구청 감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잠실 모 아파트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공사 및 경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약속)

2014서울조정1769~1772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제이티비시 對 경향신문(1769 · 1770), 인터넷 경향신문(1771 · 1772)
조 정 대 상	『프리랜서가 퇴직금 신청하자…방송사, 같은 팀 프리랜서 모두 해고』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9월 1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리랜서를 부당 해고했으며, 복직후에도 대기명령을 내리고 강압적인 근태관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773 · 1774	(정정 · 손배청구) 마○○ 외 4인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경찰, ○○연맹 임원 '아시안게임 선발 비리' 수사(종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2) 『[단독]경찰, ○○연맹 임원 아시안게임 선발 비리 혐의 수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선수 부모인 신청인들이 대한○○연맹 이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추후보도 약속,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종목 국가대표선발 비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75, 1776	(각 손배청구) 윤○○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1775), 위키트리(1776)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간스포츠 : 『○○FC, 송○○ 살해 협박자에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8일자 연예면) • 위키트리 : 『"송○○ 죽이고 싶다" 살해 위협에 ○○FC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9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게시판에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인터넷 일간스포츠/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위키트리/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813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이지경제
조 정 대 상	『[단독] 쉐보레 ○○○점 딜러가 '꿀꺽'』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는 딜러의 횡령사건에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818	(정정청구) 김○○ 외 2인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해고직원 월급에 장애인보조금까지 챙긴 톨게이트 사장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상임위면)
신청인 주장	모톨게이트 영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톨게이트 영업소 부당 이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4일자 정치섹션면)

2014서울조정1906~1913	(각 반론·손배청구) 최○○ 對 조선일보(1906·1907), 프리미엄 조선(1908·1909), TV조선(1910·1911), 인터넷 TV조선(1912·1913)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박원순발 서울 ○○대 '논란 2탄' 』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A6면) • 프리미엄 조선 : 『박원순發 낙하산 논란…민노당 최○○ ○○대 교수 임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뉴스인사이드면) • TV조선 : 김광일의 신통방통 프로그램 『'서울○○대 논란 2탄'』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3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3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시 단일화 대가로 박원순 시장이 신청인을 서울 모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통진당 前 간부 최○○씨 새정치聯 입당해 보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5일자 04면, 프리미엄 조선 10월 25일자 뉴스인사이드면) • TV조선 : 김광일의 신통방통 프로그램 인터뷰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31일자)

2014서울조정1914~1922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조선닷컴(1914·1915, 1916·1917), 연합뉴스(1918·1919), 인터넷 한겨레(1921·1922) (정정청구) 인터넷 한국일보(1920)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1) 『日 편향 논란 박○○ 교수 저서, 문체부 2006년 '우수도서' 지정』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면) (2) 『박○○ 교수 '제국의 위안부' 책 내용 보니... 충격 넘어 경악』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6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제국의 위안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5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일 우익대변 박○○ 교수 책 우수도서 선정 경위 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일편향 논란 박○○ 저서 우수도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정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신청인의 저서가 일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조선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반론보도문]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 교수,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위안부 피해자들 '제국의 위안부' 판매 금지 소송」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제국의 위안부' 저술 박○○ 또 다른 저서, 우수도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23	(정정청구) 동두천시청 외 1인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단독보도]택시업체 특혜 의혹 오세창 동두천 시장 검찰 조사 내막』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동두천시청 공무원들과 시장이 택시 업계로부터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두천 시장 택시업체 특혜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72	(반론청구)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對 로이슈
조 정 대 상	『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센터가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편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종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지역면)

2014서울조정1973	(정정청구) 해군본부 對 아시아경제
조 정 대 상	『황기철 총장, 통영함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1일자 종합1면)
신청인 주장	해군본부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재직시 특정업체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974~1977	(각 정정청구) 이○○ 對 동아일보(1974), 동아닷컴(1975), 네이버(1976), 다음(1977)
조 정 대 상	『국감장에서 거짓말 한 국방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10월 10일자 A4 종합면, 동아닷컴 10월 10일자 정치면, 네이버 · 다음 10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해상작전 헬기 사업과 관련해 거짓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동아일보, 동아닷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6면) • 동아닷컴 『국방부 국감 거짓 답변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정치면, 네이버 · 다음 11월 13일자)

2014서울조정2015	(정정청구) 도○○ 對 e머니위크
조 정 대 상	『"감청 영장 집행 문제 없다" 의견 대두…다음카카오 반응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모 메신저업체의 영장 거부 방침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을 이동통신사 관계자의 발언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115 · 2116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선교회 외 1인 對 CBS-TV
조 정 대 상	CBS 교계뉴스 프로그램 (2014년 10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구원파로 분류되고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CBS 교계뉴스 프로그램 『○○○○선교회 및 박○○ 목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2014서울조정2117 · 2118	(정정 · 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프렌차이즈 세탁업체의 허와 실』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프랜차이즈 세탁편의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책임을 본사에 떠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2119	(손배청구) 이○○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취약계층 독감예방 접종』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23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동의에 따른 초상권 침해 불성립)

2014서울조정3069, 6685	(각 손배청구) 박○○ 對 디스패치뉴스(3069), 인터넷 뉴스포토로(6685)
조 정 대 상	• 디스패치뉴스 : 『외면당한 미스 SEXY 백 "이렇게 핫한데 왜?"』 제하의 사진 (2014년 7월 22일자 줌면) • 인터넷 뉴스포토로 : 『미스섹시백 최고의 뒤태 미인을 찾습니다』 제하의 사진 (2014년 7월 19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특정부위를 확대 촬영, 게재하여 초상권이 침해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244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연대 외 1인 對 대한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1) 『인천 인터넷기자단체 대한민국 인물 시상식』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사회면) (2) 『대한민국 인물 시상 논란시비 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한민국 ○○대상을 주최한 신청인 단체의 심사위원들이 전과 경력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3401, 3402	(각 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MBC-TV(3401), iMBC(3402)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아들에게 전 재산 증여, 엄마가 도장 찍던 날』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10월 13일자, iMBC 10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되었고, 신청인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이 그대로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할 정도의 오보는 아니라고 주장)

2014서울조정3559 · 3560, 3581 · 3582	(각 정정 · 반론청구) 주식회사 전자신문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3559 · 3560), 미디어스(3581 · 3582)
조 정 대 상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전자신문, 추석 앞두고 노조 부지부장에 해고 통보』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7일자 초기화면) • 미디어스 : 『추석명절 하루 전 '해고' 통보 받은 이○○ 전자신문 기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추석을 앞두고 노조 부지부장을 해고 통보하는 등 표적징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이미 신청인 입장을 충분히 보도하였다고 주장) • 조정성립 (미디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네이버, 네이트, 다음의 해당 기사도 삭제
이 행 결 과	『「추석명절 하루 전 '해고' 통보 받은 이○○ 전자신문 기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스 2014년 11월 19일자 미디어뉴스면)

2014서울조정3737 · 3738, 3745~3754, 3765~3774, 4233~4242	**(각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오에스이엔(3737 · 3738), TV리포트(3745 · 3746), 인터넷 MBN(3747 · 3748), 티브이데일리(3749 · 3750), 인터뷰 365(3751 · 3752), 텐아시아(3753 · 3754), 네이버(3765~3774), 다음(4233~4242)**
조 정 대 상	• 오에스이엔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소송서 승소 "억울함 풀게 됐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네이버 · 다음 9월 29일자) • TV리포트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상대 민사소송서 승소 '명예회복'』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네이버 · 다음 9월 29일자) • 인터넷 MBN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제명처분 소송 승소 ... 표절 의혹 벗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네이버 · 다음 9월 29일자) • 티브이데일리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표절시비 민사소송 승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 인터뷰 365 : 『'야왕' 이희명 작가 표절시비 소송서 승소, 명예회복』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 텐아시아 : 『드라마 '야왕' 이희명 작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핫이슈면, 네이버 · 다음 9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고 제작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TV리포트, 인터넷 MBN, 티브이데일리, 인터뷰 365, 텐아시아/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취하 (오에스이엔/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오에스이엔 : 『최○ 작가측, "이희명 작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연예면, 네이버 · 다음 11월 7일자) • TV리포트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소송 관련 기사의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연예면, 네이버 · 다음 11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 관련 기사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연예면, 네이버 · 다음 11월 11일자) • 티브이데일리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 관련 기사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연예면) • 인터뷰 365 : 『[정정보도] '야왕' 이희명 작가 표절시비 소송서 승소에 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연예면) • 텐아시아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 관련 기사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연예면, 네이버 · 다음 11월 11일자)

2014서울조정4541, 4542	(각 정정청구) 광명시청 對 한성일보(4541), 인터넷 한성일보(4542)
조 정 대 상	『광명뉴타운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행정, 시민들 분노케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성일보 2014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성일보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청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경기도청에 광명뉴타운 사업추진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명뉴타운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 행정, 시민을 분노케하고 있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성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2면, 인터넷 한성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4543 · 4544	(정정 · 손배청구) 안○○ 對 인터넷 강남신문
조 정 대 상	『뻔뻔한 의사와 변호사...두 번 운 아버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형수술한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보도임)

2014서울조정6686~6703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6686 · 6687), 인터넷 TBS(6688 · 6689), e머니투데이(6690 · 6691), 인터넷 기독일보(6692 · 6693), 이데일리(6694 · 6695), e중앙뉴스(6696 · 6697), 세계닷컴(6698 · 6699), 인터넷 뉴스신문고(6700 · 6701), 아시아경제닷컴(6702 · 6703)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TBS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다이빙벨 유도줄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의식 잃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기독일보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맡았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다이빙 벨' 가이드라인 설치 잠수사, 잠수병으로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언딘인더스트리 및 알파잠수종합기술공사 소속 잠수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e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닷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TBS, 인터넷 기독일보, 이데일리, e중앙뉴스, 세계닷컴, 인터넷 신문고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인터넷 TBS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기독일보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7일자 사회면) 외 8건

2014서울조정6704~6706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종합건설 對 e머니투데이(6704), 네이버(6705), 네이트(6706)**
조 정 대 상	『한강조망 갖췄다던 오피스텔…수익률 3%대에 안보이네』 제하의 기사 (e머니투데이 2014년 10월 29일자 부동산면, 네이버・네이트 10월 29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행사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의 한강조망권과 분양수익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보도 본문 중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는 부분 삭제, 신청인 인터뷰 내용 삭제, 옆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과 캡션 삭제 및 보도 본문 중 수익률표 각 삭제 • 각 취하 (네이버, 네이트/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수정

2014서울조정6707~6712, 7204, 7205, 8888, 8889, 9017, 9018, 9197	(각 추후청구) 이○○ 對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6707), 아주뉴스(6708), 뉴시스(6709), 인터넷 연합뉴스TV(6710), 인터넷 경향신문(6711), 노컷뉴스(6712), 브레이크뉴스(7204), 엔와이엔뉴스(7205), 조선닷컴(8888), 동아닷컴(8889), 전남CBS-R(9017), 온라인 중앙일보(9018), 인터넷 평화방송(9197)
조 정 대 상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지지 안해 낙선돼...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이슈면) • 아주뉴스 : 『"상대후보 도와 낙선"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후보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지방면) • 뉴시스 : 『지방선거 낙선 전 시의원, 전 도의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광주전남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지지안해 낙선...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네가 지지 안해서 내가 낙선"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노컷뉴스 : 『상대후보 도왔다...맥주병으로 내리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지방면) 외 7건
신청인 주장	도의원에 낙선한 신청인이 전 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아주뉴스, 인터넷 연합뉴스TV, 노컷뉴스, 동아닷컴, 전남CBS-R,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평화방송/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경향신문, 엔와이엔뉴스, 조선닷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취하 (뉴시스/사유 : 후속보도 약속) • 취하 (브레이크뉴스/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이슈면) • 아주뉴스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지방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3일자 사회면) • 인터넷 노컷뉴스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사회면) 외 6건

2014서울조정7203	(정정청구) 황○○ 對 아시아경제
조 정 대 상	『황○○ 총장, 통영함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위사업청 ○○○○부장 재직시 통영함에 장착할 핵심부품을 규정까지 바꿔가며 특정업체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 총장, 통영함 비리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1면)

2014서울조정7206	(정정 · 손배청구) 윤○○ 對 몬스터짐
조 정 대 상	『송○○ 살해협박범, 사과문 공개…○○FC 입장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게시판에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4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및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7207	(정정청구) 임○○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1조원대 예산투입 국방사업 '형제끼리 주고받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뉴스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위사업청 전투사업팀장 재직시 사위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전술비행선사업체로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208	(정정청구) 송○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 안전성』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하철 환기구 안전 점검결과 관련하여 타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없이 발췌 · 편집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209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한국○○회도 유병언 · 구원파와 한 몸통"』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회가 유병언 전 회장 및 구원파와 관련있다고 보도하며, 회장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7210 · 7211, 8890 · 8891	(각 정정 · 반론청구) ○○○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對 NSP통신(7210 · 7211), 조세일보(8890 · 8891)
조 정 대 상	• NSP통신 : 『부산시, ○○○골프앤리조트 대주주 C&S자산관리에 대한 끝도 없는 '애정(?)'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뉴스면) • 조세일보 : 『부산시, ○○○비치CC 특혜 분양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건설회사의 사업부지나 분양대금 거래계좌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NSP통신 : 『부산시, ○○○골프앤리조트 대주주 C&S 자산관리에 대한 끝도 없는 애정(?) 어디까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1일자 뉴스면) • 조세일보 : 『○○○골프앤리조트 특혜 분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7212~7215, 8236~8241, 8325~8330	(각 반론 · 손배청구) 대한○○○장로회 ○○교회 외 1인 對 매경닷컴(7212 · 7213), 교회와신앙(7214 · 7215)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일요신문(8236~8238), 인터넷 일요신문(8239~8241), TV조선(8325~8327), 인터넷 TV조선(8328~8330)
조 정 대 상	• 매경닷컴 : 『사이비목사 부자 엽기성범죄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일반면) • 교회와신앙 : 『13세 소년이 대통령께 호소한 엽기사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이단&이슈면) • 일요신문 : 『가족끼리 이럴수가... 이보다 더한 짐승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9일자 1면, 22면~23면, 인터넷 일요신문 11월 3자 사회면) • TV조선 : (1)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충격 목사부자엽기 성범죄 논란』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30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30일자 홈페이지) (2)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K교회목사 엽기성범죄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31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혼음을 강요하고, 신도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매경닷컴, 교회와신앙/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매경닷컴 : 『"사이비 목사 부자 엽기성범죄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4일자 사회면) • 교회와신앙 : 『"13세 소년이 대통령께 호소한 엽기사건"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5일자 이단&이슈면) • 일요신문 : 『"가족끼리 어찌 이럴수가... 이보다 더한 짐승은 없다"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7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신문 12월 1일자 사회면) • TV조선 :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충격 목사 부자엽기 성범죄 논란」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11월 26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8225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더코리아포스트
조 정 대 상	『Korea? 2014 annual GDP growth may close at 3.4%』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석유공사의 부채 증가에 대한 보도에서 전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영문명을 표기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CORRECTION AND APPOLOGY』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8226~8235	(각 정정·손배청구) 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관리위원회 지회 對 이데일리(8226·8227), 인터넷 일간스포츠(8228·8229), 데일리게임(8230·8231), 인터넷 스포츠조선(8232·8233), 스포츠서울닷컴(8234·8235)
조 정 대 상	• 이데일리 : 『○○위 내부 갈등, 성희롱 폭로전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IT·과학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제 역할 못하고 내부 갈등만 ... 게임위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경제면) • 데일리게임 : 『추문에 흔들리는 ○○위 ... 알력싸움에 업계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기획면)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또 다시 도마에 오른 ○○위, 성희롱인가, 내부 갈등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엔터테인먼트/게임면) • 스포츠서울닷컴 : 『석연치 못한 성희롱 추문 ○○위, 내부 갈등의 산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관리위원회 내부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무기삼아 기관장과 사무국을 흔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8324	(정정청구) ○○○○○○○○○○○○재단 對 KBS-2TV
조 정 대 상	해피투게더 프로그램 (2014년 10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이영돈 PD를 살해하기 위해 처단조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해피투게더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종교단체 이영돈PD 살해위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9일자)

2014서울조정8331 · 8332	(정정 · 손배청구) 성남시 외 1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특급 프로그램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 주최 두고 공방』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북논란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기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602~8605	(정정 · 반론청구) 정○○ 對 한국성결신문(8602 · 8603), 인터넷 한국성결신문(8604 · 8605)
조 정 대 상	『○○○○○교회 지방회 탈퇴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8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교회가 재정집행 실사를 피할 목적으로 전남중앙지방회를 탈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서울조정8606	(정정청구) ○○○○학교 對 EBS-TV
조 정 대 상	특집다큐 교육의 길을 묻다 프로그램 (2014년 10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안학교가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해 안전설비에 문제가 있으며, 무자격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8607~8610, 8883, 8884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아시아경제(8607·8608), 아시아경제 닷컴(8609·8610) 네이버(8883), 다음(8884)
조 정 대 상	『'甲' 질 입방아 오른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5면, 아시아경제 닷컴·네이버·다음 2014년 11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8611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보
조 정 대 상	『'노조세습-사장연임' 위한 위험한 밀거래』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4면)
신청인 주장	KBS 사측과 노동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이 문제삼은 내용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

2014서울조정8612~8615	(각 정정·손배청구) 대한민국○○○○회 외 1인 對 시사IN(8612·8613), 시사IN Live(8614·8615)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1) 『노병은 죽지 않는다 '권력'에 기댈 뿐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8일자 사회면, 시사IN Live 10월 11일자 사회면) (2) 『'집회 덕후'된 전직 경찰들의 배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8일자 사회면) • 시사IN Live : 『황우여 "○○회는 종북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첨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권을 등에 업고 특혜성 이권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표가 독선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한민국○○○○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여기는 시사모면, 시사IN Live 2월 1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616~8618, 8619~8622, 8623, 8624, 8625~8627, 8628, 8629, 8630 · 8631, 8977~8982, 8984~8987, 8988~9010, 9354	(각 손배청구) 강○○ 對 YTN(8616), 인터넷 YTN(8617), 뉴스1코리아(8618), 뉴시스(9354) 김○○ 對 KBS-1TV(8619), KBS미디어(8620), MBC-TV(8621), IMBC(8622), 채널A(8977), 인터넷 채널A(8978), YTN(8979), 인터넷 YTN(8980), TV조선(8981), 인터넷 TV조선(8982), 인터넷 Y-STAR(8984), 티브이데일리(8985), MBN(8986), 인터넷 MBN(8987) 정○○(8623), 소○○(8624) 對 뉴시스 이○○ 對 뉴시스(8625), 노컷뉴스(8626), 민중의소리(8627) 김○○(8628), 이○○(8629) 對 민중의소리 윤○○ 對 MBN(8630), 인터넷 MBN(8631) 추○○ 對 뉴스엔(8988), 텐아시아(8989), 티브이데일리(8990), 인터넷 스포츠조선(8991), 스타뉴스(8992), 노컷뉴스(8993, 8994), 마이데일리(8995), KBS-1TV(8996), KBS미디어(8997), Y-STAR(8998), 인터넷 Y-STAR(8999), MBC-TV(9000), iMBC(9001), MBN(9002), 인터넷 MBN(9003, 9004), 채널A(9005), 인터넷 채널A(9006), TV조선(9007), 인터넷 TV조선(9008), YTN(9009), 인터넷 YTN(9010)
조 정 대 상	• YTN(8616, 8979) : 종합뉴스 프로그램『친형 · 전 전북부지사 소환...유병언 옥죄기 가속』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일자, 인터넷 YTN 5월 1일자 사회면) • KBS-1TV(8619) : 9시뉴스 프로그램『연기자 전양자 조사...』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KBS미디어 5월 10일자 사회면) • MBC-TV(8621) : 8시 뉴스 프로그램『'유병언 형' 오후 소환』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iMBC 5월 10일자 사회면) 외 3건 • 채널A(8977) : 뉴스특급 프로그램『세모 핵심 탤런트 전양자...』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0일자 뉴스면) 외 2건 • TV조선(8981) : 주말뉴스 프로그램『최측근 전양자, 구원파...』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인터넷 TV조선 5월 10일자 뉴스면) 외 5건 • 뉴스1코리아(8618) :『檢, 유병언 친형 ·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 소환』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11일자 법원 · 검찰면) • 노컷뉴스(8626) :『검찰 출두하는 고○○ 세모 대표』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6일자 포토면) 외 2건 • 뉴시스(8623, 8624, 8625) :『경호받으며 검찰 출석하는 고○○ 대표』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6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8627, 8628, 8629)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된 고○○ ○○ 대표』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6일자 포토면) 외 28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의 검찰소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983	(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참사] 檢,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씨 소환』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의 검찰소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도과)

2014서울조정8881 · 8882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더벨
조 정 대 상	『거래 재개된 ○○플랜 정상화 본격 '시동'』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사실과 불법적 행위로 재직하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8885	(정정청구) 김○○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인생의 진리 깨닫고 해탈하고자 했던 聖者 '석가모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종교기획면)
신청인 주장	석가모니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8886 · 8887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헬스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의료원장, 국정감사 끝나자 무자비한 직원보복"』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병원/의사면)
신청인 주장	모 병원장인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료원장, 국정감사 끝나자 무자비한 직원보복"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병원/의사면)

2014서울조정9011	(손배청구) 백○○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입점업체에게 못받은 돈 백화점에게 달라고 시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백화점 납품업체 시위현장을 보도하면서 이미 퇴사한 신청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성명 및 나이 삭제

2014서울조정9012 · 9013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문화일보(9012), 인터넷 문화일보 (9013)
조 정 대 상	『K-11소총 '총체적 부실' 알고도 量産 강행』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10월 20일자 1면 및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 소총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양산을 강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9014 · 9015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ELS 손실구간 다가온 투자자 어떻게 – 주가 추가하락 예상땐 중도환매도 방법』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A5면)
신청인 주장	특정 증권사의 상품이 주가하락에 따른 중도환매시 현시가대로 정산해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9016	(정정청구) 교육공동체 ○○ 對 EBS-TV
조 정 대 상	특집다큐 교육의 길을 묻다 프로그램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사제간 불미스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195 · 9196	(정정 · 손배청구) 한국○○○○○○○조합 對 마케팅뉴스
조 정 대 상	『그들만의 잔치…고○○ 감사로 전격 처리』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사장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9342	(손배청구) 윤○○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檢, 이번주 내 유병언 검거작전 돌입할 듯』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금수원 내부 상황을 보도하면서 동의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349	(정정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대통령 말씀 '받아쓰고' 유가족 눈물 '외면'한 지상파 뉴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MBC뉴스데스크에서 102일만에 발견된 세월호 실종자 관련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로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통령 말씀 '받아쓰고' 유가족 눈물 '외면'한 지상파 뉴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미디어뉴스면)

2014서울조정9350 · 9351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메디컬투데이
조 정 대 상	『김미희 의원 "○○의료원 사태 국회 차원의 조치 필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의료면)
신청인 주장	○○의료원장인 신청인이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고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김미희 의원 "○○의료원 사태 국회 차원의 조치 필요"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의료면)

2014서울조정9352, 9353	(각 정정청구) 조달청 對 내일신문(9352), 인터넷 내일신문(9353)
조 정 대 상	(1) 『조달청, 스포츠토토 잘못된 사업자 '고집'』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1월 5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11월 5일자 문화면) (2) 『조달청, 허위제안서 제출한 업체 비호』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1월 5일자 19면, 인터넷 내일신문 11월 5일자 문화면) (3) 『조달청 '시간 없다'에서 '재판중'으로 말바꿔』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1월 7일자 17면, 인터넷 내일신문 11월 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조달청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서 허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비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조달청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2월 24일자 19면, 인터넷 내일신문 12월 24일자 문화면)

2014서울조정9355, 9356	(각 손배청구) 배○○ 對 JTBC(9355), 인터넷 JTBC(9356)
조 정 대 상	뉴스특보 프로그램 『금수원 압수수색영장-유병언 구인장 동시집행』 제하의 보도 중 초상 (JTBC 2014년 5월 21일자, 인터넷 JTBC 5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금수원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서 금수원 정문에 서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정당한 실익이 없음)

2014서울조정9357	(손배청구) 서○○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특보 프로그램 『조만간 대국민 담화』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 인사의 검찰 소환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9410 · 9411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인터넷 맛집 실태』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블로거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허위, 과장된 내용을 포스트잇 할 것을 주문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터넷 맛집 실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A 2014년 12월 12일자 게시판)

2014서울조정9412	(손배청구) 염○○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아들은 왜 어머니 집에 불을 질렀나』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과 사업장을 동의 없이 촬영,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413~9415, 9962	(각 정정청구) 국방부 외 1인 對 문화일보(9413), 인터넷 문화일보(9414), 네이버(9415), 다음(9962)
조 정 대 상	『방산업체, 軍실무자 대신 무기제안서 써주며 비용 '뻥튀기'』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10월 21일자 5면, 인터넷 문화일보·네이버·다음 정치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의 전력업무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 내요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799~9802	(각 정정청구) 정○○ 對 시사저널(9799), 인터넷 시사저널(9800), 기자협회보(9801), 인터넷 기자협회보(9802)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 『4년 동안 난방비 한 푼도 안 낸 집도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7일자 18면, 인터넷 시사저널 10월 1일자 사회면) • 기자협회보 : 『'난방전사' 김부선 사건의 재구성』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일자 7면) • 인터넷 기자협회보 : 『'난방전사' 김부선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난방비리를 책임지고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시사저널 : 『'관리소장 관리 소홀 책임지고 사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사회면) • 기자협회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2면, 인터넷 기자협회보 1월 9일자 오피니언면)

2014서울조정10869 · 10870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주간조선(10869), 인터넷 주간조선(10870)
조 정 대 상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4년 11월 10일자 31면, 인터넷 주간조선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서울국제○○기자재전시회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5년 1월 4일자 31면, 인터넷 주간조선 1월 4일 사회면)

2014서울조정11150~11153	(각 정정 · 손배청구) 홍○○ 외 1인 對 JTBC(11150 · 11151), 인터넷 JTBC (11152 · 11153)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정체모를 무형문화재-검증과정서 잡음 끊이지 않아』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JTBC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던 신청인을 고인이 된 스승이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정체모를 무형문화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JTBC 2014년 12월 17일자, 인터넷 JTBC 12월 1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154~11169	(각 정정 · 반론청구) 홍문종 對 한국일보(11154 · 11155, 11158 · 11159), 인터넷 한국일보(11156 · 11157, 11160 · 11161), 미디어스(11162 · 11163), 뷰스앤뉴스(11164 · 11165), 프레시안(11166 · 11167), 팩트TV(11168 · 11169)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 홍문종 의원 선거캠프 동원됐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2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대 교직원 홍문종 선거캠프 동원 증언 잇달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8일자 사회면) • 미디어스 : 『홍문종 미방위원장, ○○대 합격자들 총선에 동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사회면) • 뷰스앤뉴스 : 『친박핵심 홍문종, '교직원 선거 동문'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정치면) • 프레시안 : 『"홍문종, 대학 교직원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정치면) • 팩트TV : 『홍문종, 이주노동자 착취에 이어 교직원 선거 동원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총장으로 있는 ○○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미디어스, 뷰스앤뉴스, 프레시안, 팩트TV/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미디어스 : 『"○○대 교직원 홍문종 의원 선거캠프 동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사회면) • 뷰스앤뉴스 : 『홍문종 의원 ○○대 교직원 선거캠프 동원 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정치면) • 프레시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정치면) • 팩트TV : 『홍문종 의원 교직원 선거 동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1176 · 11177	(각 정정 · 손배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서울지부 對 주간조선(11176), 인터넷주간조선(11177)
조 정 대 상	『주간조선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3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서울○○의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거둔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5년 1월 4일자 31면, 인터넷 주간조선 1월 4일자)

2014서울조정11739 · 11740	(정정 · 손배청구) 오○○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이상한 병원, 수상한 원장님』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개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환자를 순회 입원시 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1741~11746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JTBC(11741~11743), 인터넷 JTBC (11744~11746)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강남서 무면허 성형수술』 제하의 기사 (JTBC 2014년 11월 21일자, 인터넷 JTBC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 원장인 신청인이 무면허 의사를 고용해 수술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현장 프로그램 『〈무면허 성형수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JTBC 2015년 1월 6일자, 인터넷 JTBC 1월 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747, 12445	(각 정정청구) ○○○○○○○○어린이집 對 JTBC(11747), 인터넷 국민일보(12445)
조 정 대 상	• JTBC : (1) 뉴스룸 프로그램 『벌레먹인 선생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2) 뉴스아침 & 프로그램 『벌레 먹이고 가혹행위,,, 어린이집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 인터넷 국민일보 :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아이에게 벌레먹인 어린이집 교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의 교사가 현장학습 중에 아이에게 벌레를 먹이는 학대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JTBC/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2075 · 12076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데일리시사닷컴
조 정 대 상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해임안 다룰 임시총회 소집공고』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회장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터넷기자협회 임시총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0일자 사건/사고면)

2014서울조정12087	(반론청구) 재단법인 서울○○○○○○○학교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단독]檢, ○○ · ○○직업학교 국비지원금 빼돌린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비를 더 타내기 위해 실제 훈련 실시 인원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檢, ○○ · ○○직업학교 국비지원금 빼돌린 정황 포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3일자)

2014서울조정12332 · 12333, 13192~13195	(정정 · 손배청구) 곽○○ 對 KBS-1TV(12332 · 12333), 오마이뉴스(13192 · 13193), 인터넷 일간스포츠(13194 · 13195)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수도권 부대에서도 폭행확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6일자) • 오마이뉴스 : 『선임병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 동공 파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이번엔 김일병 사건, 이마 함몰-안구 파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군 복무중인 신청인이 후임병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오마이뉴스, 인터넷 일간스포츠/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KBS-1TV/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후임병 일방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26일자) • 오마이뉴스 : 『'선임병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 동공 파열'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이번엔 김일병 사건, 이마 함몰-안구 파열'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12334~12336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김○○ 1인 對 한국인권
조 정 대 상	『인륜도 저버린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사회고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파출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이 관여된 폭행사건을 편향되게 처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륜도 저버린 ○○ 경찰의 공권력 남용'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고발면)

2014서울조정12446~12451, 13883 · 13884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KBS미디어(12446 · 12447), 인터넷 MBN(12448 · 12449), 인터넷 JTBC(12450 · 12451), JTBC(13883 · 13884)
조 정 대 상	• KBS미디어 : 『'선거 앞두고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일당 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일당 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JTBC : 아침& 프로그램 『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허위 사실 유포한 7명 기소』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인터넷 JTBC 11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신청인 등 7명을 "일당"이라고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KBS미디어, 인터넷 MBN) • 조정성립 (JTBC, 인터넷 JTBC/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 프로그램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1월 21일자, 인터넷 JTBC 1월 21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2802~12805	(각 정정 · 반론청구) 장애인거주시설 ○○○ 對 동아일보(12802 · 12803), 동아닷컴 (12804 · 12805)
조 정 대 상	『'서울판 도가니'에 세금 계속 지원할 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11월 28일자 메트로면, 동아닷컴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및 보조금 횡령 관련 신청인 대응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4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2806 · 12807	(정정 · 손배청구) 강남경찰서 외 1인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경찰, '분신 경비원' 유족에 거짓 진술 요구... 가정 불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경찰서가 분신경비원 유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강남경찰서 분신 경비원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809 · 12810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조 정 대 상	『○○○○○○, 주간사 선정 증권사명 무단도용?』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증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간사 선정입찰자료에 증권사의 이름을 무단 도용해 기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2811, 1363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외 1인 對 몬스터짐(12811), 인터넷 헤럴드경제(13637)
조 정 대 상	• 몬스터짐 : 『○○ FC 석○○ 승리? 의혹만 남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격투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FC 이○○, 두차례 낭심 공격에 쓰러져...박○○ "빨리 일어나! XX야" 충격발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헤럴드 POP면) (2)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헤럴드 POP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개최한 종합격투기 시합에서 특정 선수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종합격투기 이벤트를 개최하는 ○○FC 부대표가 시합 중 급소를 맞고 쓰러진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몬스터짐/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헤럴드경제/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몬스터짐 : 『○○ FC 석○○ 승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격투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박○○ ○○FC 부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헤럴드 POP면)

2014서울조정12812 · 12813	(반론 · 손배청구) ○○○○○○○의학원 외 1인 對 인터넷 병원신문
조 정 대 상	『○○○○○○○의학원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학원 및 전임원장이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의학원에 무슨 일이' 관련 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0일자 병원면)

2014서울조정13330~13335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대한변호사협회 對 문화일보(13330~13332), 인터넷 문화일보(13333~13335)
조 정 대 상	『변협 집행부 '親민변'…징계회부 않을 수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11월 6일자 10면, 인터넷 문화일보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상임이사회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변협 집행부 '친민변'…징계회부 않을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2월 5일 사회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5일 사회면)

2014서울조정13336, 14329	(각 손배청구) 조○○ 對 뉴스1코리아(13337), e머니투데이(14329)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구원파 "檢, 금수원 진입 허용했는데 왜 약속 어기나"』 제하의 기사중 사진 (2014년 6월 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금수원 신도 검문검색 하는 경찰 '수배자는 어디에'』 제하의 사진 (2014년 6월 12일자 포토뉴스면)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중의 이익이 큰 보도로 위법성 조각에 해당)

2014서울조정13337~13340	(각 손배청구) 조○○ 對 JTBC(13337), 인터넷 JTBC(13338), 연합뉴스 TV(13339), 인터넷 연합뉴스 TV(13340)
조 정 대 상	• JTBC : 종합뉴스 프로그램 『구원파 "약속 어겼다" vs 검찰 유병언 비호 중단하라"』 제하의 보도 중 사진 (2014년 6월 8일자, 인터넷 JTBC 6월 8일자 뉴스면) • 연합뉴스 TV : 뉴스Y 프로그램 『유병언 아파트 200채 차명보유…추징보전 나서』 제하의 보도 중 사진 (2014년 6월 12일, 인터넷 연합뉴스TV 6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3341 · 13342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마니아리포트
조 정 대 상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김성민의 국내 복귀 타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야구면)
신청인 주장	모 야구선수의 에이전트인 신청인이 해당 선수의 해외학교 기숙사 비용을 체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김○○의 국내 복귀 타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3일자 야구면)

2014서울조정13343, 13344, 13345	(각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뉴스앤조이(13343), KBS미디어(13345) 박○○ 對 KBS미디어(13344)
조 정 대 상	• 뉴스앤조이 『'구원파' 박○○, 수백억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9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구원파' 목사, 수백억대 주식사기 혐의 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건강식품 업체의 실소유주이며 신도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뉴스앤조이 『'구원파' 박○○, 수백억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에 관련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교계면) • KBS미디어 『박○○ 목사 "수사와 재판 과정서 진실 밝혀질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634	(반론) 주식회사 ○○○○렌탈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렌트카, 보험들었는데..." 알고보니 호갱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손보업계면)
신청인 주장	렌터카 업체인 신청인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보도내용중 "제주도 렌터카를 비수기에는 하루 1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를 "제주도 렌터카를 비수기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

2014서울조정13635, 13636	(각 반론청구) 권○○ 對 서울신문(13635), 인터넷 서울신문(13636)
조 정 대 상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12년 악성 민원에 군위군 '몸살'』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10월 23일자 29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신청인을 악성 민원인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4327, 14328	(각 손배청구) 김○○ 對 TV조선(14327), 인터넷 TV조선(14328)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검 · 경 '금수원 진입작전' 어떻게 진행되나?』 제하의 보도 중 사진 (TV조선 2014년 6월 10일자, 인터넷 TV조선 6월 10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진압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서울조정14461~14494, 14601~14612, 14805~14834, 14839 · 14840, 15105~15120	(각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일요신문(14461 · 14462), 인터넷 TV조선(14463 · 14464, 14473 · 14474, 14817 · 14818, 14825~14828, 15115 · 15116), 인터넷 YTN(14465 · 14466, 14809~14812, 15105~15108), 뉴시스(14467 · 14468, 14813 · 14814), 연합뉴스(14469 · 14470, 14829 · 14830, 15111 · 15112), KBS미디어(14471 · 14472, 14815 · 14816, 14833 · 14834), 조선닷컴(14475 · 14476, 14607 · 14608), 스타투데이(14477 · 14478), iMBC(14479 · 14480, 15117 · 15118), 인터넷 서울신문(14481 · 14482), wow한국경제TV(14483 · 14484), 이투데이(14485 · 14486), 아주뉴스(14487 · 14488), 인터넷서울경제 (14489 · 14490), 인터넷 MBN(14491~14494, 14611 · 14612, 14831 · 14832, 15109 · 15110), 인터넷 메트로 (14601 · 14602), 인터넷 연합뉴스TV(14603~14606, 14823 · 14824), 아시아 경제닷컴(14609 · 14610), 동아닷컴(14805~14808), 뉴스1 코리아(14819 · 14820, 15119 · 15120), 인터넷 국민일보(14821 · 14822), 인터넷 SBSCNBC(14839 · 14840), SBS 콘텐츠허브(15113 · 15114)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요신문 : 『[핫스토리]유병언도피 돕는 '엄마'들 집중 추적』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TV조선 : 『금수원에서의 이틀, 아무것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28건 • 인터넷 MBN : 『[SNG] "신엄마", 유병언 소재 밝히나…형 유병일도 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4일자 사회면) 외 28건 • 조선닷컴 : 『금수원 재진입했지만 빈손… 오늘 또 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8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검 · 경, 금수원압수수색 재개 〈현장연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11건 • 아시아경제 닷컴 : 『검 · 경 금수원 수색 재개…'두 엄마' 신병확보 할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6건 • 동아닷컴 : 『땅굴탐지기-헬기 투입하고도… 김엄마-신엄마 못잡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19건

	• 인터넷 YTN : 『금수원 이틀째 압수 수색...이번에도 '헛발질'?』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31건 • 뉴시스 : 『검·경, 신도 개별 신원확인 중…신도들 한때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21건 • KBS미디어 : 『헤매는 검찰…비판 여론 고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외 19건 • 연합뉴스 : 『병언 도피 지원 '신엄마' "자수하겠다" 檢에 통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7건 • 인터넷 채널A : 『유병언 최측근 '신엄마' 자수…인천지검으로 이송』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11건 • iMBC : 『유병언 도피 총괄 혐의 '신엄마' 검찰에 자수…친형 검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3건 • 인터넷 SBS CNBC :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자수"』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9건 • SBS 콘텐츠허브 : 『유병언 여비서 구속…친형·'신엄마'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5일자 사회면) 외 1건 • 뉴스1 : 『검경, 금수원 수색 재개…신도 200여명 '신원조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전국면) 외 1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의 도피를 주도하고, 금수원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구원파 신도들에게 땅의 매입을 지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각하(14461~14492, 14821·14822) (사유 : 조정신청기간 도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MBN, 인터넷 메트로, 뉴시스, 뉴스1/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성립 (조선닷컴, 인터넷 SBS CNBC/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아시아경제 닷컴, 연합뉴스/사유 : 보도약속) • 취하 (인터넷 연합뉴스 TV/사유 : 정정보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KBS미디어, SBS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YTN/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동아닷컴, 인터넷 TV조선, 인터넷 채널A, iMBC)
이 행 결 과	• 뉴스1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메트로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외 6개 매체

2014서울조정14841~14843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서초경찰서 외 1인 對 MBN
조 정 대 상	8시 저녁뉴스 프로그램 『[단독]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무리한 병원 압수수색으로 전신마취를 한 상태의 환자수술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5101 · 15102, 15103,15104	(각 손배청구) 박○○ 對 YTN(15101), 인터넷 YTN(15102) 정○○(15103), 심○○(15104) 對 MBN
조 정 대 상	• YTN : 24시 뉴스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 개최』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YTN 6월 15일자 뉴스면) • MBN :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에 참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유감표명이 담긴 공문을 신청인에게 우편발송 • 조정불성립결정 (MBN)
이 행 결 과	유감표명

2014서울조정15121~15126	(각 정정 · 추후 · 손배청구) 정○○ 외 4인 對 MBN(15121~15123), 인터넷 MBN(15124~15126)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대학서 남학생 3명 집단 성추행』 제하의 기사 (MBN 2014년 10월 6일자, 인터넷 MBN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 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5127~15160	(각 추후 · 손배청구) 엄○○ 對 YTN(15127 · 15128), 인터넷YTN(15129 · 15130), 뉴스1코리아(15131 · 15132), 노컷뉴스(15133 · 15134), 뉴시스(15135 · 15136), 동아닷컴(15137 · 15138), 매경닷컴(15139 · 15140), 세계닷컴(15141 · 15142), 아시아투데이닷컴(15143 · 15144), 연합뉴스(15145 · 15146), 인터넷 경향신문(15147 · 15148), 인터넷 서울신문(15149 · 15150), 인터넷 한겨레(15151 · 15152), 인터넷 헤럴드경제(15153 · 15154) 인터넷 한국일보(15155 · 15156),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15157 · 15158), 인터넷 서울경제(15159 · 15160)
조 정 대 상	• YTN : 뉴스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인터넷 YTN 2월 1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냐"』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아빠랑 사귄거니?"…검사가 피해女에게 '2차 가해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7일자 사회면) • 뉴시스 : 『검찰, 의붓아버지 성폭행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귀었지"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성폭행당한 소녀, 검사 발언에 2차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사회면) • 매경닷컴 : 『성폭력 피해 여고생에 담당女검사 막말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너 아빠랑 사귀었지?" 검사가 한다는 말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사회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의붓딸을 성폭행 했다고 보도됐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YTN, 인터넷 YTN, 뉴스1코리아, 노컷뉴스, 뉴시스, 동아닷컴, 매경닷컴, 세계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인터넷 서울경제) • 취하 (아시아투데이닷컴/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5345~15347	(손배청구) 대한○○교 장로회 ○○교회 외 1인 對 뉴스미션
조 정 대 상	『사이비목사 부자, 집단혼음 등 엽기성범죄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 담임목사가 가족 및 신도들과 마약을 투여하고 혼음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518 · 15519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천여명 추가공개』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다시보기 중 신청인 건물 부분 삭제 편집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서울 서초구 건물주 "지방세 체납과 관련 없어"』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1일자)

2014서울조정15969 · 15970	(정정 · 반론청구) 최○○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기자의 눈] 검찰 '사채왕 뒷돈' 의혹 판사 내사만 6개월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3일자 사회면) (2) 『檢 '사채왕 돈' 받은 판사 관련 제보 신빙성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현직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15971, 15972	(각 정정청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對 한국일보(15971), 인터넷 한국일보(15972)
조 정 대 상	『경찰 성급한 보도자료 탓에 누명 쓴 유명 심마니』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12월 17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국산 농약 산양삼 밀반입 사건관련 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경찰 성급한 보도자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월 23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2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5973~15976, 15979 · 15980, 16829~16832, 17724~17729	(각 정정 · 손배청구) 대한예수교○○회 ○○교회 외 1인 對 뉴스앤조이(15973 · 15974), 프레시안(15975 · 15976), 당당뉴스(15979 · 15980), 한국기독일보(16829 · 16830), kidok.com(16831 · 16832), 오마이뉴스(17724 · 17725), 시포커스(17726 · 17727), 뉴스천지(17728 · 17729)
조 정 대 상	• 뉴스앤조이 : 『○○교회 前 재정장로 의문의 자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1일자 교계면) • 프레시안 : 『○○교회 전 재정장로 의문의 자살…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1일자 뉴스면) 외 3건 • 당당뉴스 : 『○○교회 전 재정장로 의문의 자살...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2일자 교계면) 외 6건 • 한국기독일보 : 『○○교회 수석장로 의문의 자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교계면) 외 4건 • kidok.com : 『○○교회 전 재정장로...투신자살에 교계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교계면) 외 1건 • 오마이뉴스 : 『장로 자살사망... 비자금 논란 휩싸인 ○○교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사회면) • 시포커스 : 『사랑의, ○○교회 갱신위, 일간지에 내부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9일자 교계면) 외 1건 • 뉴스천지 : 『○○교회 김○○ 목사에게 보상 받아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8일자 종교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스천지/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스앤조이, kidok.com, 오마이뉴스) • 각 취하 (프레시안, 당당뉴스, 한국기독일보, 시포커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981~16008	(각 정정 · 손배청구) 안○○ 對 KBS-1TV(15981 · 15982), YTN(15983 · 15984), 연합뉴스TV(15985 · 15986), 채널A(15987 · 15988), MBC-TV(15989 · 15990), iMBC(15991 · 15992), SBS콘텐츠허브(15993 · 15994), 에너지경제(15995 · 15996), 세계닷컴(15997 · 15998), 뉴시스(15999 · 16000), 동아일보(16001 · 16002), 동아닷컴(16003 · 16004), 조선일보(16005 · 16006), 프리미엄조선 (16007 · 16008)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국산 농약 산양삼' 속여 팔던 심마니 일당 적발』 제하의 보도 (2014년 월 일자) • YTN : 뉴스인 프로그램 『중국산 산양삼 팔다 걸린 '유명 심마니'』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연합뉴스TV : 뉴스워치 프로그램 『'국내 최고' 심마니, 중국산 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방송 탄 유명 심마니, 농약 범벅 산양삼을…』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MBC-TV : 이브닝뉴스 프로그램『유명 심마니, 농약범벅 중국산 산양삼 국산으로 속여 팔아』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SBS 콘텐츠허브 :『살충제 농약 든 중국산 삼 국산으로 속인 심마니들』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사회면) • 에너지경제 :『19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농약 든 중국산 삼이 국산으로 둔갑'』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산업면) • 세계닷컴 :『'농약 범벅' 중국산 산양삼 국산 둔갑 유통』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산업면) • 뉴시스 :『'농약 찌든 중국산 산양삼 국산 둔갑'… 경찰, 유명 심마니 등 일당 검거』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사회면) • 동아일보 :『계시 받은 심마니라더니… 중국산 속여 팔아』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14면, 동아닷컴 11월 20일자 사회면) • 조선일보 :『그 심마니가 수상해』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A12면, 프리미엄조선 11월 20일자 사건과 스토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국산 농약 산양삼 밀반입 사건관련 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4서울조정16381	(정정청구) 주식회사 ○○○○여행사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가짜 여행상품 신혼부부 울려』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가짜 여행상품 판매 사기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가짜 여행상품 신혼부부 울려〉 방송 관련 알림』제하의 기사 (iMBC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382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외 3인 對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1)『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시급』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뉴스면) (2)『○○마을 사업추진 타당성없다』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뉴스면) (3)『○○무한돌봄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제기』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0일자 뉴스면) (4)『안성, 학생 50여명의 학교에 26억원 지원논란』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금을 부담해야 하고,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6905, 16922	(각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치의신보(16905), 데일리덴탈(16922)
조 정 대 상	『환자 몰아주는 의료브로커 활개』 제하의 기사 (치의신보 2014년 11월 17일자 3면, 데일리덴탈 11월 11일자 전체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 치과가 인터넷 카페와 연결되어 양약교정 환자를 유치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 이행방법 : 향후 신청인 관련 기사 작성 금지 약속

2014서울조정17003~17006	(각 정정청구) 재단법인 ○○○○연구원 對 경향신문(17003), 인터넷 경향신문(17004), 서울신문(17005), 인터넷 서울신문(17006)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동아시아연구원 "무급 인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28일자 사회면) • 서울신문 : 『무급 인턴은 또 다른 형태의 임금 착취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9일자 23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29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원이 국내외 교육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무급인턴제에 대해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동아시아연구원 '무급 인턴'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종합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21일자 사회면) • 서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월 2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489 · 17490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美해병 덕에 생긴 국제시장, "정○○ 관람금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설립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 중 신청인에게 비판적인 제목과 내용 삭제
이 행 결 과	『[○○위원회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산삭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7730	(반론청구) 하태경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보수강경파 하태경, 야당 486에게 "종북혁명세력 비호안돼" 서한 보내』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9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학생운동권 출신인 신청인의 정치적 전향을 '변절'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부분 기사수정

2014서울조정17731~17736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모임 외 2인 對 레디앙(17731~17733), 오마이뉴스(17734~17736)
조 정 대 상	• 오마이뉴스 : 『진보정당 남자들 '패권' 심각...자기들만 모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정치면) • 레디앙 : 『성소수자와 진보정치 10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5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여성주의 극우파 의견그룹'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오마이뉴스/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레디앙)
이 행 결 과	『"반여성주의적 활동을 하는 그룹"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4년 2월 2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7737, 17738, 17742, 17743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이데일리(17737), 전자신문 인터넷(17738), 이버즈(17742), 인터넷 파이낸셜뉴스(17743)
조 정 대 상	• 이데일리 : 『기능성 베개, 라○○○-가○○ 원수된 사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기업면) • 전자신문 인터넷 : 『홈쇼핑 대박상품 '가○○ 베개'…의심스러운 인증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9일자 컨슈머면) • 이버즈 : 『[황의 홈쇼핑 들추기] 홈쇼핑 대박상품 "가○○ 베개" … 부실 인증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정보가전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 가○○ 견연베개 형사고소 이어 공정위에도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비인증 제품을 인증 받은 것으로 과장광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이버즈/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이데일리, 전자신문 인터넷/사유 :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게재) • 취하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2014년 12월 11일자 ○○○○-가○○ 관련 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중소기업면) • 전자신문 인터넷 : 『[반론보도] 티○○○, '가○○ 베개' 부실 인증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생활가전면) • 이버즈 : 『[반론보도] 티○○○, '가○○ 베개' 부실 인증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정보가전면)

2014서울조정17744	(반론청구) 대한○○교 장로회 ○○○○교회 對 기독교시민연대뉴스
조 정 대 상	『통합측 ○○노회 사무실서 신총협 회장 양○○ 목사가 난동부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7일자 로컬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서 미비)

2014서울조정17745~17750	(각 정정·반론청구)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對 JTBC(17745·17746), 인터넷 JTBC(17747·17748), e머니투데이(17749·17750)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지속된 왕따에 주먹 날린 중학생…처벌은 '쌍방 징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5일자, 인터넷 JTBC 11월 25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왕따 피해 중학생, 가해 학생과 '쌍방 징계'…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교내 폭력사건의 피해 학생을 형평에 어긋나게 징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의 댓글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인터넷 JTBC)
이 행 결 과	• 인터넷 JTBC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5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왕따 피해 중학생, 가해 학생과 '쌍방징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지역중재부

부 산 · 대 구 · 광 주 · 대 전 · 경 기 · 강 원
충 북 · 전 북 · 경 남 · 제 주

지역중재부

〈 부 산 〉

2014부산조정1, 2	(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국제신문[1], 인터넷 국제신문[2]
조 정 대 상	『합천군 행정비방 유인물 유포자 검거』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3년 9월 16일자 12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군 행정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합천 행정 비판 유인물 유포자 무혐의 처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1월 28일자 12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28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3	(정정청구) 이○○ 對 뉴시스 울산
조 정 대 상	『울주군 신청사 건립예정지 일원 '토지투기장화'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0일자 전국 울산면)
신청인 주장	○○시 전직 고위공무원인 신청인이 마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전후로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울주군 신청사 건립예정지 일원 '토지투기장화'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4일자 전국면)

2014부산조정4, 5, 16, 17	(각 반론청구) 한○○ 對 부산일보[4], 인터넷 부산일보[5] (각 정정청구) 한○○ 對 국제신문[16], 인터넷 국제신문[17]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학생 폭행 중징계 요구 받은 고교 교감, 이번엔 성추행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8면, 인터넷 부산일보 1월 9일자 사회면) • 국제신문 : 『학생 폭행 물의 교감 시교육청 해임 요구 재단은 가벼운 징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8일자 5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고등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이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한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부산일보 : 『학생 폭행 중징계 요구 받은 고교 교감, 이번엔 성추행 의혹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 12면, 인터넷 부산일보 4월 23일 사회면) • 국제신문 : 『'학생 폭행 물의 교감, 시교육청 해임 요구 재단은 가벼운 징계'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8면, 인터넷 국제신문 4월 30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6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롯데리아 만우절 이벤트 영상 잇따라... 옵티머스 프라임 가면, 예비군 등 폭소만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게재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부산조정7	(정정청구) ○○○씨 대종중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씨 선산 무단벌채 원상회복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4일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부산시가 ○○정씨 ○○회가 관리하는 화지산에서 ○○회 동의 없이 무단 벌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약속,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부산조정8~15	(각 추후청구) 노○○ 외 1인 對 인터넷 부산일보[8], 인터넷 울산매일[9], 인터넷 울산신문[10], 뉴시스 울산[11], 뉴스1울산[12], 인터넷 울산방송[13], 인터넷 울산MBC-TV[14], KBS-1TV[15]
조 정 대 상	• 인터넷 부산일보 : 『울산 ○○○공원 수익사업 업체 선정 '비리 백화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8면) • 인터넷 울산매일 : 『개원 전 ○○공원 수익사업 싸고 비리 1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5면) • 인터넷 울산신문 : 『○○공원 위탁업체 前 대표 · 주주 비리 덜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사회면) • 뉴시스 울산 : 『울산○○공원 위탁업체 비리 등 12명 입건』 (2013년 7월 31일자), 『르포 영화 뽕 '씨받이' 찍던 울산 보삼마을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사회면) • 뉴스1울산 : 『○○공원 위탁, 금품수수 위장전입 총체적비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종합장사시설인 울산○○공원의 운영권 위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위장전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부산일보 : 『울산 하늘공원 금품수수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2일 사회면) • 인터넷 울산매일 : 『검찰, 하늘공원 수익사업 둘러싼 비리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 사회면) • 인터넷 울산신문 : 『[울산하늘공원 위탁업체 전대표 주주비리 덜미]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 사회면) • 뉴시스 울산 : 『'울산하늘공원 위탁업체 비리 등 12명 입건'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 사회면) • 뉴스1울산 : 『울산 하늘공원 위탁비리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 전국면) 외 3건

2014부산조정18~22, 23 · 24	(각 반론청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1인 對 주간기장신문(18, 20), 인터넷 기장신문(19, 21, 22) (반론 · 손배청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1인 對 인터넷 기장신문(23 · 24)
조 정 대 상	• 주간기장신문 : (1) 『새누리당 기장군수 공천신청자의 기장군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일자 3면) (2) 『오규석 군수 · 김쌍우 군의원, 한전과 별도 합의서 존재 공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6일자 1면) • 인터넷 기장신문 : (1) 『홍성률, "기장군 765kv, 인적물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6일자 정치면) (2) 『기장군 오규석 군수 · 김쌍우 군의원, 한전과 별도의 합의서 존재 공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6일자 정치면) (3) 『홍성률 후보, "이면합의 사실이면 오규석 기장군수 자격 미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일자 정치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배신감과 갈등을 키우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전과 별도 합의서 존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4년 5월 27일자 2면, 인터넷 기장신문 5월 27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25	(손배청구) (주)○○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시선360 프로그램 『늘어나는 부산벽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시공한 벽화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26	(손배청구) 정○○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시선360 프로그램 『늘어나는 부산벽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초상 및 실명 등을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생생투데이 사람과세상 프로그램 『벽화 그리는 사람들』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6일자)

2014부산조정27	(반론청구) (사)○○○○선교회 외 1인 對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조 정 대 상	『이단 구원파 "○○○ 월드캠프"가 또 몰려온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단 구원파 '○○○ 월드캠프'가 또 몰려온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8일자 교계면)

2014부산조정28~35	(각 정정 · 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국제신문(28 · 29, 32 · 33) 인터넷 국제신문(30 · 31, 34 · 35)
조 정 대 상	(1) 『'국제반' 특목중 운영 물의... 시교육청, ○○학원 특별감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5월 3일자 종합 5면, 인터넷 국제신문 5월 3일자 사회면) (2) 『○○학원 이사장 감사 · 임원 승인 취소 시교육청, 브니엘예고 특별감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6월 19일자 사회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6월 19일자 사회면) (3) 『시교육청에 맞선 ○○○○고...학생만 피해 중간고사 대체 시정명령 거부』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7월 3일자 사회 8면, 인터넷 국제신문 7월 3일자 사회면) (4) 『○○○○고 사태 장기화 조심...예술반 학부모, 부산예고로 전학 요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7월 11일자 사회 6면, 인터넷 국제신문 7월 11일자 사회면) (5) 『[기자수첩] '못된 사학' 제재 못하는 사학법,,,학생들만 '볼모'』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7월 14일자 사회 8면, 인터넷 국제신문 7월 14일자 사회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가 국제반, 특목중 운영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36~39	(추후 · 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울산조은뉴스(36 · 37) (정정 · 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울산조은뉴스(38 · 39)
조 정 대 상	(1) 『K일간지 근로기준법위반에 이어 이번엔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2) 『울산 모일간지 대표 사문서 위 · 변조 및 부정행사 등으로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최저 임금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신청인이 Y씨를 부당해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부산조정40 · 41	(정정 · 손배청구) ○○유치원 연합회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유치원聯, 6 · 4선거서 특정 교육감후보 지지 문자발송』 제하의 기사 외 2건 (2014년 7월 21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연합회 회장인 신청인이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 연합회가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42	(정정청구) (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똥 수거하는데도 비리?"... '상상초월'』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지역면) (2) 『분뇨수거업체 권리금이 10억?』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분뇨수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분뇨 처리량 등을 부풀려 부당요금을 받아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부산조정43	(정정청구) 재단법인 ○○○○○○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공원묘원 비석에 웬 '노란 딱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경남울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묘지규모에 따라 고액의 영구관리비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44~49, 54~58	(각 추후 · 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부산일보(44 · 45, 58 · 59), 뉴시스부산(46 · 47, 54 · 55), iKNN(48 · 49, 56 · 57)
조 정 대 상	• 인터넷 부산일보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센터 대표 부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 뉴시스부산 : 『어린이집 · 유치원 보조금 빼돌린 50대 부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 iKNN : 『보조금 빼돌린 아동센터 대표 등 검거』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부산일보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센터 대표 부부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5일자 사회면) • 뉴시스부산 : 『'어린이집 · 유치원 보조금 빼돌린 50대 부부 입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자 사회면) • iKNN : 『[보조금 빼돌린 아동센터 대표 등 검거]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2일자 뉴스면)

2014부산조정50~53	(각 정정 · 손배청구) (주)○○ 對 국제신문(50 · 51), 인터넷 국제신문(52 · 53)
조 정 대 상	『감천항 시설 무단사용 업체, 고발당해도 '배짱영업'』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10월 3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제신문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바닷모래 세척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감천항 접안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76 · 77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경상일보
조 정 대 상	『리뷰 : ○○ 의병 활약상 담은, '○○○○○○○○○○○'』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2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한 뮤지컬 작품이 준비기간이 짧아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리뷰 : 울산 ○○ 활약상 담은,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문화면)

2014부산조정78 · 79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자원봉사로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사 일을 했던 신청인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에서 일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4부산조정97 · 98	(정정 · 손배청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對 KNN
조 정 대 상	7시 뉴스아이 프로그램 『주택조합 거짓 홍보』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 홍보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후속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7시 뉴스아이 프로그램 『부동산 활황 타고 지역주택조합 급증』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2일자 뉴스면)

〈 대 구 〉

2014대구조정1~4	(각 정정 · 손배청구) 주○○ 對 매일신문(1 · 2), 인터넷 매일신문(3 · 4)
조 정 대 상	『공사업자 · 직원 부모가 원전 ○○위원』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인터넷 매일신문 2013년 1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원전 ○○위원이었던 신청인이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무자격자로 판명돼 ○○위원 자격이 취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대구조정5 · 6	(정정 · 손배청구) 권○○ 對 대구KBS-1TV
조 정 대 상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대구 지역 요양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를 뻥튀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대구 지역 요양원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2일자)

2014대구조정7	(손배청구) 서○○ 對 대구KBS-1TV
조 정 대 상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대구 지역 요양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요양원에 있는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대구조정12	(정정청구) 재단법인 경북○○○○○ 對 대구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빌려주고 날린돈 20억』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6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및 생활뉴스대구경북 프로극램 『빌려주고 날린돈 20억』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기업에 빌려주고 날린 돈이 20억이나 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구조정8~11	(각 정정 · 손배청구) ○○일보 노동조합 對 매일신문(8 · 9), 인터넷 매일신문(10 · 11)
조 정 대 상	『○○일보 노조 설립』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4년 1월 29일 7면, 인터넷 매일신문 1월 29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노조원 중 특정인이 "회사의 대주주가 지위를 악용해 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일보 노조 설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4년 2월 21일자 6면, 인터넷 매일신문 2월 21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3	(정정청구 ○○봉사단 對 인터넷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대구 상인○○○○○○ 입주민 갈등』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수천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구 ○○○○○○○○ 입주민 갈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0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4	(정정청구) 최○○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운영자가 구타, 성폭력... 포항 장애인복지시설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장애인복지시설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여성장애인과 같은 숙소에 기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15	(정정청구) 영덕경찰서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변사자 몰리는 장례식장』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3일자 대구/경북 10면)
신청인 주장	경찰이 영덕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변사사고 사망자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몰아줘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변사자 특정 장례식장 배정 의혹 경찰과 업자 간 유착, 관련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일자 11면)

2014대구조정16	(정정청구) 조○○ 對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법원/경찰면)
신청인 주장	김○○ 선수의 주치의인 신청인이 의료시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제목 수정)
이 행 결 과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 책임 일부 패소』로 제목 수정 (2014년 4월 11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7	(손배청구) 전○○ 對 TBC-TV
조 정 대 상	2014 반려동물보고서 프로그램 (2014년 4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18	(정정청구) 고○○ 외 1인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대 임시 이사 체제 학교 정상화의 초석이 되어야』 제하의 사설 (2014년 3월 17일자 27면)
신청인 주장	○○대가 구 재단 측 이사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사회가 거듭 무산되며 선출된 총장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19 · 20, 21 · 22	(각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경북일보(19 · 20), 인터넷 경북일보(21 · 22)
조 정 대 상	(1) 『학교폭력위 불공정 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4년 4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북일보 4월 7일자 사회면) (2) 『대구 ○○초교 학교폭력자치위 '편파 심의' 확인』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4년 4월 10일 속보면, 인터넷 경북일보 4월 10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학교폭력위 불공정 시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경북일보 2014년 6월 20일자 4면, 인터넷 경북일보 6월 20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23~30, 32 · 33, 34, 39 · 40, 43, 48	(각 정정 · 손배청구) 윤○○ 對 올인코리아[23 · 24], 인터넷 경북도민일보[32 · 33], 뉴시스 대구경북[39 · 40] (각 정정청구) 윤○○ 對 대구신문[25], 인터넷 대구신문[26], 영남일보[27], 인터넷 영남일보[28], 경북일보[29], 인터넷 경북일보[30], 국제저널[34], 인터넷 매일신문[43], 인터넷 대구일보[48]
조 정 대 상	• 올인코리아 : 『정의구현사제단 이어 법학 교수도 [망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대구신문 : 『조○○, 윤 교수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구신문 : 『"탈북자 사형 주장"…○○대 교수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영남일보 : 『대구권 교수 왜 이러나.... 잇단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영남일보 11월 28일자 사회면) • 경북일보 : 『○○대 ○○○ 교수 주장 파문 기사 삭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북일보 11월 28일자 사회면) 외 21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매일신문, 인터넷 대구일보, 올인코리아/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대구신문, 인터넷 대구신문,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뉴시스 대구경북, 국제저널/사유 : 정정보도, 기사삭제) • 취하 (경북일보, 인터넷 경북일보/사유: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 『"대한민국 전체 탈북자 사형시켜야" 발언 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 오피니언면) • 대구신문 : 『윤○○ ○○대 교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 사회면, 인터넷 대구신문 5월 21일자 사회면) • 영남일보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 정치면, 인터넷 영남일보 5월 26일자 정치면) • 뉴시스 대구경북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0일 지역면) • 국제저널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 사회면)

2014대구조정31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직원 90%가 신도라는 '구원파'는 어떤 종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기독교 복음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35	(정정청구) ○○○○대학교 對 타임뉴스
조 정 대 상	(1)『대구○○대 부실 국면전환 행각...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교육면) (2)『대구○○대, 학생들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대구○○대의 ○○특화 캠퍼스설립이 실현가능성 없는 사기행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36, 38	(각 정정청구) 변○○ 對 타임뉴스[36], UGN 경북뉴스[38]
조 정 대 상	• 타임뉴스 : (1)『대구○○대 친구에게 억대 리베이트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2)『대구○○대 총장 10% 리베이트는 관행 '말썽'』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사회면) (3)『대구○○대 '변 총장 물러나라!' 여론급증』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사회면) • UGN 경북뉴스 : (1)『끝없는 사학비리… 공사리베이트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1일자 사회면) (2)『망자가 잡은 산 자의 발목 대구○○대 총장 거액리베이트 수수행적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사회면) (3)『총장 자격논란' 대구○○대 총장 각종 리베이트 수수행적 "말썽"』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구○○대 총장이 각종공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타임뉴스 : 조정성립 (타임뉴스/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UGN 경북뉴스)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41 · 42	(정정 · 손배청구)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 對 뉴시스 대구경북
조 정 대 상	(1) 『축사와 울타리를 같이 하고 있는 ○○○○○○병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2) 『분리수거가 전무한 ○○○○○○병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3) 『○○○○○○병원 위생상태 불결』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4) 『○○○○○○병원 위생시설관리 엉망 환자들 겹고통』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5) 『○○○○○○병원 의료사고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위생, 시설관리가 엉망이여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44~47	(각 정정청구) 신○○ 對 인터넷 대구일보(44), 인터넷 경안일보(45), 씨앤비뉴스(46), 뉴시스 대구경북(47)
조 정 대 상	• 인터넷 대구일보 : 『○○대 임시이사회 재구성 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안일보 : 『○○대 "임시이사 재구성 · 확대 해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씨앤비뉴스 : 『○○대, 임시이사회 재구성 요청』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뉴시스 대구경북 : 『○○대, 교육부에 임시이사 재구성 등 요청』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교비횡령, 부정입학 등으로 비리를 저질러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겼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경안일보, 씨앤비뉴스, 뉴시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대구일보/사유 : 피신청인 사과)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안일보 : 『「○○대 "임시이사 재구성 · 확대 해달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5일 사회면) • 씨앤비뉴스 : 『「○○대, 임시이사회 재구성 요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 사회면) • 뉴시스 : 불이행

2014대구조정49~52	(각 정정 · 손배청구) (주)○○○○○○ 對 경안일보[49 · 50], 인터넷 경안일보[51 · 52]
조 정 대 상	『성주지역 대규모 세금포탈 '의혹'』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4년 6월 16일자 1면, 인터넷 경안일보 6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일삼아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구조정53	(정정청구) 지○○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대구조폭 의리 · 배신으로 얽힌 두 모습』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해 보도하여 관련자들로부터 다시 보복의 위험을 받고 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대구조정54, 55	(각 정정청구) 하○○ 對 영남일보[54], 인터넷 영남일보[55]
조 정 대 상	『경로당 운영비 문제로 말다툼... 이웃 살해』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4년 7월 24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7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인 신청인이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로당 운영비 문제로 말다툼... 이웃 살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4년 8월 20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8월 20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56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중부신문
조 정 대 상	『철탑, 댐 건설 필요없고 원전 대안으로 '뜬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아닌 자가 마치 신청인 회사 대표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57 · 58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대구경북
조 정 대 상	『사기 피소 ○○고 출신 '좌완투수' 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에이전트사 대표인 신청인이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야구선수를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구 ○○고 출신 김○○ 투수 '무혐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전국/대구경북면)

2014대구조정59~62	(각 정정 · 반론청구) ○○○○○○ 건립반대 대책위원회 對 매일신문(59 · 60), 인터넷 매일신문(61 · 62)
조 정 대 상	『○○○○○○ 건립 지역 예술계 찬반 논쟁』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4년 8월 23일자 15면, 인터넷 매일신문 8월 2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반일감정을 부추기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주변부 문제를 거론하며 이우환 미술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63	(손배청구) 오○○ 외 1인 對 뉴시스 대구경북
조 정 대 상	『대구 치맥 페스티벌 "장마전선에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7월 17일자 전국/대구경북면)
신청인 주장	치맥 페스티벌을 보도하면서, 행사를 구경하러 간 신청인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8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 중 사진수정

2014대구조정79, 82	(각 정정청구)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對 대구광역일보(79), 뉴시스 대구경북(82)
조 정 대 상	• 대구광역일보 : 『○○댐 건설 반대 주민 10명 '유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뉴시스 대구경북 : 『○○댐 건설 반대 주민 10명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대구경북면)
신청인 주장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가 영양군청에 인분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대구광역일보 : 『'○○댐 건설 반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사회면) • 뉴시스 대구경북 : 『○○댐 건설 반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전국/대구경북면)

2014대구조정83 · 84	(반론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포항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퇴사하면 자녀입사 논란』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중인 "자녀대체입사제도"가 대기업의 일자리 대물림제도와 유사하고, 노조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 PR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경주, '자녀 대체입사제도' 시행』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2014대구조정93	(정정청구) 학교법인 ○○○○대학교 외 1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텍 김○○ 총장 연임 결정 유보 '유감'』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오피니언 기자수첩 섹션)
신청인 주장	○○○○대학교 이사장이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현 총장의 연임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텍 김○○ 총장 연임결정 유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오피니언/기자수첩면)

2014대구조정98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여중 정○○양 꿈, 삼성 응원 받았다』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장학재단의 꿈 장학생으로 선발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동의 없이 보도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자진취하)

2014대구조정101, 102	(각 정정청구) 김○○ 외 2인 對 뉴시스 대구경북[101], 대구광역일보[102]
조 정 대 상	• 뉴시스 대구경북 : 『공무원들이 빼먹는 한국시리즈 '야구표'』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지역면) • 대구광역일보 : 『배광식 북구청장, 김○○ 경제부시장 "야구표 구해 와"』 (2014년 11월 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한국시리즈 야구경기와 관련, 대구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입장권을 인맥을 동원해 공짜로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시스 대구경북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대구광역일보/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뉴시스 대구경북 :『한국시리즈 대구경기, 공무원 티켓 선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5일자 지역면) • 대구광역일보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13	(정정청구) 울진군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7억 들인 다리 이용자 둘뿐 군청 간부 · 군수 선거 운동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울진군이 군수 선거운동을 한 주민과 군청 핵심 간부, 두 사람을 위해 17억을 들여 밭농사용 다리를 건설해주었다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광 주 〉

2014광주조정1~4	(각 정정청구) ○○○○조합 對 뉴스웨이[1], 통합뉴스[2], CJ헬로비전 호남방송[3,4]
조 정 대 상	• 뉴스웨이 : 『국민 건강 '위협'…스티커 장사 대한 ○○조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사회면) • 통합뉴스 : 『생산자 울리는 ○○○○조합 소금검사 제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8일자 사회면) • CJ헬로비전 호남방송 : 지역뉴스 프로그램 『'천일염' 검사 수수료만 챙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소금의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웨이, 통합뉴스/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CJ헬로비전 호남방송/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뉴스웨이 : 『[반론보도문]'국민 건강 위협…스티커장사 ○○○○조합'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회일반면) • 통합뉴스 : 『'생산자 울리는 ○○○○조합 소금검사 제도'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사회일반면)

2014광주조정5	(정정청구) ○○대학교 對 광주KBS-1TV
조 정 대 상	• 뉴스9 프로그램 『교육부 대학 평가안 개정, 지역대학 고사위기』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평가 결과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대학교 대학평가 결과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2014광주조정6, 7, 14~17	(정정청구) 박○○ 對 호남매일[6], 인터넷 호남매일[7]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호남매일[14 · 15], 인터넷 호남매일[16 · 17]
조 정 대 상	『목포지역 신협, 내부갈등 파문 확산조짐』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2014년 2월 4일자 사회면, 인터넷 호남매일 2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 조합장인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14 · 15, 16 · 17](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6, 7](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호남매일 : 『'목포지역 신협, 내부갈등 파문....'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11면, 인터넷 호남매일 4월 18일자 사회면)

2014광주조정8, 9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외 4인 對 나주투데이[8], 인터넷 나주투데이[9]
조 정 대 상	• 나주투데이 : 『지금 나주는 석기시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3면) • 인터넷 나주투데이 : 『지금 나주는 석기시대? 환경 미화원 설날 전후 상가 돌며 떡값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6일자 사회/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나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설날 상가를 돌며 떡값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나주투데이 : 『'지금 나주는 석기시대? 환경 미화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3면, 인터넷 나주투데이 3월 10일자 사회/경제면)

2014광주조정10~13	(각 정정 · 손배청구) 염○○ 對 빛가람타임스[10 · 11], 인터넷 빛가람타임스[12 · 13]
조 정 대 상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 비상식적 준공』 제하의 기사 (빛가람타임스 2014년 3월 6일자 1면, 인터넷 빛가람타임스 3월 6일자 시민의 소리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나주호 둑높이기 사업과 관련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시공업체에서 제공한 기념품을 준공 전 입막음용으로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자진취하)

2014광주조정18	(정정청구) 조○○ 對 KDA뉴스
조 정 대 상	(1) 『[속보1]새누리 ○○시당 ○○○장 부정과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정치면) (2) 『[속보2]새누리 ○○시당 200여 당직자와당원들의 서명운동 전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사건면) (3) 『[기자수첩]언론압력 '막가파식의 행태'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1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 ○○시당 ○○○장인 신청인이 18대 대선 유세 차량을 독단적으로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19, 20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무등일보[19], 인터넷 무등일보[20]
조 정 대 상	『농협마트 주차장 부지 고가매입 논란』 제하의 기사 (무등일보 2014년 4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무등일보 4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이 주차장 부지를 고가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농협마트 주차장 부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무등일보 2014년 4월 28일자 7면, 인터넷 무등일보 4월 28일자 사회면)

2014광주조정21, 30~33	(정정청구) 유○○ 對 우리군민신문[21] (각 정정 · 손배청구) 유○○ 對 우리군민신문[30 · 31], 인터넷 우리군민신문[32 · 33]
조 정 대 상	• 우리군민신문 : (1) 『유○○ 군수 예비후보 시작부터 '불법선거'』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3면) (2) 『손○○ 2006년 선거 당시, 유○○ 후보에 거액 건낸 사실 증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3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5월 26일자 사회행정면)
신청인 주장	1. 군수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 군수 후보인 신청인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민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취하[21,31,33] (사유 : 자진취하) • 조정성립[30,32] (내용: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손○○ 2006년 선거 당시, 유두석 후보에게 거액 건넨 사실 증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4년 6월 16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6월 14일자 종합면)

2014광주조정22 · 23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예향진도신문
조 정 대 상	『진도 문화재후보들 견공 짝짓기 스타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8면)
신청인 주장	국악인인 신청인이 치정에 관련된 싸움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진도 문화재후보들 견공 짝짓기 스타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1면)

2014광주조정24 · 25	(정정 · 손배청구) 윤○○ 對 인터넷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 『게스트하우스 男사장, 면접 보러온 20대男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게스트하우스 업주인 신청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찾아온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광주조정26~28	(각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1) 『군 투자유치 1호 ○○○테마파크 경매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1면) (2)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캘수록 '복마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1면) (3) 『메타가로수길 조례 '입장료' 위법 가능성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1. 담양군이 투자 유치한 ○○○테마파크의 자본금이 3억원이며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담양군이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에 9억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 담양군이 법률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하고 메타세쿼이아길의 입장료를 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29	(정정청구) 순천시 對 순천광장신문
조 정 대 상	『봉화산 둘레길, 거짓 해명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순천시가 봉화산 둘레길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지 않아도 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34 · 35, 38~51, 74 · 75	(각 정정 · 손배청구) 맹○○ 對 파인뉴스(34 · 35), 화순투데이(38 · 39, 50 · 51), 남도타임즈(40 · 41), 뉴스투데이한국(42 · 43, 48 · 49, 74 · 75), 무등일보(44 · 45), 인터넷 무등일보(46 · 47)
조 정 대 상	• 파인뉴스 : (1) 『○○○유통(주) 악성민원, 대표 사의로 파문』 (2014년 7월 14일자 탑뉴스면) (2)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7월 15일자 탑뉴스면) (3) 『〈社說〉"미친 황소, 갈 곳은 屠殺場 뿐 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7일자 칼럼면) • 화순투데이 : (1) 『○○○○○유통(주) 악성민원에 대표자 사의표명 파문』 (2014년 7월 12일자 인물면) (2) 『'○○○○○유통(주)' 지속적 음해 인사 사법적 대응키로』 (2014년 8월 14일자 사회면) • 남도타임즈 : 『○○○○○유통(주) 악성민원에 대표자 사의표명 파문』 (2014년 7월 14일자 사회면) • 뉴스투데이 : 『○○○○○유통(주) 악성민원에 대표자 사의표명 파문』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무등일보 : 『소송에 멍든 '한약초 메카 화순'』 (2014년 8월 7일자 1면, 인터넷 무등일보 8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지역 국책사업에 대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의 (주)○○○○○○유통에 대한 민원이 거짓 내용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36, 37	(각 정정청구) (주)○○ 對 장성뉴스[36], 인터넷 호남신문[37]
조 정 대 상	• 장성뉴스 : 『郡 ○○강 생태복원사업 부당 행정 "파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경제면) • 인터넷 호남신문 : 『장성군 ○○강 생태복원사업 부당 행정 '파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7일자 탑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강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일 하루 전에 사업주소지를 이전하여 사업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자진취하)

2014광주조정52	(정정청구) (사)○○○○○○○○○○○연합회 對 남도일보
조 정 대 상	『○○○○○○○○協 운영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애인協 운영 갈등 심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2면)

2014광주조정53 · 54	(정정 · 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시민의소리
조 정 대 상	(1) 『김○○ 채용논문 '표절 아니다' 판정』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교육면) (2) 『김○○, 채용논문 표절인가, 판정이 조작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교수채용 관련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55 · 56	(정정 · 손배청구) 김○○ 외 3인 對 인터넷 시민의소리
조 정 대 상	(1) 『조선대, '김○○ 논문' 심사과정 조작 '인정'』 (2014년 7월 9일자 교육면) (2) 『재판부, 조선대는 김○○ '교수 임용절차' 이행해야』 (2014년 8월 28일자 1면, 지역 소식면) (3) 『조선대 설립정신 훼손, 매듭짓고 가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1면,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교수채용 관련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59	(추후청구) 장○○ 對 KBC-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특화시장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케이드 상가를 불법 분양한 의혹이 있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광주조정60~64, 68~72	(각 추후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60], 여수MBC-TV[61], 인터넷 광남일보[62], 인터넷 광주타임즈[63], 인터넷 남도일보[64], 인터넷 전남일보[68], 인터넷 호남매일[69], 아침신문[70], 남도인터넷방송[71], 여수인터넷뉴스[72]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지지 안했다"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광주 전남면) • 여수MBC-TV : 7시뉴스 프로그램 『"경쟁후보 도왔다" 현역도의원 폭행』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2일자) • 인터넷 광남일보 : 『"지방선거서 지지 안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주타임즈 : 『"지지 안했지" 술병 휘두른 시의원 낙선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이슈&쟁점면) • 인터넷 남도일보 :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도의원에 낙선한 신청인이 전 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 인터넷 남도일보, 인터넷 전남일보/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여수MBC-TV, 인터넷 광남일보, 인터넷 광주타임즈, 인터넷 호남매일, 남도인터넷방송, 여수인터넷뉴스/사유 : 추후보도) • 취하 (아침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前 ○○시의원 폭행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광주전남면) • 여수MBC-TV :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0일자 MBC 이브닝 뉴스) • 인터넷 광남일보 : 『○○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전남경찰청, 사건처리 적정여부 감찰』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10면) • 인터넷 광주타임즈 : 『○○ 전직 지방의원들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10면) • 인터넷 남도일보 : 『○○ 도의원 출마자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8면, 사회면) • 인터넷 전남일보 : 『지방선거 맥주병 폭행 前 ○○시의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5면, 사회면) • 인터넷 호남매일 : 『○○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15면, 아침신문 12월 11일자 사회면, 남도인터넷방송 12월 12일자 사회면, 여수인터넷뉴스 12월 11일자 여수뉴스면)

2014광주조정73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뉴스투데이한국
조 정 대 상	『L조합장 경제팀에 "확인서 작성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 조합장이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사람사는 세상면)

2014광주조정76, 77	(각 정정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전남매일[76], 인터넷 전남매일[77]
조 정 대 상	『비위총장 퇴진요구 학생제적 물의』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4년 11월 4일자 사회면, 인터넷 전남매일 1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총장 퇴진 요구를 주도한 학생을 총장 직권으로 제적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검찰 ○○대 총장 성추행 '무혐의' 처분 총장직권으로 학생 제적 처리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5년 1월 16일자 7면, 인터넷 전남매일 1월 16일자 사회면)

2014광주조정82 · 83	(정정 · 손배청구) ○○○노무법인 對 광주KBS-1TV
조 정 대 상	시사현장 맥 프로그램 『노동계의 검은 손 노피아』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무법인 노무사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대 전 〉

2014대전조정1, 2	(각 정정청구) 권○○ 對 중도일보[1], 인터넷 중도일보[2]
조 정 대 상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6면, 인터넷 중도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3~8	(각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의료법인 ○○○○○○ ○○○○병원 對 세종매일[3~5], 인터넷 세종매일[6~8]
조 정 대 상	『'거래회사 약 아니면 취급안합니다.' 백의의 천사…환자 질병 빌미로 부당 수익 챙기는 의사들의 부도덕인가?』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3년 12월 27일자 1면, 인터넷 세종매일 12월 26일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거래회사의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의 처방전 발급을 거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병원 환자 건강 외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4년 1월 24일자 2면, 인터넷 세종매일 1월 23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9	(추후청구) 한○○ 對 인터넷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수 형사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신청인이 거액 기금손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10	(정정청구) 정○○ 對 뉴스파고
조 정 대 상	『정○○ 예비후보 현수막 도난 사건 뻔히 드러난 내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도지사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현수막을 도난당한 것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대전조정11, 12	(각 정정청구) 가○○ 對 태안미래신문[11], i태안미래[12]
조 정 대 상	『○○군수 무주공산』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4년 3월 6일자 사회면, i태안미래 3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군수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중앙위 분과부위원장에서 면직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가○○ 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4년 4월 17일자 1면, i태안미래 4월 12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13	(손배청구) 김○○ 對 대전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5월 중순 기온... 벚꽃 개화』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3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기상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영상삭제)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대전조정14, 15	(각 정정청구) ○○○○○○조합추진위원회 對 세종nTV[14], 인터넷 충청신문[15]
조 정 대 상	• 세종nTV : 『○○구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관련 주민설명회!』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5일자 대전면) • 인터넷 충청신문 : 『지역주택조합, 서민울리는 사기분양될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뉴스/이슈면)
신청인 주장	○○○○ 주택조합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16	(손배청구) 임○○ 對 대전KBS-1TV
조 정 대 상	9시 대전뉴스 프로그램 『신청인이 건설사 관계자와 언쟁하고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건설사 관계자와 언쟁하고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대전조정17 · 18	(정정 · 손배청구) 송○○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동구청 고위 공직자 대형 비리 사건 혐의 경찰 촉각』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허가 및 인사와 관련한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19, 20	(각 정정청구) 신○○ 對 중도일보(19), 인터넷 중도일보(20)
조 정 대 상	『여강사 성폭행 의혹 대학 총장 논란』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3월 5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도일보 3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7년 전 미국인 여강사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6월 23일자 지역면, 인터넷 중도일보 6월 23일자 초기화면)

2014대전조정21~23	(반론 · 손배청구) 이○○ 對 충청투데이(21 · 22) (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23)
조 정 대 상	『새누리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잡음』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4년 5월 8일자 2A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로 누락시 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새누리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제출 누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4년 6월 23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6월 23일자 초기화면)

2014대전조정24~53	(각 정정 · 손배청구) ○○○○○○○노동조합 對 MBS미니방송(24 · 25), 뉴스충청인(26 · 27), 뉴스클릭(28 · 29), 대전 인터넷신문(30 · 31), 인터넷 대전일보(32 · 33), 인터넷 대전투데이(34 · 35), 타임뉴스(36 · 37), 인터넷 중도일보(38 · 39), 인터넷 충남일보(40 · 41), 인터넷 충청경제일보(42 · 43), 인터넷 충청투데이(44 · 45), 충청TV(46 · 47), 세종방송(48 · 49), 세종인터넷신문(50 · 51), 특급뉴스(52 · 53)
조 정 대 상	• MBS미니방송 :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건설부문 지지단체 이어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뉴스충청인 · 인터넷 충남일보 · 충청TV · 세종인터넷신문 · 특급뉴스 6월 1일자 사회면) • 뉴스클릭 :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줄이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대전인터넷신문 · 타임뉴스 ·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전일보 : 『지지세 총집결 막바지 세몰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전투데이 : 『○○○○○○○세종시연합회 유한식 후보 지지 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도일보 : 『'지지층 결집만이 살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충청투데이 : 『세종시장 후보, 표심얻기 동분서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세종방송 : 『○○○○ 세종시연합회 유한식 후보 지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S 미니방송, 인터넷 대전일보, 인터넷 충청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조정성립 (뉴스충청인/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각 취하 (뉴스클릭, 대전인터넷신문, 인터넷 대전투데이, 타임뉴스, 인터넷 중도일보, 인터넷 충남일보,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충청TV, 세종방송, 세종인터넷신문, 특급뉴스/사유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MBS 미니방송 : 『[정정보도문] ○○○○산업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사회면, 뉴스충청인 7월 21일자 사회면) • 뉴스 클릭 : 『[바로잡습니다] 2014년 6월 1일자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8일자 지역면) • 대전 인터넷신문 : 『'○○○○산업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뉴스종합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2014년 7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전일보 : 『"지지세 총집결 막바지 세몰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사회면) • 타임뉴스 : 『[정정보도문] ○○○○산업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7월 18일자 뉴스면, 세종방송 2014년 7월 15일 정치행정면) • 인터넷 중도일보 : 『[바로잡습니다] 6월 2일자 3면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뉴스면, 특급뉴스 2014년 7월 11일자 뉴스면) • 인터넷 충남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지역뉴스면) • 인터넷충청투데이 : 『"세종시장후보 표심얻기 동분서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면) • 충청TV : 『'○○○○산업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속보면)

2014대전조정54, 55	(각 정정보도) ○○○○ 주식회사 對 주간 당진시대(54), 인터넷 주간당진시대(55)
조 정 대 상	『발전소 · 제철소 인근 주민들 위험』 제하의 기사 (당진시대 2014년 7월 7일자 4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7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충남지역 건강영향 조사 결과 ○○제철 주변의 주민건강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발전소 · 제철소 인근 주민들 위험'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당진시대 2014년 8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8월 18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56 · 57	(정정 · 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1) 『'진짜 사나이' 속인 가짜 도시락…저가 수입 식자재 국산 둔갑』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2) 『구멍 뚫린 예비군 도시락 원산지도 모르고 먹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저가 수입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도시락을 납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58~61	(정정 · 반론청구) 설○○ 對 충청신문(58 · 59), 인터넷 충청신문(60 · 61)
조 정 대 상	(1) 『학교 악기입찰에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신문 8월 1일자 사회면) (2) 『한통속 회사가 절반 독식』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신문 8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악기사가 대전시내 학교 악기 입찰 중 절반가량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학교 악기입찰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신문 2014년 9월 22일자 2면, 인터넷 충청신문 9월 20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70~73	(각 정정 · 손배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對 세종포스트(70 · 71), 인터넷 세종포스트(72 · 73)
조 정 대 상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비리, 세종시에서도…』 제하의 기사 (세종포스트 2014년 10월 24일자 4면, 인터넷 세종포스트 10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리베이트 상납 의혹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비리, 세종시에서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1면, 인터넷 세종포스트 12월 1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78~81	(각 정정 · 손배청구) ○○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對 중도일보(78 · 79), 인터넷 중도일보(80 · 81)
조 정 대 상	• 중도일보 :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보조금 횡령 등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일자 2면) • 인터넷 중도일보 : 『○○○ 행사 용역업체 선정 잡음』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3일자 종합뉴스면)
신청인 주장	○○○ 행사 용역업체 선정관련 잡음을 일으킨 업체대표가 신청인 학과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행사 용역업체 선정 잡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12월 11일자 2면, 인터넷 중도일보 12월 11일자 종합뉴스면)

2014대전조정82, 83	(각 정정청구) 황○○ 외 1인 對 충남일보(82), 인터넷 충남일보(83)
조 정 대 상	(1)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보조금 횡령 등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1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1일자 종합뉴스면) (2) 『○○○○유공자회 세종지회 폐쇄』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6일자 종합뉴스면) (3)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비리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8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8일자 종합뉴스면) (4)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사)○○○' 후원금 세탁 '의혹'』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13일자 종합뉴스면) (5 『○○○회 세종지회, 백여곳 넘는 단체 후원금 어디에 쓰나』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15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15일자 종합뉴스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유공자회 세종지회장인 신청인이 보조금 횡령등 각종 비리를 범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종결처리 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84	(정정청구) 주식회사 ○○교통 對 예산신문
조 정 대 상	『달리는 시한폭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버스회사가 다른 지역회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차량부품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통, 낮은 임금 속 차량 불법개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5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87, 88	(정정청구) ○○교통 주식회사 對 세종매일[87], 인터넷 세종매일[88]
조 정 대 상	『○○교통(주) 보조금 부풀려 허위 문서 제출 '공문서 위조'』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4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세종매일 11월 25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운수회사가 임금협상 문건을 조작해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5년 1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세종매일 1월 23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89 · 90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NEWS충남일보
조 정 대 상	『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 원주민 '분통'』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출자금을 빼돌려 조합장에서 제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 경 기 〉

2014경기조정1~4	(각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OBS경인TV(1 · 2), 인터넷 OBS경인TV(3 · 4)
조 정 대 상	『이○○, 공공기관 '공짜'(?)사용 '물의'』 제하의 보도 (OBS경인TV 2013년 12월 19일자, 인터넷 OBS경인TV 12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5 · 6	(반론 · 손배청구) 신○○ 對 기독교 포털뉴스
조 정 대 상	『'자칭 하나님설' 신○○, 사기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9일자 바른 신앙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자칭 하나님설'을 주장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 목사 사기혐의 피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바른 신앙면)

2014경기조정7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인천지역 일부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낭비 우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낭비 우려' 관련기사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9면)

2014경기조정8	(손배청구) 임○○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1) 『○○시립교향악단 이대로는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0일자 오피니언면) (2)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일자 오피니언면) (3) 『○○시립교향악단 이건 정말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오피니언면) (4) 『○○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성남시의 입장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임명된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4경기조정9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조직의 치부 드러냈다고 조직의 쓴맛 보여주려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특정교사의 공식적인 업무출장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보복성 처분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10~17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인천(10 · 11), 인터넷 경기신문(12 · 13), 인터넷 경기매일(14 · 15), 인터넷 수도권일보(16 · 17)
조 정 대 상	• 뉴시스 인천 : 『불법부착물 업체 '로비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인천면) • 인터넷 경기신문 : (1) 『불법부착물 업체 '로비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뉴스면) (2) 『부천 불법부착물 방지사업 업체 로비의혹 포착』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뉴스면) (3) 『업체서 '전방위 로비'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한 의혹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신문 2014년 2월 6일자 지역면, 뉴시스 인천 2월 6일자 인천면)

2014경기조정18, 19	(각 정정청구) (사)○○○○○○협회 對 경인일보(18), 인터넷 경인일보(19)
조 정 대 상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1월 20일자 1면, 인터넷 경인일보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동물 보호는 뒷전인 채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권'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협회 '대리포획 허가권 의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2월 14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2월 14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20, 21	(각 손배청구) 김○○ 對 광명지역신문[20], 인터넷 광명지역신문[21]
조 정 대 상	『지금까지 시장, 국회의원은 뭘 했나?』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4년 2월 11일자 1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2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까지 동원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22, 23	(각 반론청구) 박○○ 對 반월신문[22], 인터넷 반월신문[23]
조 정 대 상	• 반월신문 : 『안산○○○○센터 어린이집 P원장 교사에 '당비 대납… 민주당 가입'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23면, 인터넷 반월신문 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반월신문 : 『안산○○○○센터 어린이집 P원장 "민주당 가입 권유… 사실이다" 인정 "가입신청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말 못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교사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24 · 25, 26 · 27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협회 對 현대일보[24 · 25], 인터넷 현대일보[26 · 27]
조 정 대 상	『인천 ○○동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2월 18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2월 1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골재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을 설치 후 추가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서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3월 13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3월 13일자 종합면)

2014경기조정28, 29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경기신문[28], 인터넷 경기신문[29]
조 정 대 상	(1) 『○○대, 병원 빙자 '땅장사' 의혹』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0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0일자 사회면) (2) 『○○대 병원부지 매각 '학교 맘대로'』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1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1일자 사회면) (3) 『○○대, '합법적 땅장사' 의혹』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2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2일자 사회면) (4) 『○○대, 병원 건립계획 학내불만 덮고 이미지 개선 '2중포석'』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7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용인시 국제캠퍼스 내 대규모 병원 건립을 발표한 이후 사실상 6년째 사업을 방치하고 있으며, '땅 장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병원 건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3월 12일자 2면, 인터넷 경기신문 3월 11일자 뉴스 종합면)

2014경기조정30	(반론청구) ○○○○○○○생활센터 對 뉴시스 경기남부
조 정 대 상	『용인시, 시청 앞 농성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일정한 예산집행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용인시, 시청 앞 농성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경기남부면)

2014경기조정31 · 32	(정정 · 손배청구) (주)○○건설 외 1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단독)서산 ○○○○CC 매각 파문...750여억 회원권, 피해입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2일자 사회면) (2) 『"750억 내놔!" 서산 ○○○○ 회원, 비대위 구성...25일 항의방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사회면) (3) 『(포토)서산 ○○○○ CC 비대위, "○○ · ○○건설은 사기꾼들"』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4) 『(포토)"내 피같은 돈, 다시 가져와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5) 『(포토)"○○ 회장은 쳐먹은 돈 즉각 토해내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과거에 소유했던 ○○○○ CC 서산골프장에 대해 입회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용인시, 시청 앞 농성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경기남부면)

2014경기조정33~36, 108, 132, 133, 257, 350, 351	(각 정정 · 손배청구) 광명시 외 2인 對 광명지역신문(33 · 34),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 · 36) (각 정정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108), 현대일보(132), 인터넷 현대일보(133), 온나라타임즈(257), 광명지역신문(350),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1)
조 정 대 상	• 광명지역신문(33 · 34) : 『"돈 받고 여론조사했다" 녹취록 나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1면) • 광명지역신문(350) : 『시장이 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다른 말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 · 36) : 『양 시장 지지율 높이려고 언론사 사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1) : 『뉴타운 엇갈리는 해명, 경기도와 광명시 중 누가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3일자)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여전한 불법건축물들, 왜?.... '몇백만원씩 건넸다. 나만 그랬겠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광명 도덕산 캠핑장 부실시공』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8월 18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광명뉴타운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 행정, 시민을 분노케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1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한평택 광명 16구역 뉴타운사업추진 비대위원장 단식투쟁』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광명시와 소속 공무원 2인이 광명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를 사주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 신청인이 최근에 개장한 광명 도덕산 캠핑장 바닥재가 다량 유출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4. 신청인 시청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경기도청에 광명뉴타운 사업추진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5. 광명시장이 광명뉴타운 반대 주민들과의 면담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광명지역신문(350),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1)/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조정성립 (인터넷 광명시민신문/내용 : 반론보도) • 취하 (현대일보, 인터넷 현대일보/사유 : 자진취하) • 취하 (온나라타임즈/사유 : 정정보도) • 조정불성립결정 (광명지역신문(33 · 34),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 · 36))
이 행 결 과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광명시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면) • 온나라 타임즈 : 『광명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지역뉴스면) • 광명지역신문 : 『'광명시 뉴타운 주민과의 대화, 광명시장 발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4년 12월 22일자 지방자치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2월 22일자 지방자치면)

2014경기조정37~5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동두천경찰서 외 1인 對 현대일보(37~39), 인터넷 현대일보(40~42), 인터넷 경인종합일보(43~45), 경기도민일보(46~48), 인터넷 경기도민 일보(49~51), 아시아뉴스 통신(52~54)
조 정 대 상	• 현대일보 : 『동두천署, 인사 싸고 '불만의 소리'』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현대일보 : 『동두천署, 경찰서 출입 언론사 출입 제한 시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보안 이유 언론사 기자들 출입 통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 경기도민일보 : 『'거꾸로 가는' 동두천경찰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3월 13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동두천경찰서장, 비판 언론사 압력 행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동두천 경찰서가 서장의 독단적인 지시로 소속 경관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으며, 보안을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55~58, 2014경기조정148, 149	(각 반론청구) 오산시 對 물향기신문(55, 57, 148), 인터넷 물향기신문(56, 58, 149)
조 정 대 상	• 물향기신문 : (1) 『청렴도시 오산이라면서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7면, 인터넷 물향기신문 2월 22일자 인물·칼럼면) (2) 『오산시·○○쇼핑 ○○빌리지 투자협약, 지역 유통업체 몰락 위기감』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1면) (3) 『○○ ○○빌리지 협약, 졸속 추진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2면) (4) 『관권선거 주범 곽상욱 시장 소환, 구속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정치면) • 인터넷 물향기신문 : (1) 『선거 앞둔 시장 예상 후보들 출판기념회 봇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8일자 정치·행정·의회면) (2) 『검찰은 오산 관권선거 주범 곽상욱 시장을 즉각 소환, 구속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정치·행정·의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시장의 부도덕한 출판기념회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쇼핑과 맺은 ○○빌리지 투자협약건에 대해 복합쇼핑몰을 명품아울렛 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 오산시장이 6·4지방선거기간에 사조직을 통해 관권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물향기신문(148), 인터넷 물향기신문(149) /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물향기신문(55,57), 인터넷 물향기신문(56,58) /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물향기신문 : 『오산시, "관권선거·곽 시장의 사조직 ○○회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 3면, 인터넷 물향기 신문 10월 23일 정치·행정·의회면) • 인터넷 물향기신문 : 『○○빌리지 협약 등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인물/칼럼면)

2014경기조정59 · 60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내외신문
조 정 대 상	『충북 ○○군 ○○읍 ○○리 (주)○○○○○ 내화물 재활용공장 친환경위배 단속절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친환경 재활용업체인 신청인이 파쇄한 내화물을 야적하고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등 오히려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친환경 위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주)○○○○○ 내화물 재활용공장 친환경위배 단속절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뉴스_보도자료면)

2014경기조정61	(반론청구) ○○○○○○○○상점가상인회 對 인터넷 시사인천
조 정 대 상	『○○○○○○○○, 상설 야시장 설치로 '시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상설 야시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야시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지역_부평구면)

2014경기조정62	(정정청구) 수원시의회 對 뉴스365
조 정 대 상	(1)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사회면) (2)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 꼬리무는 의혹"②』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시의회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업무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6일자 사회/지역자치면)

2014경기조정63	(손배청구) 최○○ 對 PBS 평택방송
조 정 대 상	『오산시, 음주운전 파문 최○○ 오산시의회 의장 3차례 걸쳐 허위진술 벌금 200만원 선고』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수원지법이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시 시의장인 신청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에 낙인을 찍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64	(정정청구) 광주시 對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광주시 토착세력 비호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경기도 광주시가 특정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토착세력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65	(정정청구) 조○○ 對 인터넷 탄천뉴스
조 정 대 상	『후보자 검증 제대로 이뤄질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위장전입과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위장 전입, 이권개입 사실 없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9일자 정치면)

2014경기조정66~70	(각 정정청구) 윤○○ 對 여성종합뉴스[66·67], 아시아뉴스통신[68], OBS경인TV[69], 인터넷 OBS경인TV[70]
조 정 대 상	• 여성종합뉴스 : 『탈북자단체 "○○대 윤○○ 교수 규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4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대,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진상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 사회면) • OBS경인TV : 뉴스프로그램 『○○대, 윤모 교수 탈북자 발언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7일, 인터넷 OBS경인TV 11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71, 72	(각 정정청구) ○○○○○○○○○시설관리공단 對 시사인천[71], 인터넷 시사인천[72]
조 정 대 상	(1) 『홍미영 구청장 팬클럽 회원 다수, 구 산하기관에 취업』 제하의 기사 (시사인천 2014년 2월 25일자 정치면, 인터넷 시사인천 2월 25일자 사회면) (2) 『홍미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또 특혜?』 제하의 기사 (시사인천 2014년 3월 18일자 정치면, 인터넷 시사인천 3월 18일자 사회면) (3) 『홍미영 구청장 팬클럽, 공단 취업 특혜의혹 여전』 제하의 기사 (시사인천 2014년 4월 15일자 정치면, 인터넷 시사인천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원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부평구청장 팬클럽인 "미영사모" 회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73~76	(각 정정 · 반론청구) ○○○○산업 주식회사 對 경인일보(73 · 74), 인터넷 경인일보(75 · 76)
조 정 대 상	『철강공장 굉음...못 살겠다』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4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4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철강공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장주변에서 굉음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 70여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경인일보 : 『반론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5월 22일자 21면) • 인터넷 경인일보 : 『"철강공장 굉음... 못살겠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77~80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산업 對 기호일보(77 · 78), 인터넷 기호일보(79 · 80)
조 정 대 상	『인천 ○○○○ 캠핑장 인기좋네 위탁사업자 사용료 두배나 인상』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4년 4월 28일자 8면, 인터넷기호일보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 ○○○○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캠핑장 사용료를 두 배 이상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기조정81, 82	(각 정정청구) (사)○○○○○협회 ○○지부 對 안산시민신문(81), 인터넷 안산시민신문(82)
조 정 대 상	(1) 『○○○다문화국제○○영화제, 시민우롱! 철저한 조사필요』 제하의 기사 (안산 시민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안산의 눈〉면, 인터넷 안산시민신문 10월 31일자 사회면) (2) 『포장만 요란한 행사는 치워라』 제하의 기사 (안산시민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사회면, 인터넷 안산시민신문 10월 31일자 사회환경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최한 ○○○○○국제영화제가 주먹구구식 행사진행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83, 89, 438	(각 정정청구) ○○○○선교회 외 1인 對 한국교회공보(83), 기독교포털뉴스(89, 438)
조 정 대 상	• 한국교회공보 『구원파 유병언 관계 진실을 밝힌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오피니언면) • 기독교포털뉴스 『'세월호' 선원들, 이상행동의 뿌리』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바른신앙면) • 기독교포털뉴스 『전주지검, 구원파 박옥수 씨에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기독교복음 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한국교회공보 : 보도 본문 중 신청인 부분 기사 수정 • 기독교포털뉴스 : 『'세월호' 선원들, 이상행동의 뿌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5일 바른신앙면) • 기독교포털뉴스 : 『'전주지검, 구원파 박○○ 씨에 구속영장 청구'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84~87	(각 정정 · 반론청구) 위○○ 對 화성신문(84 · 85), 인터넷 화성신문(86 · 87)
조 정 대 상	『주민 갈등 예상되는 지역에 기름 부은 화성시』 제하의 기사 (화성신문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인터넷 화성신문 4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화성 ○○○○○○○○○ 개발업자인 신청인이 인근 공장과 입주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주택 개발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공장과 입주민의 마찰 및 영업권 침해'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화성신문 2014년 6월 5일자 2면, 인터넷 화성신문 5월 27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88	(정정청구) 신○○ 對 e뉴스wave
조 정 대 상	(1) 『신○○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뉴스면) (2) 『(새)신○○ 후보, 사찰서 '고기타령' 해명에 자질론 확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1일자 뉴스면) (3) 『(새)신○○ 예비후보 교통사고는 안전불감증(?)』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인 신청인이 모 사찰의 석가탄신일 봉축법회에 참석하여 고기타령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 후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90 · 91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도신문
조 정 대 상	『경찰관 부인 건물임대 사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의 부인이 어학원을 설립하고 관련 건물을 임대한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데 신청인이 관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 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손배청구/ 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경찰관 부인 수억 사기 캐나다 도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종합면)

2014경기조정92 · 93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기독교포털뉴스
조 정 대 상	『○○○○○ 출판사 전 대표, 7억 7천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신청인 주장	유명 선교단체의 간부인 신청인이 선교단체의 공금이나 성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94~97	(각 정정 · 반론청구) 농촌진흥청 對 중부일보(94 · 95), 인터넷 중부일보(96 · 97)
조 정 대 상	『부적정 예산 집행 농진청, 향후 2년간 대학들 감사 안한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4년 5월 13일자 15면, 인터넷 중부일보 5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농촌진흥청이 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2년간 수억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98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광명일보
조 정 대 상	『타면자건(唾面自乾)과 일희일비(一喜一悲)』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 시의원인 신청인이 SNS(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이 특정 의원을 지칭한다고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99 · 100	(정정청구) ○○○○○○○○○○○○ 주식회사 외 1인 對 인터넷 김포신문
조 정 대 상	『대규모 비자금 조성 소문 어디까지 진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산업단지 보상과정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경찰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규모 비자금 경찰 내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뉴스면)

2014경기조정101	(손배청구) 이○○ 對 우리성남
조 정 대 상	『알제리전 참패 같았던 민관위 15R』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인 신청인이 '○○구 학부모 그룹 대표단'을 부추겨 억지를 부리고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02, 103, 114	(각 정정청구) 수원시 對 수원일보(102), 인터넷 수원일보(103, 114)
조 정 대 상	• 수원일보 : 『입북동 의혹 해명 하랬더니... 수원시, 본지 광고 중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1일자 종합1면, 인터넷 수원일보 7월 11일자 정치면) • 인터넷 수원일보 : 『염시장, 토지매입 후 다음날 개발계획 직접발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1. 수원시가 수원일보와 정기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 수원시가 주최한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들이 농성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104~107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경인일보(104 · 105), 인터넷 경인일보(106 · 107)
조 정 대 상	『다문화아동 가슴에 '대못질' 선생님』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7월 4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7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수차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109 · 110	(추후 ·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마약 음성 판정 도와준 경찰관 영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마약투약 혐의자 머리카락을 바꿔치기 하여 음성 판정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추후청구/ 내용 : 추후보도)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이 행 결 과	『○○署 박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11 · 112	(정정 · 반론청구) 강○○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1) 『남학생 보는데… "치마길이 검사 해보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사회면) (2) 『수원 A고 교사 과도한 생활지도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교 교사인 신청인이 과도한 생활지도를 실시해 학부모들이 반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4경기조정113	(정정청구) 오○○ 對 인터넷 경양일보
조 정 대 상	『경기북부 교육자 및 교장 부동산 투기 앞장』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도됐으나, 교육청 조사결과 적법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115~118	(각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경인일보(115 · 116), 인터넷 경인일보(117 · 118)
조 정 대 상	『맨 앞줄에 덩그러니 … 왕따 방치한 교사』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왕따 방치한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9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9일자 정정 · 반론보도면)

2014경기조정119, 120	(각 정정청구) ○○○의료원 외 1인 對 중부일보(119), 인터넷 중부일보(120)
조 정 대 상	『비리 백화점 ○○○의료원』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4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중부일보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원의 원장이 지인을 노숙자로 위장시켜 수술비를 감면해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의료원 비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4년 10월 6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10월 6일자 정치면)

2014경기조정121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부끄러운 경찰... 절도범을 두고 관할권 다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타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범을 인계받고도 관할권 문제로 인수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22~125	(각 정정 · 손배청구) 조○○ 對 김포신문(122 · 123), 인터넷 김포신문(124 · 125)
조 정 대 상	『조○○ 후보 두 얼굴, 똑바로 볼 때다』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4년 5월 22일자 23면, 인터넷 김포신문 5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신청인이 여야의 선거운동 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행사장에 참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6. 4 지방선거 도의원 조○○ 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4년 9월 18일자 2면, 인터넷 김포신문 9월 18일자 사설칼럼면)

2014경기조정126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종교탄압 중단하라" 구원파 집회… 시민 냉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집회 현장 관련 보도에서 집회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집회시위보도로 위법성 조각)

2014경기조정127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시사인천
조 정 대 상	『거리로 나선 구원파 "검찰, 종교 · 인권탄압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집회 현장 관련 보도에서 집회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집회시위보도로 위법성 조각)

2014경기조정128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키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키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29	(정정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교총, ○○대 덕망 있고 올바른 총장 선출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교총, ○○대 덕망있고 올바른 총장 선출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30, 131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새마을회 對 경인일보[130], 인터넷 경인일보[131]
조 정 대 상	『○○○○ 새마을회장 선거 내홍』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1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1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32, 133	(각 정정청구) 광명시 對 현대일보[132], 인터넷 현대일보[133]
조 정 대 상	『광명 ○○산 캠핑장 부실시공』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근에 개장한 광명 ○○산 캠핑장 바닥재가 다량 유출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34	(반론청구) 정○○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비리 영양사 비호 안될 말』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 P초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비리직원을 비호하며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비리 영양사 비호 안될 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35	(정정청구) ○○○청소년재단 對 투데이성남
조 정 대 상	『어느 비정규직의 죽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의 비정규직 실손 보험 가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기조정136~141	(각 정정·손배청구) ○○○○○○○어머니연합회 외 1인 對 경인데일리(136·137), 경인저널(138·139), 경기경제신문(140·141)
조 정 대 상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 (경인데일리 2014년 7월 21일자 사회면, 경인저널·경기경제신문 7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어머니연합회의 신청인이 공금을 유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데일리 2014년 9월 26일자 사회면, 경인저널·경기경제신문 7월 21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42, 143	(각 정정청구) ○○ ○○군청 기자단 對 경인투데이뉴스(142), 인터넷 경인투데이 뉴스(143)
조 정 대 상	『인천시 ○○군청 기자실, 신규출입기자 회원명부 손괴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경인투데이뉴스 2014년 8월 6일자 사건/사고면, 인터넷 경인투데이뉴스 8월 7일자 인천면)
신청인 주장	○○군청에 출입하는 2개 기자단 중 하나인 신청인 기자단이 상대편 기자단의 명단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군청 출입기자단 명단 손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투데이뉴스 2014년 10월 5일자 일반뉴스면, 인터넷 경인투데이뉴스 10월 5일자 인천면)

2014경기조정144~147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경인일보(144·145), 인터넷 경인일보(146·147)
조 정 대 상	(1) 『대학 구내식당 계약사기 '수억원 먹튀'』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0일자 사회면) (2) 『○○대 교내식당 위탁에 또 위탁 물의』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직영 운영 계약을 위반하고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학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10월 10일자 알림면)

2014경기조정150	(반론청구) 사단법인 ○○○○○○ 총연합회 對 인터넷 교육과 보육신문
조 정 대 상	『연구회: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 간담회 잇달아 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보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2015년도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 간담회에 불참하는 등 보육에 대한 업무보다 내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연구회: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 간담회 잇달아 가져"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보육면)

2014경기조정151~154	(각 정정청구) 김○○ 對 한국기자연대(151), 연예스포츠방송(152), 기호일보(153), 인터넷 기호일보(154)
조 정 대 상	• 한국기자연대 : 『대한민국인물시상 명예훼손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사회면, 연예스포츠방송 8월 21일자 사회면) • 기호일보 : 『인천지검간부와 친분 내세워 수사 막으려다 고발당한 기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이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건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검찰 간부와 친분을 내세워 자신의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155~166	(각 정정 · 손배청구) 성○○ 외 1인 對 기호일보(155 · 156), 인터넷 기호일보(157 · 158), 수도권일보(159 · 160), 인터넷 수도권일보(161 · 162), 경기신문(163 · 164), 인터넷 경기신문(165 · 166)
조 정 대 상	• 기호일보 : 『"장고 끝에 무모한 인사 씁쓸" 유시장 정기인사 비난 여론』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3면, 인터넷 기호일보 8월 22일자 종합면) • 수도권일보 : 『인천시, 환경공단 감사 '마녀사냥식'』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1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9월 1일자 종합면) • 경기신문 : 『인천시 감사관 논란 속 '퇴장'』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5면, 인터넷 경기신문 9월 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산하기관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는 등 불법 감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내용 : 반론보도) • 각 조정성립 (수도권일보, 인터넷 수도권일보,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내용 : 반론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기호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3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4일자 알림면) • 수도권일보 : 『'인천시 전 감사관, 환경공단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2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1월 26일자 종합면) • 경기신문 : 『'인천시 전 감사관, 환경공단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7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1월 26일자 인천면)

2014경기조정167	(정정청구) ○○대학교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수 슈퍼甲질...대학원생 인건비 수천만원 가로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횡령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기조정168~172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일간경기[168·169], 인터넷 전국매일[170·171]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인천일보[172]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간경기 :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특혜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사회면, 인터넷 전국매일 10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인천일보 : 『○○○○○ 대형사업 시기상조』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인천 유시티(U-City)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인천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일간경기, 인터넷 전국매일/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간경기 : 『[정정보도] ANF '○○○○○ 특혜의혹'과 무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전국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인천면) • 인터넷 인천일보 : 『'○○○○○ 특혜 의심' 보도된 특정업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7일자 정치면)

2014경기조정233~236, 352, 353	(각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동구청 對 현대일보[233], 인터넷 현대일보[234], 인천일보[235], 인터넷 인천일보[236], 현대일보[352], 인터넷 현대일보[353]
조 정 대 상	• 현대일보 : 『동구, 홍보예산 멋대로 집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4일자 종합면, 인터넷 현대일보 10월 14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장석현구청장 공직선거법 추가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11월 1일자 종합면) • 인천일보 : 『동구 집무실 호화 리모델링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인천 동구청이 출입기자 회원사들을 위주로 광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인천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추가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현대일보(233), 인터넷 현대일보(234), 인천일보, 인터넷 인천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현대일보(352), 인터넷 현대일보(353)/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현대일보 : 『'동구 홍보예산'관련규정에 의해 집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11월 21일자 종합면) • 인천일보 : 『'인천시 동구청장 취임식 비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9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12월 9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12월 12일자 종합면)

2014경기조정235, 236	(각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동구청 對 인천일보(235), 인터넷 인천일보(336)
조 정 대 상	『동구 집무실 호화 리모델링 논란』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4년 10월 20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 동구청이 인천 지역 10개 군·구 지자체장 취임식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시 동구청장 취임식 비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4년 12월 9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12월 9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300 · 301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여성종합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참사-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자원봉사로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사 일을 했던 신청인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에서 일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4경기조정306 · 307	(반론 · 손배청구) ○○○○○○○○○○○교회 외 1인 對 뉴스앤넷
조 정 대 상	『사이비목사 허모씨 부자 엽기성 범죄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혼음을 강요하고, 신도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이비 목사 허모 씨 부자 엽기 성범죄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7일자 교계면)

2014경기조정308	(정정청구) 변희재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 『[단독]김미화 인터뷰 변희재 상대 소송에서 승소』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게재 (2014년 12월 3일자)

2014경기조정330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도의원에 낙선한 신청인이 전 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331, 332	(각 손배청구) 김○○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 『탤런트 전양자의 검찰...』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334~336	(각 정정청구) 추○○ 對 아시아뉴스통신(334), OBS경인TV(335), 인터넷 OBS경인TV(336)
조 정 대 상	• 아시아뉴스 통신 : 『전양자, 인천지검 출두...』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사회면) • OBS경인TV :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 『탤런트 전양자의 검찰...』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0일자, 인터넷 OBS경인TV 2014년 5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아시아뉴스통신/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70만원, 부제소) • 취하 (OBS경인TV/사유 : 자진취하)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OBS경인TV)

2014경기조정412~415	(각 정정 · 손배청구) 조○○ 對 연수신문(412 · 413), 인터넷 시사i신문 연수신문(414 · 415)
조 정 대 상	『대한노인회 ○○구 노인지회장 벌금 100만원 도덕성 사퇴 논란』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4년 11월 18일자 1면, 인터넷 시사i신문 연수신문 1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한노인회 ○○구 지회장인 신청인이 횡령혐의로 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417~420	(각 정정 · 손배청구) 마○○ 對 연수신문(417 · 418), 인터넷 시사i신문 연수신문(419 · 420)
조 정 대 상	『M회장 올해 4월까지 공식 회계보고 안해 물의』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4년 11월 25일 1면, 인터넷 시사i신문 연수신문 1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로당 회장인 신청인이 공식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439~441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부평 소재 피부과, 불법 성형시술 피해자 속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신청인 주장	병원 원장인 신청인이 비전문 의료인을 고용해 환자를 시술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516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인터넷 시대일보
조 정 대 상	『보조금은 눈먼 돈? 사후관리 시급』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자금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강 원 〉

2014강원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지역아동센터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뉴스 9 프로그램 『아동센터서 수개월째 폭행 당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아동이 2년 동안 또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강원조정3 · 4	(정정 · 손배청구) 정○○ 對 G1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G1뉴스820, G1뉴스라인 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일지 '불법매매'』 제하의 보도 (G1뉴스820 프로그램 2014년 3월 25일, G1뉴스라인 프로그램 2014년 3월 26일)
신청인 주장	원주의 한 어린이집이 실습교사들에게 현금을 받고 보육일지를 써주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어린이집이 자료화면으로 방송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강원조정7 · 8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세월호 참사〉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자원봉사로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사 일을 했던 신청인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에서 일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2014강원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대학교 외 3인 對 원주MBC-TV
조 정 대 상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개최한 비공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를 무단 촬영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 충 북 〉

2014충북조정1 · 2	(정정 · 손배청구) (주)○○ 對 충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폐기물매립장, 끝나지 않은 싸움』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충북조정3~6	(각 정정 · 손배청구) 음성군 對 충북일보(3 · 4), 인터넷 충북일보(5 · 6)
조 정 대 상	(1) 「음성 태생산단 조성 '산넘어 산'」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1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2) 「음성군 · 군의원들, 절차상 하자도 파악 못했다」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3) 「투융자심사 난관...수정 불가피」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4) 「"4천억 채무보증 형평성에 어긋나"」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5) 「郡 행정력 낭비, 주민만 멍들었다」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외 14건
신청인 주장	음성군이 태생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충북조정7~10	(각 정정 · 손배청구) ○○○교 외 1인 對 충청리뷰(7 · 8), 충북인뉴스(9 · 10)
조 정 대 상	• 충청리뷰 : 『시공사 선정도, 운영도 사무국장 맘대로』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 충청리뷰 : 『○○향교 A 사무국장의 수상한 '내부거래'』 (2014년 2월 14일자 사회면) • 충청인뉴스 : 『양심고백 '○○향교 A국장에게 돈 받았다'』 (2014년 2월 20일자) 제하의 기사 외 8건
신청인 주장	○○향교가 연수원 건립 시 시공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충북조정11	(정정청구) 박○○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의정뒷전, 이슈화 급급' 박○○ 충북도의원 자질논란 』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3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유감표명,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정 뒷전, 이슈화 급급" 충북도의원 자질 논란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충북・세종면)

2014충북조정12, 13	(각 정정청구) 윤○○ 對 동양일보(12), 인터넷 동양일보(13)
조 정 대 상	『"탈북자 사형 주장"…○○대 교수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3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동양일보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탈북자 사형 주장" 대구대 교수 발언,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인터넷 동양일보 2014년 5월 12일자 사회면)

2014충북조정14~18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충청매일(14~16) (정정・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충청매일(17・18)
조 정 대 상	(1) 『충북 새누리 기초・광역 비례대표 공천 난장판』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5월 2일자 1면, 인터넷 충청매일 5월 1일자 사회면) (2) 『새누리 비례대표 공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5월 7일자 15면, 인터넷 충청매일 5월 6일자 사회면) (3) 『새누리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잡음』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5월 7일자 사회면, 이터넷 충청매일 5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충북조정19~31	(각 반론청구) 김○○ 對 연합뉴스[19], 뉴시스[20], 국제뉴스[21], 동양일보[22], 인터넷 동양일보[23], 중부매일[24], 인터넷 중부매일[25], 충북일보[26], 인터넷 충북일보[27], 충청매일[28], 인터넷 충청매일[29], 충청신문[30], 인터넷 충청신문[31]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최명현 제천시장 후보 허위기사 쓴 기자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제천시장 후보 간 몸싸움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 국제뉴스 : 『제천시장 후보자간 '몸싸움'은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 동양일보 : 『최명현 제천시장 후보, 허위기사 쓴 기자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인터넷 동양일보 5월 27일자) • 중부매일 : 『'토론회後 몸싸움' 헛소문에 결국…』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28일자 사회면) • 충북일보 : 『괴소문 확산에 유권자들 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북일보 5월 28일자 사회면) • 충청매일 : 『최명현 · 홍성주 제천시장 후보 "몸싸움 소문 사실무근" 해명』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매일 5월 28일자 사회면) • 충청신문 : 『"제천시장 후보 간 몸싸움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신문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천시장후보 간에 몸싸움이 없었다는 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뉴시스, 동양일보, 인터넷 동양일보, 중부매일, 인터넷 중부매일, 충북일보, 인터넷 충북일보,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충청신문, 인터넷 충청신문/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취하 (국제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충북조정32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유명 다단계 화장품 구원파와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다단계 A화장품 대한예수교침례회랑 관계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종합면)

2014충북조정33 · 34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외 1인 對 동양일보
조 정 대 상	『전직 군의원 '남의 땅 지분 요구' 소송』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남의 땅에 대한 지분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약정서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2면)

2014충북조정35~38	(각 정정 · 반론청구) 윤○○ 對 충청매일(35 · 36), 인터넷 충청매일 (37 · 38)
조 정 대 상	『민간단체 소속 코디네이터 충북도 직원 사칭 금품요구』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6월 27일자, 인터넷 충청매일 6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청직원을 사칭하며 금품 및 접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민간단체 소속 코디네이터 충북도 직원 사칭 금품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7월 16일자 2면, 인터넷 충청매일 7월 16일자 사회면)

2014충북조정39 · 40	(정정 · 손배청구) 전국○○○○ 노동조합 對 한국인뉴스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이어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전국○○○○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사회면)

2014충북조정41, 42	(각 정정청구) 한○○ 對 충청매일(41), 인터넷 충청매일(42)
조 정 대 상	• 충청매일 : 『○○군의회 '법리검토 무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6면) • 인터넷 충청매일 : (1) 『'○○판 민선5기 특위' 파장』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2) 『○○군의회 '법리검토 무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군 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제출한 태생산단에 대한 조사 청원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충북조정43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키크는 약으로 허위 ·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키크는 약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일반사회면)

2014충북조정53	(추후청구) 이○○ 對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지지 안해 낙선돼"…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폭행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광역의회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전 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사회 일반면)

〈 전 북 〉

2014전북조정1, 2	(각 추후청구) 이○○ 외 1인 對 전북도민일보[1], 인터넷 전북도민일보[2]
조 정 대 상	『○○새마을금고 간부 업무상배임 기소』 제하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2013년 5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5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새마을금고 간부인 신청인들이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사실이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새마을금고 간부 업무상배임 기소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3 · 4	(정정 · 손배청구) ○○재활원 외 1인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장애인학대 재활원장 유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활원과 원장이 장애인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음)

2014전북조정5	(정정청구) ○○○○○협의회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자치단체장 입지자 '식사대접'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회원들이 자치단체장 입지자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6 · 7	(정정 · 손배청구) 한○○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물복지 생산비 높아 외면』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6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동물복지 생산비 높아 외면』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AI로 인한 축산물 안전에 대해 보도하면서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양계 농가를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물복지 생산비 높아 외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2014전북조정8	(손배청구) 박○○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14 '닥공' 신화를 이어간다! 전북현대모터스 출정식』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프로축구 출정식에 참석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한 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전북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술 취해 난동 부린 스님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사 승려인 신청인이 같은 사찰 승려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전북조정11~14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일일전북신문(11 · 12), 인터넷 일일전북신문(13 · 14)
조 정 대 상	『경찰, 단속된 업주와 결탁해 동종업체 죽이기 앞잡이 노릇』 제하의 기사 (일일전북신문 2014년 4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일전북신문 4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업주와 결탁해 경쟁업체를 고의적으로 단속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15 · 16 · 17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주) 對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1) 『순창 '모지역신문 편파보도' 도 넘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11면) (2) 『우시장 신축이 살인행위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5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축협 우시장 이전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청구/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취하 (정정 ·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순창 '모지역신문 편파보도' 도 넘어」 관련 반론보도문 (2014년 5월 16일 11면)

2014전북조정20	(정정청구) ○○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아파트 관리…대형업체 독식』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8일자, 4월 8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한아파트에 두 관리사무소』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9일자, 4월 9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3)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관리・감독 사각지대…아파트』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1일자, 4월 11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대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18, 19	(각 반론청구) 양○○ 對 전북중앙신문[18], 인터넷 전북중앙신문[19]
조 정 대 상	『전주지역 원예농협 지점장 80대 고객 욕설 폭행의혹』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4년 4월 25일자 4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4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원예농협 지점장인 신청인이 지점을 방문한 80대 고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주 원예농협 지점장 고객 욕설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4년 6월 3일자 4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6월 3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21・22	(정정・손배청구) 정○○ 對 주간전북오늘
조 정 대 상	『정○○, 여우의 춤바람을 멈춰라』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의원인 형을 배경으로 지방선거 등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23	(정정청구) 권○○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택시 보험비 사기』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택시회사 사장인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낸 기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년간 돈을 뜯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택시사기-속보』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2014전북조정24 · 25, 27 · 28	(각 정정 · 손배청구) 송○○ 외 25인(24 · 25), 김○○ 외 40인(27 · 28)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완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덕진경찰서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각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 취하 (각 손배청구/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택시업주 · 전북 경찰 연루 의혹 '사실 무근'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1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26	(정정청구) (주)○○○ 對 e-진안
조 정 대 상	『부귀 봉암 ○○○ 골프장, 동네길 막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골프장 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동네길을 무단으로 막았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아니라 다른 영농법인이 사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골프장, 동네길 막아' 관련 독자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1면)

2014전북조정29~32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순창신문(29 · 30), 인터넷 순창신문(31 · 32)
조 정 대 상	『○○면 소재 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대두론, 진실은?』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4년 9월 3일자 사회면, 인터넷 순창신문 9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군 노인요양병원을 군수지시와는 상반되게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4년 10월 1일자 8면, 인터넷 순창신문 10월 1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33	(정정청구) 이○ 對 새만금일보
조 정 대 상	『순창군 지역 L모씨 공무원에게 압력 행사 '파장'』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순창군 공무원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내년에는 더욱 더 다양한 테마 준비해 찾아올 터』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16면)

2014전북조정34~39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전북중앙신문(34 · 35), 전북연합신문(36 · 37), 군산시민신문(38 · 39)
조 정 대 상	• 전북중앙신문 : 『모 단체 대표 후원금 횡령 시끌』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9면) • 전북연합신문 : 『단체 대표 공금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8면) • 군산시민신문 : 『시민들을 위한 모 단체 공금횡령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정관을 변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보도 약속)

2014전북조정40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군산시 하수관로 BTL, 거짓공사만 수백곳』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군산시 하수관로 공사의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거짓보고를 하여 공사비를 부풀렸고, 또한 일부 구간은 고의적으로 축소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군산 하수관 공사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5일자)

2014전북조정41 · 42	(정정 · 손배청구) 황○○ 외 2인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뇌물수수' 순창군수 수사 급물살』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4일자, 10월 25일자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순창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수 부인이 공공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군수 비서실장이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 동의후 보도)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제목 : 조합장 임플란트비 대납 혐의자 기소』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4일자)

2014전북조정43	(정정청구) 김○○ 對 열린 순창
조 정 대 상	『○○농협 조합장 '골프채 · 임플란트'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농협 조합장인 신청인이 순창군수로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채랑 임플란트 비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골프채는 친분에 의해 빌린 것이며 임플란트 비용은 모 회사로부터 댓가성 없이 받은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농협 조합장'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1면)

2014전북조정44~46	(각 정정청구) ○○○○개발(주) 對 전북일보[44], 새전북신문[45], 뉴스1코리아[46]
조 정 대 상	• 전북일보 : 『"동의없이 설계 변경하고 추가 공사비 부담하라니" 군산 ○○○○ 조합원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4면) • 새전북신문 : 『서민 멍드는 지역주민조합사업』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4면) • 뉴스1코리아 : 『군산 지곡 ○○○○ 1차 입주민,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신청인 주장	군산 ○○단지 재개발조합의 시행업무대행사인 신청인 회사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전북조정47 · 48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오늘뉴스
조 정 대 상	(1) 『○○대병원 '비리물꼬' 연이어 터져...경찰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2) 『전북경찰, ○○대병원주차장 비리수사...혐의입증주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 병원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으며, 병원 주차장 용역 관련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전북조정49~51	(각 반론청구) 박○○ 對 뉴시스[49], 뉴스1코리아[50], 전민일보[51]
조 정 대 상	• 뉴시스 : 『檢, 신도에게 5000원짜리 주식 팔아 250억원 챙긴 목사 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1) 『檢, '신도 상대 수백억 사기' 박○○ 목사에 영장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 『법원, '신도 상대 수백억 사기' 박○○ 목사 영장 기각』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사회면) • 전민일보 : (1) 『신도 속여 수백억 챙긴 목사 '구속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 (2) 『신도 돈 가로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모 식품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높게 사도록 해 거액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뉴시스 : 『'○○○○선교회 박○○ 목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전국섹션 전북면) • 뉴스1코리아 : 『○○○○선교회 박○○ 목사 "재판 과정서 진실 밝혀질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전국면) • 전민일보 : 『'○○○○선교회 박○○ 목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5일자 4면)

〈 경 남 〉

2014경남조정1 · 2	(정정 · 반론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권력은 비판 두려워하기보다 민심 두려워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현 시장이 서로 특정 매체의 광고 배제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남조정3~8	(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경남도민일보(3), 인터넷 경남도민일보(4), 경남매일(5), 인터넷 경남매일(6), 경남일보(7), 인터넷 경남일보(8)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합천군 행정비방 유인물 유포 혐의 3명 붙잡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9월 17일자 지역면) • 경남매일 : 『합천군수 비판 전단지 배포 3명 체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매일 9월 17일자 사회면) • 경남일보 : 『합천군 비방물 유포자 잡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일보 9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군 행정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내용 : 추후보도) • 취하 간주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경남매일 : 『「합천군수 비판 전단지 배포 3명 체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2월 7일자 사회면) • 경남일보 : 『「합천군 비방물 유포자 잡혀」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남일보 2월 7일자 사회면) • 경남도민일보 : 『합천군 행정 비방 유인물 유포자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월 7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9~12	(각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경남도민일보(9 · 10), 인터넷 경남도민일보(11 · 12)
조 정 대 상	(1) 『하동 ○○○○ 상인 식품위생감시원 불법행위 수사촉구 서명 전개』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3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1월 12일자 사회면) (2) 『○○○○ 상인들 감시원 불법행위 해촉 요구에도 군 행정은 묵살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1월 14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식품위생감시원인 신청인이 지위를 남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13 · 14	(추후 · 손배청구) 이○○ 對 하동저널
조 정 대 상	『줄줄 새는 세금 도둑 판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으로 타 건설현장의 관급물품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추후청구/ 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취하 (손배청구/ 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4일자 1면)

2014경남조정15~19	(정정청구) 조○○ 對 경남인뉴스[15], 인터넷 경남신문[16], 아시아뉴스통신경남[17], 인터넷 농민신문[18], 노컷뉴스[19]
조 정 대 상	• 경남인뉴스 : 『병든 돼지 불법도축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신문 : 『병든 돼지 대량 유통한 업체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경남경찰, 병든 돼지 불법 도축 · 판매한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농민신문 : 『불법 도축한 돼지 헐값에 사 식당에 판 가공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병들거나 죽기 직전 돼지고기 섞어 팔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도축한 병든 돼지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경남인뉴스, 인터넷 경남신문, 아시아뉴스통신경남, 노컷뉴스/사유 : 추후보도) • 취하 (인터넷 농민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경남인뉴스 : 『[병든 돼지 불법도축 업자 구속]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신문 : 『무허가 도축 돼지 유통 축산물가공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경남 : 『불법 도축 돼지고기 유통 혐의 축산 가공업자 무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병든 돼지 불법도축, '식당 · 마트' 판매? '무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0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20 · 21	(정정 · 손배청구) 유○○ 對 TYN
조 정 대 상	(1) 『유○○ 의원, T농수산...불법 · 비리 온상(?)』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일자 오피니언면) (2) 『김동진 여동생, 유○○ 딸 채용 특혜 논란, 특권층 가족, 우선 채용...현대판 '음서제'』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9일자 오피니언면) (3) 『태영농수산...77호선 국도 관통 '충격', 유○○ 시의원, 재산 증식 수단 이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9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고, 해당 회사를 관통하는 국도 예상 설계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으며, 신청인 딸의 채용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2014경남조정22~25	(각 정정청구) 창원시 對 경남매일[22, 24], 인터넷 경남매일[23, 25]
조 정 대 상	(1) 『경남도가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동읍 무성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2월 14일자 1면, 인터넷 경남매일 2월 13일자 뉴스면) (2) 『창원시장 비서실 유지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2월 17일자 18면, 인터넷 경남매일 2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창원시가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서실을 계속 운영해 전 시장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22, 23]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24, 25]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남매일 : 『「창원시는 왜 이러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2면, 인터넷 경남매일 3월 6일자 종합면) • 인터넷 경남매일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2014경남조정26	(정정청구) 사단법인 ○○○○○○○생활센터 對 창원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문학도 장애인 "자립하고 싶어요"』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자립센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내쫓는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27~34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개발 외 1인 對 거제타임즈(27 · 28), 뉴스앤거제(29 · 30), 뉴시스(31 · 32), 모닝뉴스(33 · 34)
조 정 대 상	• 거제타임즈 : 『[사건]호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3억원 못받아 검찰에 고소장 접수 '말썽'』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 뉴스앤거제 : 『[사건]호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3억 못받아』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개발면) • 뉴시스 : 『거제 호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3억원 못받아』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경남면) • 모닝뉴스 : 『[거제]호텔은 리모델링 공사대금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사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들이 호텔을 건설한 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시점에서 신청인측이 입증서류(무혐의 처분서, 무죄 판결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추후보도 하도록 한다.

2014경남조정35~38	(각 정정 · 손배청구)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인터넷 창원일보(35 · 36), KNS뉴스통신 경남서부(37 · 38)
조 정 대 상	• 인터넷 창원일보 : 『거제시, ○○ ○○아파트 재건축 주민 고통 외면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경남서부면) • KNS뉴스통신 : 『거제시, ○○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안전시설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0일자 경남서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진행하는 재건축 현장의 소음 및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창원일보 : 『거제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7일자 사회면) • KNS뉴스통신 : 『거제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39 · 40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거제시민뉴스
조 정 대 상	『○○문예회관 K관장, 관용차 '자가용'처럼 사용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41 · 42	(정정 · 손배청구) 유○○ 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막차타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3일자 사람들면)
신청인 주장	거제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고단수 선거꾼과 부화뇌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43~46, 57 · 58	(각 정정 · 반론청구) 법무법인○○○○○○사무소 對 경남신문(43 · 44), 인터넷 경남신문(45 · 46), MBC경남(진주)-R(57 · 58)
조 정 대 상	• 경남신문 : 『진주아파트 등기 외지 법무사가 싹쓸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4월 2일자 지역면) • MBC경남(진주)-R : 오늘의 경남 프로그램 중 신청인 관련 보도 (2014년 4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회사가 진주지역 아파트 등기업무를 독식하여 막대한 수임료 등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 신청인 회사가 법무사들의 직역이라 할 수 있는 등기업무를 침범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MBC경남(진주)-R/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남신문 : 『「진주 아파트 등기 외지 법무사가 싹쓸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5월 14일자 사회면) • MBC경남(진주)-R : 오늘의 경남 프로그램 『진주 평거동 소재 아파트의 외지법무사 부동산 수임 관련』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6일자)

2014경남조정47~54	(각 정정 · 손배청구) (주)○○○○○○ 對 KNS뉴스통신(47 · 48), 진주KBS-1TV(49 · 50), 경남신문(51 · 52), 인터넷 경남신문(53 · 54)
조 정 대 상	• KNS뉴스통신 : 『일간뉴스경남 "홍준표.박완수 초박빙" 보도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사회일반면) • 진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선관위, 언론사 2곳 선거법 위반 혐의 확인』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9일자) • 경남신문 : 『여론조사기관 · 도내 언론사 각 2곳 '도지사 후보적합도'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신문 : 『여론조사기관 · 도내 언론사 각 2곳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KNS뉴스통신/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각 조정불성립결정 (진주KBS-1TV,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경남조정55, 56	(정정청구) 진주시 對 인터넷 경남도민신문(55), 경남도민신문(56)
조 정 대 상	『진주실내종합체육관 대형차량 주차장 변모』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014년 4월 14일자 지역기자면, 경남도민신문 4월 15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관리하는 진주실내종합체육관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59 · 60	(정정 · 손배청구) ○○○○○○○(주) 對 주간함양
조 정 대 상	『외지삼 명품 함양삼 둔갑 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0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삼주가 함양 산양삼이 아닌 외지 산양삼으로 만들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61 · 62	(정정 · 반론청구) 정○○ 對 경남MBC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민원인 울리는 행정』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했던 땅과 관련해 김해시청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경남조정63, 64	(각 정정청구) 배○○ 對 경남매일[63], 인터넷 경남매일[64]
조 정 대 상	『억울한 민생현장 경찰 뒷짐』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5월 27일자 5면, 인터넷 경남매일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용역직원을 고용해 신청인의 땅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억울한 민생현장 경찰 뒷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6월 20일자 5면, 인터넷 경남매일 6월 19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65~68	(각 정정 · 손배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합천신문[65 · 66], 인터넷 합천신문[67 · 68]
조 정 대 상	『○○○○농협 업체 간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합천신문 2014년 4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합천신문 4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의도적으로 불법이자 청구 등 금융 횡포를 부리며 한 농산업체를 비호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를 압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69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드는 구원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기독교복음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4경남조정70, 71	(각 정정청구) ○○○○○공사 對 경남매일[70], 인터넷 경남매일[71]
조 정 대 상	『○○○公 직권남용 도 넘어』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6월 13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상레저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公 직권남용 도 넘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6월 3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6월 29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72~87, 90~97, 104~111	(각 정정 · 손배청구) 권○○ 외 1인 對 경남도민일보(72 · 73, 76 · 77, 80 · 81, 84 · 85, 90 · 91, 94 · 95, 104 · 105, 108 · 109), 인터넷 경남도민일보(74 · 75, 78 · 79, 82 · 83, 86 · 87, 92 · 93, 96 · 97, 106 · 107, 110 · 111)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1)『도내 일간지 A회장 2억원 업무상 횡령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6월 18일자 종합면) (2)『"민원해결해 주겠다" 돈 받은 혐의로 또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6월 18일자 종합면) (3)『진주경찰서, 일간지A회장 연류사건 축소 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1면, 3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계속 나에게 책임 미루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폭로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2일자 사회면) 외 26건
신청인 주장	1.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이 업무상 횡령을 한 의혹이 있으며, ○○병원 부도 과정에서 2억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군부대 이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 신청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조사를 축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참고인 신분의 신청인이 마치 피고소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 신청인이 과거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문사 건물 임대료를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5.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 · 고발사건이 협박공갈 · 문서위조 · 변호사법 위반 · 횡령 등 5건이나 된다고 보도했으나 전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88, 89	(각 정정청구) 송○○ 對 경남도민일보(88), 인터넷 경남도민일보(89)
조 정 대 상	(1)『스승의날 선물 요구한 대학교수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4년 5월 1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16일자 사회면) (2)『진주○○대 교수 스승의날 고가 선물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4년 5월 19일자 8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19일자 사회면) (3)『진주○○대 선물 물의 교수 조사』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4년 5월 2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20일자 4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강요하여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98~103	(각 정정 · 추후 · 손배청구) 권○○ 對 경남연합일보[98~100], 인터넷 경남연합일보[101~103]
조 정 대 상	『진주지역 계조직 2억원 사기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4년 4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4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계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진주지역 계조직 2억원 사기 '물의'」 관련, 정정 및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4년 7월 31일자 5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7월 31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112, 113	(각 정정청구) 강○○ 對 경남일보[112], 인터넷 경남일보[113]
조 정 대 상	『○○사-관광농원 양보 없는 토지분쟁』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종합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라는 사찰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4경남조정114~117, 124~127	(각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일간뉴스경남[114 · 115, 124 · 125], 인터넷 일간뉴스경남[116 · 117, 126 · 127]
조 정 대 상	(1) 『"승단부정심사 장본인이...자리 안맞다"』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30일자 사회 4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7월 29일자 사회면) (2) 『경남○○○협 기심의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9월 17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경남○○○협회 전문분과 기술심의회 의장인 신청인이 승단 부정심사를 했던 사람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 ○○심사 채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일간뉴스경남[114 · 116], 인터넷 일간뉴스경남[115 · 117] /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일간뉴스경남[124 · 126],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25 · 127])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9월 1일자 4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9월 1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014경남조정118~121, 128~131	(정정청구)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일간뉴스경남(118, 120, 129, 130), 인터넷 일간뉴스경남(119, 121, 129, 131)
조 정 대 상	(1) 『모 언론사 개설 '학교' 명칭 사용 제동』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8월 13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8월 12일자 종합면) (2) 『본지 권○○ 회장, 왜곡 보도에 '뿔났다'』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16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8월 12일자 종합면) (3) 『진주 축제 속 천수교 나대지 건강행사 말썽』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9월 29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9월 28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4) 『건강박람회 무대 공연 중단, 주류판매 잇따라』, 『건강박람회 빙자 주류판매·공연 소음 원성 잇따라』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10월 6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0월 5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언론사가 부당하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 언론사가 피신청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3. 신청인이 진주건강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장소의 안전, 편의시설 설치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4. 신청인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박람회에서 주류가 판매되는 등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122, 123	(정정청구) 주식회사 ○○○○○ 마을 對 일간뉴스경남(122), 인터넷 일간뉴스 경남(123)
조 정 대 상	(1) 『장마, 산청 수련시설 토사유출 심각』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6월 24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6월 23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2) 『○○○마을 조사 검찰송치 단계』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6월 25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6월 24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3) 『산청군, ○○○마을 위법행위 '뒷짐'』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8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7월 7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4) 『○○ ○○○마을 '산지훼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21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7월 21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5) 『검찰 ○○○마을 보강수사 재지휘』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8월 5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8월 4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청소년수련원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132~135	(각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일간뉴스경남(132 · 133), 인터넷 일간뉴스경남(134 · 135)
조 정 대 상	『故 권○○ 선생 명예훼손 기자 좌시 않겠다』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10월 14일자 1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0월 13일자 여론 해석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축구인 故 권○○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경남조정136~139	(각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경남도민일보(136 · 137), 뉴시스(138 · 139)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한국○○○○협회 ○○지부, 내부 갈등으로 '시끌'』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홈페이지 뉴스 지역면) • 뉴시스 : (1) 『한국○○○○협회 ○○시집행부 고소 · 고발 '난타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전국면) (2) 『○○○○시지부 "전직 지부장 공금횡령 · 장애인 약취" 고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지부장으로 있던 한국○○○○협회 ○○지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약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남조정140, 141	(각 정정청구) 창원시 對 경남도민일보(140), 인터넷 경남도민일보(141)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1) 『긴급재난 속 무리한 운행 요구가 화를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1면) (2) 『창원시, 버스업체에 '우회 운행' 말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5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1) 『'추락 침몰' ○○번 시내버스, 멈출 수 없었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행정면), (2) 『창원시, 버스업체에 '우회 운행 해서라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창원시가 진동 지역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우회운행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142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치 추진에 시민들 '갸우뚱'』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거제시가 옥상옥의 관변조직을 꾸리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치 추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014경남조정143~146	(각 정정 · 손배청구) 송○○ 對 통영뉴스(143 · 144), 인터넷 통영방송(145 · 146)
조 정 대 상	『전 지역기자, '공갈 금품수수 혐의' 고발 뒤늦게 알려져』 제하의 기사 (통영뉴스 2014년 11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통영뉴스 11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관광업체로부터 차용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 제 주 〉

2014제주조정1~20, 23 · 24	(각 정정 · 손배청구) 석○○ 對 제민일보(1 · 2), 인터넷 제민일보(3 · 4), 인터넷 제주매일(5 · 6), 인터넷 제주도민일보(7 · 8), 제주의 소리(9 · 10), 제주투데이(11 · 12), 시사제주(13 · 14), 헤드라인 제주(15 · 16), 제이누리(17 · 18), 뉴스제주(19 · 20), 연합뉴스(21 · 22)
조 정 대 상	• 제민일보 : 『비위로 도배한 제주 ○○간부– 독보적인 문제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8일자 2면) • 인터넷 제민일보 : 『"구멍가게" 보다 못한 제주테크노파크』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제주매일 : 『"제주○○일부 직원, 여직원 술자리 동석시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제주○○여직원 술시중. 대리보고서 작성까지"』 제하의 기사 외 2건 (2013년 11월 21일자 등) • 제주의 소리 : 『"잦은 욕설, 술시중..., 제주○○간부 누구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등) 외 12건
신청인 주장	전 제주○○○○○ 센터장인 신청인으로 인해 소속 직원 20여명이 사직했으며, 신청인이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고 출장 보고서를 부하직원에게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제민일보, 인터넷 제민일보/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제주매일/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주의 소리/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원 – 동의후 보도) • 각 취하 (제주투데이, 시사제주, 헤드라인 제주, 제이누리, 뉴스제주/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제민일보 : 『정정보도 제주○○ 모 간부 '술시중 강요'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2면) • 인터넷 제주매일 : 『[정정보도] 제주○○ 모 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시중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4월 30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제주투데이 · 시사제주 · 헤드라인 제주 · 뉴스제주 2014년 4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민일보 · 제이누리 4월 30일자 사회면, 제주의 소리 2014년 5월 2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파크 술시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2014제주조정25	(정정청구) 강○○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 930 프로그램 『"풍력개발 이권 사업으로 전락하나?"』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과 관련해 신청인이 사업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제주조정26, 27	(각 정정청구) 제주지방경찰청 對 인터넷 한라일보[26], 한라일보[27]
조 정 대 상	『현직 검사장 성범죄, 무얼 남겼나』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4년 8월 25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청이 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제주조정28	(정정청구) 고○○ 對 한라일보
조 정 대 상	『○○공무원 인사청탁 "배달사고" 결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제 2 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4서울중재1~4	(각 정정청구) 정○○ 對 네이버[1, 3], 다음[2, 4]
중 재 대 상	(1) 『"아이 안 돌려주면 기흉수술 동의서 못 써준다" 학대 엄마 친권 앞에선 보호기관도 정부도 무기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사회면) (2) 『"엄마가 두려워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중재5~7	(각 정정청구) 이○○ 對 다음[5], 네이트[6], 네이버[7]
중 재 대 상	『"코치의 폭행 피해자인데 ○○ 출전자격 뺏다니요"』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3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 국가대표 코치인 신청인이 전지훈련 중 팔통증이 있는 국가대표 선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따돌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해당 선수가 폭행피해자임에도 숙소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국가대표 이 모 코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중재8~10	(각 정정청구) 조○○ 對 네이버[8], 다음[9], 네이트[10]
중 재 대 상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김○○ 선수의 주치의인 신청인이 의료시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중재11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중 재 대 상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사회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 울

* 주 소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397-3114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홈페이지 : www.pac.or.kr
*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 트 위 터 : twitter.com/pac_news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 역

부 산
(613-83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 구
(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53) 763-0020~1/FAX 053) 763-0242

광 주
(503-31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B동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 전
(302-220)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 기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 원
(200-03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 북
(361-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3, 8081/FAX 043) 286-8084

전 북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 063) 288-0010, 0981/FAX 063) 288-0980

경 남
(642-82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7, 1780/FAX 055) 263-1769

제 주
(690-625)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5길 6
현곡빌딩 4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2015년 4월 28일 제작
2015년 4월 30일 발행
편저_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교육콘텐츠팀
발행_언론중재위원회
제작_(주)계문사 02) 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FAX: 02)397-3089
http://www.pac.or.kr